미국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3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6
2. 주요 산업 동향 /10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47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5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54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57
대한수입규제동향 /67
관세제도 /68
주요인증제도 /71
지적재산권 /73
통관운송 /78

Ⅳ.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87
외국기업 투자동향 /89
우리기업 투자동향 /98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103
진출형태별 절차 /107
투자입지여건 /128

3. 사업관리
노무관리 /131
조세제도 /13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42

Ⅴ.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144
2. 물가정보 /151
3. 바이어발굴 /155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57
5.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160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62
7. 이주정착 가이드 /165
8. 출장가이드 /172

United States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826,63㎢(농지 47%, 산지 29% /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기후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구	3억100만 명(U.S.Censuc Burea 2007년 추정치)
주요도시	New York(814만 명), Los Angeles(384만 명), Chicago(284만 명), Houston(202만 명), Philadelphia(147만 명), Phoenix(146만 명), San Diego(126만 명), Dallas(121만 명), San Antonio(126만 명), San Jose(91만 명), Detroit(89만 명)
민족	백인(80.0%), 흑인(12.9%), 인디언 에스키모 및 알래스카 원주민(0.9%) 아시안 (4.4%), 하와이안 및 태평양 섬 원주민(0.2%), 기타(6.0%), 혼혈(1.6%)
언어	영어(일부 지역에서는 스페인어도 통용, 스페인어 사용인구 12.5%)
종교	신교(52%), 가톨릭(24.5%), 유대교(1.4%), 이슬람교(0.5%), 불교(0.5%), 비신도(14%)
건국(독립)일	1776. 7. 4(13개 주 독립선언일)
정부형태	대통령제
국가원수 (실권자)	○ George W. Bush(취임일: 2005.1.20, 임기: 4년(중임)) - 2004. 11.2 대선에서 현 Bush 대통령이 승리함 - 2005.1 월부터 4 년간 집권 2 기에 돌입

자료: U.S. Census Bureau, BEA(미상무부) 2008년 8월 기준 EIU 최신통계

나. 경제지표

GDP	2008년 상반기 14조3,125억 달러(2008년 8월 BEA)	
실질경제성장률('07)	2.2%(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8년3월)	
GDP 1인당	4억 5851 달러(2007년) (EIU, 2008년9월)	
	4억 7696 달러(2008년 예상)	
실업률	5.0%(2008년4월 미노동부 통계국)	
물가상승률	2.3%(2008년4월 미노동부 통계국)	
화폐단위	미 달러(U$)	
환율	U$1= KRW 1161.00(2008년9월16일 매매기준율)	
외채	8조 5,304억 달러(2006년 EIU)	
외환보유고	408억 달러(2007년12월)	
산업구조	○ 민간부분 대 정부부분(88.6%: 11.4%) ○ 제조(19.7%), 금융(17.5%), 도소매(11.7%), 전문서비스(10.1%), 건설(5.1%), 통신(5.1%), 운송(3.1%), 광업(1.7%), 지방정부(7.6%), 중앙정부(3.8%) (2007년)	
교역규모	2007	○ 수출: 1조 1,627억 달러 ○ 수입: 1조 9,537억 달러 (EIU, 2008년9월) ○ 무역적자: 7,910억 달러
	2008 상반기	○ 수출: 1조 1485 억 달러 ○ 수입: 1조 9679 억 달러
교 역 품	○ 수출: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항공기, 농산물	
	○ 수입: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원유, 섬유류	

자료: 미국 정부, World Trade Atlas, 2008년 9월 기준

다. 한-미 관계

체결협정	○ 한국 정부로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1948.8.11) ○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 협정(1948.12.10) ○ 상호 방위 원조 협정(1950.1.26) ○ 주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 (1950.7.12) ○ 경제 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1953.12.14) ○ 상호 방위 조약(1953.10.1) ○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1956.2.3) ○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1956.11.28) ○ 항공 운수 협정(1957.4.24) ○ 투자 보장에 관한 각서 교환(1960.2.19) ○ 경제 기술 원조 협정(1961.2.8) ○ 특수 핵 물질 대여 협정(1961.2.8) ○ 영사 협약(1963.1.8) ○ 석유 협정(1964.5.12)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 차관 협정(1966.11.9) ○ 상호 방위 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1966.7.9) ○ 안전 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 원자력 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1968.1.5) ○ 항공 운수 협정의 개정(1971.3.26) ○ 어업 협력에 관한 협정(1972.11.24) ○ 1968. 1. 5 일자의 안전 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미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1972.11.30) ○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1972.11.24)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정 (1976.6.4) ○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1982.7.26) ○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보안 협정 (1987.9.24) ○ 상호 군수지원 협정(88.6.8) ○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 교환(1989.9.26) ○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협정(1991.1.25) ○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각서 교환(1991.2.1) ○ 전시 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1991.11.21) ○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92.1.6) ○ 상호 방위 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협정(1993.11. 23) ○ 형사사법 공조 조약(1993.11.23) ○ 국제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핵 물질 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 방호와 첨단 봉 인 및 감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 기술처와 미 합중국 에너지부 간 약정(1994.9.19) ○ 원자력 안전규제와 안전연구에 있어서 기술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간의 약정 (1995.6.5) ○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협정(1995.11. 24) ○ 항공 운송 협정(1998.6.9)

	○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 각서(1998.6.19) ○ 투자촉진 협정(1998.7.30) ○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1999.2.25) ○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99.7.2) ○ 범죄인 인도조약(1998.6.9 서명, 1999.12.20 발효) ○ 한-KEDO, 차관공여협정 비준동의안 발효(1999.8.19) ○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발효(2002.10.31) ○ 한-미 FTA 협상 타결(2007.4.1) 및 협정문 공식 서명 2007.6.30)	
교역규모	2007	○ 수출: 457 억 660 만 달러 ○ 수입: 372 억 190 만 달러 ○ 대미 무역 흑자: 90 억 500 만 달러
	2008 상반기	○ 수출: 311 억 420 만 달러 ○ 수입: 267 억 970 만 달러
교역품	○ 수출: 승용차, 무선통신장비, 반도체, 철강, 의류, 자동차 부품, 모니터, 컬러 TV, 컴퓨터 등 ○ 수입: 전자·전기, 농산물, 기계류 등	
투자교류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유치: 2,340백만 달러(2007년, 산업자원부, 신고 기준)	
교민	204만 5,866명(2008년 기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통계)	

자료: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뉴욕총영사관, World Trade Atlas, 2008년 9월 기준

2. 정치 사회 동향

가. 경제: 경기 불황 타개가 최대 정치 현안으로 부각

실질 GDP가 2008년에는 1.2%선 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2008 년 실질 GDP성장률은 2분기 기준 3.3%을 기록했다.

주택 시장 침체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도산으로 촉발된 신용 위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 가격이 추가로 떨어지면서 주택 관련 자산가치가 폭락 하고 더 많은 주택담보 대출자들을 주택 압류 위기로 내몰리게 하면서 모기지 관련 증 권의 손실 규모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로 최근 리먼브러더스 파산, 메릴린치 매각,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의 신용등급 강등 및 파산보호 신청 등 거대 금융기관 들이 연달아 쓰러졌다.

나. 정치 및 사회: 2008년 대선 앞두고 양 당 후보 지명

차기 대선이 2008.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양 당에서 각 당의 후보자 지명을 위한 예비 선거가 아이오와 주를 필두로 2008. 1월부터 선거전이 시작되어, 2008. 9월 말 기준, 공화당은 애리조나 주 출신 상원 의원인 존 맥케인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었고, 민주당 은 일리노이 주 출신의 오바마 상원 의원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접전 끝에 이기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선거 주요 이슈는 전술한 경제문제 외에도 이라크전, 의료보험, 교육, 고용문제, 국가 안보, 이민 등으로 집약되나, 각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는 주마다 차이를 보인다.

지난 1935 년 미국 노동법의 근간인 와그너법 제정 이후, 미 노동계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근로자 자유선택법안이 미 대선주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노동조합 결성을 더 수월하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는 묵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 동단체들은 오바마를 지지하는 입장이나 사용자들은 대체로 입법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외교

이라크전 파병 미군 수 증가(surge)를 중단하기로 2007. 9월 부시 대통령이 결정한 이 후 오히려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전술적 차원에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미국 내 여론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 및 그 후임자 모두 대량 감군 또는 전면 철군에의 강력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했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8년 9월 이라크 미군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현 수준 유지, 임기만료에 맞춰 8000명을 철군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대신 아프가니스탄에 2,000~5,000명의 미군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싸고 극에 달한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잇따른 반미 발언과 인권 탄압으로 인해 양국이 다시 새로운 동 서냉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참여하는 북핵 관련 6자 회담은 2007. 10. 3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와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해, 북한이 영변 핵심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시작으 로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나갈 경우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를 언급하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미 FTA

- ○ 2007. 4 월 한미 FTA 타결, 6 월 말 미 워싱턴에서 있었던 양국 통상장관 서명 이후 한미 FTA 는 발효에 필요한 양국 의회 승인과정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2007.9.27)

- ○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상정(2008.2.13)

○ 한미 FTA 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08.2.15)

○ 미국의 경우,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및 민주당 대선주자인 오바마 등이 한미 FTA 상의 자동차 협상내용을 문제 삼아 한미 FTA 재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등 미 의회 내 분위기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 아울러 한국도 2008. 2 월 말 새 정부 출범 이후 호전된 한-미 동맹 관계를 배경으로 한국 국가원수의 4 월 미국 방문과 한미 FTA 미국 측 협조의 전제 조건이었던 한-미 소고기 협상 타결을 계기로 5 월 이전 한국의회 비준을 추진한 바 있으나 한-미 소고기 협상에 대한 한국 내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나. 미국비자 면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논의는 미 의회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하원 조정위원회'가 지난 7 월 비자면제확대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가시화된 사안으로 한미 양국은 11 월 서울에서 제 1 차 VWP 기술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8. 4 월 중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측의 적극적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검토가 이어져 2008. 12 월 중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일부 기대하고 있다.

다. 한미 동맹

2007. 2 월 이미 한미 양국이 현재 미국이 쥐고 있는 전시 작전권(전작권)을 2012 년 한국이 환수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또한 한미양국은 용산 미군 기지 및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오는 2008 년까지 평택으로 이전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5 년 늦은 2012~2013 년에 기지 이전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주요 협상국으로 참여하는 북핵 6 자 회담에서 2007. 10. 3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제 2 단계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심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시작으로 현존하는 모든 핵 시설을 불능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나아갈 경우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라. 연수취업 프로그램 양해 각서 서명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8 년 9 월 22 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18 개월간 체류하며 어학연수와 인턴경험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WEST 는 2008 년 8 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한 해 최대 5,000 명의 우리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후 1 년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이 ▲어학연수 5 개월 ▲인턴취업 12 개월 ▲여행 1 개월 등 최장 18 개월 동안 미국에서 머무르며 어학연수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에서의 인턴경험과 여행 등을 통해 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2008 년 10 월 31 일 발효되고, 2009 년 초부터 시행된다.

Ⅱ.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미국 경제 동향

1) 2008 미 경제성장: 성장세 둔화, 경기 침체 논쟁(Recession) 가열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동향

	구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 분기 기준	Source
실물	경상 GDP	US bil	12,433.9	13,194.7	13,841.3	14,294.5	BEA
	실질 GDP 증가율	%	3.1	2.9	2.2	2.8	BEA
	CPI 상승률	%	3.4	3.2	2.8	5.1	BLS
	실업률	%	5.1	4.6	4.6	6.1	BLS
교역	수출액(상품)	U$ bil	895	1023	1149	776	BEA
	수입액(상품)	U$ bil	-1681	-1861	-1964	-1278	BEA
	무역수지(상품)	U$ bil	-787	-838	-815	-502	BEA
	서비스 수출	U$ bil	388	423	479	319	BEA
	서비스 수입	U$ bil	-315	-342	-372	-236	BEA
	수출증가율(상품)	%	10.8	14.4	12.3	19.1	BEA
	수입증가율(상품)	%	13.9	10.7	5.5	13.9	BEA
환율	원화	KRW/U$ 기말	1010.00	930.00	935.80	1134.87	FRB
	엔화	Yeb/U$ 기말	117.88	119.02	111.71	106.57	FRB
	위안화	Yian/U$ 기말	8.07	7.80	7.29	6.83	FRB
	유로화	U$/euro 기말	1.18	1.32	1.46	1.43	FRB
유가	WTI	U$/barrel 기말	56.64	66.05	72.34	106.8	DOE
	소비자 Gasoline	U$/Gallon 기말	2.19	2.30	3.03	3.63	DOE
금융	DJIA	Index 기말	10717.50	12463.15	13264.82	10850.66	NYSE
	S&P 500	Index 기말	1248.29	1418.30	1468.36	1164.74	NYSE
	Nasdaq	Index 기말	2205.32	2415.29	2652.28	2091.88	NASDAQ
	FRB 기준금리	% 기말	4.25	5.25	4.25	2.00	FRB
	미재무성 10 년 만기 채권 이자율	% 기말	4.39	4.74	4.04	3.84	USTREAS
투자	해외직접투자	U$ bil (Flow)	-2	217	317	NA	BEA
	외국인직접투자	U$ bil(Flow)	117	175	199	NA	BEA

주1: 2008년 수출입증가율은 2007년 상반기 대비

주2: 2008년 환율은 2008년 9월 기준

주3: 2008년 유가는 2008년 9월 26일 기준, 소비자Gasoline은 미 전역 U.S. Regular Conventional Retail Gasoline의 9월 29일 평균가격

주4: 2008년 금융은 2008. 9월 30일 기준

주5: 2008년 경상GDP, 실질GDP 성장률, CPI 상승률 통계는 계절 조정된 2분기 기준 연간 전망치이며 실업률은 2008년 9월 기준임.

○ 2007년 3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신용경색 발생 후 미국경제는 부동산 가격하락,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심리 냉각으로 소비부문이 급속히 위축돼 일본식의 장기 경기 침체 논란이 일고 있다.

○ 특히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메릴린치 매각, AIG 의 신용등급 강등 및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지원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연달아 쓰러지면서 미국주식시장이 2008년 하반기 미국 주식시장은 급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 미국 경기 후퇴로 세계 경제도 동반 후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계 경제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탈동조화(decoupling)의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기관별 미국 경제 전망

구분		2007	2008	2009	2010
FRB(2007.11)	성장률(%)	2.4~2.5	1.8~2.5	2.3~2.7	2.5~2.6
	실업률(%)	4.7~4.8	4.8~4.9	4.8~4.9	4.7~4.9
	물가(%)	2.9~3.0	1.8~2.1	1.7~2.0	1.6~1.9
IMF(2007.10)	성장률(%)	1.9	1.9		
	실업률(%)	4.7	5.7	-	-
	물가(%)	2.7	2.3		
OECD(2007.12)	성장률(%)	2.6	1.5	2.5	
	실업률(%)	4.8	5.1	4.9	-
	물가(%)	2.5	2.1	2.0	

2) 주택 경기: 침체 지속

○ 주택재고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고 주택 모기지 시장이 여전히 경색되어 있어 2008년 연말까지 침체 지속될 전망이다.

○ 2007년 미국 평균 주택가격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10% 가까이 더 떨어질 가능성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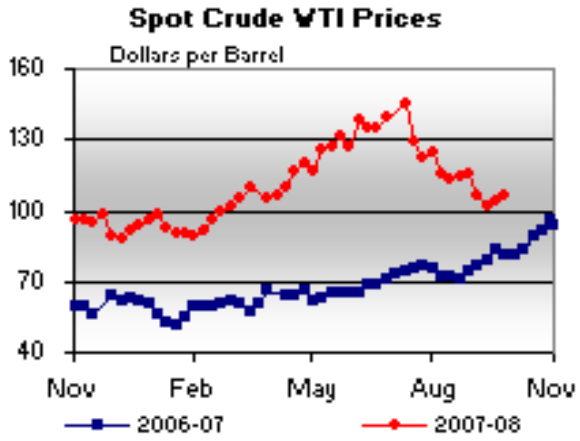
○ 주택경기 가격 하락이 서민들의 보유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소비 지출의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 (주택가격 하락의 소비지출 위축효과는 주가하락보다 위력적)이다.

3) 물가: 유가가 변수

○ 에너지와 식품류 가격 상승 여파로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물가수준은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 물가 상승이 미 연준의 정책선택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미 연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경제연착륙이었으나 2008년 5월 들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으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2008년 9월 말 기준 107달러로 하락세이다.



자료: US. Department of Energy

4) 고용 시장: 예상보다 크게 악화

○ 2008년 4월 말 기준 미국 노동 인구는 약 1억 4608만 명 수준에 그쳤다.
○ 실업률도 2008년 4월 5.0%에서 2008년 8월 기준 6.0%로 확대되었다.

미 주요 고용 지표 추세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4	2008.8
고용인구	천명	139,252	141,730	144,427	146,047	146,331*	146,089
실업률	%	5.5	5.1	4.6	4.6	5.0*	6.1
주당평균임금	$	528.56	551.67*	579.01*	589.72*	602.56*	605.40
임금상승률	%	2.1	4.3	5.0	1.8	2.2	3.3
주당평균근로시간	시간	33.7	33.7*	33.9*	33.8*	33.7*	33.7

주: *는 추정치 및 예상치임.
자료: 미 노동부, 2008. 9월 기준

○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실물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GDP	U$ Bil	13,844	14,195	14,533
소비자 물가 상승률	%	2.9	3.0	2.0
실업률	%	4.6	5.4	6.3
경상수지	U$ Bil	-739	-615	-605

자료: IMF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5) 뉴욕 증시: 2008년 하반기 하락세 지속할 듯

○ 2007년 연말 소매 판매 부진 등으로 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된 데다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채권보증 보험업체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 하락과 미 행정부의 1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주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 미 다우지수는 2008년 5월 13,000대 선에서 10월 10,000대 이하로 하락하는 등 2008년 하반기에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2008년 9월 발표된 EIU 의 미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 경제 성장율이 2008년에 1.8%, 2009년에는 0.6%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는 등 미 경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 다우존스 동향



6) 자금시장: 신용경색 악화로 시중자금난 가중

○ 미 연준 및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공조를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로 12월 중순 이후 단기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다소 완화하던 중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파산과 매각사태로 시중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 미 연준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 2%에 고정시키고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향후 추가 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미국 자동차 3사들이 자동차 할부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병원들이 구매비용이 큰 의료기기 구매를 위한 은행융자가 어려워 의료기기 구매를 줄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7) 미 달러화: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

○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2008년 8월 들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유로지역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유로화에 대한 강세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 엔화에 대해서는 8월 말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국 통화 환율 전망

통화	2007	2008	2009	2010
US$/EURO	1.369	1.495	1.408	1.365
￥/US$	117.8	106.0	103.0	98.3

자료: EIU 2008. 10월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구조 개관

1) 전체 산업구조 개관

○ 2007년도 GDP 기준 미국 전체 경제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4% 내외, 정 부 및 공공 부문 비중은 12.6%로 독일, 영국 등 여타 선진국 대비 민간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경제 과정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가급적 자제해 온 미국 경제 발전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민간 부문 내 각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 및 부동산 부문이 20.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및 비즈니스 지원 12.2%, 교육 및 보건 분야 7.9%, 소매(Retail Trade) 6.4%, 도매(Wholesale price) 5.8% 등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반면, 제조업 비중은 11.7%, 농림어업 1.2%, 유류, 가스를 포함한 광업 부문이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미국 내 제조업 비중은 지속 하락추세에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및 추세는 악화되고 있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와 이에 따른 중국, 일본, 중동의 Surplus Dollar 미국 내 유입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정부 및 공공부문(공기업 포함)의 GDP 비중은 12.6%으로 이중 중앙정부가 4.0%, 주 및 지방정부가 8.6%를 차지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산업별 GDP구성 비중 및 추이

(단위: %)

산업	2000	2006	2007
Gross domestic product	100.0	100.0	100.0
Private industries	87.7	87.6	87.4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1	1	1.2
Farms	0.7	0.7	…
Forestry, fishing, and related activities	0.3	0.2	…
Mining	1.2	2	2
Oil and gas extraction	0.8	1.2	…
Mining, except oil and gas	0.3	0.3	…
Support activities for mining	0.1	0.5	…
Utilities	1.9	2.1	2.1
Construction	4.4	4.8	4.1
Manufacturing	14.5	11.7	11.7
Durable goods	8.8	6.7	6.7
Wood products	0.3	0.3	…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0.5	0.4	…
Primary metals	0.5	0.5	…
Fabricated metal products	1.2	1	…
Machinery	1.1	0.9	…
Computer and electronic products	1.9	1.1	…
Electrical equipment, appliances, and components	0.5	0.3	…
Motor vehicles, bodies and trailers, and parts	1.2	0.7	…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0.7	0.7	…
Furniture and related products	0.3	0.2	…
Miscellaneous manufacturing	0.6	0.5	…
Nondurable goods	5.7	5.1	5
Food and beverage and tobacco products	1.6	1.2	…
Textile mills and textile product mills	0.3	0.1	…
Apparel and leather and allied products	0.3	0.1	…
Paper products	0.6	0.4	…
Printing and related support activities	0.5	0.4	…
Petroleum and coal products	0.3	0.7	…
Chemical products	1.6	1.6	…
Plastics and rubber products	0.7	0.5	…
Wholesale trade	6	5.8	5.8
Retail trade	6.7	6.4	6.4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3.1	2.9	2.9
Air transportation	0.6	0.4	…
Rail transportation	0.3	0.3	…
Water transportation	0.1	0.1	…
Truck transportation	0.9	0.9	…
Transit and ground passenger transportation	0.1	0.1	…
Pipeline transportation	0.1	0.1	…
Other transportation and support activities	0.7	0.7	…
Warehousing and storage	0.3	0.3	…
Information	4.7	4.5	4.7
Publishing industries (includes software)	1.2	1.1	…
Motion picture and sound recording industries	0.3	0.3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2.8	2.6	…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 services	0.4	0.5	...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rental, and leasing	19.7	20.9	20.7
Finance and insurance	7.5	8.3	8
Federal Reserve banks, credit intermediation, related activities	3.2	4.3	...
Securities, commodity contracts, and investments	1.7	1.7	...
Insurance carriers and related activities	2.4	2.1	...
Funds, trusts, and other financial vehicles	0.2	0.2	...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12.1	12.6	12.6
Real estate	11	11.8	...
Rental and leasing services	1.1	0.8	...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11.6	11.8	12.2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6.9	7	7.2
Legal services	1.4	1.4	...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1.3	1.1	...
Miscellaneou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4.2	4.5	...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1.9	1.8	1.9
Administrative and waste management services	2.9	3	3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	2.6	2.7	...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0.3	0.3	...
Educational services,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6.9	7.7	7.9
Educational services	0.8	0.9	0.9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6.1	6.8	6.9
Ambulatory health care services	3.1	3.5	...
Hospitals and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2.4	2.7	...
Social assistance	0.5	0.6	...
Arts, entertainment, recreation, accommodation, food services	3.6	3.6	3.7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0.9	1	0.9
Performing arts, spectator sports, museums, related activities	0.4	0.5	...
Amusements, gambling, and recreation industries	0.5	0.5	...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2.7	2.7	2.7
Accommodation	0.9	0.9	...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	1.7	1.8	...
Other services, except government	2.3	2.3	2.3
Government	12.3	12.5	12.6
Federal	3.9	4	4
General government	3.2	3.5	...
Government enterprises	0.6	0.5	...
State and local	8.4	8.5	8.6
General government	7.7	7.9	...
Government enterprises	0.7	0.6	...
NIPA reconciliation item/1/	...	-0.1	0
Addenda:			
Gross domestic product, NIPAs	...	100	100
Less: Value added, all industries	...	100.1	100
NIPA reconciliation item/1/	...	-0.1	0
Private goods-producing industries/2/	21.2	19.5	18.9
Private services-producing industries/3/	66.5	68.1	68.5
Information-communications-technology-producing industries/4/	4.7	3.8	3.9

주: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의 대 GDP 비중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2008.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http://www.bea.gov/industry/gpotables/gpo_action.cfm

2) 제조업 내 각 산업별 비중

○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기준, 미국 제조업 창출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제조업을 100으로 기준할 때)으로 볼 때, 화학제품이 14.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담배(11.6%), 컴퓨터, 전자제품(9.1%), 금속제품 (8.3%), 기계(7.4%), 자동차 및 부품(6.6%), 기타 수송장비(5.0%)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화학제품, 석유 및 석탄,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제조업 내 비중은 확대추세이나 미국 주력산업의 하나인 자동차 및 부품비중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3) 제조 업종별 생산 추이(기준 연도 2000년: 100)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대비 제조업 전체 생산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전자장비 및 부품, 의류 분야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고, 자동차 및 부품, 비금속 광물 제품 등은 증가 추세에 있다.

미 제조업 생산 추이(기준: 2000년 100)

구 분	2004	2005	2006
Manufacturing	**96.5**	**97.5**	**102.3**
Durable goods	**95.9**	**99.7**	**103.5**
Wood products	96.5	98.2	104.2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99.5	102.7	106.4
Primary metals	95.5	95.2	97.9
Fabricated metal products	88.2	89.4	98.6
Machinery	88.3	94.1	99.8
Computer and electronic products	95.2	104.9	110.5
Electrical equipment, appliances, and components	80.8	83.5	82.5
Motor vehicles, bodies and trailers, and parts	105.6	103.9	106.3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96.7	107.2	107.1
Furniture and related products	100.3	105.8	101.7
Miscellaneous manufacturing	107.5	114.3	117.3
Nondurable goods	**97.4**	**95.3**	**101.2**
Food and beverage and tobacco products	99.9	101.1	10477.3
Textile mills and textile product mills	84.2	78.3	77.3
Apparel and leather and allied products	52.6	53.6	47.6
Paper products	91.6	90.2	91.8
Printing and related support activities	87.1	82.7	89.3
Petroleum and coal products	101.5	97.6	109.3
Chemical products	105.4	100.2	112
Plastics and rubber products	97.1	97.7	99.1

주: BEA의 Chain-Type Quantity Indexes for Gross Output by Industry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2008.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나. 섬유산업

※ 통계 단위 약자
SM = Square Meter(평방미터) = M^2
SME = Square Meter Equivalent(평방미터 상당)으로 섬유제품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

1) 미국의 섬유류 수입 시장 동향

□ 미국의 섬유류 시장 전체 수입 동향

○ 미국의 섬유류 수입 시장 규모는 2008년 7월 물량 기준 515억 평방미터, 금액 기준 947억 달러에 육박한다.

○ 미국 섬유류 생산 기반 약화와 해외 소싱 증가로 안정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3년간 수입량 연평균 4.2%, 수입액 연평균 5.0% 증가율 시현.
- 그러나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 불안과 이후 경기 불황 심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매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수입 증가세는 주춤한 양상. 고유가 및 물가 상승 요인까지 작용하여, 2008년 2/4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수입량 -3.34%, 수입액 -3.43를 보이며 수입 위축 현상 뚜렷하다.

○ 2007년 수입액에서 의류가 77%, 섬유가 23% 비중으로 의류가 섬유보다 3배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 미 섬유류 수입이 의류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수입량 면에서는 의류가 44%, 섬유가 56% 비중을 차지하였다.
- 이 같은 수입액과 수입량의 비중 차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 제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2007년 섬유 부분(23.3%)에서 원단의 수입액 비중은 전체 수입액 대비 5.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원사(1.5%)와 기타 완제품(16.1%)으로 구성되고, 원단시장은 미국 섬유류 시장 전반의 꾸준한 성장세와 대비,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인다.

미국의 섬유류 수입동향

구분	수입물량(백만 SME)				수입액(백만 달러)			
	2006	2007	2008.7	비중(%)	2006	2007	2008.7	비중(%)
전체	52,150 (2.6)	53,113 (1.8)	51591 (-5.5)	100	93,279 (4.6)	96,407 (3.3)	94767 (-3.2)	100
의류	22,539 (2.4)	23,335 (3.5)	22896 (-3.34)	44	71,630 (4.2)	73,923 (3.2)	72501 (-3.43)	77
섬유*	29,610 (2.7)	29,777 (0.6)	28695 (-6.32)	56	21,649 (5.6)	22,484 (4.2)	22265 (-1.71)	23
원단	8873 (-6.8)	8,619 (-2.9)	8255 (-7.12)	16	5,473 (-4.3)	5,532 (1.1)	5439 (-2.98)	6

주: *섬유는 원사, 원단, 홈텍스타일 포함.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2008. 9월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섬유국

□ 미국의 섬유류 국별 수입동향

○ 미국의 섬유류 시장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7년 기준 수입량 214억 평방미터로 점유율 40.2%, 수입액 323억 달러로 점유율 33.5%를 기록하였다.
- 중국은 수입량 면에서 2006년 11% 증가에 이어 2007년 14.8%의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수입액 면에서는 2006년 20.8%에 이어 2007년 19.4%의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섬유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5~8배 상회하는 것이다.
- 중국산 섬유류 수입규모는 수입량 2위국인 파키스탄보다 6.7배, 수입액 2위국인 멕시코보다 7배 큰 규모이다.

○ 미국의 상위 10대 섬유수입국(수입량 기준)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포함하여 7개국, 중남미 지역은 멕시코 등 2개국, 그리고 캐나다로 구성되어 아시아 지역으로부 터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수입액을 기준으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섬유 수출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반면 캐나다의 섬유류 수출은 수입량, 수입액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은 2007년 수입량 19억 5,300만 평방미터, 수입액 13억 2,450만 달러로 수입국 중 각각 5위, 19위를 차지하였다.

○ 그러나 2008년 상반기 한국에서의 수입량이 160.82%로 감소하면서 -31.51을 기록한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율을 보였다.

미국의 섬유류 국별 수입량

(단위: 백만 SME, %)

순위	수입국명	2006	2007		2008.7		
		수입량	수입량	증감률	수입량	증감률	점유율
-	섬유 수입량 전체	52149.5	53129.3	1.8	28960.2	-0.5	100
1	중 국	18613.5	21391.6	13.0	11464.5	-3.15	40.74
2	파키스탄	3566.9	3173	-12.4	1674.3	-11.46	5.73
3	멕시코	3425	3040.5	-12.6	1603	-12.31	5.46
4	인 도	2654.1	2722.7	2.5	1643.5	1.34	5.32
5	한 국	2139.2	1953.3	-9.5	984.9	-16.82	3.40
6	베트남	1147.8	1506.4	23.8	991.1	22.24	3.27
7	인도네시아	1598.8	1625.2	1.6	981.9	2.47	3.20
8	방글라데시	1494.5	1552.5	3.7	966.3	4.58	3.09
9	캐나다	2438.7	1912.5	-27.5	831.3	-31.51	2.97
10	온두라스	1144.2	1234.9	7.3	775.4	12.73	2.56

자료: 미국 상무부 섬유국, 2008.9월 기준

미국의 섬유류 국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명	2006	2007		2008.7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점유율
-	섬유 수입액 전체	93,278.7	96410.1	3.2	52768.8	-3.02	100
1	중 국	27,067.6	32323	16.3	1714.4	-1.83	33.77
2	멕시코	6,376.3	5625.5	-13.3	2952.1	-10.71	5.56
3	인 도	5,031.1	5104.1	1.4	3135.6	0.55	5.40
4	베트남	3,396.1	4558	25.5	2983.7	22.14	5.38
5	인도네시아	3,901.5	4206.1	7.2	2521.9	1.31	4.47
6	방글라데시	2,997.9	3191.2	6.1	2003.1	8.99	3.54
7	파키스탄	3,250.2	3170.3	-2.5	1721.9	-5.53	3.24
8	온두라스	2,445.4	2518	2.9	1477.8	4.02	2.82
9	캄보디아	2,150.8	2435.5	11.7	1385.7	1.94	2.60
10	이탈리아	2,067.9	2233.5	7.4	1267.7	-1.69	2.33
19	한 국	1,665.8	1324.6	-25.8	663.2	-15.15	1.27

자료: 미국 상무부 섬유국, 2008년 9월 기준

2) 미국의 의류, 원단별 수입시장 동향

□ 미국의 의류시장 수입동향

○ 미국의 의류 수입실적은 최근 6년간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수입쿼터가 완전 철폐되면서 의류 수입량이 전년대비 10.3% 늘어났다.
- 2005년 당시의 이런 폭등세는 전적으로 최저가의 중국산 수입이 급등했기 때문이며, 2006년에 2.4%로 증가세가 둔화된 후, 2007년에는 3.5%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인다.

○ 수입금액 또한 2003년 이후 매년 3~6%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 이전에는 수입액 증가율이 5%대였던 반면, 2005년 이후에는 4%대 이하로 낮아졌다.

□ 미국의 의류 국별 수입동향

○ 중국산 의류는 2007년 물량 기준 80억 3,360만 평방미터, 수입액 기준 227억 4,540만 달러 규모에 달했으며 이는 각각 전년대비 23.5%, 22.8% 증가한 것이다.
- 중국산 의류는 미국 의류 수입시장에서 물량과 금액 모두 30% 이상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 의류 수입량, 수입액 모두 2위 자리를 차지한 베트남은 WTO 가입 이후인 2007년에 들어와 30% 이상의 급증세를 보여 2007년 2위를 차지했던 방글라데시를 추격하는데 성공했고, 미국의 새로운 소싱국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대미 의류 수출이 2006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반면, 2007년에는 3~5%대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 한국은 2007년 총 2억 530만 평방미터의 물량과 6억 2,700만 달러의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여 각각 25위, 26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달리 수출 증가율 이 30% 넘게 감소한 실적이다.

미국의 국별 의류 수입량

(단위: 백만 SME, %)

순위	수입국명	2006	2007		2008.7		
		수입량	수입량	증감률	수입량	증감률	점유율
-	의류 수입량 전체	22539.2	23332.1	3.4	12633.5	-3.34	100
1	중 국	6506.1	8033.6	19.0	3937.7	-6.55	33.88
2	베트남	947.4	1273.7	25.6	847.1	24.29	6.29
3	방글라데시	1306.9	1351.8	3.3	799.2	3.18	6.01
4	온두라스	1136.1	1222.9	7.1	766.7	12.38	5.71
5	멕시코	1477.2	1210.5	-22.0	626.7	-14.30	4.83
6	인도네시아	1013.2	1064.2	4.8	659.1	5.09	4.79
7	캄보디아	842.7	866.6	2.8	489.5	3.39	3.86
8	인 도	840.3	867.9	3.2	554.1	-1.12	3.76
9	엘살바도르	721.7	810	10.9	499.7	8.56	3.71
10	파키스탄	672.7	695.5	3.3	386.7	-2.79	2.99
25	한 국	309.4	205.3	-50.7	96.2	-18.20	0.80

자료: 미국 상무부 섬유국, 2008. 9월 기준

미국의 국별 의류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명	2006	2007		2008.7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점유율
-	의류 수입액 전체	71629.8	73922.6	3.1	40026	-3.43	100
1	중 국	18517.6	22745	18.6	11474	-4.63	30.60
2	베트남	3222.1	4358.5	26.1	2869	23.28	6.76
3	멕시코	5297.1	4523.4	-17.1	2379.7	-10.99	5.83
4	인도네시아	3670.3	3981.1	7.8	2387.6	1.37	5.54
5	방글라데시	2914.1	3103.3	6.1	1939.2	9.14	4.50
6	인 도	3186.9	3170	-0.5	1985.9	-2.39	4.31
7	온두라스	2440.3	2511	2.8	1474	4.02	3.54
8	캄보디아	2135.9	2424.9	11.9	1379.1	1.92	3.38
9	홍 콩	2811	2034.8	-38.1	918.4	-6.79	2.71
10	태 국	1839.7	1766.3	-4.2	982.9	-3.09	2.39
26	한 국	912.8	627	-45.6	288.4	-21.31	0.76

자료: 미국 상무부 섬유국, 2008. 9월 기준

3) 경쟁동향 (국별 점유율 변동을 중심으로)

□ 주요 수입국 집중 현상

○ 2007, 2008년 미국의 상위 10대 섬유 수입국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 주요 수입국들의 점유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07년 상위 5대 수입국 점유율 50%를 상회한다.
- 5대 주요 수입국 점유율: 38%(2002년) → 46%(2005년) → 54%(2007년) → 58%(2008년 상반기)

□ 미국의 섬유류 1위 수입국, 중국의 점유율 상승

○ 중국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입 폭등세 시현,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타 수입국들에 비해 최우위를 점하고 있다.
- 중국의 시장 점유율: 12%(2002년) → 25%(2005년) → 34%(2007년) → 34%(2008년 상반기)

○ 2006년 미국의 대중국 섬유 수입쿼터 재도입에도 불구, 고도 수입증가세 지속. 쿼터 제가 중국산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단가 상승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유도, 수입액 증가 결과로 이어졌다.
- 중국은 쿼터 해당 분야에는 고부가 가치 전략을 구사하고, 쿼터 적용품목의 수출단가 상승을 통해 물량 측면의 정체상태를 상쇄시켰다.
- 쿼터가 없는 분야에서는 수출품목의 다변화 전략을 전개해 물량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 그러나 중국은 생산단가 상승, 위안화 절상, 수출국 다변화, 미 경기 불황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2008년 상반기 -3.43%의 감소율을 보였다.

□ 아시아 저임금 섬유 수출국들의 약진

○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대미 의류제품 수출이 증가했다.

○ 대중국 수입쿼터 조치가 아시아 저임금 수출국들에게 기회로 작용, 대중국 쿼터 적용 품목 위주로 수출이 증가했다.

○ 이들 국가들의 약진은 대 중국 수입규제에 대한 반사적 이익 부분이 큰 만큼, 대 중국 수 입 쿼터가 해제된 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한편, 홍콩, 한국, 대만 등, 높은 원가 구조로 인해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급속히 점유율이 하락했다.
- 한국 시장점유율과 수입국 순위 변동: 5위(2002년)→2%, 14위(2005년)→1%, 19위(2007년), 25위(2008년 상반기)→0.8%

□ 미 인근 국가들, 지역경제 블록화 영향 퇴조

○ 2005년 WTO 섬유협정에 따른 섬유쿼터 전면 폐지로 NAFTA 국가와 카리브 연안국들 특혜를 상실했다.

○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 아시아 섬유 수출국들에 비해 인건비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열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캐나다, 멕시코: NAFTA 발효에 따른 비쿼터, 무관세 혜택 효과를 상실하고 2002년 4위 수입국 캐나다는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 멕시코, 중국에 추월 당한 후 점유율이 급락했다.

○ 카리브 연안국 역시 대미 무관세 수출 특혜를 상실하였다.
- 2006년부터 미국과 6개 카리브 연안국이 체결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이 발효되었으나 체결국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점유율 낮아 효과가 미미하다.

4) 한국-미국 FTA(KORUS FTA)의 협상 결과

주요 섬유 품목 양허 결과(對美 수출 1,000 만 달러 이상 품목)

HS 8단위	품목명	관세율	미측양허	對美 수출액('03~'05)
50072000	기타 순견직물	0%	즉시	28,654,636
52085230	염색	6%	5년	53,566,395
52085240	염색	11%	5년	17,287,625
54022030	폴리에스터사	9%	10년	53,282,919
54024990	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	8%	즉시	14,197,755
54075220	폴리에스터직물	15%	10년	11,160,030

54076199	폴리에스터직물	15%	5년	61,161,770
55032000	폴리에스텔 섬유	4%	즉시	139,544,057
57032020	양탄자	7%	즉시	11,400,341
58063220	기타 직물	6%	5년	10,816,007
59022000	타이어코드	6%	10년	45,100,008
60019200	편직물	17%	5년	20,630,020
60041000	편직물	12%	10년	80,482,277
60053200	편직물	10%	5년	38,362,842
60063200	편직물	10%	10년	60,834,761
60063400	편직물	10%	10년	28,402,491
61013020	코트 및 재킷	28%	즉시	10,572,118
61023020	코트 및 재킷	28%	즉시	12,075,747
61034315	바지 스커트	28%	즉시	13,414,181
61046220	바지 스커트	15%	즉시	15,700,163
61051000	남성 아우터 셔츠	20%	10년	27,211,034
61052020	남성 아우터 셔츠	32%	5년	34,191,044
61062020	블라우스	32%	5년	17,011,525
61091000	언더 셔츠	17%	10년	17,238,450
61099010	언더 셔츠	32%	10년	12,000,272
61102020	스웨터	17%	10년	82,299,283
61103030	스웨터	32%	즉시	276,922,021
61112060	유아복	8%	즉시	22,405,773
61143010	기타 편직 제의류	28%	10년	11,878,708
61159290	양말	14%	즉시	134,468,076
61159390	양말	15%	5년	58,843,212
61161055	장갑	13%	즉시	12,246,791
62019330	코트 및 재킷	7%	즉시	44,390,153
62029345	코트 및 재킷	7%	즉시	11,561,244
62031190	신사복	18%	즉시	17,150,319
62043120	여성 양복 상의	18%	즉시	15,302,130
62043220	여성 양복 상의	9%	즉시	11,316,738
62043350	여성 양복 상의	27%	즉시	12,708,198
62046190	여성바지 스커트	14%	즉시	10,708,580
62046240	여성바지 스커트	17%	10년	25,175,888
62046335	여성바지 스커트	29%	5년	20,749,793
62052020	남성 셔츠	20%	5년	66,373,520
62053020	남성 셔츠	28%	즉시	134,242,817
62064030	블라우스	27%	즉시	12,180,744
62104050	코팅제의류	7%	즉시	15,116,113
62143000	손수건 스카프	5%	즉시	18,281,145
62151000	넥타이	7%	즉시	17,276,554
63014000	모포와 여행용 러그	9%	즉시	36,412,338
63062290	텐트 및 캠프용품	9%	즉시	13,230,308
63071020	기타 섬유품목	5%	즉시	17,877,592
63079098	기타 섬유품목	7%	즉시	12,676,105
65059060	모자	8%	즉시	11,313,562
65059080	모자	8%	즉시	11,293,824

자료: http://fta.korea.kr/ko_en/negotiation/

나. 반도체 산업

1) 일반 개요

○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지식 및 자본집약적인 첨단 기술산업이다. 현재 미국 산업의 핵심 경쟁 우위 산업으로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미국 소비가전, 통신장비, 컴퓨터 등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주도 하는 기업으로는 Intel, AMD, Texas Instrument, Micron Tech 등과 같이 생산공장 (Foundry)을 보유한 기업과 Nvidia, Xilinx, LSI Logic 등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Fabless 기업, 외국계 반도체 기업, 유관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최근 미국 반도체 산업도 일본, 한국, 대만 등 기존 경쟁국과 중국, 인도 등의 신규 경쟁 국의 등장으로 기술격차 축소와 시장 경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 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 및 가동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미국 내에는 약 70개의 생산공장이 있으며, 해외에 약 68 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2) 산업현황

○ 미국 반도체 산업은 2007년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총 매출액은 1,1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 매출의 특징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2007년 기준, 77%가 해외 시장의 매출이다.

○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미국 48%, 일본 23%, 기타(유럽, 한국 등) 29% 수준이며,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50% 수준을 기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반도체 산업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51.2	50.1	48.3	46.7	48.3
일본	28.1	26.0	27.4	25.6	22.6
기타	20.7	23.9	24.3	26.8	29.1

자료: SIA, 2008.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미국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고용규모는 22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생산 시설 이전으로 대규모 고용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17%인 18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 현황

매출액(십억 달러)	118
세계 시장점유율(%/십억달러)	46/256
고용규모(명)	233000
해외 매출비중(%)	77%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십억 달러)	16%(18.4)

자료: SIA, 2008. 9월 기준

3) 미국 반도체 기업 시장 점유율 동향

○ 2007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Intel이 12.0%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Texas Instruments 4.8%, AMD 2.9% 등이 있다.

세계 반도체 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2005 순위	2006 순위	기업명	2005 revenue	2006 revenue	Percent Change(%)	Percent of total(%)	Cumulative %
1	1	Intel	35466	31542	-11.10	12.10	12.10
2	2	Samsung electronics	17710	19842	12.00	7.60	19.70
3	3	Texas instruments	10745	12600	17.30	4.80	24.60
4	4	Toshiba	9077	10141	11.70	3.90	28.50
5	5	Stmicroelectronics	8881	9854	11.00	3.80	32.30
7	6	Renesas technology	8107	7900	-2.60	3.00	35.30
11	7	Hynix	5560	7865	41.50	3.00	38.30
15	8	AMD	3917	7506	91.60	2.90	41.20
10	9	Freescale semiconductor	5598	5988	7.00	2.30	43.50
9	10	Nxp	5646	5874	4.00	2.30	45.80
8	11	Nec electronics	5708	5679	-0.50	2.20	48.00
NA	12	Qimonda	0	5413	0.00	2.10	50.00
12	13	Micron technologies	4775	5210	9.10	2.00	52.00
6	14	Infineon technologies	8297	5119	-38.30	2.00	54.00
13	15	Sony	4574	4852	6.10	1.90	55.90
16	16	Qualcomm	3457	4529	31.00	1.70	57.60
14	17	Matsushita electric	4131	4022	-2.60	1.50	59.20
20	18	Broadcom	2671	3668	37.30	1.40	60.60
28	19	Elpida memory	1776	3527	98.60	1.40	61.90
17	20	Sharp electronics	3266	3341	2.30	1.30	63.20
19	21	IBM Microelectronics	2792	3172	13.60	1.20	64.40
18	22	Rohm	2909	2802	0.90	1.10	65.50
22	23	Analog devices	2428	2603	7.20	1.00	66.50
24	24	Spansion	2054	2579	25.60	1.00	67.50
23	25	Nvidia	2069	2574	24.40	1.00	68.50
		Other companies	76362	81912	7.30	31.50	100.00
Total revenue :			237976	260194	9.30	100.00	

자료: iSupply, 2008.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다. 컴퓨터 산업

1) 일반 개요

○ 미국 컴퓨터 산업은 세계 컴퓨터 산업의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중심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컴퓨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기술 표준화 및 모듈화에 따라 기술집약 산업에서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컴퓨터 산업의 직접 생산활동은 축소되는 상황이다.

○ 컴퓨터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의 표준화와 모듈화는 완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미국 주요 브랜드 기업은 중국,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OEM, ODM 방식의 아웃소싱과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기업을 이용한 외주생산이 일반화되었다.

○ 미국 컴퓨터 산업은 Dell, HP, Gateway, Apple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낮은 가격과 맞춤형 제품을 서비스 하는 중소기업들의 "White Box PC" 제품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컴퓨터 시장의 수요동향을 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컴퓨터 시장의 성장률 둔화는 기업용 컴퓨터 시장의 수요 감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산업 동향

○ 미국 컴퓨터 시장의 출하량은 2008년까지 소폭의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07년 미국 시장에서 컴퓨터 총 출하량은 7,000만 대로 예상된다. 세계 시장의 출하량 증가율이 11.3%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 시장은 6.9%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06년은 전년대비 시장에서 출하량 증가율이 대폭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시장이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어 교체수요 정체가 심화된 것과 상업용 컴퓨터 시장에서 수요 부진이 영향을 주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운영시스템 등장과 기술 발전으로 교체 수요가 진작되어 8% 수준의 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컴퓨터 출하량 현황 전망

(단위: 100만 대)

구 분		2004	2005	2006(예상)	2007(예상)	2008(예상)
미국 시장 출하량	개인용	21.8	23.6	25.0	26.8	29.0
	상업용	36.5	40.3	41.1	43.9	47.2
	소계	**58.3**	**63.9**	**66.1**	**70.7**	**76.1**
세계 시장 출하량	개인용	64.9	78.5	89.4	100.0	111.4
	상업용	114.4	129.3	140.0	155.4	171.8
	소계	**179.2**	**207.8**	**229.4**	**255.4**	**283.2**

자료: IDC, 2008.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미국 컴퓨터 시장의 주요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2008년 전체를 기준으로 HP가 1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DELL 15.7%, 에이서 9.9%, 레노보 6.9%, 도시바 4.4%, 기타 43.9 % 순서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컴퓨터 시장 주요 PC업체 1분기 출하량과 점유율

(단위: 1,000대, %)

순위	기업명	2008/ 1분기		2007/ 1분기		증감률(%)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1	HP	13,251	19.1	11,291	18.6	17.4
2	델	10,913	15.7	8,971	14.8	21.6
3	에이서	6,914	9.9	4,164	6.9	66
4	레노보	4,814	6.9	3,980	6.6	21
5	도시바	3,069	4.4	2,544	4.2	20.6
	기타	30,537	43.9	29,674	48.9	2.9
	합계	69,498	100	60,624	100	14.6

자료: IDC, 2008.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2006년 세계 컴퓨터 시장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1,000만 대, %)

순위	기업명	2006년출하량	시장점유율(%)	2005년출하량	시장점유율(%)	증감률(%)
1	Dell	39,098	17.1	37,755	18.2	3.6
2	HP	38,842	17.0	32,575	15.7	19.2
3	Lenovo	16,619	7.3	12,979	6.2	28.0
4	Acer	13,581	5.9	9,845	4.7	37.9
5	Toshiba	9,177	4.0	7,234	3.5	26.9
	기타	111,267	48.7	107,450	51.7	3.6
	총계	**228,583**	**100.0**	**207,837**	**100.0**	**10.0**

자료: IDC, 2008.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출하량 비중은 2006년 전체를 기준으로 Dell, HP가 17.1%와 17.0%로 전 세계 시장의 34.1%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HP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의 선두 자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소매 유통체인과 상업용 시장에서 HP의 상대적인 매출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ell은 상업용 시장에서 부진과 HP, Acer, Apple 등 경쟁기업들과의 시장경쟁이 심해지면서 상대적인 판매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라. 석유화학 산업

1) 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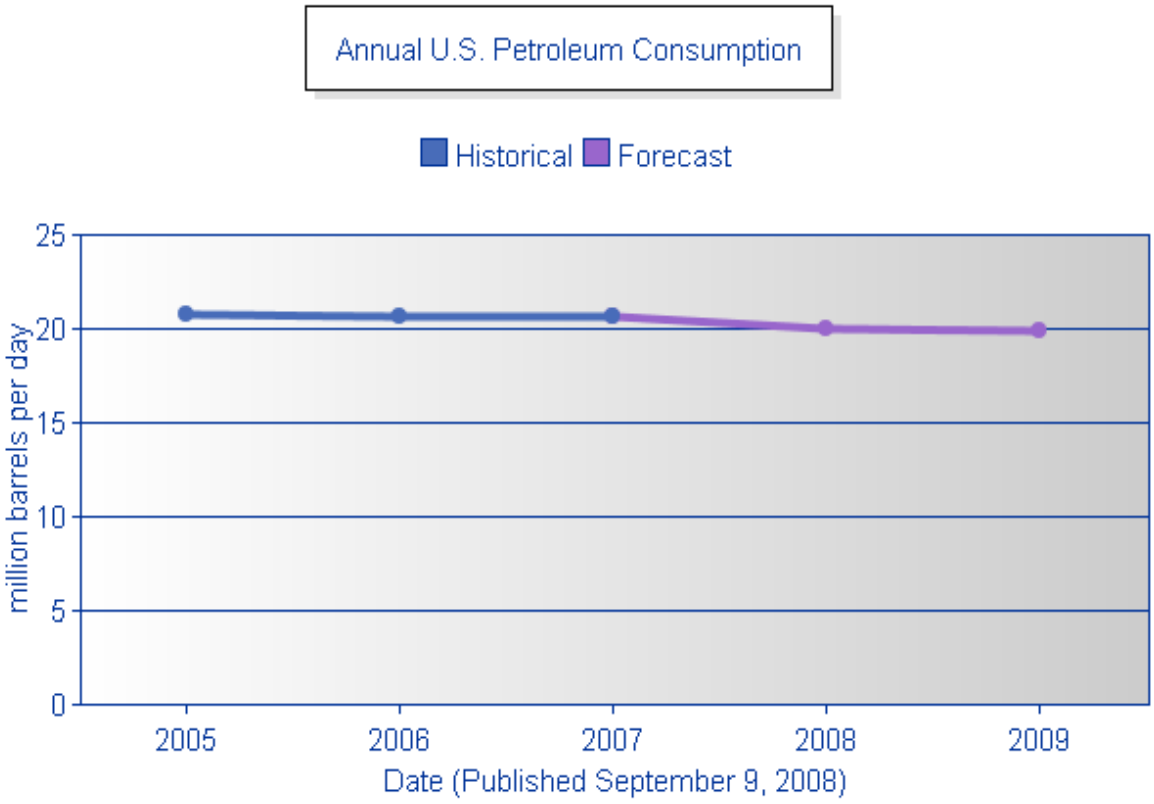
○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화학산업 성장의 최대 버팀목이었던 석유화학산업은 1970년대 2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시장이 성숙해졌고 석유가격 급등과 가격통제 철폐, 1980년대 초 세계 불황과 과잉 능력, 고금리와 규제 완화 등 격변의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으며 성장했다.

○ 미국 석유화학 전문 연구 기관인 API에 따르면 미국 내 기름 소비량은 하루에 20,730,000 배럴에 달하고 이는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기름 소비량의 50~60% 가량을 수입하며 나머지는 미국 내 여러 곳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80%는 텍사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등 4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중 텍사스 주는 제일 많은 유전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

Petroleum (million barrels per day)	20.80	20.69	20.68	20.07	19.99
Natural Gas (billion cubic feet per day)	60.30	59.32	63.16	64.85	66.25
Coal[b] (million short tons)	1126	1112	1129	1138	1141
Electricity (billion kilowatthours per day)	10.44	10.46	10.66	10.75	10.80
Renewables[c] (quadrillion Btu)	6.40	6.88	6.84	7.25	7.70
Total Energy Consumption[d] (quadrillion Btu)	100.84	100.34	102.20	103.26	103.11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8.9월 기준



자료: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8.9월 기준

○ 유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대하지만 앞으로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기름대신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소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 생산 지역

미국 내의 톱 10 유전

No	Field, State	Cumulative Production + Est.Reserves
1	Prudhoe Bay, Alaska	13+ Billion barrels
2	East Texas	6.0 Billion barrels
3	Wilmington, California	2.8 Billion barrels
4	Kuparuk River, Alaska	2.6 Billion barrels
5	Midway-Sunset, California	2.2 Billion barrels
6	Kern River, California	1.95 Billion barrels
7	Yates, West Texas	1.95 Billion barrels
8	Wasson, Texas	1.8 Billion barrels
9	Elk Hills, California	1.5 Billion barrels
10	Panhandle, Texas	1.4 Billion barrels

자료: API 2008년 9월 기준

○ 현재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 내 유전지역은 동 텍사스, Beaumont(휴스턴 지역), Permian Basin(북서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다. 동 텍사스 지역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주 국경지역으로 현재 텍사스 내에서 제일 많은 양의 기름을 생산하고 있다. 텍사스에서 가장 큰 East 유전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현재 50% 이상의 텍사스 석유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 Beaumont 지역은 Spindle Top 유전이 있는 지역으로 석유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현재 텍사스 생산량 30% 정도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Conoco-Philips 등 많은 석유 회사가 근처에 본사를 두고 있다.

○ Permian Basin은 북서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고 텍사스 내에서는 제일 늦게 발굴된 산유 지역이다. 텍사스 생산량의 20% 정도가 Permian Basin에서 생산되고 있다.

3) 주요 대표 기업 및 석유산업 시장

석유화학 주요 기업 현황

			REVENUES		PROFITS		STATES	
Rank	Company	Fortune rank	$millions	%change from2004	$millions	%change from2004	City	State
1	Exxon Mobil	1	339,938	26	36,130	43	Irving	TX
2	Chevron	4	189,481	28	14,099	6	San Ramon	CA
3	ConocoPhillips	6	166,683	37	13,529	66	Houston	TX
4	Valero Energy	15	81,362	51	3,590	99	San Antonio	TX
5	Marathon Oil	23	58,958	30	3,032	140	Houston	TX
6	Sunoco	66	31,176	34	974	61	Philadelphia	PA
7	Amerada Hess	88	23,255	36	1,242	27	New York	NY
8	Tesoro	132	16,473	36	507	55	San Antonio	TX
9	Murphy Oil	193	11,877	38	847	21	El Dorado	AR
10	Frontier Oil	496	4,001	40	273	291	Houston	TX
11	Giant Industries	530	3,581	43	104	540	Scottsdale	AZ
12	Holly	578	3,213	43	168	100	Dallas	TX

자료: Fortune 2006 Issue,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텍사스에는 27개의 정유 공장이 있는데 TOP 10 미국 석유 회사들이 모두 이 지역에서 정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Exxon Mobile, Conoco-Philips, Shell(US HQ), CITCO, Reliant Energy, Lyondell Chemical 등이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4) 클러스터 발전 과정

○ 1800년부터 석유가 텍사스에서 발견되었지만 경제적으로 개발이나 산업화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의 석유였다. 1884년 Navarro, Corsicana 에서 처음으로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고, 코르시카나 유전이 차츰 개발되면서 1900년에는 유전 최고치인 83만 9,000배럴을 생산했다. 1898년 텍사스 내에 J.S. Cullinan Company가 운영하는 비교적 현대적인 정유 공장이 처음으로 코르시카나 유전에 세워졌다. 코르시카나 유전은 텍사스 내 석유산업의 시초가 되었다.

○ 코르시카나 유전 성공 사례로 인해 석유 발굴이 텍사스 여러 곳에서 시작되어 1900년 Powell Field가 발굴 되었고, 1924년에는 Powell 유전의 최고치인 3,317만 7,831배럴을 생산하였다. 텍사스 내 석유 발굴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1901년 Spindletop Oilfield 에서 많은 양의 석유가 생산되면서 텍사스 오일 붐을 일으켰다. 그리고 1950년 대에는 Permian Basin 북서 텍사스 지역에서 두 번째 오일 붐이 일어났다.

○ 석유 기업들은 1870년 설립된 Standard Oil이 불법적으로 석유산업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정부는 1911년 Standard Oil을 34개 기업으로 해체시켰다. Fortune Rank 1위인 Exxon Mobil도 이때 창립되었다.

○ 1990년대에는 M&A를 통해 미국 시장이 급격히 변했으며 미국 내 제일 큰 석유 기업인 Exxon도 두 번째 큰 Mobile을 합병하면서 현재의 Exxon Mobil 이 되었고 Chevron이 Texaco를 매입했다.

○ 영국 기업인 BP도 미국 10대 석유 기업인 Amoco와 ARCO를 인수했으며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Conoco도 Philips Petroleum과 합병해 현재의 Conoco Philips가 되었다. 현재도 기업 간 합병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작은 석유 기업들이 흡수 합병되고 있다.

5) 수입 동향

2006 석유 에너지 관련 품목 수입 실적



Product	Value ($)	Percent
2709--CRUDE OIL FROM PETROLEUM AND BITUMINOUS MINERALS	225,527,592,398	67.6 %
2710--OIL (NOT CRUDE) FROM PETROL & BITUM MINERAL ETC.	66,161,739,329	19.8 %
2711--PETROLEUM GASES & OTHER GASEOUS HYDROCARBONS	33,966,725,651	10.2 %
2716--ELECTRICAL ENERGY	2,518,429,059	0.8 %
All Others	5,403,846,806	1.6 %
Grand Total	333,578,333,243	100 %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마. 무선통신기기(휴대폰) 산업

1) 시장 개황

□ 현황 및 특성

○ 시장조사 전문 기관 IDC의 시장통계조사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총 10억 대 가량의 무선 핸드폰 단말기가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사상 초유의 판매 기록은 신흥 시장에서의 경제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2005년 핸드폰 단말기 총 판매량 8억 3,200만 대에서 22.5% 증가된 수치이며, 2006년 4/4분기 3개월 동안 판매된 휴대폰 단말기는 총 3억 대에 이르러 이는 분기별 판매량으로는 사상 최대의 수치이다. 2006년 위치 기반 서비스 및 IRM의 Pearl Service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휴대폰 기술들이 도입된 것도 판매량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핸드폰 시장은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거대하다.

○ 미국 가정의 핸드폰 보급률은 64% 정도로 최고를 나타내고 있을 만큼 미국 핸드폰 시장은 점점 포화상태로 접어들었고 둔화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예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핸드폰 시장의 추세를 볼 때 미 핸드폰 성장률은 세계시장 추세보다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그만큼 미국 핸드폰 시장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많다.

○ 미국의 핸드폰 보급률이 50%를 훨씬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의 핸드폰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가입으로 인한 핸드폰 구매 보다는 새로운 모델과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갖춘 핸드폰의 지속적인 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교체수요 증가로 해석된다. 과거 많은 소비자는 핸드폰의 브랜드나 모델보다는 이동통신사를 먼저 선택한 후에 핸드폰을 선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핸드폰 업체들의 적극적인 광고와 홍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와 핸드폰 업체 모두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

○ 그리고 휴대폰 제조업체 사이에서는 성능, 디자인과 함께 가격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4%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메이커들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전문업체(EMS)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어 EMS 회사들이 휴대폰 생산을 주도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신용불량자나 학생들의 이동전화 가입이 어려운 미국 시장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휴대폰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회용 휴대폰은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7-Eleven과 같은 일반마켓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여행자, 신용불량자들은 복잡한 신원확인 절차 없이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비상연락망으로도 부담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 수입 동향

○ 2006년 휴대폰의 주요 국가별 수입 통계에 따르면, 무선통신기기(휴대폰) 관련 제품의 총 수입액은 약 259억 달러로 보고되었다. 2005년 12월에 보고된 수입이 237억 달러인데 반해 2006년 12월에는 2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의 증가를 보였다.

미국의 휴대폰 국가별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5년		2006		증가율 (2005`200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체	23,709	100.0%	25,931	100.0%	9.4%
중국	**9,062**	**38.2%**	**11,666**	**45.0%**	**28.7%**
한국	**5,942**	**25.1%**	**5,314**	**20.5%**	**-10.6%**
멕시코	2,108	8.9%	2,335	9.0%	10.8%
말레이시아	1,366	5.8%	1,445	5.6%	5.7%
캐나다	1,113	4.7%	1,180	4.6%	6.0%
스웨덴	876	3.7%	469	1.8%	-46.5%
대만	778	3.3%	1,550	6.0%	2.7%
브라질	705	3.0%	503	1.9%	-28.7%
일본	570	2.4%	362	1.4%	-36.5%
싱가포르	297	1.3%	174	1.5%	30.7%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집계,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2006년에는 중국이 116억 달러로 대미 수출 1위, 전체 수출량의 45%를 차지했다. 2위는 우리나라가 53억 달러의 규모로 전체 20.5%를 차지했고 멕시코는 23억 달러의 휴대폰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3위를 차지했다.

○ 2006년 기준, 우리나라는 2005년 수출 물량에 비해 10.6%의 감소를 나타냈다. 중국은 전년 대비 28.7%의 증가를 보이며 한국 수출량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2) 시장점유율

○ 2006년 상반기 미국 휴대폰 시장 규모는 6,700만 대, 금액 기준으로는 44억 달러를 기록했다.

○ CDMA 휴대폰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LG전자가 36%로 1위, 2위는 삼성전자가 18%, 그리고 모토로라가 그 뒤를 이었다.

○ GSM 부문에서는 미국 핸드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모토로라가 점유율 42%로 1위, 그 뒤로 노키아 23%, 삼성 전자가 13%로 3위를 차지했다.

○ CDMA와 GSM을 모두 합친 전체 시장에서는 최근 전세계 5,000만 대 판매를 돌파한 모토로라사의 레이저폰 판매 폭증 효과로 인해 3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노키아와 LG전자가 각각 16%로 나란히 2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15%로 4위를 기록했다.

2006년 상반기 북미 휴대폰 시장 점유율

업 체	시장 점유율
모토로라	32%
노키아	16%
LG	16%
삼성	15%
소니에릭스	4%
쿄세라	4%
산요	3%
UT스타컴 (오디오박스)	2%
RIM	< 1%
Palm	< 1%

자료: NPD 그룹,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휴대폰 업계와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05년 1위를 차지했던 모토로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6년 크게 떨어져 고스란히 삼성과 노키아에게 넘어갔다.

○ 차기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토로라나 애플 아이폰의 하락세를 예상해 볼 때 우리 휴대폰의 북미 시장 진출은 희망적이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변화

업체 명	2006		2007	
	판매량(백만)	시장 점유율	판매량(백만)	시장 점유율
Nokia	347.5	34.7%	437.1	38.8%
Samsung	113.7	11.3%	161.2	14.3%
Motorola	217.4	21.7%	159.0	14.1%
Sony Ericsson	74.8	7.5%	103.4	9.2%
LG Electronics	64.4	6.4%	80.5	7.2%
Others	184.1	18.4%	184.3	16.4%
Total	1001.9	100.0%	1125.5	100.0%

자료: Strategy Analytics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3) 전 망

○ 2006년 북미 휴대폰 시장의 큰 특징은 음악 기능을 강조한 뮤직폰 판매가 2005년 5%에서 2006년에는 10%로 늘어났고, 블루투스 휴대폰의 판매가 9%에서 2006년 22%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신규 휴대폰 판매의 약10%를 차지했다. 그리고 북미 핸드폰 보유자 중 2대 이상의 핸드폰 보유자 비율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시장 규모로 볼 때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약 28% 정도 상승한 73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 핸드폰 시장규모 전망 (2004~2009년)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시장 규모
2004	5,721.8
2005	6,385.9
2006	6,655.1
2007E	6,940.7
2008E	7,135.0
2009E	7,327.6

자료: Strategy Analytics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바. 공작기계 산업

1) 시장 개요

○ 소비 시장 규모

- 세계 5대 공작기계 소비 시장이라 하면, 중국,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들 수 있으며 이 중 미국 소비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약 6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3년 이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규모를 자랑하던 미국 소비 시장 규모는 2002년까지 미국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그 규모가 해마다 30% 이상 급감하기 시작하여 세계 4위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3년부터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미국 기계 시장은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 한국 대만에 이어 7위에 그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의 27% 수준인 36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 최근 들어 미국 공작기계 시장은 3년간 계속된 침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공작기계 시장은 전년 대비 5%의 판매 증가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별 공작기계 수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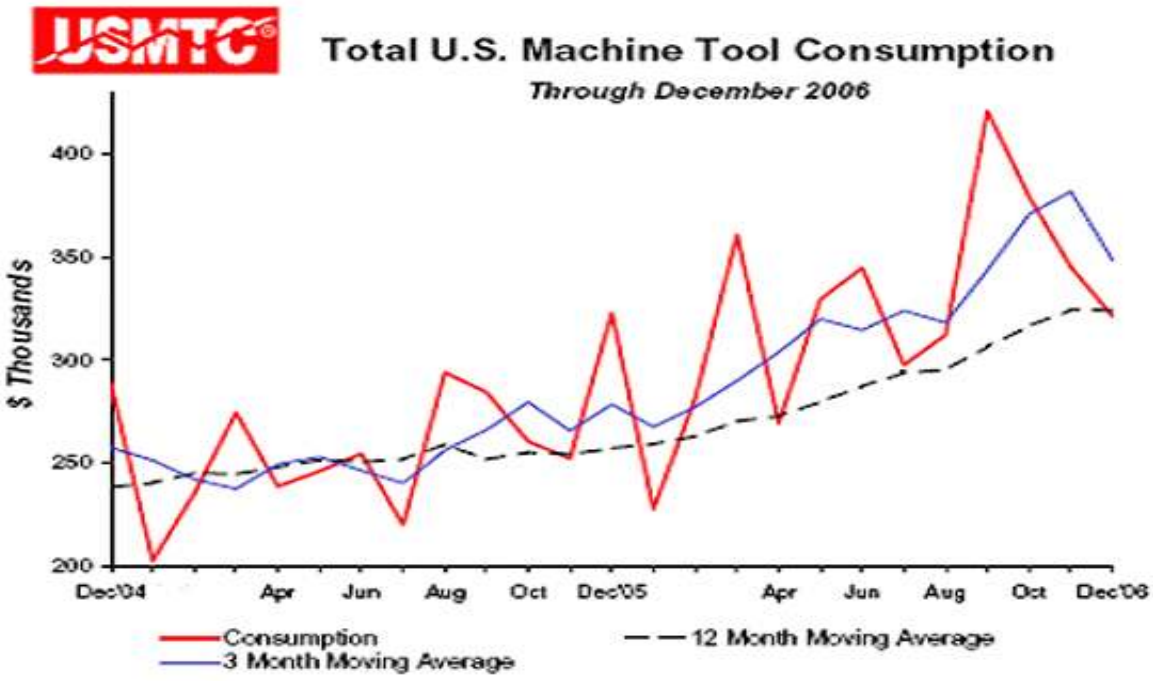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국가 명	2005	2006	증감률
1	중국	10,780.0	12,940.0	20%
2	일본	7,758.8	7,432.7	-4%
3	미국	5,933.0	6,256.7	5%
4	독일	5,490.2	5,175.9	-6%
5	한국	4,423.5	5,044.0	14%
6	이탈리아	3,301.3	3,552.9	8%
7	대만	2,248.1	2,539.6	13%
8	프랑스	1,497.8	1,611.7	8%
9	캐나다	1,442.6	1,608.5	12%
10	브라질	1,253.7	1,420.0	13%

자료: Gardner Publication, Inc. 2007. 2월호,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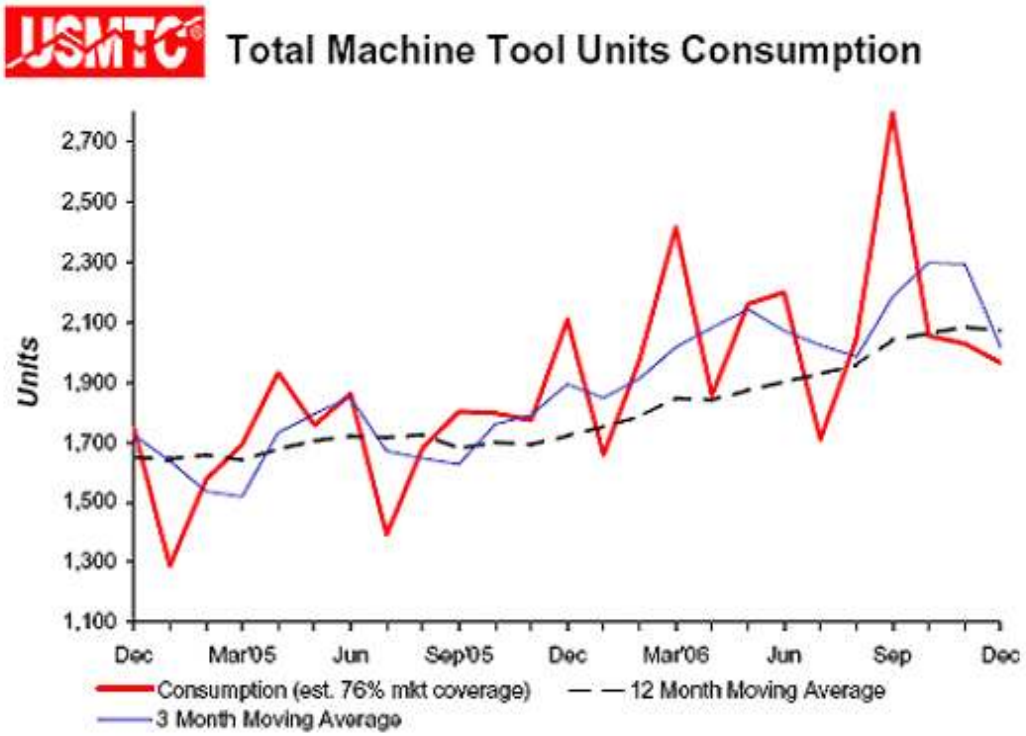
○ 공작기계 수요현황

- 미국 공작기계 유통업자 협회(AMTDA: The American Machine Tool Distributors' Association)와 제조업 기술 협회(AMT: 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가 발표한 미국 공작기계 수요에 따르면, 2008년 미국 공작기계 시장 규모는 3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6.8%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전체 공작기계 시장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절삭 공구류 시장은 전년 대비 29.2% 급증하여 공작기계 시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 AMT 회장인 John B. Byrd III 씨에 따르면, 2006년 미국 공작기계 시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의 시장 성장률을 기록한 아주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7년에도 미국 제조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대화된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6년과 같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별 공작기계 시장 규모를 보면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중서부 지역이 12억 달러로 전체 미국 시장의 3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서부지역으로 1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시장의 약 26%를 차지하였다.
- 지역별 공작기계 판매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미 중부 지역이 전년 동기대비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인 약 49.3%를 기록했으며, 두 번째는 서부지역이 42.5%, 그리고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중서부 지역은 13.7%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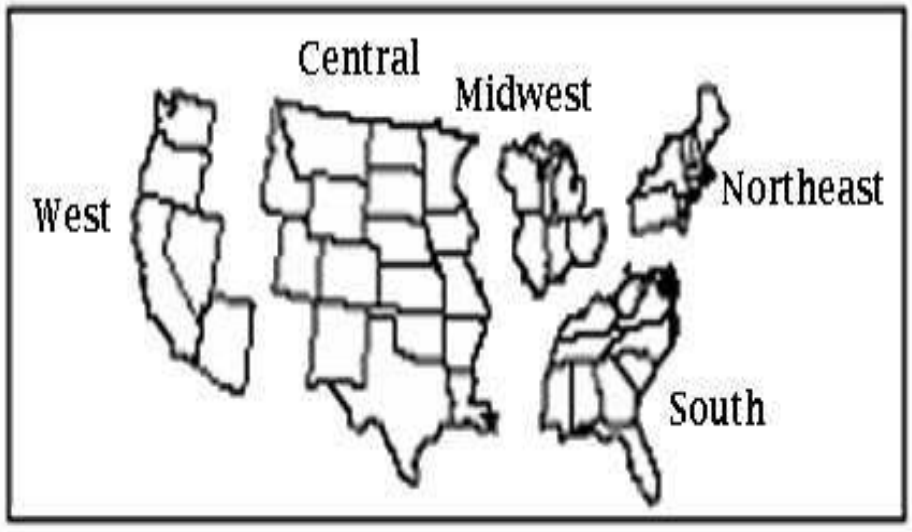
주: 동 공작기계 판매 자료는 회원사의 판매를 집계한 것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 전체 시장 규모와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AMT(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와 AMTDA(The American Machine Tool Distributors' Association), 2008.9 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주: 동 공작기계 판매 자료는 회원사의 판매를 집계한 것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 전체 시장 규모와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AMT(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와 AMTDA(The American Machine Tool Distributors' Association), 2008.9 월 현재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자료: AMT(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와 AMTDA(The American Machine Tool Distributors' Association)

U.S. Manufacturing Technology Consumption

May 2008

A joint statistical program of AMT and AMTDA

	May 08 (P)	Previous Month	% Change	Year Ago Month	% Change	YTD 08 (P)	YTD 07 (R)	% Change YTD
National								
Metal Cutting	312.82	393.20	-20.4%	316.36	-1.1%	1,837.02	1,566.98	17.2%
Metal Forming	28.39	15.06	88.5%	17.44	62.7%	105.36	90.75	16.1%
Total	**341.21**	**408.27**	**-16.4%**	**333.80**	**2.2%**	**1,942.37**	**1,657.73**	**17.2%**
Regional								
Northeast								
Metal Cutting	47.12	44.52	5.8%	54.81	-14.0%	255.08	258.65	-1.4%
Metal Forming	1.36	1.77	-23.4%	2.89	-52.9%	14.81	11.63	27.4%
Total	**48.48**	**46.30**	**4.7%**	**57.70**	**-16.0%**	**269.89**	**270.27**	**-0.1%**
South								
Metal Cutting	41.26	45.42	-9.1%	51.23	-19.5%	298.13	197.43	51.0%
Metal Forming	2.21	3.75	-41.1%	2.45	-10.0%	16.62	16.41	1.2%
Total	**43.47**	**49.17**	**-11.6%**	**53.68**	**-19.0%**	**314.75**	**213.85**	**47.2%**
Midwest								
Metal Cutting	114.67	156.71	-26.8%	91.90	24.8%	629.08	430.93	46.0%
Metal Forming	4.64	5.05	-8.1%	6.85	-32.2%	33.90	34.06	-0.5%
Total	**119.31**	**161.76**	**-26.2%**	**98.75**	**20.8%**	**662.98**	**465.00**	**42.6%**
Central								
Metal Cutting	71.70	81.15	-11.6%	83.76	-14.4%	411.56	441.19	-6.7%
Metal Forming	19.45	3.63	435.2%	4.41	341.0%	35.73	19.57	82.5%
Total	**91.15**	**84.79**	**7.5%**	**88.17**	**3.4%**	**447.29**	**460.76**	**-2.9%**
West								
Metal Cutting	38.06	65.40	-41.8%	34.66	9.8%	243.16	238.79	1.8%
Metal Forming	0.72	0.85	-15.1%	0.84	-14.2%	4.30	9.07	-52.6%
Total	**38.78**	**66.25**	**-41.5%**	**35.50**	**9.2%**	**247.47**	**247.86**	**-0.2%**



$ = millions of dollars
P - preliminary
R - revised
Totals may not match due to rounding

USMTC

Net New Orders for U.S. Consumption
May-08

Total National Consumption
(Thousands of Dollars)

		TOTAL ORDERS		METAL CUTTING MACHINES		METAL FORMING MACHINES	
	DATE	Units	Value	Units	Value	Units	Value
2007	MAY	2,223	$333,803	2,129	$316,359	94	$17,444
2007	JUN	2,152	$353,402	2,004	$323,837	148	$29,565
2007	JUL	1,737	$287,021	1,646	$266,158	91	$20,863
2007	AUG	2,181	$365,136	2,099	$352,634	82	$12,502
2007	SEP	2,274	$445,560	2,157	$427,922	117	$17,638
2007	OCT	2,328	$404,362	2,220	$378,342	108	$26,019
2007	NOV	2,633	$381,760	2,526	$363,715	107	$18,045
2007	DEC	2,224	$419,800	2,093	$394,702	131	$25,098
2008	JAN	1,833	$319,289	1,742	$302,975	91	$16,314
2008	FEB	2,016	$323,701	1,901	$304,194	115	$19,507
2008	MAR	2,923	$549,905	2,805	$523,822	118	$26,084
2008	APR	2,047	$408,268	1,961	$393,205	86	$15,063
2008	MAY	1,849	$341,208	1,766	$312,820	83	$28,388
	Average	2,186	$379,478	2,081	$358,514	105	$20,964

○ 공작기계 종류별 수요 현황

- 미국의 공작기계 종류별 수요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공작기계를 절삭기계(Metal Cutting)와 성형기계(Metal Forming)로 분류하여 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공작기계 종류별 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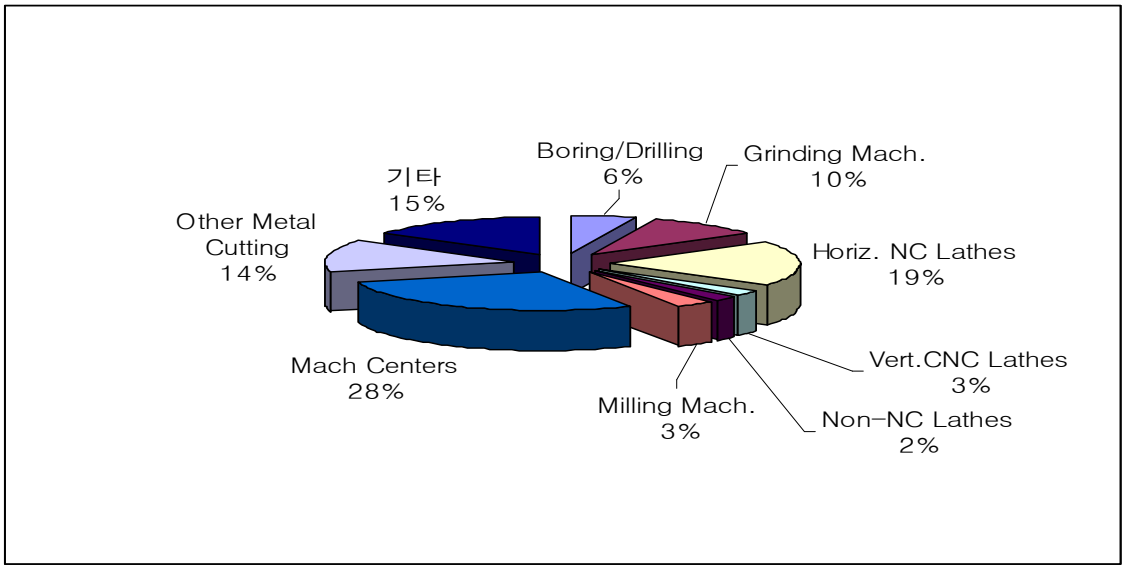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공작기계 종류	연도별 소비액				
	2000	2001	2002	2003	2004
Metal Cutting	**4,980.8**	**3,744.5**	**2,485.0**	**2,623**	**3,469**
Boring and Drilling	N/A	N/A	N/A	166	197
Gear Cutting	N/A	N/A	N/A	NA	NA
Grinding Machines	655.1	495.3	307.4	333	330
Horizontal NC Lathes	839.5	606.9	392.6	461	669
Vertical NC Lathes	120.9	129.3	N/A	NA	87.9
Non-NC Lathes	106.2	61.5	N/A	NA	64.6
Milling Machines	217.6	196.1	87.8	80.5	118.8
Machining Centers	1,459.2	1,057.9	669.7	674.1	1,000
Station-Type Machines	596.7	495.2	273.7	NA	NA
Other Metal Cutting	560.8	353.1	291.3	323.6	471.8
Metal Forming	**1,795.0**	**1,486.5**	**870.0**	**870**	**980**
Punching and Shearing	275.8	207.4	88.8	130.3	177.8
Bending and Forming	486.1	406.1	294.3	268.6	340.6
Press	560.0	435.0	220.7	223.2	196.1
Other Metal Forming	473.0	438.0	266.2	248.3	265.6
Numerically Controlled	**4,309.2**	**3,293.0**	**2,201.8**	**2,335.9**	**3,095**
총 공작기계 소비액	**6,776**	**2001**	**2002**	**2003**	**2004**

주: N/A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없으며 총 합계 산출 시에는 AMT 추정치로 산정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자료: AMT Handbook2005-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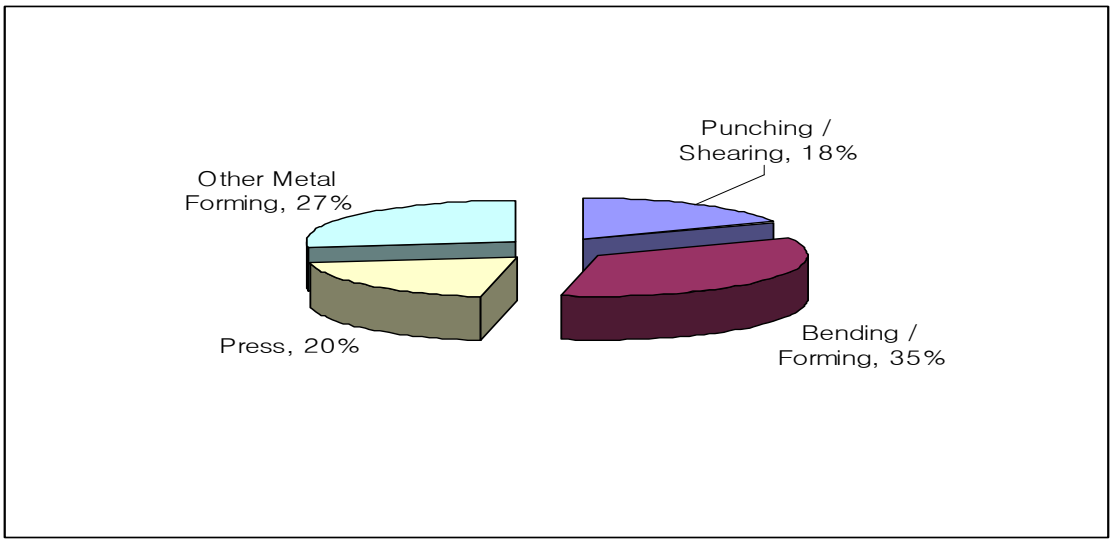
- 금속절삭기계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는 Machining Center로 전체 수요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금속 성형기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기계는 35%의 Bending and Forming 기계임을 통계로 알 수 있다.
- 미국 공작기계 소비규모 44억 5,000만 달러 중에서 Numerically Controlled 기계는 31억 달러로 전체 기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공작기계의 대부분이 NC기계류 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미 공작기계 협회에 따르면, 공작기계 수요의 절반이상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 정도는 기계산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2005년 금속 절삭기계 종류별 지출 비율



자료: AMT Handbook2005-2006,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2005년 금속 성형기계 종류별 지출 비율



자료: AMT Handbook2005-2006,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주요 국가의 공작기계 수입 시장 규모

- 공작기계산업 관련 전문 출판사인 Gardner Publication Inc사의 국가별 공작기계 수입 동향에 따르면 미국의 공작기계 수입액은 44억 달러로, 71억 달러의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수입시장이다.

주요 국가의 공작기계 수입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명	2003	2004	2005	2006	증감률(%)	소비시장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
중국	3,961.0	5,818.6	6,500.0	7,100.0	47%	56%
미국	2,538.3	3,153.9	3,903.6	4,441.1	24%	64%
독일	1,563.9	1,824.3	2,063.3	2,418.8	17%	36%
이탈리아	935.3	1,079.8	1,233.0	1,359.8	15%	33%
한국	1,425.3	1,658.9	2,069.8	2,550.0	16%	55%

자료: Gardner Publication, Inc. 2007. 2월호,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미국은 경기침체에서 회복되고 있어 기업들의 설비투자 급증으로 인해 수입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하였으며, 2003년도 최초로 최대 수입시장 규모를 중국에 물려 주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시장 중 하나이다. 소비시장 대비 수입시장 규모는 64%로 수입 물품이 미국 공작기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품목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 공작기계 중 머시닝 센터가 2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징, 벤딩, 스탬핑 공작기계가 22%, 선반 16%, 레이저 공작기계 15%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2) 경쟁동향

○ 한국산 시장 점유율 6위 수준

- 미국 공작기계 수입시장에서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일본산이 41%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일, 캐나다, 스위스, 이태리 순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국가별 공작기계 수입 시장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01	2002	2003	2004	점유율(%)
일본	1,585.0	1,051.4	1,171.1	1,301.6	41%
독일	603.6	464.7	503.2	582.7	18%
캐나다	173.1	153.8	135.2	140.3	4%
스위스	171.3	146.2	126.4	187.4	6%
이탈리아	205.8	136.3	168.9	183.7	6%
대만	206.2	131.4	125.4	191.6	6%
중국	80.1	74.0	72.1	96.1	3%
영국	110.7	59.4	63.9	64.6	2%
한국	94.6	53.0	58.5	144.8	5%
스페인	40.9	31.8	32.0	25.0	1%
합계	3,626.1	2,512.0	2,692.8	3,187.7	10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3) 시장진출 전략

○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을 우선 정하는 것이 중요

- 미국에서 소비되는 기계 중 약 10% 가량은 무조건 값싼 기계가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매의 범주에 드는 것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계이거나 그 기계의 품질 및 신뢰성이 고객의 사업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저품질 저가시장을 겨냥했다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 한국산보다도 염가의 기계가 공급될 경우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번 저가 저품질로 인식된 브랜드의 경우 품질을 고급화하더라도 저품질이라는 기존 인식을 쉽사리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같은 종류의 기계라 하더라도 한 개 업체가 모든 용도나 규격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고 대개는 1~2개 또는 몇 가지에 집중하게 된다. 수요가 많은 기종에서는 경쟁 또한 심하지만 경쟁사들이 비교적 등한시하는 분야(Niche Market)도 있게 마련이다. 미국 시장에 우선 발을 붙여야 하는 국내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이 적고 시장 규모가 작은 곳부터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최초로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기계의 평판이 장기적인 이미지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로 미국에 공급할 기계들의 부품은 시범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을 선별 사용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브랜드에 대한 저항이 적다. 초기 선적 기계들의 품질이 좋을 경우 비교적 손쉽게 브랜드 이미 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장이 또한 미국 시장이다. 일단 좋은 평판을 얻고 난 후 서서히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부품의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도 있다.
- 볼트, 너트 베어링, 전구 등 흔하고 값싼 부품일수록 현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 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좋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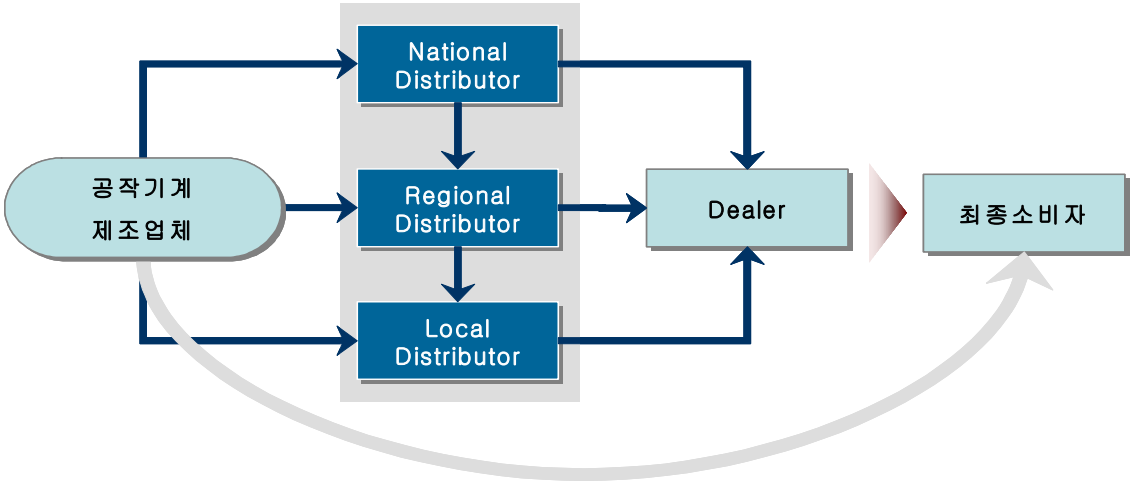
○ 바이어 발굴은 이렇게

- 자사제품을 구매할 바이어나 유통업자, 딜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선 관련 디렉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렉터리는 Thomas Register나 Thomas Regional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유료로 디렉터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작기계 유통업자 협회 리스트를 추천한다. 동 협회에는 300여 명의 유통업자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 공작기계 제조업체 1,200여 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구입가는 250달러 내외면 가능하다.
- 관련 바이어 리스트에서 선별된 리스트에 접촉할 때 처음부터 바이어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교환원을 통하여 특정기계나 부품에 대한 통화가 가능한 업체가 있다. 처음에 전화해서 바이어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기라는 경우가 허다하다.
- 바이어와 통화가 되면, 먼저 회사 소개 및 제품 소개를 하는데 사전에 시장 조사한 요약 내용을 설명하면 관심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한다. 이때 F/U을 위해 직통전화나 교환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필히 물어보아야 한다.
- 전화 통화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바이어에게 송부해야 하며, 가능하면 팩스보다는 빠른 우편이나 등기(DHL, FedEx 등)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바이어가 받았을 때 즈음하여 전화 연락을 취한다. 대다수의 바이어들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부재중일 때가 많다. 그래도 관련 자료 송부 후 귀찮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메일 또는 전화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만약 바이어가 더 이상 관심을 표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바이어들로부터 수집된 의견은 자사 제품의 정확한 시장성을 말해줌으로써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바이어가 관심을 표명하면, 직접 만나 제품소개 및 회사 소개할 시간을 정한다. 제품 설명은 장황하지 않고 짧고 간결하게 해야 하며 경쟁사 제품의 비교 자료, 각종 설문 조사와 테스트 결과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좋다.

○ 가격 및 거래 조건 책정은 이렇게

- 대부분 국내업체는 미국 현지 전시회에 참가 한 후, 자사 제품가격이 미국 현지시장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국과 같이 좁은 나라에서는 제조업체와 실 수요자가 직접 연결되고 운송비용과 유통비용이 적으나, 미국은 공급업체가 많고 홍보비용도 많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유통비용이 기계제조원가에 비하여 상당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계 제조업체들은 권장 소비자 가격 이 외에는 외부로 가격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거래선과의 가격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내부가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한국의 기계 제조업체들은 전시회에서 만나는 기계류 실수요자들에게도 기계 수출 희망가격을 누설하는 과오를 범하기 쉽다. 최종 실수요자들이 수출 가격을 알게 되면 국내업체를 위해 일하는 유통업자들이 설 땅을 잃게 됨을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딜러가 실수요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금은 우리나라와 같이 10% 부가가치세가 고정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마다 자치 단체마다 세율과 부과 기준이 다르고 수시로 세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세금 포함 총액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 한편, 디스카운트에는 볼륨 디스카운트, 캐시 디스카운트, Reseller 디스카운트 등이 있다. 대개 5만 5,000달러 정도의 수출 가격 기계는 운송비와 딜러마진 등을 포함하여 미국 현지에서 8만~10만 달러에 실수요자에게 제시된다.

공작기계의 유통경로



4) 참고사항

○ 전시정보

- IMTS(International Machine Tool Society) 박람회
  - 시카고 멕코믹 전시장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며 주요 전시품은 공작기계류임.
- National Manufacturing Week 박람회
  - 매년 시카고 멕코믹 전시장에서 2월말에서 3월경 개최.
  - 주요 전시품은 공작기계를 포함한 기계류, 기계 부품 등임
  - 웹사이트: www.reedexpo.com
- Fabtech 박람회
  - 매년 시카고 멕코믹 전시장에서 11월경 개최.
  - 주요 전시품은 공작기계를 포함한 기계류, 기계부품 등임
  - 웹사이트: www.sme.org

○ 미 관련 협회 정보

- American Machine Tool Distributors' Association(AMTDA)
  - 주소: 1445 Research Blvd. Suite #450 Rockville, MD 20850
  - 전화: (301) 738-1200
  - 웹사이트: www.amtda.com
- 정보 공작기계 유통업자 디렉터리 제공 사이트
  - 웹사이트: www.techspex.com/techspex/distributors

I·D·A Industrial Distribution Association	**Industrial Distribution Association** I.D.A.는 북부지역과 유럽지역에 약 2,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다양한 산업용 기계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1277 Lenox Park Blvd. Suite 275, Atlanta, GA 30319 - 404-266-3991 - www.ida-assoc.org
MACHINERY MDNA MACHINERY DEALERS NATIONAL ASSOCIATION	**Machinery Dealers National Association** MDNA는 약 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중고 기계 구매·판매에 주력하고, 신제품 기계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의 협회임. - 315 S. Patrick Street, Alexandria, VA 22314 - 800-872-7807-www.mdna.org
PMA PRECISION METALFORMING ASSOCIATION	**Precision Metalforming Association** PMA 는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의 금속 성형기계에 주력하는 특화된 협회로 주로 자동차·항공우주 산업 그리고 가전제품 관련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6363 Oak Tree Blvd. Independence, OH 44131 - 216-901-8800 - www.metalforming.com
SME Society of Manufacturing Engineers	**Society of Manufacturing Engineers** SME는 약 세계 70개국에 걸쳐 약 6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관련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임. - Dearborn, MI 48121 - 800-733-4763 - www.sme.org
NTMA PRECISION	**National Tooling & Machining Association** 동 협회는 1943년에 설립된 정밀 기계 관련 업체 협회로 총 2,7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회원들은 "job shops" 형태의 업체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들임. - 9300 Livingston Road, Ft. Washington, MD 20744 - 301-248-6200 - www.ntma.org
TMA	**Tooling and Manufacturing Association** 동 협회는 약 1,6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금속 정밀 가공, 플라스틱 몰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 1177 S. Dee Road, Park Ridge, IL 60068 - 847-825-1120 - www.tmanet.com

사. 자동차부품 산업

1) 시장 규모 및 주요 업체

□ 시장 규모

○ 미국의 OEM 부품 시장 규모는 분석 기관별로 상이하며, 연간 1,600억 달러에서 2,380억 달러 사이로 추정(OESA: 1,600억 달러, DesRoisers: 1,810억 달러, GM: 2,380억 달러)된다. 이중 미국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점유율은 약 30%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 주요 업체

북미 지역 매출 순위 상위 20대 OEM 자동차 부품 업체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회사 명	본사/소재지	2005	2006
1	Delphi Corp.	미국/미시건/Troy	18,292	16,896
2	Magna International Inc.	캐나다/Ontario	12,768	12,897
3	Lear Corp.	미국/미시건/Southfield	9,228	9,811
4	Johnson Controls Inc.	미국/미시건/Plymouth	8,924	8,580
5	Dana Corp.	미국/오하이오/Toledo	5,425	5,187
6	Denso International Inc.	미국/미시건/Southfield	4,803	4,560
7	Robert Bosch Corp.	미국/미시건/Farmington Hills	4,831	4,453
8	TRW Automotive	미국/미시건/Livonia	4,456	4,135
9	Visteon Corp	미국/미시건/Van Buren	9,684	4,131
10	ArvinMeritor Inc.	미국/미시건/Troy	4,024	4,090
11	ThyssenKrupp Automotive AG	독일/Bochum	4,043	3,879
12	Cummins Inc	미국/인디애나/Columbus	3,355	3,846
13	Aisin World Corp of America	미국/미시건/Plymouth	3,242	3,486
14	Yazaki North America Inc.	미국/미시건/Canton	2,923	3,387
15	Siemens VDO Automotive	미국/미시건/Auburn Hills	2,825	3,363
16	American Axle & Manufacturing Holdings	미국/미시건/Detroit	3,252	3,032
17	Navistar Int'l Engine Group	미국/일리노이/Melrose Park	2,776	2,718
18	Continental AG	미국/미시건/Auburn Hills	3,096	2,409
19	Collins & Aikman Corp.	미국/미시건/Troy	2,800	2,400
20	DuPont Automotive	미국/미시건/Troy	2,217	2,012

자료: Automotive News,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2) 시장 동향

□ 빅3의 부진, 경쟁 심화로 인한 위기 상황 지속

○ 미국의 전통적인 빅3인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시장 점유율 하락, 생산량 정체 등으로 인해 빅3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북미 자동차 부품업체들 역시 매출 감소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원가절감과 부품조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등의 부품 업체들이 현지투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외국 부품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어 미국의 부품업체와 외국의 부품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공급업체에 고품질 저가격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부품업체들이 원가절감 압박과 수익성 저하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05년에 Collins & Aikman, Tower Automotive 에 이어 북미 최대 부품업체(세계 2위)인 Delphi Corp사가 10월 8일 파산 보호(Chapter 11)를 신청 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북미 7위(세계 15위)인 Dana Corp이, 10월에는 북미 42위(세계 65위)인 Dura Automotive Systems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등 미국 부품업계의 한계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 부품 구매 현황

○ 미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 1994)은 외국산(미국, 캐나다 제외) 부품 사용 비율이 15%가 넘을 경우 원산지별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 빅3의 경우 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이나, 일본 기업들의 경우 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이다.

외국산 부품 사용 비중

	1995	2005
GM	9%	19%
Ford	14%	18%
Chrysler	11%	24%
Toyota	51%	27%
Honda	53%	32%
Nissan	58%	36%
Mercedes		37%
BMW		64%
Hyundai		70%

자료: USITC,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미 자동차 업계의 곤경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그들에게로 돌아올 경우를 우려하여 미국산 부품을 가급적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Toyota의 경우 현지화가 미흡한 파워트레인 분야 특히, 트랜스미션에 대한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미 Big3는 원가 절감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글로벌소싱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Tier 1들에게 해외 생산 기지 건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GM은 현재 빅3 중 글로벌소싱에 가장 적극적이며, 114개 구매 팀을 가동 전 세계 3,200여 개의 부품업체들로부터 연간 900억 달러를 구매하고 있다. 이중 북미지역에서 연간 610억 달러를 구매하고 있고, 한국으로부터는 현재 7억 달러 내외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GM은 자동차 생산원가의 85%을 차지하는 부품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시아로부터의 아웃소싱 확대(GM구매 본부 내 한국 전담 부서(SFO) 설치 및 한국산 부품 구매 목표-연간 20억 달러-설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 보 앤더슨 구매 총괄 그룹 부사장은 2007.5.17 오토모티브 뉴스가 개최한 Automotive News Manufacturing Conference에서 GM은 부품구매 예산에서 매년 20억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절감액이 목표에 미달했으나 2007년에는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Ford의 전 세계 부품 구매 규모는 연간 800억 달러 수준이며, 이중 아태지역에서 연간 90억 달러의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Ford는 2010년까지 연간 60억 달러의 원가를 절감할 계획 이며, 그 일환으로 중국산 부품 구매 규모를 현재의 연 16~17억 달러 수준에서 25억~3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 크라이슬러는 'Project Refocus' 계획을 통해 차 1대당 1,000달러의 원가 절감을 추진 중이며, Cerberus사의 크라이슬러 인수를 계기로 그 동안 미온적이었던 글로벌소싱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납품 구조 변화 및 신기술 개발 요구 확대

○ 제품 생산 면에 있어서는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전가로 인한 부품공급업체의 비용절감 압박 상승,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과잉설비 및 과잉생산에 따른 완성차의 가격경쟁 심화, 조립공정 및 재고관리 단순화 필요성 대두 등으로 인해 부품의 시스템 및 모듈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품의 시스템 및 모듈화 가속화로 인해 OEM 자동차부품 납품구조도 전통적인 "Tier3→Tier2→Tier1→완성차 업체" 모델에서 "원자재 공급업체→하부 시스템조립업체→모듈통합업체→완성차 업체" 모델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 아울러 자동차의 안전기준, 연료효율성,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차량 경량화를 위한 합성 소재 개발, 컴퓨터부품과 차량부품의 결합, 연료전지 기술 개발 등의 신기술 개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기존에 완성차 업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부품설계 및 개발이 부품 공급업체로 이전되는 양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3) 수입동향

□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부품수입 지속 확대

○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용 절감을 위한 부품 해외 아웃소싱 확대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은 2003~2006년 기간 중 연평균 8.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현대자동차의 미국 생산 개시 및 저가 고품질의 한국 부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인해 한국은 2006년에 2003년 대비 142%의 수입 증가율을 보인 바 있으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 148%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 특히 한국은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45.2%, 37.9%의 수입 증가율로 10대 수입국 중 2년 연속 수입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입액 951억 8,000만 달러 가운데 NAFTA 회원국인 멕시코가 49.2%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2003년 53.2% → 2006년 49.2%) 있으며, 중국, 한국, 브라질 등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4	2005	2006	2007. 1~10 월	증감
멕시코	23,115	24,911	26,369	24,026	7.9%
캐나다	20,168	21,582	20,425	17,088	-1.6%
일본	15,495	16,448	15,378	11,915	-7.7%
독일	6,151	6,713	7,136	6,995	15.6%
중국	3,884	5,409	6,931	7,123	24.2%
한국	1,867	2,709	3,736	3,328	5.8%
브라질	1,711	2,022	2,224	1,146	-20.6%
대만	1,605	1,731	1,802	1,630	8.9%
프랑스	1,478	1,449	1,320	1,035	-7.9%
영국	1,047	1,130	1,050	801	-9.4%
소계	76,521	84,104	86,371	75,411	3.5%
기타	6,948	8,066	8,826	8,004	8.4%
총계	**83,469**	**92,170**	**95,197**	**83,414**	**4.0%**

자료: USITC, 증감은 2006년 동기 대비,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4) 진출 시 고려 사항

○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아웃소싱 확대 대상국으로 한국을 고려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다. 또한 국내 완성체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현대는 이미 알라바마에서 생산 중, 기아는 공장 개설 준비 중)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미국 시장 진출의 적기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OEM 부품 수출은 그 특성상 일반 Aftermarket 부품의 수출에 비해 쉽지 않으며, 진출 시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OEM 부품 수출 성사 시까지는 통상적으로 2~3년의 장기간이 소요

○ 미국의 완성차 업체 및 대형부품 공급업체는 장기 계획 하에 3~4년 전부터 부품공급업체를 물색하는 것이 관례로서 예를 들면 2002년에는 2005년, 2006년식 모델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OEM 부품 구매 과정은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공급업체 선정 예비 과정을 거쳐, 구매 업체의 내부 공급업체 목록 등재과정(최대 4개월), 비즈니스 관계 개발(최대 6개월), 신규 공급업체 평가 과정(최대 4개월), 입찰 과정(최대 3개월), 견적서 평가(최대 3개월), 공급업체 최종 선정 과정(최대 8개월) 등을 거치게 된다.

○ 따라서 단기간의 접촉으로 조속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조급한 마음으로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구매업체에게 자사 제품과 생산능력에 대한 인상을 지속 투입하면서 꾸준히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국제 대응 능력의 구비

○ 미국의 부품 구매 업체의 품질 요건 충족 등 OEM 부품 구매 업체의 구매 과정을 숙지하고 견적 요청 시 최대한 신속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회사 및 제품 소개용 영문 마케팅 자료와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래 불발 시에도 구매 업체와의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

○ 미국 완성차 및 대형 부품업체들은 가격을 최우선시 하다 보니, 견적가에 따라 공급선을 자주 변경하는 경향이 심했다. 그러나 구매선 변경에는 많은 비용과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매 실무자들은 기존거래선을 유지하려는 비교적 보수적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공급업체를 장기적 거래 제휴업체로 보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다. 결국, 실리적 측면에서 이해타산이 맞는다면 구매업체와 공급업체 간 상호 이익적 관계로 발전하는 추세이므로 한번 시도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매업체와의 추후 협상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 신기술 및 품질 시스템 의식을 갖추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최근 완성차 업체가 1차 부품공급업체(Tier1)에 품질 및 기술개발 책임의 이전을 확대함에 따라, Tier1은 Tier2로, Tier2는 Tier3로 책임이 자연스럽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하부 공급업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부품에 대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품질개선 역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하이테크 부품 제조기술 및 공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 공급능력이 경쟁력 제고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 및 품질 시스템 의식 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진출전략

○ OEM 시장의 경우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혼재된 상태이다. 완성차 빅3의 글로벌소싱 확대 및 구매정책 변화 등으로 신규 시장기회가 확대되어 한국산 부품의 대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로 전체적인 부품 산업의 불황이 우려되고 있다.

○ A/S 시장의 경우 한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진출 가속화로 한국산 A/S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산 차량에 소요되는 A/S 부품의 경우도 소비자의 신차 구매 감소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으로 기존 보유 차량에 대한 A/S 부품 구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 미국의 자동차부품 전체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 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 유망 전시회 및 상담회를 통한 마케팅 강화

○ 일반 품목과 마찬가지로 OEM 자동차부품의 경우도 전시회 및 상담회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시장의 진출 및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된다. 미국 OEM 자동차부품 진출과 관련해서는 매년 4월초에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SAE)"가 유일한 OEM중심 전문전시회이며 세계 최대의 규모이므로 동 전시회 의 참가 또는 참관을 통해 전세계 OEM 자동차부품 바이어에게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하고, 완성차 및 대형부품공급업체의 구매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ftermarket용 부품의 경우는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 박람회 (AAPEX) 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 미국 자동차산업계 행사 참여

○ 일반적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나 대형부품 공급업체들도 부품조달소스 정보의 획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관계로 직접 주관하거나 또는 후원의 형태로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학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행사에 참가하여 구매담당 및 엔지니어들과의 직접 교류 및 기업 홍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개최 시에 OEM 공급업체 협력방안, 글로벌 비즈니스의 효율성, 전자상거래 등을 비롯하여 연료절감 및 환경 등과 관련한 신기술 최신정보를 주제로 한 각종 부대행사가 많이 개최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완성차의 미국생산기지 구축 활용

○ 국내 완성차 메이커의 미국 생산기지 진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조립공장 동반 진출로 반제품 형태의 수출 증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타이어를 포함하여 완성차 생산 소요부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국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다, 토요타 등의 일본 차가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이후 일본 차 부품의 빅3 납품이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자동차 생산공장 건설로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이미지 상승효과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도 부품수출 확대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투자위험 최소화와 추가적인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미국 내 완성차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일본의 토요타가 GM과 동등지분으로 NUMMI (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사를 설립하여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부품동반 진출 확대도 이루어낸 바 있다.

□ 우리 부품 업체간 모듈공급 체제 구축

○ 미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과잉설비에 의한 완성차 가격경쟁 심화로 부품공급업체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모듈 소싱의 가속화에 기인하여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납품단계 패러다임이 "Tier1-2-3"공급체제에서 "원자재공급-하부시스템 조립-모듈통합"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연락사무소 설치 및 세일즈랩 운영

○ OEM 자동차부품은 성격상 수출성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미국 내 현지 Field Desk를 마련하지 않고 원거리 접촉에 의해 진출을 시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일즈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세일즈랩의 경우는 자동차산업의 전문성 보유, 구매조직 내부와의 의사소통 채널 기능, 사무소 및 법인설립 대비 제반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초기 진출 시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현지 공급업체와 전략적 제휴

○ 미국 완성차 업체 빅3에 공급을 희망하지만 관리능력 및 생산공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의 대형공급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간접 납품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지 공급업체도 모듈이나 시스템 조립 능력은 뛰어나지만 한국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특정부품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현지 공급업체를 선정 시에는 한국업체 입장에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업체로 물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업체가 생산능력은 있으나 제품설계나 개발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제휴업체를 물색하고 시스템 통합 이나 프로젝트 관리 면에서 경험이 없으면 이에 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S 16949 인증 획득

○ TS 16949는 미국 자동차협회와 유럽자동차협회가 참여하여 결성한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가 기존 빅3의 QS9000과 독일의 VDA6.1, 이태리의 AVSQ, 프랑스의 EAQF 등을 통합한 품질 기준으로, 미국의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와 유럽 대부분의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다. 이 외에도 ISO14001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도 조기 획득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소수민족기업(MBE) 우대제도" 활용

○ 소수민족기업(MBE) 우대제도는 미국내의 소수계 이민자(Minority)들이 언어,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Majority에 비해 극히 열위에 있음을 감안, 이들에게 특혜를 주어 함께 공영하자는 제도로서, 미국 완성차 업체 빅3는 Tier1업체에 소수민족 소유의 Tier2 공급업체로부터 일정량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목표를 배정하는 소수민족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구매액의 5%를 MBE로부터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MBE는 직접 구매업체와 거래하는데 있어 업체규모, 기술수준, 엔지니어링 능력면에서 부족하나 배정비율에 의해 상대적으로 공급기회는 많은 편이므로, 한국계 MBE를 비롯한 여타 소수민족 공급업체를 망라하여 적격 MBE를 선정,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간접 공급방식에 의해 진출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미국의 FTA 정책 및 체결 현황

○ 미국은 기존의 다자간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지역 간, 또는 양자 간 FTA 체결을 통해 통상 이익의 극대화 및 전략적·외교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의 집권 이후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협상촉진권한)를 통해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FTA 추진 현황(2007년 12월 기준)

기발효(발효 시점)	체결(발효 예정)	협상 중	검토 중
이스라엘(1985.8) 캐나다/멕시코(1994.1) 요르단(2001.12) 칠레(2004.1) 싱가포르(2004.1) 호주(2005.1) 모로코(2006.1) CAFTA-DR(2006.3~7) 바레인(2006.8) 오만(2007. 1/4분기)	페루(2007.12.14. 양국 정상 서명, 양국 관계 법령 개정 후 발효 전망)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UAE SACU FTAA 에콰도르	대만 파키스탄

주 1: CAFTA-DR: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는 현재 의회 미비준
주2: SACU(South African Custom Union):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주3: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 34개국

○ 중남미 국가들과는 FTAA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브라질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시장 접근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주·싱가포르 등은 자국의 수출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각 FTA를 추진하거나 체결하였다.

나. 주요 FTA 협정 내용

1) 미-호주 FTA

○ 공산품 시장 접근: 99% 산업용·소비자 재화의 관세 즉시 철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섬유·의류 품목 내 얀 포워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무관세가 적용되며, 무역 흐름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NTB도 즉각 철폐 규정.

○ 농산품
- 호주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4~18년에 걸친 점진적 철폐를 원칙으로 하나, 설탕이나 일부 유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유지. 쇠고기, 유제품, 면화, 땅콩 및 일부 원예(horticulture)품 등에 대해서는 TRQ(Tariff Rate Quota; 저율 관세 할당)와 세이프가드 적용에 합의.

○ 의약품
- ① 헬스케어에서 혁신적인 의약품 역할 중요성, ② 의약 산업 내 R&D 및 지재권 보호 등 적절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 ③ 적정한 가격의 혁신적 의약품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변제(reimbursement)를 받기 위한 신약 등재(listing)에 있어 투명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 호주 정부는 의약품 Pharmaceutical Benefits Sche me 하에서 의약품의 등재 및 가격 책정에 있어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검토 절차 등을 신설.

○ 국경간 서비스(cross-border services)
- 전 산업 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보장 및 로컬 프레즌스 요건을 금지. 호주 정부는 시청각 서비스 부문 내 케이블·위성 및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만 미국 공급자에게 접근을 허용.

○ 투자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는데, 호주 내 신규 비지니스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는 호주 외국인 투자 검토 이사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 d)의 스크리닝 대상에서 제외.
- 미국 투자가에 의한 합병 한도 기준(threshold)도 A$ 50 백만에서 A$ 800백만으로 현저히 인상되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스크리닝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조달
- 비차별 원칙 준용 및 입찰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규정. 한편 호주 정부는 산업 개발 프로그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는데, 동 프로그램 하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역내산 부품 사용혹은 역내 생산을 충족해야 정부에서 발주하는 계약 수주가 가능.

2) NAFTA

○ 관세: 교역 품목의 65% 정도는 1994.1.1 부로 철폐, 잔여 품목에 대해서는 5~15년간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민감 품목 15년)

○ 비관세: 섬유쿼터, 수입허가제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

○ 서비스: 통신,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서비스 시장 단계적 개방.

○ 원산지 규정: 자동차의 경우 북미산 부품 사용 의무율을 10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순비용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섬유직물 및 의류는 얀 포워드 및 역내산 직물 사용 의무화.
- 순비용 방식이란 판촉비·포장비 등의 간접 비용을 제외한 순수 생산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역외산 부품의 사용이 곤란하게 됨.

산 업	원산지 규정
전 자	- 14인치 이상 CTV: 북미산 CPT 사용을 의무화하고 5년후부터는 튜너 등 5개 주요 부품도 북미산 의무화 - 13인치 이하 CTV: 북미산 인쇄회로기판의 사용을 의무화 - 라디오: 단순인쇄회로기판의 북미산 사용 의무화 - 컴퓨터 모니터: 북미산 CPT 사용을 의무화
자동차	○ 북미산 부품 사용의무 - 자동차 및 엔진: 50%('94)→56%('98)→62.5%('02) - 자동차부품: 50%('94)→55%('98)→60.0%('02)
섬유직물 및 의류	역내산 원사(Yarn forward) 및 역내산 직물 사용 의무화
신발류	순비용 방식으로 55%이상의 역내산 부품 사용 의무화

3) 미-싱가포르 FTA

○ 자본 교류와 원산지 규정에 중점.

○ 관 세
- 싱가포르는 모든 미국 재화에 대해 즉각적인 무세와 향후 관세 인상 불가를 보장하고 미국은 싱가포르산 제품을 카테고리 A~H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관세 철폐 기한을 명시하였고 민감 품목에 한해서는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함. (카테고리 D는 단계적, H는 10년 후 즉각 철폐)

○ 원산지
- 섬유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10% de minimis 규정 충족 의무화.
  ▪ 10% de minimis: 역외산 재료 투입 이후 세 번이 미변경 시, 투입된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조정된 부가가치 10% 를 초과하지 않으면 역내산으로 인정.

○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ISI)
- IT, 의료용품(Medical products)에 한해, 역외산 제품이라도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 상대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수출국산으로 인정.

○ 섬유·의류: 원사의 경우는 반드시 섬유 원료(fiber)가 역내산이어야 함,
- 직물의 경우 원 사기준 면 및 인조 니트 직물에 대해서는 섬유 원료 기준 적용.
- 의류에 대해서는 일반 적으로 원사 기준 적용, TPL 인정.
- TPL(Tariff Preference Levels): 면·인조 섬유로 만든 일부 의류 제품에 한해 역내산 제품이 아닌 특정 제품의 일정 물량을 대상으로 감소된 관세 적용. 이들 제품은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획득된 직물이나 원사를 재료로 싱가포르에서 잘라지거나(혹은 짜이거나) 봉제 혹은 조립된 것을 가리킴.

○ 투 자
- 내국민/최혜국 대우, 체결국 기업을 대상으로 관습 국제법 상(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맞는 최저 대우 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을 적용함으로써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완전한 보호와 안정성 제공, 간접수용(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허용,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금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 메커니즘 운용
- 간접 수용: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혹은 직접적 몰수 없이, 국가의 어떤 행위 혹은 일련의 행위가 직접 수용과 등가적인 효과를 갖는 것
- 이행 요건: 투자 인가의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영업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 일례로, 일정량의 국산원료 사용, 생산제품 중 일정비율을 수출 의무 등이 있음.

4) 한-미 FTA

○ 상품 양허에서 양측 모두 100% 관세 철폐, 약 94% 조기 철폐(3년 이내)

○ 자동차/자동차 부품
-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 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개성 공단 역외가공 인정
-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였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 마련함.

○ 섬 유
- 미 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 셔츠)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
- 미 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 제곱미터씩 발효일로부터 5년 간 원산지예외쿼터(TPL)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동 기간은 연장 가능)

○ 농산물
-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 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 할당(TRQ), 장기 이행 기간을 부여.

○ 무역 구제
-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기관 간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키로 하였고,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합의.
-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합의.

○ 서비스·투자
- 우리 측은 교육·의료·사회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
- 사업 서비스: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 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 방송 서비스: 방송 채널 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 후), 방송 쿼터 일부 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 주요 정책 사항은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 유보)

○ 의약품
-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
-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 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에 합의.
-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 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금융 서비스
- 경제 위기 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정 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등 국책 금융 기관들은 협정 예외 인정
-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 축소.

○ 통 신
-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 후 2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 (KT, SKT는 제외)
- 기술 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확보하되, 표준 제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

○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함.
-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 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도입

○ 입법 예고 기간
-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 예고 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 예고 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미국 교역 대상국 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명	2005		2006		2007		2008.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04,380**	**10.6**	**1,037,143**	**14.7**	**1,162,708**	**12.1**	**776437**	**19.1**
캐나다	211,420	11.8	230,257	8.9	248,437	7.9	158435	13.0
멕시코	120,049	8.4	134,167	11.8	136,541	1.8	87781	12.2
중국	41,837	20.5	55,224	32	65,238	18.1	43129	22.1
일본	55,410	1.9	59,649	7.7	62,665	5.1	39655	9.2
영국	38,629	7.4	45,393	17.5	50,296	10.8	33975	13.0
독일	34,149	8.8	41,319	21.0	49,652	20.2	32704	16.6
네덜란드	26,496	9.1	31,102	17.4	32,986	6.1	23853	23.9
한국	27,670	5.1	32,455	17.3	34,703	6.9	21564	8.4
싱가포르	20,646	5.3	24,683	19.6	26,284	6.5	18099	19.7

자료: KOTIS, 2008 상반기 기준

- World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2007 년 중 미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1 조 1,627 억 달러로 2005 년 이후 10% 이상의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 아울러 2008 년 상반기 미 달러화의 약세 등에 힘입어 미국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경색, 주택경기 침체 및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를 수출이 견인하고 있다.

- 미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NAFTA 회원국인 캐나다(2007 년 21.4%), 멕시코(11.7%)와 중국(5.6%), 일본(5.4%)으로 이들 4 개국 비중이 44%를 넘고 있다.

- 한국으로의 수출은 2007 년 기준 전년대비 6.5% 증가한 347 억불 규모로 한국은 미국의 8 위 수출대상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교역 대상국 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명	2005		2006		2007		2008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670,940**	**13.7**	**1,855,119**	**11**	**1,953,699**	**5.3**	**1256561**	**14.1**
캐나다	287,870	12.5	303,416	5.4	313,111	3.2	205792	14.3
중국	243,462	23.8	287,773	18.2	321,508	11.7	185468	5.0
멕시코	170,198	9.2	198,259	16.5	210,799	6.3	128939	9.6
일본	138,091	6.6	148,091	7.2	145,464	-1.8	85677	1.4
독일	84,813	9.8	89,073	5	94,364	5.9	59997	11.6
영국	51,063	10	53,437	4.6	56,893	6.5	34763	7.6
사우디아라비아	27,228	30.1	31,689	16.4	35,626	12.4	34141	88.5
한국	43,779	-5.2	45,830	4.7	47,566	3.8	28860	0.9
베네수엘라	33,965	36.1	37,165	9.4	39,897	7.4	32176	58.7

자료: KOTIS, 2008 상반기 기준

- WTA, USA 통계 기준 2007 년 미국의 상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5.3%가 증가한 1 조 9,537 억 달러로 2007 년 2 조 달러에 가까운 수입시장 규모로 확대된 바 있다.

- 2007 년 기준 주요 수입 대상국은 2006 년까지 부동의 제 1 수입 대상국이었던 캐나다를 제친 중국(3,215 억 달러, 16.5%)과 캐나다(3,131 억 달러, 16.0%), 멕시코(2,108 억 달러, 10.8%) 등이다.

- 2008 년 상반기 미국 수입은 원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5,026 억 달러에 달한 바 있다. 국별로는 2008 년 들어 그 동안 이어져 온 중국의 수 출 급증세가 크게 꺾여 1/4 분기 중 1.8% 수출 증가에 머물러 제 1 수입 대상국 지위를 캐나다에 넘겨준 것이 특징이다.

-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07 년 전년 대비 3.7% 증가한 476 억 달러로 미국의 7 번째 수입 대상국이나 2008 년 1/4 분기중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사우디 아라비아에 뒤진 8 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코드	품목 명	2005		2006		2007		2008.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HS	총계	904,380	10.6	1,037,143	14.7	1,162,708	12.1	211494	28.69
8802	기타 항공기, 우주선(인공위성 포함), 서보비털 및 우주선운반 로켓	31,719	21.4	45,517	43.5	53,504	17.6	31722	9.9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량	31,277	24.3	35,401	13.2	44,793	26.5	29873	24.3
2710	석유화학제품	14,718	48.4	22,171	50.6	26,733	20.6	32690	148.7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41,958	-2.2	46,278	10.3	41,588	-10.1	25056	5.5
8708	자동차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31,188	2.2	33,511	7.5	34,578	3.2	19155	-5.5
9880	비 캐나다 저가 수출품 추정치	20,538	12.3	22,997	12	26,913	17.0	17363	15.9
8411	터보 제트터보 프로펠로와 기타 가스터어빈	21,756	15.6	22,670	4.2	27,152	19.8	16762	16.5
8471	자동자료 처리기계	25,371	5.5	26,585	4.8	24,309	-8.6	14148	3.3
8803	항공기 부품	17,626	12.4	20,713	17.5	21,955	6.0	13425	6.7
7108	파우더, 준가공, 비가공형태의 금 (백금 포함)	4,844	34.7	7,428	53.3	11,792	58.8	11300	61.6

자료: KOTIS, 2008. 2분기 기준

ㅇ 2007 년 기준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우주선(HS 8802, 535 억 달러), 수송기계(HS 8703, 448 억 달러), 전자집적회로(HS 8542, 416 억 달러), 석유화학 제품(HS 2710, 267 억 달러), 자동차부품(HS 8708, 346 억 달러) 등이다.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코드	품목 명	2005		2006		2007		2008.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HS	총계	1,670,940	13.7	1,855,119	11.0	1,953,699	5.3	544021	18.0
2709	원유	182,752	34.4	225,528	23.4	245,777	9.0	221963	74.7
8703	자동차	124,106	1.1	135,763	9.4	134,518	-0.9	79541	5.4
2710	석유화학 제품	59,674	57.1	66,162	10.9	74,161	12.1	56135	33.2
8471	컴퓨터	63,465	6.3	67,530	6.4	57,946	-14.2	33718	3.6
8517	유선전화통신, 유선전신 전자장치	20,573	38.3	21,908	6.5	52,551	139.9	34285	22.3
8708	자동차부품	41,320	10.8	43,172	4.5	45,151	4.6	25388	-3.8
3004	의약품 (except vaccines etc.bandages or pharmaceuticals)	28,597	10.3	34,721	21.4	39,864	14.8	25043	6.2
2711	천연가스	37,090	40	33,967	-8.4	32,870	-3.2	23461	11.9
9801	골동품, 예술품	33,608	7.9	34,971	4.1	35,873	2.6	21785	7.1
8528	비디오모니터와 프로젝터를 포함한 티비 수신기	21,141	31.6	27,549	30.3	1,953,699	5.3	22702	19.2

자료: KOTIS, 2008. 2분기 기준

ㅇ 반면,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2007 년 기준 원유(HS 2709, 2,458 억 달러), 자동차(1,345 억 달러), 석유화학제품(741 억 달러), 컴퓨터(579 억 달러) 등이다.

ㅇ 2008 년 상반기 기준 국제유가 급등을 반영하여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입이 급증 추세를 보여 전반적인 수입 증가세(18.0%)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ㅇ 한국의 대미수출은 1973년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1981년 50억 달러, 84년 100억 달러, 88년 200억 달러, 2000년 300억 달러, 2004년 4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 내지는 정체추세에 있다.

ㅇ 한국의 대미 수입은 73년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81년 50억불, 88년 100억 달러, 94년 200억 달러, 2005년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7년 말 기준 약 372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71	532	34.6	678	16	-146
1972	759	42.7	647	-4.6	112
1973	1,021	34.6	1,202	85.7	-181
1974	1,492	46.1	1,701	41.5	-209
1975	1,536	3	1,881	10.6	-345
1976	2,493	62.3	1,963	4.4	530
1977	3,119	25.1	2,447	24.7	672
1978	4,058	30.1	3,043	24.3	1,015
1979	4,374	7.8	4,603	51.3	-229
1980	4,607	5.3	4,890	6.3	-283
1981	5,561	20.7	6,050	23.7	-489
1982	6,119	10	5,956	-1.6	163
1983	8,128	32.8	6,274	5.4	1,854
1984	10,479	28.9	6,875	9.6	3,604
1985	10,754	2.6	6,489	-5.6	4,265
1986	13,880	29.1	6,545	0.9	7,335
1987	18,311	31.9	8,758	33.8	9,553
1988	21,404	16.9	12,757	45.7	8,647
1989	20,639	-3.6	15,911	24.7	4,728
1990	19,360	-6.2	16,942	6.5	2,418
1991	18,559	-4.1	18,894	11.5	-335
1992	18,090	-2.5	18,287	-3.2	-197
1993	18,138	0.3	17,928	-2	210
1994	20,553	13.3	21,579	20.4	-1,026
1995	24,131	17.4	30,404	40.9	-6,273
1996	21,670	-10.2	33,305	9.5	-11,635
1997	21,625	-0.2	30,122	-9.6	-8,497
1998	22,805	5.5	20,403	-32.3	2,402
1999	29,475	29.3	24,922	22.2	4,553
2000	37,611	27.6	29,242	17.3	8,369
2001	31,211	-17	22,376	-23.5	8,835
2002	32,780	5	23,009	2.8	9,771
2003	34,219	4.4	24,814	7.9	9,405
2004	42,849	25.2	28,783	16	14,066
2005	41,343	-3.5	30,586	6.3	10,757
2006	43,184	4.5	33,654	10	9,530
2007	45,766	6	37,219	10.6	8,547
2008. 1~8	31,142	2.5	26,797	7.6	4,345

자료: KOTIS 2008. 9월 기준

ㅇ 무역수지는 98년 이래 한국 측의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정점기의 100억 달러대에서 두 자릿수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ㅇ 2007년 기준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458억불, 수입은 10.6% 증가한 372억 달러로 8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수출이 2.5% 증가한 반면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코드	품목 명	2005		2006		2007		2008,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MTI	총계	41,343	-3.5	43,184	4.5	45,766	6.0	26154	4.48
1	74	수송기계	11,658	-4.6	12,041	3.3	11,848	-1.6	7251	-7.1
2	81	산업용 전자제품	7,834	-24.2	6,795	-13.3	8,314	22.4	7385	45.4
3	83	전자부품	4,362	-14	4,922	12.8	5,093	3.5	2874	-19.2
4	13	광물성연료	2,180	144	3,105	42.4	4,133	33.1	1615	-42.6
5	61	철강제품	1,851	26.5	2,384	28.8	2,254	-5.5	2126	39.8
6	72	산업기계	1,498	50.1	1,777	18.7	1,893	6.5	1419	5.7
7	82	가정용 전자제품	2,264	-14.4	2,150	-5	1,855	-13.7	1239	-5.4
8	21	석유화학제품	1,007	63.1	1,042	3.4	1,101	5.7	882	10.0
9	71	기초산업기계	748	34.9	1,010	35.1	990	-2.0	747	12.6
10	32	고무제품	799	14.9	840	5.2	881	4.9	616	5.6

자료: KOTIS, 2008. 9월 기준

ㅇ 한국의 주요 대미수출품목은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계, 반도체, 휴대폰을 포함한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으로 2007년 기준 이들 3개 품목군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가 넘는다. 세부적으로는 수송기계 25.9%, 산업용전자 18.2%, 전자부품 11.1%를 기록하고 있다.

ㅇ 기타 철강제품, 산업용기계, 가정용전자제품이 각각 20억불 내외의 수출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고무제품 등이 각각 10억 내외의 수출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ㅇ 2008년 상반기는 휴대폰 수출 급증에 힘입은 산업용 전자제품과 철강제품의 수출증가가 특징적이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코드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586	6.3	33,654	10	37,219	10.6	20,339	13.92
1	01	농산물	1,785	-26	2,272	27.3	2,806	23.5	3747	110.6
2	83	전자부품	6,053	-2.4	6,153	1.7	5,202	-15.5	3377	-6.2
3	73	정밀기계	2,513	35.8	3,124	24.3	3,941	26.2	2128	-28.1
4	81	산업용전자제품	3,289	21.6	3,377	2.7	3,448	2.1	2216	-3.1
5	22	정밀화학제품	1,922	16.2	2,035	5.8	2,533	24.5	1830	11.2
6	74	수송기계	2,275	30.8	3,449	51.6	3,690	7.0	1876	-19.4
7	21	석유화학제품	2,424	6.5	2,126	-12.3	2,674	25.8	1592	-14.1
8	71	기초산업기계	967	0.1	1,033	6.9	1,452	40.5	1022	6.1
9	61	철강제품	902	-17.7	632	-29.9	1,382	118.7	1605	79.1
10	62	비철금속제품	758	20.2	978	29.1	1,352	38.2	946	3.1

자료: KOTIS, 2008. 9월 기준

ㅇ 한국의 대미수입품목은 2007년 기준 전자부품(52억 달러), 정밀기계(39억 달러), 수송기계(37억 달러), 산업용전자(34억 달러), 농산물(28억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2008년 1~8월 중 미 농산물이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37억 4,7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금지 품목

○ 외국자산관리규제와 쿠바자산관리규칙에 의거, 북한과 쿠바로부터의 직·간접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 무기, 탄약, 전쟁 수단 물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재무부의 “알코올, 담배 총기국(AFT)”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또는 동 국의 규제를 따르는 경우는 제외된다.

○ 워싱턴 조약에서 규정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및 사법부 규칙에 따라 수입되는 이외의 것도 수입이 금지된다.

○ 음란 서적, 사진, 미국에 대한 반역 및 반란을 조장하는 서적도 수입 금지 대상이다.

○ 죄수 또는 강제 노동에 의해 제조된 물품과 위조 화폐, 위조 증권 및 위조물을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기기도 금지된다.

나. 수입 규제 품목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의 유지와 안전보장, 소비자의 건강 및 후생, 국내 동식물 보호의 관점에서 수입 금지 또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입 규제 품목은 다음 3 종류로 분류된다.

- 수입 라이선스 품목: 수입 라이선스 감독 관청의 수입 허가, 검사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품목
- 수입할당 품목: 라이선스 품목의 일부는 관세 할당 없이 수량 할당 실시
- 특수 수입 조건 절차 품목: 연방 종자법, 에너지 절약법, 방사선 관리 건강 안전법,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 독극물 관리법 등 안전 기준에 의거, 라벨 표시 등 특수한 수입 조건이 의무화된 품목

○ 이 외에 섬유 제품 등 양국간 혹은 다국간의 무역 협정과 계약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이 있다.

다. 기타 수입 제한 법규

관련법	내 용
반덤핑 관세	- 1930 년 관세법 731 조, '79 년 통상협정법, '84 년 통상관세법, '88 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외국상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미국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 된다. 세액은 외국 시장가격과 미국 내 시장가격과의 차액만큼 부과된다.
상계 관세	- 1930 년 관세법 701 조, '79 년 통상협정법, '84 년 통상관세법, '88 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수출국 정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에 따라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관세 부과된다. - 반덤핑. 상계관세에 있어 '88 년 종합무역법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 또는 제 3 국에서 조립하여 최종 마무리된 제품도 동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Escape Clause	- 1974 년 통상법 201 조, '84 년 통상관세법, '88 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따라 관세인상, 관세할당, 수량제한,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불공정무역관행 (통상법 301조)	- 1974 년 통상법 301 조, '84 년 통상관세법, '88 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미국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84 년 통상관세법에서는 상품무역 외에 서비스 및 투자에도 이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불공정무역관행 (관세법 337조)	- 1930 년 관세법 337 조, '74 년 통상법, '79 년 통상협정법, '88 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특히 특허, 상표권 등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대해 미 국내 산업의 피해여부를 불문하고 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통관금지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도로 301 조가 외국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337 조는 민간에 의한 불공정무역 관행을 대상한 것이다.
국방조항	- 1962 년 통상확대법 232 조, '88 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되었다. - 수입상품이 국가안전에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제한, 수입금지를 취하도록 한 제도이다.
수입과징금	-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추가 징수되는 부과금으로 1974 년 통상법 122 조에 따라 미국의 국제수지에 중대한 적자위협을 끼치는 경우 150 일 이내 또는 종가세의 15% 이내에서 대통령이 일시적인 수입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제도이다.
Buy American 법	- 1933 년 제정되어 정부조달 선택 시 해외 제품보다 미국 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법이다. - 자유무역협정이나 이외 특정 합의사항 내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대통령은 합의 사항 범주 내에서 미국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국 상품, 서비스 조달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자료: US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라. 미, 불공정 거래 전담 팀 조직

○ 2003 년 해외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국내기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미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불법적인 덤핑과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미 상무부 내에 불공정 거래 전담 팀(Unfair Trade Practices Task Force)을 조직하였다.(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 수입국 Im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웹사이트 www.ia.ita.doc.gov 를 참조할 수 있다)

○ 이 팀은 미국 기업들의 누적된 불만 요인을 찾아내고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행위의 조짐을 조기에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새 조직의 출범과 함께 미 상무장관은 산업 관련 규정과 규칙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는 산업 분석실(Office of Industry Analysis)과 미 제조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무역진흥기관도 설립하였다.

○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인도, 동유럽 국가에서 들어오는 저가제품 물량 공제로 인해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산업에서부터 정유, 가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조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이 반영된 수입 상품과 실제 가치보다 낮게 고정된 중국 통화 등 외국 기업과 정부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 비관세 장벽

1) 무역 공표 시스템

○ 수출입 전반을 다루는 전문 공시 채널의 부재: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 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공시 창구로 그 양이 방대하여 원하는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 수입품의 상품 종류에 따라 규제기관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규제가 복잡한 미국에서는 산재해 있는 규제 자체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작업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 노동부의 인증, 각종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특정 규제 및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안전 규격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조치는 모두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전문 공시 채널을 통해 공시되지 않고 있다.

2) 수수료 및 통관 절차

○ 수입 화물에 대한 과다한 인보이스 제출 요구: 미 세관 당국의 미국 내 수입 화물에 대한 인보이스 제출 요건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EU 측은 미 관세청이 교토 협약에 의거하여 통관 절차 중 보충 서류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통관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이 같은 서류 요구는 기존 거대 공급업자에게는 별 문제가 안되나 중소업체들에게는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 특히 소량 주문에 의존하는 하이테크 틈새 품목 수출에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선적 24 시간 전 사전신고제 도입에 따라 서류 부담이 더욱 과중해졌다.
- 대미 수입 화물에 대한 24 시간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수입 업자들의 서류 부담은 더욱 과중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 세관 당국의 '하역 금지' 명령으로 인한 수입 물류 지연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3) 섬유, 가죽, 의류, 신발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에 따른 문제

○ 미 관세청은 특히 섬유, 가죽, 의류 및 신발 제품에 대해서 다량의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미 세관당국의 처사는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염색 및 최종 처리 유형)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의류의 경우 사소한 인보이스 상의 오류로 인해 청산절차가 210 일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의류의 통상적인 제품 사이클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 세관 별로 상이한 통관절차 운용

○ 미국의 세관 통관절차는 제도적으로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관세예치금(Customs Bond)제, 검사와 심사의 분리, 관세 납부 전 물품통관, 부두에서의 직접통관, 통관 절차 의 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특히 일선 세관에서는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 시켜 과다한 통관 비용이 발생하고, 신선 냉장 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로스앤젤레스 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하여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
- 뉴욕에서는 패션제품인 넥타이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유사 상표 여부를 심사하느라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한국산 인삼 드링크의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 개월 이상 통관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바. 특별 지정 무역지역 (Foreign Trade Zone)

○ 특별 지정 무역지역 (FTZ)은 FTZ 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으로 외국 물건이 정식으로 통관을 거치기 전 국내 활동을 허락하는 것으로 재수출되는 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물건에는 세금이 미뤄진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체와 경쟁하여 관세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FTZ 의 다른 장점으로는 통관절차가 일반보다 간단하다는 것이다.

○ FTZ 에는 공업단지도 포함되며 FTZ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미국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할이다.

○ FTZ 설명, 허가, 신청절차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수입국 웹사이트 내 FTZ 홈페이지 (http://ia.ita.doc.gov/ftzpage/index.html)에서 찾아볼 수 있고 담당자 Kathleen Boyce (202) 482-1346, Camille Evans (202) 482-2350 에 문의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내에는 17 개의 FTZ 가 있고 주 별로 대 도시, 항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소와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가 FTZ 리스트 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페이지 주소는 http://ia.ita.doc.gov/ftzpage/letters/ftzlist.html#California 이다.

사. 참고 사항

1) Bioterrorism Act

○ 2003 년 하반기부터 2002 년 12 월에 제정된 Bioterrorism Act 강제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4.8.12 부터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도가 강제화되었다. 이 제도에 의거, 불이행 업체에 대한 통관 거부 및 반송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2) 미 수입식품 사전통보 필수

○ 미 FDA 는 세관과 협력하여 2003.12.12 부터 수입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식품의 사전통보자료를 직접 제출 받아서 분석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하며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함과 아울러 식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전 통보의 제출 시기

사전 통보는 수입 식품이 도착하기 전 최장 5일 이내와 수송 수단에 따라서 최단 시간 이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육상 도로 운송인 경우 도착 2 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육상 철도 운송 혹은 항공 운송인 경우 도착 4 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해상 운송인 경우 도착 8 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사전 통보 방법

사전 통보는 전자 제출로 하면 된다.

○ 한가지 방법으로는 ABI/ACS 에 의한 사전 통보의 전송이 있다.
○ 두 번째로는 FDA 의 사전 통보 시스템 즉 웹사이트 www.access.fda.gov 을 통한 FDA PN 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 사전 통보 제출자

사전 통보 자료를 알고 있는 자로서 수입자, 관세사 혹은 미국인 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 사전 통보 대상 식품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 제 201(f)조항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품과 음료수 등이 포함된다.

□ **사전 통보 면제 식품**

○ 미국에 도착하는 개인의 휴대식품으로서 개인소비용 식품과 외국의 개인 가정에서 만든 식품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선물로 보내지는 식품은 사전 통보 규제에서 면제 된다.

○ 미 농무성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 고기류, 가금류, 계란류 식품 또한 사전 통보 규제에서 면제된다.

□ **사전 통보의 접수 후 확인 통지**

○ FDA 는 사전통보자료를 접수한 후 확인 통지를 제출자에게 보내는데 서류 제출 시 성명과 회사정보를 포함한 제출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u>사전 통보에 포함시키는 자료</u>**

○ 성명과 회사정보를 포함한 제출자의 신원
○ 통관형태와 수입에 대한 미국관세시스템 (ACS) 통관번호나 다른 미국통관 확인 번호
○ 적절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항구나 안전한 곳에 억류된 식품들의 위치
○ 완전한 FDA 제품 코드를 포함한 품목확인, 일반 명칭 또는 상품명, 교역 또는 상표명, 최대(소)포장단위
○ 제조자 신원
○ 알 수 있다면 재배자 신원
○ 원산지
○ 선적자 신원
○ 식품의 품목이 선적된 국가
○ 예상되는 도착정보: 장소, 일자, 시간
○ 미국 세관 통관 과정 정보
○ 수입자, 소유주, 수락자의 신원
○ 수송인의 신원

□ **전자로 사전 통보한 후 FDA 접수 여부 확인**

○ 접수확인 날짜와 시간이 발행된다.

□ **사전 통보의 수정과 갱신 여부:**

○ 사전통보 후 특수하고 제한된 환경 하에서 기존의 사전 통보에서 알 수 없었던 제품 특수성이나 물량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일단 수정이 허용된다.

○ 식품 품목의 본성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 수정될 내용은 최소 도착 2 시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보다 늦게 제출될 경우 수정되지 않는다.

○ 예정된 도착정보는 도착의 예정항구, 날짜, 시간에 있어 변화를 예측하도록 갱신될 수 있다.

□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한 경우 예상되는 결과:

○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한 경우 미국으로 반입이 거절된다.

○ 식품은 통관 항이나 충분한 안전 및 보안 제공을 위해 안전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고 수입자, 소유주 또는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 구매자, 소유주, 수입자 또는 수취인은 수송 및 보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나) 수입쿼터

□ 수입 쿼터 품목

○ 수입쿼터를 결정하는 부서는 상무부(DOC)와 무역대표부(USTR)이며, 관세가 일단 결정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관세청(CBP)이 집행 관리한다. 현재 관세청이 집행하는 쿼터품목의 경우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수입쿼터는 절대적 (Absolute) 관세할당물량 (TRQ: Tariff-Rate Quotas)과 관세특혜 (TPL: Tariff Preference Level)로 나눠진다. 관세할당물량은 품목의 수입 수량으로 결정된다. TRQ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정 기간이 끝나도 동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지만 다시 높아진 관세가 부과된다. 자유무역협정이나 특별무역법 등이 관세특혜 (TPL)를 규정하고 특정 국가나 품목에 따라 특별 관세가 적용된다.

○ 현재 수입쿼터가 적용되는 품목은 섬유, 농산물 일부와 중국산 섬유제품이다.

○ 2006 년 미국과 중국은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발표하였고 2008 년 까지 섬유, 의류, 창문 블라인드 및 롤러 등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 섬유 담당 국 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 (OTEXA) www.otexa.ita.doc.gov 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 www.cbp.gov 를 참조할 수 있다.) 수입쿼터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섬유: 섬유 및 의류 카테고리 (Textile & Apparel Category Number) 200, 222, 229, 332, 338040, 340, 345, 347-8, 352, 359, 363, 432, 443, 447, 619-20, 622, 638-39, 647-9, 652, 659, 66, 847 (HTS 코드: 6110-1, 6115, 6203, 6210-11)
- 창문 블라인드 및 롤러 일부: HTS 코드 6303
- 스키 및 스노우보드 바지 품목 중 일부: HTS 코드 6203, 6210

○ 2007 년 1 월부터 미 상무부는 베트남이 WTO 에 가입함에 따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섬유를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특히 바지, 셔츠, 스웨터, 속옷과 수영복에 대한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현 정권의 임기가 마칠 때 끝나게 된다. (http://www.otexa.ita.doc.gov/vn.htm)

○ 절대적 수입쿼터가 적용되는 섬유품목에 대해서 상무부가 규정한 섬유 및 의류 카테고리 (Textile And Apparel Category Number)는 다음과 같다:

- 중국: 면(200, 222, 229, 332, 338-340, 345, 347-9, 363), 직물(432, 443, 447), 합성(619-20, 622, 632, 638-96, 666, 647-8, 847)

○ 관세청 집행 쿼터품목(TRQ: Tariff-Rate Quotas)및 해당 HTSUS 코드(단, NAFTA 및 GATT 품목 제외)는 다음과 같다.

- Anchovies (1604.16)
- Brooms (9603)
- Ethyl alcohol (9901.00.50)
- Milk and cream (0404.20.20)
- Olives (Chapter 20)
- Satsumas (mandarins) (2008.30.42)
- Tuna (1604.14.20)
- Upland cotton (9903.52)
- Wheat gluten (Absolute) (9903.11)
- Wire Rod & Line Pipe (9903.72)

○ 낙농품 중 일부는 쿼터 대상이며 (아래 참조), 이들 품목에 대한 쿼터집행관리는 관세청이 아닌 농무부(USDA)에서 담당한다. In-quota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농무부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가 없을 경우에도 수입은 가능하지만, over-quota 관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American Cheese
- Artichokes
- Avocados
- Beef
- Butter
- Cheddar Cheese
- Condensed Milk
- Cocoa Products
- Cotton
- Goya Cheese
- Ice Cream
- Non-fat Dried Milk
- Milk Powder
- Peanuts
- Sugar
- Syrup
- Swiss-Type Cheese
- Tires
- Tobacco

3) 농업법 개정 관련 세관 신고

□ 2008년 12월 15일부터 모든 식물 및 나무 제품 세관 신고, 단계적 의무화

○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2008년 농업법에 따라 12월 15일부터 '종이를 포함해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통관 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를 세관 서면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관련 수입업체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Phase I 에 분류되는 제품부터 세관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함. 2008 년 12 월 15 일~2009 년 4 월 1 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 나무제품 세관신고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으로 하며, 4 월 1 일부터는 Phase I 제품부터 세관신고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 Phase I에 해당하는 제품이 어떤 것이 될지 현재 검토 이다.
-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2009년 4월 1일부터는 서면 신고가 아닌, 전자 신고서 제출을 시작한다.

○ 미국의 새 농업법에는 천연식물종 보존법령인 레이시법 수정안이 포함돼 있고, 이 수정안이 식물·나무제품의 세관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 산림제품에 대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이나 의류나 원단 수입업체 등 여러 영역에 폭넓게 적용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잡지, 책 등의 종이 완제품이나 펄프, 가구와 같이 제품 자체가 식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와인의 코르크 마개, LCD TV 의 종이 제품설명서와 품질표시, 의류의 종이 가격표나 나무 단추와 같이 본제품은 식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 성분을 포함한 경우도 세관 신고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다.

- 제품 자체에 나무나 종이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에 달린 종이 가격표, 워런북, 사용설명서 때문에 신고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다.

○ 이에 따라, 시행일을 약 3 개월 앞둔 시점에서 미국 섬유의류수입자협회(USA ITA) 등 각 산업 관련 협회는 업계 영향 정도와 대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긴급 미팅을 갖는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중이다.

○ 현재로선 이 법안의 광범위한 시행 영역과 임박한 시행시기로 인해 다소 교정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관련 단체나 협회들은 약 1 년 정도 시행일을 연기할 것과 세관 신고사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나무 단추·레이온 원단 등 세관 신고 대상…종이로 된 품질 표시표·상표·가격택은 신고 대상 여부 미정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식물 성분으로 구성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미국 관세품목분류표 HTS 관세코드의 약 1/3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 주로 HTS 85류에서 97류, 그리고 식물성 원단과 의류가 해당된다.

○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란 야생식물과 천연 또는 조성된 산림으로부터의 모든 나무를 가리키며, 면사·모시·아마섬유 등 일반적으로 경작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고, 대나무에 대한 사항은 확실하지 않은데, 대나무는 나무가 아닌 풀이지만 경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세관 신고가 요구되는 제품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무 단추가 달린 의류나 나무 손잡이가 달린 가방 등 나무 부품을 사용한 제품
- 셀룰로오스(레이온) 원단으로 만들어진 의류
- 종이 품질표시표, 상표, 가격택 포함할지 여부는 미정
- 단, 제품 보호나 운반을 위한 포장재·운송 판지박스·티슈는 세관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 세관 신고 사항

○ 미국 관계 당국인 농림부와 내무부가 아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세관 신고 사항과 해당 제품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음 사항은 세관신고 항목으로 필히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품에 포함된 식물의 학명(종, 속을 포함)
- 수입품의 가치
-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측정단위를 명시할 것)
- 식물을 채취한 국가명

· 단, 그 식물의 종 또는 국가가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각 종의 이름이나 식물이 채취됐을 가능성이 있는 각 국가의 이름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 미국 세관은 세관 신고가 일단 서면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2009 년 4 월 1 일부터는 전자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 세관의 ACS 에는 현재 이 사항을 업데이트 하고 있지 않으며, 업데이트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수입상, 수출업체 대비 사항

○ 미국 세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HS Code 85~97 류 품목은 다음과 같다.

HS	품목 명
85	전자·전기기기
86	철도 차량
87	일반 차량
88	항공기
89	선박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91	시계
92	악기
93	무기
94	가구류·조명기구
95	완구·운동용구
96	잡품
97	예술품·골동품

○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중 HS Code 85~97 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이르고,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TV·전자집적회로와 같은 전기·전자기기(85 류)는 식물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종이로 된 제품설명서나 워런티북 때문에 세관 신고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어, 이 법안 시행의 구체 사항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당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까지 관련 수입상이나 수출업체들이 미리 취할 수 있는 대비 조치로는, 먼저 제품에 세관신고가 요구되는 부품이나 성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체크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에 연락을 취해 이런 세관신고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세관 요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놓아야 한다.

○ 예를 들어, 레이온 의류 수입상은 레이온 원사나 원단 업체에 연락해 이런 사실을 인지시키고,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종과 원산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만, 만약 예정대로 12 월 15 일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제품 통관이 억류 등의 문제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나무성분 제품이나 부품은 세관신고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하고, 종이류는 나무류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나무 제품은 특히 세관 요구 정보를 챙겨 놓아야 한다.

○ 의류나 신발 완제품에 달린 종이로 된 상표·가격택 등은 본 법령 해당 여부가 미정이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 주시해야 한다.

자료: 미국 세관,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 Women's Wear Daily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특별한 대한 수입규제는 없음.

○ 2007 년 4 월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미국과 한국 의회 비준을 거친 후 최종 발효되면 이전에 자동차, 섬유 및 기타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가 즉시 또는 5 년에서 10 년 사이에 철폐되게 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2008 년 대선 이후에나 한미 FTA 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나. 버드 수정안

○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강한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던 버드 수정안 (정식 명칭: CDSOA,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이 2006 년 2 월 폐지되었다.

○ 미 의회는 2000 년 발효시킨 CDSOA(속칭 Byrd 수정안)을 통해 관세청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국고(재무부)로 환원되었던 반덤핑/상계관세 추징금을 제소한 피해 국내업체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 하지만 동 법률 발효 후 EU 및 그 외 7 개국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 "Non-permissible specific action against dumping or a subsidy"라며 WTO 에 제소해 승소판정을 받았다.

○ 그러나 동 WTO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WTO 가 정한 기한인 2003 년 12 월 27 일까지 평결 내용을 준수하지 않자 전술한 8 개 회원국은 2004 년 1 월 WTO 에 보복 조치 부과 인가를 신청했다.

○ WTO 는 2004.8.31 평결을 통해, 제소국들에게 CDSOA 에 따라 최근 연도에 기업들에게 분배된 금액의 72%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판정하였다.

○ 이에 따라 캐나다와 EU 는 2005.5.2 부터 일부 미국 수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징하였고, 멕시코는 2005.8.18 부터 미국의 유제품, 와인, 껌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다. 일본은 같은 해 9 월 1 일부터 15 개 철강 품목 등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징하였다.

○ 마침내 미 상원에서는 2005 년 말 CDSOA 폐지가 포함된 법안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을 통과시켰고, 2006 년 2 월에는 하원도 동 법안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 그러나 CDSOA 에 따른 추징금의 국내 기업 지급이 2007 년 10 월 1 일까지 지속되도록 되어 있어, 그 파급 효과가 의문시 될뿐더러 당초 WTO 에 제소했던 국가들조차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법률 통과가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 보복 조치의 해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2007 년 12 월 관세청은 2007. 9 월까지 CDSOA 에 따라 2 억 6436 달러를 분배하였다고 밝혔다.

5. 관세제도

가. 개 요

○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수입이 자유화 되어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쿼터(Quota)로 관리하고 있다.(세부내용은 전항의 수입규제 제도 참고).

○ 미국의 관세율 표에는 각기 다른 관세율이 명기된 2 가지 칼럼이 있다.

1) Column 1: NTR 및 특혜 관세율

○ Normal Trade Relations(구 MFN(Most Favored Nation))세율→칼럼 1의 General 란에 명기

○ Special(특혜 관세율) → 칼럼 1의 Special칼럼(특혜 협정 대상국: NAFTA 협정 체결국, 카리브 연안국, 이스라엘 등)

2) Column 2 (Non-NTR): 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율

○ 테러국가 등 적성국가에 적용되며 현재는 쿠바와 북한이 여기에 포함된다.

- 관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일반 관세국가와 최혜국 대우, NAFTA 와 ANDEAN 그룹,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그룹국가 및 북한, 쿠바, 라오스 등 적성국으로 분류된 특별관리대상 기타 국가의 세 분류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관세 종류

관 세	내 용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 Countervailing Duty(C.V.D)는 수출국에서 자국의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보조금 때문에 대미 수출가격이 싸지는 경우 이 가격차를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이다. -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는 미국 상무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관세율 표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ies)	- Antidumping Duty(AD)는 수출자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 관세이다.
H.M.F (Harbor Maintenance Fee)	- 부두사용 요금으로 F. O. B 가격에 0.125를 부과한다. - Ocean Shipment에 해당되며, Air Shipment에는 해당되지 않다.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 세관에서 Processing Fee로 부과하는 것으로 Ocean과 Air Shipment 모두 해당되며, F.O.B 가격의 0.21% Minimum Charge가 25달러이고 Maximum은 485달러이다.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미국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특별 관세혜택을 부여한다. - GSP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ORM A"를 제출해야 한다. - GSP수혜를 받는 국가의 생산품으로 인정을 위해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총 가격 중 현지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3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 분류(CLASSIFICATION)

○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 별 관세율은 해당상품의 관세율 분류번호 표에 나타나 있는 세율에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의 정확한 세번을 알아야 정확한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 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 하여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12 개의 Section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 로 구성되었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 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지만, WTO 에서의 합의에 따라 HS 체제로 개편되었다.

○ Harmonized System 은 6 단위, 8 단위, 10 단위 및 12 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6 단위까지는 세계공통 분류이며, 8 단위부터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 하여 사용하므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BINDING TARIFF CLASSIFICATION RULING
-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상품의 세번(HS번호)은 New York의 Area Director of Customs에 정해진 Information과 Sample을 제출하면 파악 가능하다. - 여기서 한번 부여 받은 HS번호는 미 전국 어느 세관에서 통관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관의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다.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1)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 수입상품의 거래 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가격으로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 경비
-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Commission
-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 된 경비
-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Royalty 또는 License 비용
-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된 수출자의 경비

○ 단,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 해상화재 보험료
-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등
-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종/유사상품의 거래가격과 비교를 통해서 수입가격을 결정하기도 한다.

○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거래가격을 이용한 관세 부과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용한다.

○ 수입하는 상품과 같은 모델 또는 유사한 상품이 수입될 때의 가격을 원용하여 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가격으로 이용한다.

○ 이때의 조건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수출한 날짜, 판매수량과 판매방법 등 거래 조건이 유사한지도 고려한다.

2) DEDUCTIVE VALUE

○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이다.

○ 미국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동일 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 경비, 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가격을 계산한다.

3) 구성 가격(COMPUTED VALUE)

○ 상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라. 주요 품목별 관세확인

○ 품목별, 국가별로 관세율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책자(예: US Custom house Guide/ 매년 발행/KOTRA 무역자료실 보유)를 이용하거나, 미 관세청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 관련 웹사이트

○ http://dataweb.usitc.gov/scripts/tariff_current.asp
- 2007년 이후 가장 최근에 발표된 관세 검색 사이트로서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6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에,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FDA 승인제도

○ 제도의 성격은 강제승인 및 관리이다.

○ 본 제도는 1930년 도입되었고 연방 식약품 및 화장품법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

○ 규제지역은 미국전역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첨가물, 저산성 통조림, 산화식품에 적용된다.

○ 주요목적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및 승인 수입품 검사를 통해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소비자 보호 차원의 목적으로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 보청기, 콘택트렌즈 등 의료제품과 전자파나 자외선을 발산하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을 뿜어내는 휴대폰, 레이저, 전자레인지, 의료기기 등 전자제품 등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검사 및 승인을 주관하고 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공장등록, 시판전신고서(510K), 시판전승인신청서(PMA)가 있으며 공장검사 여부는 사후에 검사된다.

○ 승인획득에는 해당 품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상이한데 사전승인 대상제품의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 FDA 승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마케팅이 금지된다.

○ 각 제품에 대한 규제와 정보는 FDA 웹사이트 (www.fda.gov)에서 얻을 수 있다.

나. FCC 인증제도

○ 제도의 성격은 강제인증 및 형식승인이다.

○ 본 제도는 1934년 통신정책법 (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

○ 규제지역은 미국전역으로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 요소에 적용된다.

○ 주요 목적은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승인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서 인증 및 승인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민간업체가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FCC Form 159/ FCC Grantee Code, FRN, FCC ID/ FCC Form 731 등이 있으며 공장 검사는 하지 않는다.

○ 승인 획득에는 대체로 3-5개월, 비용은 US$ 2,000-5,000이 소요되는데 세부 항목별 비용은 연방통신위원회 웹사이트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06-131A1.pdf를 참조할 수 있다.

○ FCC 인증은 대미 수출을 위한 필수 인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다. UL 마크제도

○ 제도의 성격은 자율규제제도이다.

○ 본 제도는 1905년 도입되었다.

○ UL 마크제도는 민간인증으로 특정 규제지역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자율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UL 인증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다. 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소방기기, 건축구조물 등에 적용된다.

○ 주요 목적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시험검사 및 인증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 Underwrites Laboratories Inc. (UL) 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 내 주관기관은 UL의 국내지점 UL KOREA에서 인증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 신청 시 필요사항은 제품 관련 정보, 계약서(신청서), 예치금, 샘플제품이며 또한 공장 검사를 실시한다.

○ 승인획득 기간이나 비용은 제품 종류 및 사용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 UL 마크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미국 정부조달 시장 입찰이 불가능하고 미 대형유통업체 구매 대상서 제외된다.

7. 지적재산권

가. 개 요

○ 미국 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따르면, 미국 내 지재권은 크게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영업 비밀 (Trade Secret)로 분류된다.

○ 지적재산권 관련 외국업체가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기업이 컨설턴트나 어드바이저를 고용하여 미 산업활동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정한 수단으로 미국기업 비밀을 입수하거나 불법 복사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외국 기업이나 관련 외국인이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미 지적재산권 주요 관련기구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PTO)	상무부 소속으로 특허 인정에 대한 행정, 즉 특허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상표권 신청을 심사,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웹사이트: www.uspto.gov
Copyright Office (CO)	의회도서관 소속으로 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해당 저작물이 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저작물을 분류하고,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저작물 등록에는 음반 및 영상필름,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 웹사이트: www.copyright.gov
Copyright Royalty Tribunal (CRT)	197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강제 라이선스 관계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강제 라이선스는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정부가 정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케이블 TV, 라디오 재송신, 상업용 Juke Box의 음반 사용 등이 해당된다.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1982년 설립된 특허 침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심 재판소로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 사건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법원의 위치가 중심적이고 최종적일 수 밖에 없어 지적재산권(특허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일재판소에서 모든 특허 침해 사건을 취급하게 된다. 웹사이트: www.cafc.uscourts.gov

나. 상표권

○ 상표는 자기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켜 타인이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상인이 채용하여 사용하는 말(Word), 이름(Name), 심볼(Symbol), 도안(Device)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 상표출원자는 연방 상표 등록을 위해서 주간통상 (Interstate Trade)에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사용하려는 마크를 신고하고, 연방 특허상표청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및 주 상표국에 등록해야 한다.

○ 상표권 등록시 출원자는 배타적인 상표권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이 가능하다.

○ 참고로 상표권 검색 사이트는 http://tess2.uspto.gov/bin/gate.exe?f=searchss&s tate=ihuv3f.1.1이다.

다. 특허권

○ 특허출원에 대한 요건은 제품이나 제조 방법의 신규성, 유용성, 비자명성 3가지를 충족시켜져야 한다.

○ 출원은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 Mark Office)에 제출하고, 특허상표청은 출원서류를 심사한후 선 발명주의에 의거하여 최초에 발명하여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한 자에 부여한다.

○ 단, 외국에서 한 발명은 선원주의를 적용하는데 미국 특허법의 기타 특징으로는 출원중인 특허는 출원절차 중 비밀이 보장되어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특허존속기간은 17년, 의장특허는 14년이다.

○ 참고로 특허권 검색 사이트는 http://patft.uspto.gov/netahtml/search-bool.html이다.

라. 저작권

○ 1976년 저작권 법령 (COPYRIGHT ACT OF 1976)에서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작품이 창조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저자 일생 및 사망 이후 50년 동안 지속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고용된 작품이나 익명의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는 출판 이후 75년 또는 창조 시점 이후 10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이 적용된다.

○ 저작권 법령은 작품의 첫 복사가 완료되거나 녹음됐을 때 작품이 창조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작품이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되었다면 특정 시간에 완성된 작품 부분별로 작품 시점을 구성하게 되고, 작품이 여러 변형(VERSION)으로 준비되었다면 각 변형 판별로 별도의 작품을 구성하게 된다.

○ 작품은 저자가 식별, 재생산할 수 있는 충분히 안정된 형태로 눈에 보이는 표현 매체에 의해 구체화될 때 완료된 것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제기될 수 없으며 오로지 작품의 표현 여부에 달려있다.

○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법령 기관에 의해 부여되거나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저작권 보호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작품의 출판 부수마다 저작권을 명기하여야만 한다.

○ 참고로 저작권 검색사이트는 http://www.copyright.gov/records/이다.

마. 전자출판물 관리법

○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체제의 형성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 1993년 2월에 클린턴 정부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법한 새로운 지적소유권 작업반을 설치하여 기존 저작권법의 문제와 개정방안을 연구하게 하였고, '1995년 NII 저작권 보호 법안' 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

○ 이 법안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으나, 1998.10.28에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저작권 조약(WCT),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을 수용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중 일부를 면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제정되었다.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법을 새로운 기술환경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 상세한 내용은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5:H.R.2281.ENR을 참조할 수 있다.

바. 저작권 보호 제도

○ 미국 저작권 법률은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영화, 게임 및 기타 형태의 지적 표현을 포함하는 원본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저작권 법률은 연방 정부의 영역으로, 미 국회 도서관 산하 기관인 저작권 사무국(Copyright Office: www.copyright.gov)에서 저작권 상품 등록, 저작권 법률 집행 등을 관장하고 있다.

○ 미국 저작권 법률은 원본 상품의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원저자가 타인에게 상품복제, 파생상품창작, 사본배포와 공개적으로 상품을 공연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상품이 창작됨과 동시에 저작권이 보호되며 저작권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권 사무국에 상품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

○ "창작된" 이란, 상품이 인간의 감각을 통해 직접 지각될 수 있거나 (예: 책) 기계의 도움으로 지각될 수 있는 (예: 음악 CD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각 가능한 형태로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 미국 저작권 사무국에 의해 저작권 등록 가능한 상품으로 정의된 8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 문학상품, (각종 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게임 소프트웨어 및 게임 스토리 포함
- 음악 상품 (가사, 멜로디 등을 포함하는 노래): 게임에 사용되는 음악 포함
- 연극 상품 (연극 및 기타 공연)
- 안무 상품의 동작
-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상품 (회화, 사진, 소묘, 조각 등): 게임에 사용되는 그래픽
- 동영상 및 시청각 상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게임에 사용되는 동영상
- 사운드 레코딩 (노래, 해설, 기타 소리의 특정 녹음): 게임에 사용되는 내레이션, 노래, 캐릭터 목소리
- 건축 상품 (빌딩 및 건축 구조물)

○ 위에 언급된 범주가 중요한 이유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단일 자산에 대해서 여러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단일 상업적 상품이 여러 관계자들에 의해 여러 저작권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게임의 경우, 미국 저작권 획득을 위해서 범주를 선택할 때 '문학상품, 음악상품, 회화/그래픽/조각상품, 동영상/시청각 상품, 사운드 레코딩' 등 5개의 범주에서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다.

○ 상품의 저작권은 상품이 고용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원저자가 소유하며, 고용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에는 고용주 또는 상품을 의뢰한 당사자의 자산이 된다.

○ 저작권 사무국에서는 고용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을 고용의 범위 안에서 고용인이 만든 상품 또는 다음 9가지 사용을 위해 주문 또는 위탁된 상품으로 정의한다:
- 협업 상품에 대한 기여
- 동영상 또는 기타 시청각 상품의 일부
- 번역
- 추가 상품
- 편집
- 지침서
- 시험
- 시험을 위한 자료에 대한 해답
- 지도

○ 상품이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법률 문서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그러나 상품이 위에 언급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창작자와 상품을 위탁한 당사자 사이에 고용 계약을 위해 만들어진 서면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위탁한 당사자에게 해당 상품의 소유권(Property)이 보장되지 않는다.

○ 이 상품의 저작권이 위탁한 당사자에 속한다는 것을 보장하려면 창작자가 위탁한 당사자에게 저작권을 위임해야 한다.

○ 베른 조약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더 이상 저작권 고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저작권 고시는 마케팅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소유자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호 또는 단어 "Copyright"으로 구성되는 저작권 고시는 처음 발행된 연도 및 소유자의 이름 다음에 표시되며 이 상품이 보호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이 고시는 공인 양식 또는 저작권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 고시한 상품의 저작권을 침해 당한 경우, 저작권 침해자는 악의 없는 침해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

○ 1978.1.1 당시 또는 이후에 창작된 상품은 창작 시점부터 작가 사망 이후 70년까지 자동으로 보호된다.

○ 2명 이상의 작가가 함께 창작한 상품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마지막으로 생존한 작가가 사망한 이후 70년간 지속된다.

○ 고용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저작권의 기간은 창작으로부터 120년 또는 최초 발행으로부터 95년 중에 더 짧은 것으로 한다.

○ 베른 협약은 지적재산 보호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국제 협약으로서 이 조약에는 약 8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베른 협약에 따라, 회원국들은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저작권 보호를 해외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협약의 기본적인 3가지 신조를 적용해야 한다:
- 작가의 수명에 50년을 더한 기간을 최소 저작권 기간으로 인정
- 저작권 고시 또는 등록 없이도 저작권 보호를 제공
- 작가가 자신의 상품의 왜곡 또는 기타 수정을 방지할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을 부여

○ 상품의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미국 저작권 법률에 따라, 다음 5가지의 혜택이 제공되므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저작권 주장을 위한 공개적 기록 확립
- 법정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 미국에서 침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자산이 고소인에 의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예를 들어 A 회사가 본래 A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복사한 소프트웨어를 B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A 회사가 B 회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그 소프트웨어를 먼저 등록했어야 한다.
- 최초 발행 후 5년 안에 등록한 경우 저작권의 추정 확립
  ▪ 비록 등록을 통해서 저작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부담은 다른 당사자에게 있다.
- 만일 발행 후 3 개월 안에 등록을 했거나 침해 전에 등록을 했다면 법적인 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의 소유자는 실제 배상금 및 침해자의 이익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다.
-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청에 저작권 등록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

○ 저작권 등록은 비교적 쉽게 마칠 수 있는 단순한 행정 절차이다.

○ 상품 등록 시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저작권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gov/register/literary.html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상품사본 2부: 상품사본은 저작권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
- 수수료 납부: 우편 파일링 시 US$ 45, 인터넷 E-파일링 시 US$35 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또한 저작권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gov/docs/fees.html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다: Library of Congress Copyright Office 101 Independence Ave. SE Washington, DC 20559-6000

○ 등록 신청에 필요한 이 3가지 요소는 하나의 봉투 또는 상자에 동봉해서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자료에 문제가 없다면 등록은 소포가 저작권 사무국에 도착한 후 하루 안에 효력을 발생하며, 등록 증명서는 4~5 개월 안에 등록자에게 전달된다.

○ 소송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US$ 685의 특별 처리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다.

8. 통관/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 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 신청(Entry)을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되어 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 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 반출 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 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 결정한다.

○ 세관 이외에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같이 여타 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해당 지역의 FDA 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부서(Agency)는 60 여 곳이 있으며 유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품목은 세관 이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통관의 종류 (Entry Process)

1) 약식통관 (Informal Entry)

□ 통관대상

○ 1,250 달러 미만 가격의 제품(예외: HTSUS 에서 Section VII, VIII, XI and XII Chapter 94 and Chapter 99, Sub Chapter III & IV)이 통관 대상으로 간주된다.

○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0,000 달러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1 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2) 정식통관 (Formal Entry)

○ Invoice 금액이 1,250 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통해야 한다.

□ 통관 대상

○ 소비통관 (Consumption Entry): 제 3 국에서 수입하여 해당 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 쿼터통관 (Quota Entry):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이나, 해당 수입 품목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예; 의류, 원단 등 섬유제품)인 경우 적용된다.

○ 창고통관(Warehouse Entry): 특정한 경우에 따라 수입물품의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하다. 쿼터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되었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 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쿼터적용 품목인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바이어가 통관 서류를 제출한 후 제품을 찾을 수 있다.

○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보세창고 입고(Warehouse Entry)와 비슷하나 많은 차이가 있다. FTZ 는 미국에 있는 창고이지만 제 3 국과 같이 간주된다. FTZ 는 특별대우 자국(Privileged Domestic), 특별대우 외국(Privileged Foreign), 비특별대우 자국(Non-privileged Domestic), 비특별대우 외국(Non-privileged Foreign)으로 나뉜다.

○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미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며, 통관 후 미국 내 보관기간은 1 년 만기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꼭 재수출하거나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

○ 보세운송(In Bond Transit): 한 지역(District)에서 다른 지역이나 제 3 국으로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면허가 있는 운송회사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세운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 IT):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 수송 및 수출(Transport & Export, T&E): 제 3 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에 수출하는 것이다.
- 보세창고 인출 및 수송(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Wd & T):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이다.
- 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Warehouse Withdrawal & Export, Wd & Ex):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 3 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3) 우편통관(Mail Entry)

○ 일부 품목에 한하여 가격이 1,250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편리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세관에 찾아 갈 필요가 없다. 무관세 품목의 경우, 우체부가 그냥 배달해 주며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우체부가 배달하면서 해당 관세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항공운임보다 저렴하여 경비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정식통관 (Formal Entry)을 하여 관할 세관의 통관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우체부가 배달해 준다.

□ 통관 대상

○ 전단 및 납작한 제품(Billfolds and other flat goods)
○ 깃털 및 깃털 제품(Feathers and Feather products)
○ 생화 및 조화, 식물(Flowers and foliage, artificial or preserved)
○ 신발(Footwear)
○ 모피(Fur, articles of)
○ 장갑(Gloves)
○ 가방(Handbags)
○ 모자(Headwear and Hat braids)
○ 여성모자 장식품(Millinery ornaments)
○ 베개 및 쿠션(Pillows and cushions)
○ 플라스틱(Plastics, miscellaneous articles of)
○ 원피, 생가죽(Rawhides and skins)
○ 고무(Rubber, miscellaneous articles of)
○ 섬유 질 및 제품(Textile fibers and products)
○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Toys, games, and sports equipment)

4) 방치된 화물 (Un-Entered Goods)

○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 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되고 이것을 제너럴 오더(General Order, GO)라고 한다. 이때 발생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정부 보세창고로 이송되면 수입된 날로부터 만 1 년까지 보관하며 그 후에는 공매 처분된다.

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1)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선적인(Shipper), 보증인(Consignee), 물건 설명(Description), 가격(Price) 등 화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기입해야 된다.

□ 미국 세관에서 기입을 요구하는 사항

○ 수입항의 이름
○ 화물의 구입자(바이어), 판매자(셀러), 구매 장소와 일시, 원산지

○ 자세한 물품 명세, 이름, 품질, 등급
○ 수량, 무게, 부피
○ 판매된 당시 가격
○ 화폐종류(US Dollar, 한국 원화 등)
○ 원가(Cost) 이외에 드는 비용을 세분화하여 운임, 보험수수료, 수수료(Commission), 포장 비용 등을 자세히 명기, 만약 가격에 포장비용, 국내 운송비용 등 항구까지의 제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세분화 할 필요 없이 포함됐다고 명기.
○ 환불 리베이트(Rebate), 관세환급 등 수출입으로 인해 받은 금액
○ 원산지
○ 상업송장(Invoice) 기재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제반 공제 또는 추가비용
○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하고, 다른 언어 표기 시 번역본 첨부
○ 송장 페이지수는 하단에 Inv. 1, P. 1, P 2 등으로 표기, 별도 송장첨부 시 Inv. 1, P. 1 ; Inv. 2, P. 2 ; Inv. 3 , P. 3 형식으로 표기

2) 포장 리스트 (Packing List)

○ 각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하여야 한다.
-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 선박이나 비행기로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증권이다.
- 기타 수입 적합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섬유제품 수입 시 섬유비자(Textile Visa), 신발 수입 시 임시신발송장(Interim Footwear Invoice)이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서식

서 식	내 용
CF 3461	○ 화물 통관 및 인도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 Special permit for Immediate Delivery)이다.
CF 7501	○ 정식통관 서류양식 (Entry Summery Document)이다.
CF 301	○ 세관보증 (Customs Bond)은 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관 완료 후에 추가로 징수해야 할 관세 등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식통관을 거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다. - 먼저 매 수입 건 당 제출하는 서류 (Single Transit Bond, CF301)가 있다. - 또한 지속적 보증 (Continuous Bond, Term Bond)이 있는데 이는 1 년간 유효하며, 세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수입화물 통관 때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FDA, DOT, EPA 등 각 세관 관할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라. 세관의 수입화물 검사

○ 모든 수입 화물은 세관원의 검열을 받고 통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무작위로 Sampling 해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1) 검역 종류

○ 테일게이트검역(Tail Gate Exam)은 일명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하며 세관에서 원하는 스타일이나 아이템 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 이동검역(Mobile Exam, ME)은 검사 해당 화물의 전량을 모두 하역해 놓고 선적 서류와 대조해 보는 방법이다.

○ 밀매검역(Contraband Exam, CE)은 수입 금지품이나 밀수품 전담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검사하는 가장 세밀한 검사방법이다.

○ 농산물 검역(Agriculture Exam, AE)은 농산물 수입검역 전담반이 검역을 담당하고 때로는 농산물이 아닌 화물도 검사한다.

2)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

○ 수입 물품의 가격 및 적절한 관세부과 여부
○ 원산지표기, 특별 표지 및 라벨 부착 및 규격 여부
○ 수입금지 품목
○ 수량 등에 있어서 상업송장 기재 정확성
○ 마약 등 불법적인 화물 존재 여부
○ 기타 사항

3) 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모조 상품'이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소비자가 보았을 때 정품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1 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조 상표를 떼낸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선 기관에 전하거나, 공매 처분과 같이 처리한다. 모조 상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 된다.

마. 최근 통관 관련 주요 이슈

1) 선적 전 화물 통보제 확대 실시

○ 미 국토 안보부는 2002 년부터 해상 화물에 실시해 온 24 시간 사전 통보제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여 항공 및 육로 화물에도 2003.12.1 부터 이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또한, 국토 안보부는 모든 화물의 사전 통보제 실시와 함께 선적 전 제공된 수출입업자 및 화물정보에 미심쩍은 내용이 발견될 경우 빨간색 라벨을 붙여 도착 시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의무적으로 개봉한다.

선적 전 화물 통보제 스케줄	
수입(In Bound)	수출(Outbound)
○ 항공: 미 도착 또는 근거리인 경우 항공기 이륙 4 시간 전 ○ 철도: 미 입국 항 도착 2 시간 전 ○ 해운: 화물 선적 24 시간 전 ○ 트럭: FAST 화물은 미 도착 30 분전, Non-Fast 화물은 1 시간 전	○ 항공: 미 출발 2 시간 전 ○ 철도: 미 국경 도착 2 시간 전 ○ 해운: 미 선적항 출발 24 시간 전 ○ 트럭: 미 국경 도착 1 시간 전

2) 미 FDA 식품 관련 업체 등록 의무화

○ 2003.12.12 부터 식품 관련 업체들은 미 연방식품의약청(FDA)에 업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수입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게 되며, 또한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건 별로 FDA 에 개별 신고 및 등록해야 하는 등 식품류의 수입 절차가 크게 까다로워 졌다.

○ FDA 는 바이오 테러 방지를 위해 '2003 바이오 테러리즘 시행령'에 따라 수입 식품류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실시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류를 다루는 제조업체(수출업체), 수입업체, 포장업체 및 운송업체 등은 모두 이 같은 법규에 적용을 받게 된다. 등록은 웹사이트와 팩스,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등록 시 곧바로 FDA 승인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통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관련 웹사이트 로는 http://www.cfsan.fda.gov/~dms/fsbtact.html, http://www.cfsan.fda.gov/~lrd/im port.html 가 있다.

○ 등록 대상은 식품 수입, 관리 및 제조업체이며 해당 품목은 모든 식품류를 비롯해 화장 품, 애완동물 사료, 보조 식품 등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전자제품에도 규제가 적용 된다. 자세한 규제 내용이나 참고사항은 FDA 웹사이트 (www.fda.gov)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정식 통관이 아닌 택배나 우편 발송일 경우에도 FDA 의 등록 서류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내는 소포에 대해서도 식품류일 경우 이 같은 시행령이 적용된다.

바. 기타 사항

□ 통관 경비

○ 한국에서 미국항에 수출품이 도착할 때부터 발생되는 통관 경비로는 항공 혹은 선박회사 대리점 수수료 (Freight Forwarder's Handling Charge) US$ 65, 세관 경비 (Customs Fees), 통관회사 수수료(Customhouse Brokerage Fee) US$ 150, 관세 (Duty) 등이 있다. 상무부 웹사이트 http://hotdocs.usitc.gov/docs/tata/hts/bychapter/0810htsa.pdf 에서 HS 코드 별 관세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입금액의 0.125%가 항구 사용료 (Harbor Maintenance Fee), 수입 금액의 0.21%가 물품취급 수수료로 부과된다.

○ 세관본드(Customs Bond)는 관세, Penalty 등과 같이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이다. 세관본드는 최소수입금액에 관세, 세금, 기타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일회용(Single entry Bond)과 일년용(Continuous Bond) 2 가지가 있는데 세관이 지정한 세관본드 전문 보험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본드를 구입할 경우, 본드액이 5 만 달러이면 5 만 달러를 모두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일정률(보험회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회용은 3.5%, 일년용은 1% 정도)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구입하며 동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동 금액을 위에서 언급한 본드전문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본드 구입 증서(Certificate)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일회용은 동 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일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증서 번호가 세관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일회용에서 일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드를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상의(세관과의 상의사항 아님)해야 한다.

사. 참고사항

1) 주요 수입 제한/금지 제도 개요

○ 대부분의 상품은 수입 제한 없이 수입되나, 많은 소비 제품에 대해 연방 위생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정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 및 특정 생산품은 수입이 금지되 거나 제한된다. 마약 및 위험 약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수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 쿼터관리

○ 땅콩, 일부 면제품, 버터, 버터기름, 일부 낙농제품, 일부 설탕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쿼터 품목은 원산국(Country of Production) 기준으로 관리된다.

○ 쿼터 대상인 일부 낙농품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섬유 쿼터 관리는 상무부 내 섬유협정이행 위원회 (CITA: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가 담당하며, 관세청은 고유의 통관집행 권한 및 CITA 지시에 따라 섬유 쿼터 관련사항을 집행한다.

○ 미국은 섬유 무역협정의 집행 및 쿼터 우회 방지를 위해 섬유비자협정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로 수출국과 체결하고 있다. 현재 쿼터가 부과된 국가는 중국뿐으로(2008 년말 만료 예상) 중국은 쿼터 대상 품목의 대미 수출 시 비자(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면장)를 발급해야 한다.

○ 비자협정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이 발급하는 비자에 발급일자 및 수출 섬유품목의 카테고리 분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은 비자를 동반하지 않거나 또는 비자협정규정에 어긋나는 비자를 동반하는 쿼터대상 품목의 수입통관을 거절할 수 있다.

○ 미국의 주요 수입관리 제도를 종합하면, 쿼터제한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품 세관압류 및 국고귀속을 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라벨의무, 소비자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미 식품의약국(FDA)의

엄격한 수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연성 섬유제품, 방사선. 전자파 발생장치 및 제품 등에 있어서 미 소비자 제품안전 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수입관리를 지적 및 조언할 수 있다.

아. 무역항 및 공항 개황

○ 로스앤젤레스에는 LA 항구와 롱비치 항구 등 2 개의 무역항과 LA 공항 등 1 개의 무역공항이 소재되어 있으며 통합하여 US$ 4,318 억 달러의 물동량을 기록하였다.

○ 2007 년 6 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5 년 기준 1,343 억 달러의 물동량 규모를 보인 LA 항구는 미국 무역항 중 물동량 기준 2 위를 차지하였으며 롱비치 항구는 1246 억 달러를 기록하여 5 위를 기록하였고 LA 공항은 729 억 달러를 기록하여 8 위를 기록하였다.

○ 미 교통부에서 발표한 미국 내 톱 10 교역 항 및 공항 중에서는 뉴욕에 소재한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가 1,349 억 달러로 최고의 물동량을 기록하였다.

○ 한편 캐나다 교역의 1 등 통로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 항구는 1,305 억 달러를 기록하여 3 위에 랭크 되었다.

○ 톱 10 안에 든 항구와 공항들을 통해 이뤄진 교역량은 총 9,542 억 달러로 2005 년 미국 총 수출입 물량의 42%를 담당하였다.

2007년 10대 미국 수입 항구(가장 최근 자료)

(단위: 천 TEU)

2007년 순위	Port name	2007년	2006년	증감률
1	Los Angeles, CA	8,355.0	8,470.0	-1.4%
2	Long Beach(CA)	7,316.5	7,289.4	0.4%
3	New York/New Jersey	5,299.1	5,092.8	4.1%
4	Savannah(GA)	2,604.3	2,160.2	20.8%
5	Oakland(CA)	2,388.2	2,391.6	-0.1%
6	Hampton Roads(VA)	2,128.4	2,046.3	4.0%
7	Seattle, WA	1,973.5	1,987.4	-0.7%
8	Tacoma(WA)	1,924.9	2,067.2	-6.9%
9	Houston(TX)	1,768.6	1,606.8	10.1%
10	Charleston(SC)	1,754.4	1,968.5	-10.9%

주: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t

자료: American Association of Port Authorities

자. 운송 비용

○ LA 항구에서 다른 주로 운송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팔레트 당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팔레트 규모는 48”x40”x90”이며, 최소 비용이 부과된다.

주	최소 비용	4~6 팔레트	7~10 팔레트
Colorado	$575.00	$198 ~ 210 /팔레트	$160 ~198 /팔레트
Florida	$625.00	$252 ~ 272 /팔레트	$242 ~ 260 /팔레트
Indiana	$575.00	$190 ~ 208 /팔레트	$178 ~198 /팔레트
Kansas	$575.00	$162 ~178 /팔레트	$148 ~166 /팔레트
Michigan	$633.00	$210 ~ 230 /팔레트	$214 ~ 224 /팔레트
New York	$660.00	$264 ~ 312 /팔레트	$250 ~ 270 /팔레트
North/South Carolina	$575.00	$210 ~ 230 /팔레트	$200 ~ 220 /팔레트
Texas	$575.00	$176 ~190 /팔레트	$170 ~ 178 /팔레트
Virginia	$625.00	$252 ~ 260 /팔레트	$242 ~ 250 /팔레트

주: 위의 가격은 일반적인 참고용 금액이며 실제 운송비용은 제품의 종류, 부피,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자료: 현지 운송 업계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LA 지역>

구분	회사 명	주 소	전화번호
통관 및 운송	Air Power Int'l Express (USA), Inc.	8366 Isis Ave. Los Angeles, CA 90045 (www.airpowerusa.com)	310-641-0830
통관	Barinco Int'l Corp.	5777 West Century Plaza, Suite 990 LA, CA 90045	323-776-7212
통관 및 운송	Carmichael Int'l Service	533 Glendale Blvd. LA, CA 90026 (www.carmnet.com)	213-353-0800
통관 및 운송	Gava Group	132 West 132nd St. LA, CA 90061 (www.gava.com)	310-215-0000
통관	Gene Mack, US Customs Bro ker	6601 Center Ave. North, Suite 500, LA, CA 90045	310-410-1331
통관	J & K Fresh, LLC	9911 Inglewood Ave., Suite 200, Inglewood, CA 90301	562-926-7186
통관	Lee Company Customs Broker	137 Eucalyptus Dr., El Segundo, CA 90245	310-606-0300
통관 및 운송	OEC Group	5777 W. Century Blvd. #265 LA, CA 90045(www.oecgroup.com)	310-670-8541
통관	Soo Hoo Customs Broker	205 S. Broadway #708, L.A. CA 90012	213-680-0083
운송	America Pacific Container Line, Inc.	4425 Atlantic Ave. #A14, Long Beach, CA 90807	562-428-8856
통관 및 운송	CBT International, Inc.	249 E. Ocean Blvd., Suite 650, CA 90802	562-983-7211
통관	John C. McNulty Customs Broker	301 E. Ocean Blvd. Ste 210, LB CA 90802	562-628-9700
운송	New Wave Logistics USA Inc.	2417 E Carson St. #200, LB CA 90810	310-518-0098
통관 및 운송	Western Overseas Corp.	10731 Walker St., Cypress, CA 90630 (www.westernoverseas.com)	562-985-0616
통관	William M. Stringfield	249 E. Ocean Blvd. Suite 1008, LB CA 90802	562-436-5229

<뉴욕 지역>

구분	회사 명	주소	전화번호
통관	Reliance Customs Brokerage	67 West Merrick Road, Valley Stream, NY 11580	516-887-2400
통관	Excel International of NY	146-27 167th st.#201, Jamaica, NY 11434	718-244-0001
통관	AEI Customs Brokerage Services	181 Cooper Ave., Tonawanda, NY 14150	716-877-3982
통관 및 운송	Alba Wheels Up International	150-30 132nd Avenue, Jamaica, NY 11434	718-276-3000
통관	American Customs	14915 177th St Ste 1, Jamaica, NY 11434	718-995-3699
통관	Big Apple Customs Broker	415 Lafayette Ave., Brooklyn, NY 11238	718- 525-1065
통관	Castaneda Haings Customs Broker	15232 Rockaway Blvd., Jamaica, NY 11434	718-712-2583
통관 및 운송	Diplomatic Global Logistics	6315 Fly Rd., East Syracuse, NY 13057	315-431-9802
통관	Interport Customs Clearance Company Incorporated	893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718-815-7474
통관 및 운송	Fauna & Flora Customhouse Brokerage & Transport	15231 135th Ave., Jamaica, NY 11434	718-977-7700
통관	Jemm Custom Brokers Inc	1016 Park Blvd., Massapequa Park, NY 11762	516-823-6300
통관	New York Customs Brokers Incorporated	14802 Guy R Brewer Blvd., Jamaica, NY 11434	718-656-6699
통관	National Customhouse Brokers	14915 177th St., Jamaica, NY 11434	718-995-9779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여건

○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환영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 미국은 이처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각 주 별로 독자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은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도 국내 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제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산업수입 채권발행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나. 대미 투자의 매력

○ 정부가 모든 형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견지
○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
○ 세법과 제 규정이 복잡하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호의적
○ 많은 인구와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용역의 대규모 판매 시장 형성
○ 다양하게 발달된 통신과 수송 수단으로 인해 시장 접근성 용이

○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미국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으나 모든 주와 워싱턴 D.C는 각각의 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 주법의 내용은 유사점이 많으나 일치되지는 않으며 각주의 법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되며, 주 내의 지방 정부인 County, City 등도 각기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만을 특별히 관장하는 기관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가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알선 기관
각 주정부의 경제개발부(Dept. of Economic Development) 국제무역국 (Office of International Business)

○ 미국의 주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 단위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Foreign이라는 말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만을 의미하기보다는 Out of State, 즉 외국기업을 포함한 자기 주 이외의 기업이나 투자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주가 「경제개발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고,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매년 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진출을 희망하는 해당주의 웹사이트를 찾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미국의 15개 주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 하여 해당 주에 대한 기업진출 유치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무소에서 투자촉진 프로그램의 개요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투자촉진 프로그램 정보 웹사이트
Association of American State Offices in Korea (www.asok.or.kr)

○ 이들 기관은 주로 해당 주 소재 기업들의 수출지원과 한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된 기업 유치책으로는 입지선정을 위한 편의제공, 토지취득 시의 지주와의 교섭, 토지취득 후의 세제상의 특전 제공(조업 개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 세금 등의 감면 등), 회사설립 또는 공장건설에 따른 편의 제공(변호사, 회계사, 건설업자의 소개 등 포함), 공장건설 비용에 관한 특별융자 설정, 종업원의 고용과 훈련에 관한 편의 제공(급여와 훈련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등), 외국에서 파견된 사원을 위한 편의 제공(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친숙해지기 위해 본인 및 가족을 위한 보조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특별수업·과외활동의 보조 등도 포함)등 광범위하고 다양 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혜는 해당 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 창출과 세원 확보가 목표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예를 들어, 투자제한 분야에는 국내 항공 운송업, 원자력· 수력· 지열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산업 등이 있다.

구 분	내 용
국내 항공운송업	미국 시민으로 구성된 항공 회사(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75% 이상을 미국 시민이 소유,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미국 시민)만 종사할 수 있음.
연안 수상운송업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75% 이상을 미국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
원자력·수력·지열·발전사업	라이센스 부여는 미국인 또는 미국 회사로 제한함.
통신사업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전화 및 데이터 통신 등) 외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국과의 호혜주의(Reciprocity)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전과 다름없이 외국 기업의 참여에는 장벽이 존재함.

○ 이와 같은 업종별 제한 외에,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합병·인수"를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Exon Florio 조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장관이 의장이며 여러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부처간 조직인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검토(자발적인 신고 여하에 상관없이)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각 주 정부들이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비슷하나,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별화 되어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 2007 년 말 기준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FDI Inward) 누계액은 2 조 100 억 달러 규모로 최근 10 여 년간 약 4 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누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7
FDI(Inward)	419,108	535,553	1,256,867	1,635,291	2,009,983

자료: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미국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지속 증가 추세로 누계액 기준 4,191 억 달러(1990) → 2 조 99 억 달러(2007)로 크게 증가한 바 있고, 연도별로는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 년대 초반 정체기를 거쳐 2000 년대 중반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연도별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FDI(Inward)	159,461	74,457	53,146	135,826	101,025	175,394	199,298

자료: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나. 지역별 및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07 년 기준 지역별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유럽 지역 비중이 5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과 산업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 캐나다가 19.8% 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 가까운 비중 (19.95%)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현황(2007)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별	투자 금액	비중
캐나다	39,487	19.81
유럽	111,798	56.09
아시아 & 태평양	39,768	19.95
라틴 아메리카 & 기타 서유럽	6,884	3.45
아프리카	-673	-0.34
서아시아	2,033	1.02
전체	199,298	100

주: 투자금액은 자본흐름(Capital Inflow)을 기준으로 작성,(-)outflow를 의미함.
자료: BEA, 2008.9월 현재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국가별로는 2007 년 기준 전통적인 대미투자 선도국 영국이 미국 전체 해외 직접투자 금액의 13.7%로 캐나다(19.8%)에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 13.4% 등이 10% 이상의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별 FDI 유치 현황(2007)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명	투자 금액	비중
영국	27,248	13.67
일본	26,691	13.39
캐나다	39,487	19.81
독일	7,479	3.75
프랑스	15,106	7.58
네덜란드	8,176	4.10
벨기에	1,901	0.95
호주	3,958	1.99
기타 국가	69,252	34.75
계	199,298	100

자료: BEA,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다. 업종별 투자현황

○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 2007 년 기준 제조업 투자비중은 약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내 화학, 전자, 기계 분야가 주 투자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국의 발달된 물류시장과 금융산업의 이점을 활용키 위한 도매 및 금융부문 투자 비중도 각각 15%, 7% 내외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업종별 FDI 유치 현황(2007)

(단위: 백만 달러, %)

업종별	투자 금액	비중
제조업	91,599	45.97
식품업	1,720	0.86
화학	18,804	9.44
금속가공업	7,059	3.54
기계조립	12,891	6.47
컴퓨터/전자	14,215	7.13
전자장비/부품업	6,704	3.36
운송장비	6,206	3.11
도매업	30,303	15.20
소매업	-5,672	-2.85
정보업	11,463	5.75
금융/보험/채권	14,066	7.06
부동산업	6,789	3.41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0,243	5.14
기타	40,507	20.32
전체	199,298	100

자료: BEA,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라. 주요 지역별 외국기업 투자동향

1) 샌프란시스코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의 다른 주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집중된 지역이다.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는 2004 년 기준 캘리포니아 지역에 1,000 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550,000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요인은 미국 서부지역이라는 전략적 위치, 신흥 시장인 아시자 지역에 대한 접근 용이, 지역 내 다양한 산업 기반, 인종 구성의 다양성, 벤처 캐피털 등 풍부한 자금원, 첨단기술 혁신 문화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주요 투자 국가는 영국, 일본,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으로 유럽 국가의 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투자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의 투자의 특징은 유럽 국가의 투자와 다르게 현지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제조업 투자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미국과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투자 지역으로 간주하여 제조업, 물류센터, 유통업, 금융업 등 다양한 직접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한 현지 고용 규모는 230,0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일본기업 NUMMI 투자진출 사례</u>

○ 회사명: 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 Incorporated(NUMMI)
○ 웹사이트: www.nummi.com
○ 업종: 자동차 조립생산 (Corlla, Tacoma, Vibe)
○ 위치: 45500 Fremont Blvd, Fremont, CA 94538
○ 설립일: 1984
○ 고용규모: 5,440 명
○ 주요 내용
- NUMMI 는 일본의 Toyota 와 미국 Geral Motors 가 공동의 설립한 합작 회사로 자동차 생산
- 일본과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식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
- 특히, 일본 기업의 “Just In Time” 경영기법이 미국 내 다른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침
- 기술교환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하여 Hybrid SUVs 차량에 일본 엔진 채택

2) 디트로이트

○ 2004 년에 외국기업은 201,000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 있다.

○ 이 중 42%가 제조업 인력이었다. 약 12%의 제조업 종사자가 외국기업이 고용한 업체다. 외국 기업은 미시간 전체 민간 산업 고용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 세계 40 개국에서 디비전, 지사, 자회사 등 3,760 개의 해외 기업 관련 조직이 소재하고 있으며, 독일이 610 개로 조직 수 기준 투자 규모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조직 수	국가	조직 수
독일	610	네덜란드	476
일본	549	프랑스	295
영국	512	기타	818
캐나다	500		

미국 중서부 지역 주요 외국 투자 기업

회 사	주	국가	업 종
Toyota Motor Manufacturing	캔터키	일본	자동차 제조업
Kyosan Denso Manufacturing	캔터키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업
Nestlé USA, Inc.	캔터키	스위스	식품
Tomkins	일리노이	영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Sodexho Inc.	일리노이	프랑스	식품 서비스
The Thomson Corporation	위스콘신	프랑스	전자, 미디어 제조업
Bayer Corporation	인디애나	독일	제약업
Siemens Corporation	아이오아	독일	전자, 의료기기
Reed Elsevier	미주리	영국	종이 제조업
Saint-Gobain	캔사스	프랑스	유리 제조업

주: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지역은 미국 현지 법인의 본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에 시설 투자한 경우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법인 본사 위치와는 다름.
자료: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3) 버지니아주 외국인투자 동향

□ 국가별 누계기준 외국기업 투자 현황

버지니아 주 외국기업진출 국가별 누계(2007년 기준 누계)

Foreign Affiliates Summary

Country	Number	Employment	Investment
Afghanistan	1	25	$2,000,000
Australia	15	504	$184,940,000
Austria	17	1,111	$62,098,387
Belgium	10	1,752	$152,509,211
Brazil	4	21	$2,250,000
Canada	66	5,376	$465,072,893
Chile	1	N/A	N/A
China	6	79	$1,450,000
Denmark	14	666	$28,698,560
Egypt	1	N/A	N/A
Finland	5	140	$5,300,000
France	66	6,951	$497,302,860
Germany	139	13,563	$3,561,341,346
Greece	13	4,030	$286,723,616
Hong Kong	4	167	$390,000
Hungary	1	N/A	N/A
Iceland	6	917	$40,090,000
India	13	1,330	$43,033,000
Ireland	6	164	$12,000,000
Israel	14	515	$12,480,000
Italy	23	1,792	$63,578,418
Japan	82	7,964	$1,085,480,305
Jordan	1	110	N/A
Korea	18	193	$19,320,000
Kuwait	1	5	$5,000,000
Liechtenstein	2	22	$555,000
Luxembourg	4	268	$50,200,000
Martinique	1	50	$4,000,000
Mexico	8	393	$44,404,944
Monaco	1	N/A	N/A
Netherlands	37	1,547	$249,740,000
New Zealand	1	N/A	N/A
Norway	6	90	N/A
Philippines	1	8	N/A
Portugal	1	N/A	N/A
Russia	1	N/A	N/A
Saudi Arabia	2	10	N/A
Singapore	1	N/A	N/A
South Africa	4	84	N/A
Spain	6	32	$1,300,000
Sweden	37	5,500	$487,378,146
Switzerland	45	4,363	$459,598,331
Taiwan	3	67	$22,413,620
Turkey	3	60	$350,000
United Kingdom	120	11,015	$477,682,064
Grand Total	***811***	***70,884***	***$8,328,680,701***

주: 투자 기업 국적 기준 분류이며, 기업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통계에서 제외
자료: 버지니아 주 정부,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버지니아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7 년 말 기준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외국기업은 45 개국 811 개로 추산되며 이들 기업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 수는 7 만여 개, 그리고 투자 규모는 83 억 달러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 진출 기업의 수(數)면에서는 독일·영국·일본이 각각 139·120·82 로 수위를 차지하고, 프랑스 (66)·캐나다(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진출 기업의 총 투자액(投資額) 규모면에서는 독일은 35 억 달러를 웃돌고 그 뒤를 일본과 영국이 각각 10 억 8,000 만 달러, 4 억 7,00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국 기업 신규(New) 및 증액(Expansion) 투자 동향 (1995-2006년)

1996 - 2006
Virginia Foreign-Affiliated Announcements

Year	Employment	% of Year's Total	Investment (millions)	% of Year's Total	Announcements	% of Year's Total
1996	4,065	17.1%	$2,016.65	57.1%	37	0.3%
New	3,230		1,766		19	
Expansion	835		250		18	
1997	4,459	16.6%	$325.25	12.6%	72	0.6%
New	1,475		137		35	
Expansion	2,984		188		37	
1998	2,758	6.0%	$207.22	9.3%	52	0.3%
New	1,005		68		21	
Expansion	1,753		139		31	
1999	5,152	11.6%	$473.55	14.2%	67	0.4%
New	1,321		133		27	
Expansion	3,831		341		40	
2000	5,042	11.4%	$569.38	12.7%	69	0.6%
New	1,886		155		28	
Expansion	3,156		415		41	
2001	3,550	10.5%	$326.36	10.9%	61	1.0%
New	985		76		19	
Expansion	2,565		250		42	
2002	3,004	12.4%	$204.68	10.1%	42	0.5%
New	437		48		13	
Expansion	2,567		157		29	
2003	2,736	9.7%	$607.80	15.3%	50	0.6%
New	428		17		13	
Expansion	2,308		591		37	
2004	4,767	10.6%	$1,554.94	45.1%	39	0.4%
New	317		464		5	
Expansion	4,450		1,091		34	
2005	3,857	12.0%	$475.64	11.4%	53	0.6%
New	1,778		191		17	
Expansion	2,079		285		36	
2006	3,692	14.6%	$699.69	32.3%	59	0.9%
New	1,932		543		21	
Expansion	1,760		157		38	
Totals	43,082		$7,461.15		601	

자료: 버지니아 주 정부,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1995 년에서 2006 년 사이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는 거의 매년 5 억 달러 이하 수준을 유지했으며 예외적으로 1996 년과 2004 년에는 각각 19 억 6, 700 만 달러, 15 억 5, 500 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단, 최근 조사 연도인 2006 년에는 7 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 2006년 기준(단일 연도) 버지니아 주 국가별 외국기업 진출 동향

○ 최근 기록을 통해 볼 때, 2006 년의 경우 버지니아 주는 21 개국 출신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동 투자의 규모는 총 6 억 9,900 만 달러 가량이며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규모는 3,692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최대 투자국인 스웨덴의 투자 규모는 2 억 8,400 만 달러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호주가 1 억 5,300 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양국은 2005 년 총 외국인 투자액 가운데 51.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6년 기준 버지니아 주 국가별 외국기업진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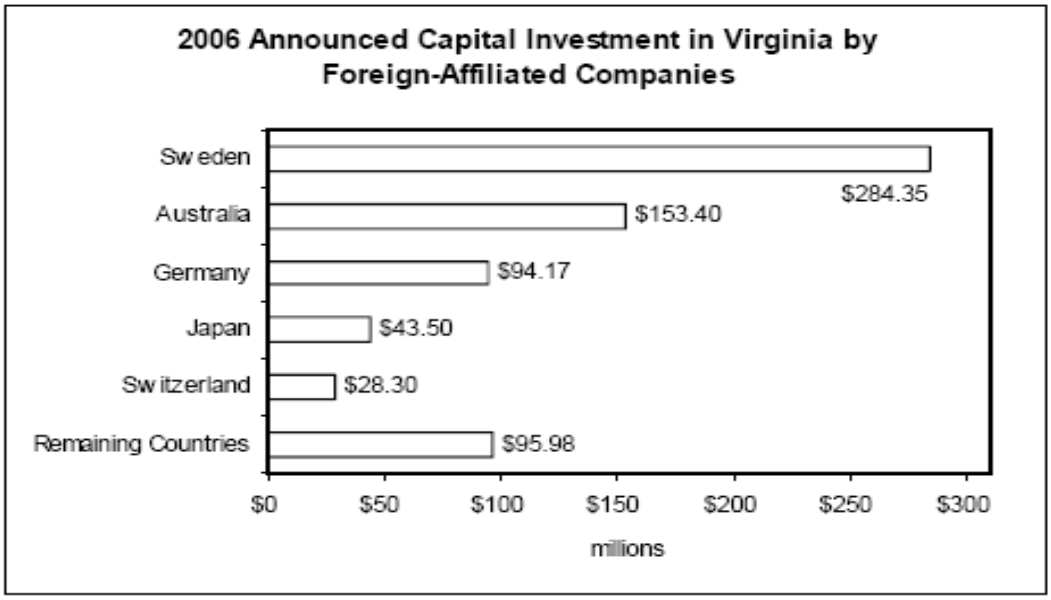
2006 Virginia Foreign-Affiliated Announcements by Country

Country	Employment	% of Total	Investment (millions)	% of Total	Announcements	% of Total
Afghanistan	25	0.7%	$2.00	0.3%	1	1.7%
Australia	219	5.9%	$153.40	21.9%	3	5.1%
Austria	0	0.0%	$1.50	0.2%	2	3.4%
Canada	532	14.4%	$21.70	3.1%	6	10.2%
China	6	0.2%	$0.50	0.1%	1	1.7%
Denmark	40	1.1%	$6.00	0.9%	2	3.4%
Finland	11	0.3%	$0.30	0.0%	1	1.7%
France	100	2.7%	$4.14	0.6%	3	5.1%
Germany	247	6.7%	$94.17	13.5%	8	13.6%
Iceland	348	9.4%	$3.10	0.4%	2	3.4%
India	25	0.7%	$0.00	0.0%	1	1.7%
Israel	90	2.4%	$4.40	0.6%	2	3.4%
Italy	160	4.3%	$3.20	0.5%	1	1.7%
Japan	299	8.1%	$43.50	6.2%	8	13.6%
Korea	25	0.7%	$0.00	0.0%	1	1.7%
Luxembourg	12	0.3%	$5.20	0.7%	1	1.7%
Mexico	8	0.2%	$3.30	0.5%	1	1.7%
Netherlands	25	0.7%	$12.50	1.8%	1	1.7%
Sweden	800	21.7%	$284.35	40.6%	4	6.8%
Switzerland	246	6.7%	$28.30	4.0%	3	5.1%
UK	474	12.8%	$28.14	4.0%	7	11.9%
Virginia Totals	3,692		$699.69		59	

자료: 버지니아 주 정부,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외국 기업 국가별 버지니아 주 투자 규모 비교(2006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버지니아 주 정부,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산업부문별 외국기업 진출 동향

버지니아 주 산업부문별 외국기업진출 동향(2006년 기준)

2006 Virginia Foreign-Affiliated Announcements by NAICS Code

NAICS Major Grouping	Employment	% of Total	Investment (millions)	% of Total	Announcements	% of Total
311 Food Products	348	9.4%	$3.10	0.4%	2	3.4%
313 Textile Mills	160	4.3%	$85.00	12.1%	1	1.7%
321 Lumber & Wood Products	28	0.8%	$12.82	1.8%	2	3.4%
322 Paper Products	10	0.3%	$7.10	1.0%	1	1.7%
323 Printing	27	0.7%	$5.50	0.8%	1	1.7%
325 Chemicals	27	0.7%	$4.00	0.6%	1	1.7%
326 Plastics & Rubber Products	356	9.6%	$133.20	19.0%	4	6.8%
327 Stone, Clay, Glass	50	1.4%	$4.10	0.6%	1	1.7%
331 Primary Metal Industries	75	2.0%	$48.40	6.9%	2	3.4%
332 Fabricated Metal Products	12	0.3%	$0.30	0.0%	2	3.4%
333 Machinery	22	0.6%	$5.00	0.7%	3	5.1%
335 Electrical Equipment	157	4.3%	$28.30	4.0%	2	3.4%
336 Transportation Equipment	164	4.4%	$21.15	3.0%	6	10.2%
337 Furniture & Fixtures	770	20.9%	$287.10	41.0%	2	3.4%
423 Distribution - Durables	49	1.3%	$1.44	0.2%	4	6.8%
424 Distribution - Nondurables	438	11.9%	$39.10	5.6%	5	8.5%
483 Water Transportation	42	1.1%	$0.85	0.1%	1	1.7%
493 Warehousing & Storage	15	0.4%	$0.00	0.0%	1	1.7%
512 Motion Picture/Sound Recording	25	0.7%	$2.00	0.3%	1	1.7%
518 Internet & Related Services	240	6.5%	$0.00	0.0%	1	1.7%
523 Financial Investments Services	40	1.1%	$2.70	0.4%	1	1.7%
541 Technical Services	165	4.5%	$2.60	0.4%	7	11.9%
551 Headquarters/Division Offices	347	9.4%	$3.00	0.4%	4	6.8%
561 Administrative Services	125	3.4%	$2.94	0.4%	4	6.8%
Virginia Totals	**3,692**		**$699.69**		**59**	

자료: 버지니아 주 정부,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NAICS 코드에 따르면 2006 년 동안 모두 24 개 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雇用)면에서는 가구(Furniture & Fixture) 부문이 770 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비내구재 유통(Distribution-Nondurables)에서 438 개 일자리, 플라스틱 및 고무 (Plastic & Rubber Products) 356 개, 식품(Food Products) 348 개, 인터넷 관련 서비스(Internet & Related Services) 240 개, 운송장비(Transport ation Equipment) 164 개 섬유(Textile Mills) 160 개, 전기장비(Electrical Equipment)에서 157 개 일자리가 각각 창출되었다.

○ 투자액(投資額)면에서는 가구(Furniture & Fixture: 2 억 8,700 만 달러), 플라스틱 및 고무(Plastic & Rubber Products: 1 억 3,300 만 달러), 섬유(Textile Mills: 8,500 만 달러)의 순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 **조지아 주 외국인 투자 동향**

국별 투자 동향

	2002~2006년간 총 투자액	투자 기업 종업원 수
한 국	1,664.8	3287
일 본	1,486.7	4423
독 일	393.2	2175
캐나다	364.9	1897
영 국	302.4	2013
오스트리아	195.5	175
프랑스	132.5	775
스위스	61.0	253
스웨덴	50.8	323
오스트레일리아	50.2	310

자료: 조지아 주 정부,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 최근 기아자동차 공장이 조지아 주에 착공되면서 한국은 조지아 주의 1 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는데, 한국기업으로서는 현지 공장을 착공한 기아자동차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크며, SK 텔레콤이 기아자동차 다음으로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였다. 일본 기업들은 Toyo Tire, YKK, 토요타 등의 자동차 및 부품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 지난 2~3 년간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실투자 기준)이 60~70 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7 년은 총 투자건수 20689 건, 투자금액 203 억 달러를 기록, 전년도 대비 금액 기준 약 46.2% 급증세를 보인 바 있다.

○ 2008 년 상반기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은 금액 기준 26 억 달러로 최대 투자 대상국 이었던 중국을 제치고 제 1 의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동향(실투자 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5980	6792	18548	10955	20689	20350	10148	11085
중국	9532	2772	9777	3345	9080	5214	3778	2294
미국	2411	1257	2590	1793	2885	3407	1441	2583
비중	15.1	18.5	14.0	16.4	13.9	16.7	14.2	23.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8. 9월 기준

나. 한국의 미국 내 주요 주별 직접투자 동향

○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내 50 개 주 중에서 한국의 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조지아, 델라웨어, 텍사스 지역으로 이들 5 개 지역이(2007 년 투자 금액 기준) 전체 50 개 주 투자 금액의 84% 이상을 차지한다.

1) 캘리포니아 주 투자 동향

○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는 제품 현지 생산을 위한 제조업 기반의 대규모 직접 투자보다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대기업 투자는 삼성, LG, 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단독법인 설립을 통해 제품 생산활동이 아닌 마케팅, 고객관리, 정보수집 등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항공, 해운사 등 국내 물류기업도 현지 영업활동을 위해 지점 형태로 진출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 대규모 제조업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철강 회사인 Posco 가 미국의 철강 회사 USS 와 합작투자법인 USS-POSCO 를 설립하여, 아연/주석 도금강판을 생산하여 전량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SKTelcom 이 EatrhLink 사와 공동으로 미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인 MNVO 서비스를 “Helio”라는 브랜드로 2006 년 초부터 제공하고 있다.

○ 이 투자는 미국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유형 중 무형 통신서비스 제품을 판매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직접 투자는 무역업, 전기, 전자,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기업으로 현지 마케팅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후 인큐베이팅 기관에 공동 입주와 소규모 사무실 임차를 통해 현지 생산 활동 보다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주별 직접투자 동향(실투자액 기준)

(단위: 건, 천 달러)

주(국가)	2006		2007		2008. 1-6월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미국전체	2590	1,753,290	2885	3407170	1441	2583383
텍사스	127	47269	158	130246	63	988703
뉴저지	121	404033	136	897101	80	459203
켈리포니아	1090	434217	1298	659004	682	422550
델라웨어	52	173829	70	418789	32	287310
뉴욕	170	404033	194	88653	99	173712
알라바마	29	38327	53	70291	29	70255
조지아	124	29109	118	759647	80	31033
워싱턴	133	42692	136	40268	75	24510
펜실베니아	40	14565	35	17297	7	22640
유타	9	4162	20	12330	24	20620
버지니아	42	11505	96	14263	76	16235
메사추세추	30	10,855	25	56825	11	10839
하와이	44	6525	35	69847	20	9310
테네시	8	1274	11	6963	9	7187
남케롤라이나	9	4000	3	480	5	6780
메릴렌드	29	11056	34	12183	13	4532
콜로라도	31	6335	27	7799	11	4211
오레곤	22	4111	33	8215	8	4016
네바다	43	12325	47	18095	15	3695
루이지아나	91	14802	62	14570	5	2690
오하이오	6	2954	10	12362	8	2590
미시건	48	29292	29	16373	12	2297
위스콘신	4	1993	6	1784	1	1700
일리노이	69	16580	68	12325	31	1636
오클라호마	4	652	7	3130	8	973
북케롤라이나	33	5096	24	5373	6	720
플로리다	45	7675	39	6475	8	703
코네티컷	6	1011	22	32497	2	500
로드아일랜드	-	-	-	-	5	459
인디아나	11	1131	6	996	4	455
미네소타	11	2020	8	1500	1	300
알라스카	7	691	6	845	2	202
뉴멕시코	20	4094	8	900	1	200
북다코타	4	400	1	100	1	184
애리조나	43	6595	21	3494	1	150
아칸소	2	350	5	627	3	149
몬타나	-	-	2	200	1	70
아이다호	3	1104	0	0	1	35
켄사스	13	1554	9	930	1	30
아이오와	8	30610	6	1980	-	-
미시시피	3	810	3	614	-	-
미주리	-	-	5	460	-	-
켄터키	3	4150	5	800	-	-
메인	1	130	1	250	-	-
와이오밍	-	-	1	130	-	-
콜롬비아	1	100	2	161	-	-
뉴헴프셔	1	220	-	-	-	-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8. 9월 기준

2) 디트로이트 지역 한국기업 투자동향

○ 한국의 OEM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디트로이트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디트로이트 지역에는 약 50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일부 기계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 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 자동차 부품의 경우 계약이 성사되고 부품의 양산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사 인근에 반드시 1 인 이상을 상주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에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국 기업들은 초기에는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 형태를 취하다가, 거래 금액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대기업(현대 모비스, 만도 등)은 인근 지역에 생산 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2006 년에는 현대 기술연구소를 200 여 명 규모로 확장한 것이 이례적인 대규모 투자이며, 대부분 1~5 인 내외의 직원을 파견하고 현지 직원을 포함하여 약 10 명 내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버지니아 주

□ 2008년 누계 기준 진출 현황

○ 버지니아 주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08 년 상반기 현재 버지니아 주에 진출한 한국 국적 기업은 26 개로 집계되었다. 2008 년 상반기 기준 1623 만 5000 달러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 연도별 투자 동향 (2001-2008)

한국 국적 기업 버지니아 주 투자 동향 (2001-2008)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1	6	8,471	5	8,086
2002	7	4,483	7	4,363
2003	6	3,401	6	2,187
2004	23	27,193	22	24,423
2005	16	7,794	17	6,835
2006	24	21,754	22	9,499
2007	86	14615	19	14263
2008.1-6월	69	17635	19	162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8. 9월 기준

○ 버지니아 주에 대한 한국 국적 기업의 투자 규모는 투자 건수나 금액 면에서 모두 2004 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 년에서 2003 년 사이에는 신고 및 투자 건수가 모두 10 회 미만이었으나 2004 년 이후 두자리 수 이상의 투자건수를 기록했다.

○ 2008 년 상반기에는 이미 2007 년도 전체 투자건수와 같은 19 건에 투자금액도 2007 년도 수준을 넘어섰다.

4) 메릴랜드주 우리기업 투자동향

□ 우리기업 진출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의 메릴랜드 주 업종별 투자 집계에 따르면,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그 뒤를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이 뒤를 잇는다.

○ 한국 수출입 은행의 집계에 파악된 단일 규모 최대의 투자는 A and G Pharmaceutical, Inc 의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250 만 달러 규모의 투자이며, 도소매업 부문에서 E&C Investment LLC (200 만 달러), 제조업 부문에서 Exclmus Biotech Inc. (100 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 연도별 투자 동향 (2001-2008)

한국국적기업 메릴랜드 주 투자 동향 (2001-2008)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1	2	708	1	335
2002	3	3,549	3	3,293
2003	9	2,780	6	2,016
2004	11	26,895	11	7,026
2005	9	11,786	9	8,930
2006	17	10,680	17	10,976
2007	27	11316	20	12,183
2008. 1-6월	9	3757	8	4,5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8.9월 기준

○ 메릴랜드 주에 대한 한국 국적 기업의 투자는 투자 건수 면에서는 2003 년부터, 투자 금액 면에서는 2004 년부터 현격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 투자 건수 면에서는 2001 년에서 2002 년 사이에는 매년 1~3 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해 2007 년도에는 20 건에 1 억 2000 만 달러 투자를 기록한다. 2008 년 상반기에는 다소 투자진출이 소강상태였다.

○ 금액 면에서는 2003 년까지는 적게는 100 만 달러 미만에서 최대 350 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4 년 이후부터는 신고 금액 기준으로 최소 1,000 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 업종별 금액 기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부문은 광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 업, 숙박 음식업, 광업 등이며, 건수 기준으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투자 규제 법률

1) 규제 대상 분야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투자규제는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미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 (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음.

이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되는데 근거법으로는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취득개선법(101조), 1987년 국방비수정법(98조) 등이 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 사업 분야

통신사업	- 무선통신사업 (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같은 장벽 존재
에너지 분야	-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 특허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로 제한됨
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미국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
국가안전보장	- 각종 국방 관련 사업

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1) 뉴욕 주

<table>
<tr><td>인센티브
담당부서</td><td>NYS Tax Department
Taxpayer Assistance Bureau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12227
전화: (1-800) 972-1233</td></tr>
<tr><td>인센티브
종류</td><td>☐ Financial Incentives

기업소재 확정, 신규설비 건설, 현재 설비 확장, 현 활동의 현대화 등과 관련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지원
용도</td><td>.토지, 건물 또는 기계류 및 장비 인수
.사업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Lenovation)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회사의 가용자본(working capital)
.피고용인 직업훈련
.회사의 수출기회 확대 및 생산성 제고</td></tr>
<tr><td>지원
방법</td><td>.사업비 일부 대출 또는 보조금 지급
.대출기관과 협력하여 이자율 보조
.특정한 조건에서 가용자본을 위한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
.대출과 보조금 결합을 통한 인프라 구축 지원</td></tr>
<tr><td>지원
대상</td><td>.제조업자, 서비스업자, 창고 및 유통업자,
.연구개발 회사(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ies),
.관광사업체, 소수민족 및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td></tr>
</table>
</td></tr>
<tr><td>인센티브
종류</td><td>☐ Tax Incentives

○ Investment Tax Credit (ITC)
- 생산설비에 신규투자를 하는 사업체는 투자금액의 10%까지 세금공제를 누릴 수 있음
- 세금공제는 15년간 이월 가능함

○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 연구 및 개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세를 9%까지 공제
- 첨단기술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공제를 부여함

○ Sales Tax Exemptions
-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계류 및 기타장비 구입, 연구 및 개발장비 구입, 연료 및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세금 면제

○ Real Property Tax Abatement (부동산 세금 감면)
- 10년간의 사업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 Economic Development Zone/Empire Zone Tax Credits (EZ)
- 52개에 해당하는 개발지역을 지정하고 이 곳에 입주하는 사업체에 세금 혜택을 포함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td></tr>
</table>

2) 뉴저지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New Jersey Commerce and Economic Growth Commission 전화: (1-609) 292-3837
인센티브 종류	○ Business Employment Incentive Program(BEIP) - 지역에 25명 이상, 기타지역에 75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시, 그 고용으로 인해 증가된 총 주 개인소득세액의 10-80%에 해당하는 BEIP Grant 수혜 자격이 주어짐
인센티브 종류	○ Business Relocation Assistance Grant Program(BRAG) - 뉴저지로 Relocation/Expansion하여 25명 이상의 정규직원 고용 창출 시 NJ Commerce & Economy Growth Commission이 Relocation Grant 부여 가능 ○ Workforce Training Grants - 고용되는 노동자의 학교교육/OJT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Matching Grant allocation 또는 임금 중 일부의 환급 가능 ○ Tax Incentives - 신규 고용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규시설 투자가의 법인세 공제 및 4년 이상의 자본재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가능 ○ Urban Enterprise Zones(UEZs) - 뉴저지 주 내에 29개의 UEZ가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판매세 감면, 실업보험 혜택, 법인세 공제 등 인센티브 향유

3) 캘리포니아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California Technology, Trade and Commerce Agency 전화: (1-916) 845-4669
인센티브 종류	○ Enterprise Zones - 순경영손실(Net Operation Loss) 15년간 100% 이월 가능 - 자격조건에 맞는 고용인원에 EK라 35,100달러까지 세금 공제 가능 - 자격조건에 맞는 기계설비 구입시(최대 2천만 달러) 세일즈 세금 공제 가능
인센티브 종류	○ Los Angeles Revitalization (LARZ) - 건설 인력 고용 시 세금 혜택 - 특정 물건 및 건물 사용에 대한 세금혜택 부여 및 사용료 공제 - 순경영손실(Net Operation Loss)의 100% 이월 가능 - 고용을 증가시킬 때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일리노이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Department of Commerce and Community Affairs 100 West Randolph St., Suite 3-400 Chicago, Illinois60601 전화: (1-217) 782-7884
인센티브 종류	○ Incentive Tax Credit - 소득세를 0.5% 감세하며, 사업시행 후 5년간 감세혜택 부여 - 엘리베이터, 탱크, 보일러, 주요 컴퓨터 장치도 포함하나 토지, 재고품, 개인용 소형 컴퓨터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투자대상 재산은 재고용이 아니라 상용목적이어야 하며 신규 구매된 것이어야 함 ○ EZ Machinery and Equipment Sales Tax Exemption - 사업지대에 5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일리노이 주에 신규 풀타임 고용을 200개 이상 창출하거나, 2,000개 이상의 풀타임 고용을 일리노이 주에 보유하는 경우, 또는 현재 고용의 90%를 일리노이 주에 보유하는 경우) - 사업지대에서 생산이나 조립과 관련되어 직접 사용되는 설비 구입에 감세 혜택

□ 미국 50개 주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워싱턴에 소재한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velopment Agencies(NASDA)에서 발간하는 "Directory of Incentives for Business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참고

업종별 대미 해외직접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

업종	2006		2007		2008. 1-6월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TOTAL	2590	1793290	2885	3407170	1441	2583383
광업	42	85944	62	320760	43	1198259
도매 및 소매업	790	692237	729	1117392	323	688711
제조업	429	516204	509	435124	287	3671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9	132009	232	191467	144	1074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5	56106	156	242258	96	75729
숙박 및 음식점업	494	91636	499	108093	190	3189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	28954	112	765052	46	31822
건설업	13	65602	76	50860	34	287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0	56524	270	51082	100	20647
운수업	27	23147	22	18262	28	11440
교육 서비스업	62	51281	64	32826	44	7822
금융 및 보험업	3	25650	5	27454	13	367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9	7591	46	10743	52	3302
농업, 임업 및 어업	19	4968	25	6272	9	28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	14031	42	19942	17	24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	4297	28	4569	15	1458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2008. 9월 기준

라. 대미 주요 해외직접투자 현황

구분	기업명	투자 금액	투자 업종
2007. 상반기	GB America Invest.	1,000만 달러	금융투자(캘리포니아)
	KOAM Town Develop.	426만 달러	부동산(캘리포니아)
2006. 2분기	삼성전자	3억 3,000만 달러	도소매업
	동아제분	1,000만 달러	제조업
	그라비티	900만 달러	서비스업
2006. 1분기	동양제철화학	1억 7,000만 달러	서비스업
	효성	1억 2,000만 달러	도소매업
	SK 텔레콤	4,000만 달러	통신업
2005. 1분기	SK 텔레콤	8,300만 달러	통신서비스업
	현대자동차(주)	8,000만 달러	자동차도소매업
	한국알콜산업	1,000만 달러	부동산업
2005. 2분기	현대자동차(주)	1억 4,400만 달러	자동차소매업
	다음커뮤니케이션	500만 달러	인터넷서비스업
	농심	500만 달러	음식료품 제조업
2005. 3분기	SK텔레콤	3,900만 달러	통신서비스업
	SK 건설	2,500만 달러	숙박음식점업
	와이비엠시사	2,000만 달러	부동산업
	금강주택	1,400만 달러	건설업
2005. 4분기	코리아가스투자	5,700만 달러	가스업
	만도	1,000만 달러	자동차부품제조업
	대한항공	1,000만 달러	숙박음식점업
	한일이화	900만 달러	자동차부품제조업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2008.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회사 설립

1) 미국회사 법적 형태

다음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조직의 형태 중 기본적인 선택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각 주는 다양한 회사 조직의 형성 및 작용을 규제하는 개별 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률은 주에 따라 아주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중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이 업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개는 세금에 대한 경중이 사업체 의 적절한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특정 형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 형태별 비교

장 점	단 점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 설립이 간단 - 결정권이 오너한테 있어 결정 신속 - 이익은 전부 경영자 몫 - 법적 구속이 적고, 사업해체가 간단 - 세금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 인재 모집의 어려움 - 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외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없음 - 존속기간이 한정 - 사업주의 무한책임
Partnership	
- 설립이 간단 - 조직과 의사결정의 유연성 - 파트너 전원의 능력 및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 자금 조달이 용이 - 파트너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성 - 법적 입장이 명확 - 자본 배분에 의한 이익, 손익을 개인소득 수준으로 과세 가능	- **파트너의 무한책임** - **파트너십 조속기간에 한해 사업이 진행** - **결정권의 분산** - **의견 대립 가능성 상존**
C Corporation	
- 주주는 유한 책임 - 회사는 영구적으로 존속 가능 - 임원 변경이 간단 - 사업 확장이 간단	- 법적 구속이 많음 - 경비 내용의 계약 - 법인과 주주에게 이중 과세
S Corporation	
- 장점은 보통 법인과 동일 - 법인수준의 과세는 없으며 세금 지불은 파트너십에 준함	- 주주 인원수의 제한 (최대 75명) - 다른 법인, 비거주자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 -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음
유한책임 회사	
- 구성원은 보통법인과 같이 유한 책임 - 법인수준의 과세는 없으며, 멤버개인에게 과세됨 - 구성원 수의 제한이 없음	- 존속기간이 한정됨 - 사업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아 법률 적용, 해석이 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가능

2)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개인회사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가장 흔한 기업 경영방식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개인이 어떤 형식적 절차나 조직을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인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기업가가 개인의 명의가 아닌 가공의 명의 또는 여타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자치 행정단위인 카운티(County)의 법원서기에게 기업의 상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 증명원(Certificate of assumed name)에는 사업체의 상호, 주소 그리고 개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개인회사 소유자가 가공명의 또는 여타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당국에 의해 공인된 상호증명서(Certified copy of Certificate of assumed name)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증명서는 영업장소에 눈에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뉴욕 주의 경우 “and Company” 또는 “& Co.”등의 명칭은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

기업주는 기업이익 전부를 향유하지만 그 자신의 행위 및 그의 고용인이 고용의 범위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기업주의 사망 또는 은퇴 시에 개인 회사는 그 존속이 종료된다.

개인회사의 수입은 개인 납세신고 Schedule C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경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총수입으로부터 공제한다. 손실은 그 개인의 여타 소득으로부터 상계하며 그 개인의 전체 납세 의무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개인회사는 설립 초기에는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저렴한 기업 형태이나 개인이 무한 책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기업형태를 선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개인 개업주의 여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보험가입의 필요가 있다.

3) General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한 조합이다. 파트너십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파트너십 합의도 법원에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파트너간의 서면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 각자가 무한의 개인책임을 지며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각 파트너는 자본, 용역(Service) 또는 자본과 용역을 함께 출자할 수도 있으며 파트너는 자본을 꼭 출자하지 않아도 되며 용역만 출자할 수도 있다.

뉴욕주의 경우 영업을 하는 카운티마다 증명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증명서에는 일반 조합의 명칭, 주소 및 각 파트너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파트너십의 구성원에 변화가 있거나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의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증명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각 파트너는 경영 및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각자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특히 중요한 사항의 결정, 예컨대 새로운 구성원의 영입 및 파트너십 합의의 수정에 있어서는 구성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하며, 통상의 영업활동의 범위 내의 사항에 관해서는 단순 과반수 표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 합의로 이 같은 규칙은 개정할 수도 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개인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출자한 자본 외에 파트너가 가진 개인자산 까지도 채무변제를 위한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 고용인 및 파트너의 대리인이 파트너십 영업의 범위 내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게 된다.

연대책임이란 A, B, C 3인의 파트너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A에게 채권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A가 자산이 없으면 B에게 또는 C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A, B, C 모두에게 1/3씩 청구할 수도 있는 책임을 뜻하며, 가장 구속력이 강한 채무가 연대채무이다.

파트너십은 별개의 과세대상 사업체가 아니며 연방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은 Form 1065(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파트너십이 시현한 수익금 액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수익 중 자신의 몫만큼 자신의 소득세 보고에 계상하면 된다. 파트너십의 손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여타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동등하게 이익을 분배하게 되며, 손실의 경우에도 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이 같은 규정 은 변경할 수 있다. 만일, 파트너십 계약이 손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았다면 남보다 많은 자본과 용역을 출자했다 하더라도 손익은 동등하게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파트너십 합의 계약서에는 손익의 분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존속은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다. 파트너십은 파트너 어느 한 사람의 사망, 파산 또는 탈퇴로써 법률적으로 해산되며, 파트너십의 청산 및 종료의 절차가 뒤따른다. 1인 또는 수인의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양한 이유로(파트너가 무능력자 판결을 받거나,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업운영을 규정하는 자세한 서면 합의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
- 세무상의 고려(예를 들면, 부동산의 공동소유)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의 경우 일반조합 선택은 피하는 편이 좋다.

4)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반면,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진다) 경영에 있어서 권한은 없다.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경영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또한 회사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 설립절차(뉴욕의 경우)
-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의 뉴욕 주 Secretary of State 에 등록
- 합자회사는 Department of State 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Certificate 등록일 이후의 일자(등록 후 60 일을 넘지 않음)를 특정했으면 그 날짜에 설립된다.
- Certificate의 접수 등록 후 카운티에서 지정하는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매주 1회 동 Certificate를 광고하여야 한다. 광고한 사실의 증명은 Certificate 등록 후 12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Limited Partnership법에 의하면, 파트너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파트너십 계약은 모든 무한책임 출자자가 서명하여야 하며 유한책임 출자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ㅇ 주의사항
- 합자회사형태는 특히 기업에 대한 출자자들의 출자가 상이한 경우에 다수의 기업 경영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에는 모든 실정법상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합자회사는 IRS(미국 연방 국세청)에 의해 법인화 되지 않은 사단(인적 결합, 단체)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과세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출자자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수도 있다.
- 만일, 무한책임 출자자가 1인일 경우, 회사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순 투자액을 투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RS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5) 주식회사(Corporation)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크기를 불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형성과 운영은 주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주식회사의 존재는 정관의 등록으로 시작되며, 이는 회사의 명칭, 수권 자본의 상세 및 기타 일정한 확인 정보 등을 포함한다. 주식회사의 사업과 업무는 그의 이사회에 의해 조정되며 이사들은 주식회사의 주식 소유자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임원을 선출하며 이들은 매일매일의 사업운영을 감독한다. 보통주식은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표방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등기부 등본)을 각 주의 Secretary of State가 관장하는 Division of Corporation에 등록하는데, 회사 명칭은 기존 회사와 같거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 명칭에는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는 Corporation(약칭 Corp.), Incorporation (약칭 Inc.)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명칭, 회사설립 목적, 사무소의 주소, 존속기간, 발행할 주식 총수 및 주식의 종류, 등록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대리인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Secretary of State의 지명 등이 필요하다.

회사설립에는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회사설립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회사 사규를 제정하여야 하고, 회사 설립인의 설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비록 다른 형태의 기업보다는 많은 정부 규제를 받지만 주식회사가 간단한 경영을 원하는 소기업의 조직 형태로서도 가장 적합한 형태의 기업임은 분명하다.

설립 등기 시에는 주주의 신원을 밝히거나 등록할 필요도 없다. 주주 한 사람이 주식 100%를 소유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임원의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의 경우,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자면 자본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미국에서는 발행주식 100주에 1주당 납입금 1달러면 된다.

회사 운영의 책임자는 미국의 영주권자일 필요도 없으며 미국 외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나 다만, 미국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등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대리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6) 설립지 선택

주식회사 설립지의 법이 주식회사의 내부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설립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내부사항이란 주주와 임원, 주주와 이사,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 주주 상호간의 관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주주의 투표권, 이익배당의 실현, 회사장부의 검사 등이 회사 설립지 법에 의해 규율 되는 사항이며 뉴욕주에서는 BCL(Business Corporation Law)에 의해 규율된다.

회사 설립지를 어느 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설립자는 그 주의 세금에 관한 법규, 공해 방지에 관한 법, 주가 그 주 내에서 영업하는 회사에 부과하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뉴욕주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가 뉴욕 내에서 영업활동(doing business)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 뉴욕에서 영업할 수 있는 Foreign Corporation 자격을 얻어야 한다. 이 자격을 얻으면 뉴욕주의 규제에 따라야 하며 뉴욕주의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다.

- 최근 뉴욕 주 BCL 의 개정으로 뉴욕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보다 좋은 지역이 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식회사가 뉴욕에서 설립될 전망이다.
- 대부분의 경우, 뉴욕 주가 아닌 다른 주를 설립지로 예정하는 경우 델라웨어 주(Delaware)가 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델라웨어 주는 전통적으로 주식회사에 가장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주이기 때문인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중 40% 이상인 1,565 개 회사가 델라웨어 회사이다(2000 년 기준). 또한 500 대 회사 중 1/3 이상이 델라웨어 회사이기도 하다.

7) 세무상 고려

주식회사는 소득세 목적상으로 별개의 과세대상이다. 주식회사의 세제상의 단점은 주주가 이익배당을 수령할 때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를 받는다는 점이다.

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구 분	내 용
개인회사	개인기업주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C에 신고하여 영업관련 모든 비용은 총 수입(Gross Income)에서 공제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여타 의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 총액은 감소될 수 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별개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트너십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파트너십은 information return(Form 1065: 정보신고서)만 제출할 뿐이며 이는 파트너십이 시현한 이익금 총액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각 파트너는 각자 파트너십 이익금 중 자신의 몫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 자체가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납세를 하고 잔여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이익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그 배당 수익에 대한 납세를 하게 된다. 만일 회사가 이익금을 유보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 미 배당 이익금에 대한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파트너십과 유사한 세제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지위가 주어지는 주식회사를 S Corporation 이라 하며, 국세법 Subchapter S Corporation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분리한다.

S Corporation도 정규 주식회사이며 설립 후 소득세에 관하여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S Corporation으로 분류될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같은 선택 절차는 회사설립 후 2개월 15일 이내에 Form 2553을 작성,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하여야 한다.

S Corporation도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며 세제상 대우만 다를 뿐이다. 다만 S Corporation 운영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 전 먼저 법률상 용건에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즉, 주주가 75인 이하일 것, 주주 가운데 비 거주 외국인이 없을 것 등)

주주로서 회사의 월급을 받을 경우, 그 보수가 정당하여야 한다.

주주가 회사에 융자할 경우, 그 융자 사실은 상세히 서류보완을 하여야 하며 원리금 상환을 명기한 약속 어음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회사가 지급한 이자는 세액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된다.

□ 설립절차 (뉴욕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지법인 명 결정, 회사설립과 관련된 주요내용 결정,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 정관 작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주식발생.

① 현지법인 명 결정

○ 일반적으로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또는 Corp./Inc./Ltd.)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법인명과 구별이 가능한 이름이어야 함.

② 회사설립과 관련된 주요내용 결정

○ 설립발기인

○ 등록대리인 (Registered Agent) 및 등록주소 (Registered Office)
- 등록대리인은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반드시 뉴욕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회사여야 함.

○ 주식관련내용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 종류별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유무 여부

○ 주주 및 이사회 구성

○ 회계연도 (Fiscal Year)

③ 등기부 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

○ 회사명
○ 회사설립 목적
○ 회사사무소가 소재할 카운티 및 타운
○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가, 주식의 종류 및 권리의무
○ 소송서류 접수 대리인으로서 뉴욕 주 Secretary of State를 지명할 것

○ 주식회사의 존속기간 등의 필요한 기재 사항을 기입하여 수수료 125달러 및 최소 주식 발행 시 세금액 10달러 등의 비용과 함께 뉴욕 주 Department of State의 Division of Incorporation으로 발송함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이상이 없으면 뉴욕 주 당국은 Filing Receipt를 발급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이 주 당국이 인정한다는 증거로서 사용됨. Filing Receipt를 발급받으면 연방납세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은행 계좌를 회사 이름으로 개설할 수 있음. 이로써 주식 회사는 실질적인 영업 요건을 갖추게 됨.

④ 정관 (By-Laws) 작성

○ 정관은 회사의 운영전반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서류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음.

⑤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 등기부 등본이 접수된 이후에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회사임원의 임명, 주식발행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⑥ 주식 발행

○ 주식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를 주주와 법인간에 체결함. 회사 설립 단계에 있어서 통상 설립발기인 (Incorporator)이 “설립 전 주식청약서”를 주주와 우선 체결함. 동 “설립 전 주식청약서”에 따라서 설립발기인은 주주로부터 법인 설립 및 주식청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게 됨.

○ 등기부 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접수되면 “설립 전 주식청약서” 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설립발기인이 주주에게 양도하고, 이사회에서 “설립 전 주식 청약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⑦ 주식 대금이 납입이 되면, 주권을 발행하게 되며, 통상 주권의 이면에는 동 주식이 미국 증권법에 따라서 등록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동 주식의 제3자에게 매각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뉴욕 주 사업자 등록
○ Governor’s Office of Regulatory Reform Governor Alfred E.Smith Office
○ Building P.O. Box 7027 17th Floor Albany, NY 12225
○ 518-474-8275
○ 800-342-3464

뉴욕 주 세금 관련 문의
○ NYS Tax Department Taxpayer Assistance
○ Bureau W.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
○ 800-972-1233

8)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는 회사화 되지 않은 사업 조직 형태로서, 본질적으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Partnership)의 혼성물이다. 파트너십이 갖고 있는 연방세법상의 유리한 지위와 아울러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유한책임의 유리한 지위를 결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이다.

S Corporation에 가해지는 제한가운데 주주수의 제한(75인 이상의 주주를 가질 수 없다)을 비롯한 여타의 많은 규제가 LL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트너십의 경우, 회사부채에 대하여 무한의 개인 책임을 질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하나, LLC의 경우에는 모든 출자자는 유한책임 즉, 출자범위 내에서의 책임밖에 지지 않는다.

□ 설립절차 (뉴욕의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설립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뉴욕 주 Secretary of State에게 등록함으로써 LLC는 설립된다. 설립시 1인 이상의 사원(Member; 실제로 출자하여 회사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의 명칭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 L.L.C. 등의 약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정관에는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에서 요구하는 바와 유사한 사항 즉, 회사명칭, 뉴욕 주 Secretary of State를 소송서류 접수 목적상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 등이 포함된다. 정관에는 LLC가 1인 또는 수인, 1인의 지배인 또는 수인의 지배인이 경영할 지의 여부를 명기하여야 하며,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특정 사원이 책임지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관이 발효한 후 120일 이내에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1주 1회 출판에 의한 광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는 파트너십의 경우와 유사하다.

LLC 사원(Member)들은 서면의 경영계약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경영계약서는 LLC의 영업일반, LLC 사원 및 지배인의 권리, 권한, 책임,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LLC는 사원 보유지분 2/3 이상의 서면 동의 또는 표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또한 LLC는 경영계약서에 정한 특정 사원의 파산, 사망, 해산, 강제퇴출, 퇴출 및 무능력(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이 발생할 때 해산한다. 다만, 해산사유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잔존 사원지분의 과반수의 표결 또는 서면동의로 LLC는 지속할 수 있으며 경영계약서에 LLC를 지속할 권한이 있으면 이에 따라 LLC를 지속할 수도 있다.

LLC는 여타의 LLC 또는 타주, 외국의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주의사항
LLC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다른 유형의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기존의 기업체를 LLC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LLC의 자산을 양도하는데 따르는 납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세법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LLC 법의 제정으로 인한 부산물로써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사업 형태는 전문직업인을 위한 기업형태이다. 전문직업인으로 구성된 General Partnership 또는 전문직업인들이 Department of State에 LLP를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명칭은 R.L.L.P., RLLP, L.L.P. 또는 LLP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트너는 LLP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미국 내 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법인설립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어야만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 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 진흥국에 등록 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1) 해외지사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등록”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해외사무소

미국내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해당 주정부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여 외국인회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함.

다. 투자방식

미국에서는 단독투자든 합작투자든 별도의 규제나 차이는 없으나 미국 비즈니스법에 의하면 합작투자의 경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1) 파트너십

개인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단체가 독자적인 법의 주체는 아니고 재산의 취득이나 소의 제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트너십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는 파트너들에 한정된다.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을 진다.

파트너십은 개인적인 특성을 많이 지닌 단체이다. 파트너가 누구인가에 따라 파트너십의 신용이나 경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다. 따라서 파트너의 변경이나 사망 등 그 구성원에 변경이 있으면 이것이 청산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각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에 가지는 이익의 이전에 많은 제한이 있다.

파트너들이 개인적으로 외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공공기관에 파트너십의 정관 등을 등록할 필요가 없이 성립된다. 파트너십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각 파트너에게 배분되거나 그 출자액에 합산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해의 파트너들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분율에 따라 계산된 파트너십의 손실이나 이익이 합산된다.

2) limited partnership

두 가지의 파트너, 즉 일반파트너 (general partners)와 한정파트너 (limited partners)로 구성된 파트너십이다. 일반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정의 개인책임을 지고 경영에 참여한다. 반면에 한정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에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 또한 한정파트너는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 만약 한정파트너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한정파트너는 단순한 투자자 혹은 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의 이전이 자유롭지 않고 파트너십이 법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한정파트너는 책임이 제한되는 등 제 3자를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파트너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3)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일부 주에서 인정하는 파트너십의 형태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에 파트너의 한정책임이 인정되는 파트너십이다. 즉 불법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파트너는 출자액의 한도에서만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십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4) limited liability company

회사와 파트너십의 양자를 혼합하여 만든 형태의 회사이다. 이를 인정하는 각 주마다 그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 ○ 사원(members)은 출자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모든 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다. 보통 30년으로 한정된다.

○ 사원의 사망이나 탈퇴 등 그 구성에 변화가 있으면 해산의 원인이 된다.

○ 제 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법에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명칭에 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등의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이익의 양도에 제한이 있다.

○ 사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 이 형태의 회사는 Subchapter S corporation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된다.

5) joint venture

일반적인 파트너십이 계속성을 띤 상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반면에 joint venture는 1회성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파트너십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에 관한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1회성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파트너십과 차이가 있다.

○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각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대리인이다. 각 파트너가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다른 파트너를 구속한다. 반면에 joint venture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다른 joint venturers를 구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한 joint ventures 중 1명의 사망이 joint venture의 해산 원인은 아니다.

다. 공장설립

1) 공장설립과 관련된 법규 및 담당기관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 조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미국 전체의 내외국인 투자를 관장하고 있으나, 모든 주와 워싱톤 DC 도 각각의 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법의 경우에는 상호 유사점이 많으나 일치되지는 않으며, 지방 County 등의 조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사항인 구역제나 교통 등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정하고 있다.

외국 투자만을 관장하는 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는 주로 주정부의 경제개발국(Dept. of Economic Development)이나 국제무역국(Office of Int'l Business)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절차는 없다.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법의 내용은 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 정부로부터 영업 목적 등을 명기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harter)"를 교부 받으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2) 공장설립 절차 및 각종 지원제도

□ 공장설립 절차

미국의 주 지방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투자업체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국제적인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세울 경우 후보지 주 정부, 시 등이 적극적으로 공장 설립을 지원해 준다. 공장 설립 시 주 정부 또는 시에 투자계획서 및 외근 재무제표, 투자금액, 공장부지 면적, 기계 설치, 신규 고용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승인 절차는 없다. 그러나 공장 설립 시 환경 오염, 화재 위험 여부 등은 철저히 규제한다.

□ 각종 지원제도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입지 조건이나 현지 인력 활용 분석과 같은 일반적인 고려사항 외에 현지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과 같은 각종 우대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역시 역외 기업(외국 기업 포함)의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의 무상 임대, 또는 장기 저리 융자와 같은 투자 지원 제도는 주 정부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10 년 무상 임대, 또는 법인세 면제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원 제도가 있다.

○ 주정부별 세부 지원내용은 The Council of Statement Government(www.csg.org)이나,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velopment Agencies(www.nasda.org) 참고

○ 세제지원제도
- 지방정부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폭넓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재산세 면제나 할인, 사업용 자산의 저평가, 단순 통과 재고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조용 원자재 같은 사업용 구매재에 대한 판매세 면제, 주 역외 판매에 대한 소득세율 할인, 특정형태 투자에 대한 선택적 소득세 할인 등이 포함된다.

○ 금융지원
- 금융지원 부문에서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는 미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건설 및 개발촉진을 위한 저리의 금융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규가 있다.
-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업체의 기계나 설비구입, 운전용 자본 조달을 위한 대부금에 직접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 신용법인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뿐 만 아니라 설비, 운전자본, 부채회수(Debt Retirement), 기타 용도에 이르기까지 대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공공기금을 활용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자본을 차입하여 대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외에 많은 주들은 산업용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주정부 기금이나, 신용을 신규 산업의 공장 건설을 지원토록 지역 개발 법인에 일임키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사적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담보 대부금 전액 또는 일부분의 상환을 보증하며, 지역 개발 법인이 주 정부 기금을 직접 대부토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 투자기업(공장설립)이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수출 우대 정책에 따른 각종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ㅇ 기타 지원제도
- 공장 건설을 포함한 각종 개발 목적의 투자에 대해 자치 정부에서는 폭넓은 유상, 무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에 의해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3) 사 례

□ 매사추세츠 주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주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최적의 부지 선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e-mail 또는 홈페이지 (http://www.massecon. com)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투자 기업이나 대리인은 원하는 면적, 천장 높이, 전압 등 찾고자 하는 공장 부지 및 부동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Site Search Form 에 기재 하여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주 내 최적격 공장 부지를 찾아 자세한 정보를 투자가 에게 전송해 준다.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4 억 달러 규모의 독일 BMW 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900 에이커 (약 1,102,200 평) 상당의 공장 부지 구입비 3,700 만 달러 지원(BMW 연간 1 달러의 형식적인 임차료 지불) 공장 부지 정지 작업 및 상하수도, 도로 등 하부 시설 개선을 위한 2,300 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 무상 공업, Sparttanburg-Greenville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한 4,500 만 달러 규모의 주 정부 지원, 향후 20 년에 걸쳐 7,100 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공제

□ 조지아 주

▸ 고용창출 세액공제

ㅇ 아래 6 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창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업, 통신업, 창고업, 연구개발, 관광업, 가공업

ㅇ 최소한도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일자리당 소정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5 년간 법인소득세액에서 공제받게 됨

▸ 투자 세액공제

ㅇ 조지아주 내에서 5 만불 이상 투자하여 3 년이상 영업한 제조업 및 통신업체에 대해 투자자본금의 1~5% 범위내에서 법인소득세액이 공제됨
-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투자 세액공제중 택일해야 함

ㅇ 오염방지, 재활용,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업종의 경우 3%~8%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 조건부 투자세액공제

ㅇ 위 투자세액공제 제도 해당 기업은 조건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신 이용할 수 있으나 최소투자액은 500 만~2,000 만 달러 이상임.

○ 예를 들어, 해당 법인이 1 억 2,500 만 달러를 투자하고 조건부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향후 10 년간 투자액의 10%인 1,250 만 달러까지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년 실제 공제액은 매년 결정되는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동 법인의 과거 3 년간 평균 법인소득세 납세액이 30 만 달러였고 조건부 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한 해인 4 년째 법인소득세 납세액이 330 만 달러로 증가한다면 이 해의 공제액은(330 만-30 만) x 90% = 270 만 달러임.

○ 다음해인 5 년째의 납세액이 530 만 달러라면 공제액은 450 만 달러가 됨.

○ 그러나 6 년째 법인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30 만 달러에 그칠 경우 이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음.
- 즉, 과거에 비해 향후 10 년간 급격한 이익증가가 예상될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 본사/본부 세액공제

○ 1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북미지역 본부 또는 본사를 조지아에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본사에 5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본사/본부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동시 적용 불가)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 소정의 기준비용을 초과하는 R&D 비용에 대하여 초과분의 10% 금액까지 법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공제제도와 같이 이용할 수 있음

▸ 재교육 세액공제

○ 500 달러 범위 내에서 종업원 1 인당 재교육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업종에 해당됨

○ 교육과정은 주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신기술 또는 신장비 관련 내용이어야 함

▸ 탁아세액공제

○ 고용주가 탁아시설을 설치 또는 매입할 경우 비용의 100%, 종업원의 탁아비용을 직접 지원할 경우 비용의 75%를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액 한도는 연 법인소득세액의 50% 전업종에 해당되며 탁아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면허가 있어야 함

▸ 고속성장 중소기업 세액공제

○ 고용창출 세액공제 대상인 업종의 법인소득세액 1,500 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중 과세대상 소득이 3 년 연속 매해 20% 이상 성장한 기업에 해당됨

○ 다른 공제제도와 같이 이용가능하며 공제한도는 다른 공제제도에 의해 공제되고 남은 세액의 50%

- 연속 3 년간 연 20% 성장했을 경우 3 년째와 2 년째 순과세대상 소득의 차액이 공제액이 됨.

□ 플로리다 주

▸ Qualified Target Industry Tax Refund (QTI)

- 주에서 지정한 특정 고부가가치 창출 업종(Qualified Target Industry)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판매세, 보험료, 무형자산세, 종가세등을 환급 해주는 제도

- 정규직 일자리 하나당 기본적으로 3,000 달러의 환급금이 산정되며, 기업 입지 및 임금수준에 따라서 최대 8,000 달러까지 환급가능

- 총계 5 백만 달러가 한계이며 1 년에 총 환급금액의 25%까지 수혜가능

▸ Capital Investment Tax Credit (CITC)

- 수혜대상은 바이오의료, 금융서비스, IT, 반도체, 운송장비 제조업종으로 최소 투자금액은 2,500 만 달러이며 100 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20 년까지 매년 법인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 대상 기업의 투자금액과 법인소득세액에 따라 연간 세액공제액이 결정됨

▸ High Impact Performance Incentive Grant (HIPI)

- 주지사가 지정한 바이오의료, 금융서비스, IT, 반도체, 운송장비 제조업종에서 주경제에 다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규 투자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을 원하는 기업은 프로젝트 개시전 주정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개시후 3 년간 100 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1 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어야 보조금을 수혜할 수 있음

- 투자기업의 영업 활동 개시시점에서 약정 보조금의 50%가 지급되고 고용창출 및 투자목표가 달성될 때 전액 지급

라. 관련 정부기관

1) 미 연방정부 투자유치 기관 (CFIUS)

□ 개요

- 기관 명칭: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s in the US)

- 웹사이트: http://www.treas.gov/offices/international-affairs/exon-florio/

- 동 기관은 투자 유치 업무보다는 외국인이 투자 시 등록하고 미국 기업 인수 시 이를 허가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의 투자관련기관 중에서는 유일한 기관인 것으로 파악됨.

ㅇ 소속 기관: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의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International Affairs 내 Offi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에 소속됨.

ㅇ 조직 구성
- 동 위원회는 12 개 연방정부 부서에서 지정한 대표(Representative)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Inter-Agency 형태임.
- 위원들은 국무부, 상공부, 국방부, 국토 방위부, 대법원, 관리 예산국, 무역 대표부(USTR), 경제 자문 위원회 등에서 지정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ㅇ 실무 총괄자
- Ms. Gay Hartwell Sills: Staff Chair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 Offi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epartment of Treasury
- 주소: 1500 Pennsylvania Avenue, N.W., Room 4201 NY, Washington, DC 20220, USA
- 전화: 1-202-622-9066, 1-202-622-1860
- E-Mail: sills@do.treas.gov

□ CFIUS의 주요 기능 및 권한

ㅇ 기능 및 권한
- CFIUS 는 Exon-Florio 수정법에 근거해서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미국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하는지를 판단해서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

ㅇ 기능 및 권한을 통해 본 투자유치기관의 위상
- CFIUS 는 “Exon-Florio 수정법”에 의해 매우 융통성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으며 이로써 미국의 “안보”(Security)와 "자산"(Assets)"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음.

□ 참고

물론 동 수정법은 미국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Open)되어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안보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음. 일례로 올 여름 중국 석유 공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정유회사 Unocal Corp.을 인수하려고 입찰에 참가했는데 CFIUS의 심사과정이 너무나 철저해서 스스로 입찰을 포기했고 대신에 미국 회사인 Chevron Corp사가 심사를 받지 않고 인수한 사례도 있음

-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CFIUS 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으나 재무부 차관인 Robert Kimmitt 씨는 “CFIUS 의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를 축소하자는 의견에 반대 한다”고 못 박았음.

2) 미 주정부 투자유치 기관

대부분의 州 「경제개발국」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경제 개발국은 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매년 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진출을 희망하는 州의 웹사이트를 찾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서울에 미국의 15개 주가 사무소를 개설해서 해당 州에 대한 기업진출의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무소에서 투자촉진 프로그램의 개요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 Alaska (www.alaska.or.kr)
- California (www.california.or.kr)
- Florida
- Georgia (www.georgia.or.kr)
- Idaho
- Indiana
- Missouri (www.missouri.or.kr)
- New Jersey
- North Carolina (www.ncstate.co.kr)
- Oklahoma (www.ok-topia.com)
- Oregon
- Pennsylvania (www.pennsylvania.or.kr)
- Utah Virginia (www.virginia.or.kr)
- Washington

전체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Association of American State Offices in Korea (www.asok.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들 기관은 주로 해당 주 소재 기업들의 수출지원과 한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된 기업 유치책으로는, 입지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제공, 토지 취득을 할 때에 지주와의 교섭, 토지 취득 후의 세제상의 특전 제공(조업개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 세금 등의 감면 등), 회사설립 또는 공장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 제공(변호사, 회계사, 건설업자의 소개 등도 포함), 공장건설 비용에 관한 특별융자 설정, 종업원의 고용과 훈련에 관한 편의 제공(급여와 훈련 비용에 대한 일정 기간·일부 부담 등), 외국에서 파견된 사원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 제공(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친숙해지기 위해 본인 및 가족을 위한 보조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특별수업·과외활동의 보조 등도 포함)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혜는 해당 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고용창출과 세금원 확보가 목표인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

□ 사례: 매사추세츠 주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주 경제기술국 산하에 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Investment(MOITI, 홈페이지 http//www.mass.gov/moiti)라는 기관을 두어 州 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투자 매력지역으로서의 매사추세츠 주를 홍보할 뿐 아니라, 州 정부, 市 및 비영리기관 으로부터 파견된 전문가들이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질때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州내 외국인 직접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실무 총괄자
  -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Department of Business & Technology 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 Mr. Robert DeC. Ward (Executive Director)
  - 주소: State Transportation Building 10 Park Plaza Suite 4510 Boston MA 02116
  - 전화: 1-617 973 8650, 직통: 1-617 973 8669
  - 팩스: 1-617 227 3488
  - E-mail: Robert.d.ward@state.ma.us

3)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법률분야

○ Hodgson Russ LLP
- 주 소: 60 East 42nd Street New York NY 10165
- 전 화: 1-212 661 3535
- 팩 스: 1-212 972 1677
- 홈페이지: www.hodgsonruss.com
- 서비스 분야: 비즈니스 및 리스, 이민, 국제거래, 상표, 지적 소유권,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세금, 개인상해, 민사 및 파산 분야

○ Jiacchino J. Russo Law Offices
- 주 소: 215-45 Northern Blvd #7 Bayside NY 11361
- 전 화: 1-718 225 2666
- 팩 스: 1-718 225 4461
- 서비스 분야: 이민법, 고용법, 상법

○ Fox Rothschild LLP
- 주 소: P.O. Box 5231 Princeton NJ 08543
- 전 화: 1-609 895 6638
- 팩 스: 1-609 896 1469
- 홈페이지: www.foxrothschild.com
- 서비스 분야: 고용법

□ 회계분야

○ Deloitte & Touche LLP
- 주 소: 1633 Broadway New York NY 10019
- 전 화: 1-212 492 4000
- 팩 스: 1-212 492 4154
- 홈페이지: www.deloitte.com
- 서비스 분야: 회계, 세금, 파이낸싱, 투자 전반 컨설팅

○ Weinick Sanders Leventhal & Co., LLP
- 주 소: 1375 broadway 16th Fl New York 10018
- 전 화: 1-212 869 3333
- 팩 스: 1-212 764 3060
- 서비스 분야: 회계 및 감사, 조세, 파이낸싱

○ 이현주 공인회계사
- 주 소: 150 Main Street Suite 4, Reading MA 01867
- 전 화: 1-781 944 2442
- 팩 스: 1-781 944 2772
- 서비스 분야: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법인설립과 해체 회계처리 및 감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각종 라이센스 신청업무

□ 부동산 분야

ㅇ Global Realty Group
- 주 소: 217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 전 화: 1-201 585 8151
- 서비스 분야: 부동산 거래, 투자컨설팅, 임대 및 경영 서비스

ㅇ Starreal & Group
- 주 소: 36 N. Plank Road New Burgh NY 12550
- 전 화: 1-212 202 0441
- 홈페이지: www.starealgroup.com
- 서비스 분야: 부동산 투자

□ 투자 컨설팅

ㅇ AXA Advisers
- 주 소: 1633 Broadway New York NY 10019
- 전 화: 1-212 397 4000
- 팩 스: 1-212 707 1805
- 홈페이지: www.axa.com
- 서비스 분야: 주로 금융분야 투자 컨설팅

ㅇ Weinick Sanders Leventhal & Co., LLP
- 주 소: 1375 Broadway 16th New York NY 10018
- 전 화: 1-212 869 3333
- 팩 스: 1-212 764 3060
- 서비스 분야: 투자 전반에 걸친 컨설팅

마. 그 외 투자 관련 사이트 (펜실베니아 주를 중심으로)

미국 투자 정보
www.dced.state.pa.us/
www.paopen4business.state.pa.us
www.dced.state.pa.us/PA_Exec/DCED/business/gatdir-invest.htm
www.teampa.com/main/header_top.asp
www.koz.state.pa.us/
www.inventpa.com/koz/index.html
www.teampa.com/selectsites/default.htm
www.dced.state.pa.us/PA_Exec/DCED/business/gat.htm
www.state.pa.us/PAPower/
www.area-development.com/
www.ipl.org/youth/youth/stateknow/skhome.html
www.csg.org/links/index.html
www.sec.gov
www.pasbdc.org/
www.pasourcenet.com/
www.pa100.state.pa.us/Registration.htm

농업 정보
ipmwww.ncsu.edu/opmppiap/subcrp.htm
노동 정보
www.dli.state.pa.us/index.html www.dol.gov/dol/public/agencies/agency.htm www.li.state.pa.us/pennsafe/index.html
교육 정보
www.ed.gov www.whitehouse.gov/fsbr/education.html
통신 정보
www.ntia.doc.gov www.usia.gov/topical/global/gii/gii.htm
교통 정보
www.dot.gov www.bts.gov/btsprod/nts
의료 정보
www.whitehouse.gov/fsbr/health.html www.cdc.gov/nchswww/default.htm
자유무역 관련 정보
www.customs.treas.gov/imp-exp2/comm-imp/ftz/index.htm
환경 정보
www.dep.state.pa.us/dep/efacts/GuideToDEPPermits/ www.epa.gov www.usia.gov/topical/global/environ/content.htm
금융 정보
www.area-development.com/taxinprg.htm
조세 정보
www.revenue.state.pa.us/index.htm www.irs.ustreas.gov/prod/cover.html www.area-development.com/fininprg.htm
법인 설립 관련 정보
www.paopen4business.state.pa.us www.dos.state.pa.us www.usdoj.gov/atr/
지적재산권 관련정보
www1.uspto.gov/
이민, 비자관련
www.muslaw.com www.immigrationsupport.com/ www.cohenlaw.com www.usavisaoffice.com www.visa-imin.com

6. 투자입지여건

가. 개 요

미국의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와 개념이 약간 다르다. 우리나라의 창원기계공단, 부산 사하지구공단 등과 같이 제조공장이 밀집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고용확대를 위해 Enterprise Zone이나 Industrial Park라는 명칭의 일정한 지역 내지는 단지를 설정하여,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각종 사무실, Warehouse, Distribution Center, 연구시설 등 비즈니스 주체들이 밀집하여 있으며, 미국의 광활한 영토의 특징상 공단 내의 기업체 수는 그리 많지 않고 에이커 단위의 대규모 부지를 1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밖에 유사한 개념으로 Free Trade Zone을 들 수 있겠으나, 이 경우도 제조업보다는 창고 및 보관업, 가공, 수리, 검사 등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며, 국경선 근처 등 세관과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FTZ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며, 각 지역별 FTZ 내의 혜택은 연방정부의 Foreign Trade Acts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미국에는 모든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단지는 없다. 또,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고도로 발달되어 각 소규모 지방도시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특유한 형태의 Enterprize Zone내지는 Industrial Park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2가지 형태가 중복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들 산업단지의 숫자는 각 주별로 Enterprize Zone는 30~40개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Industrial Park의 경우 주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200여 개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대규모 주의 경우 수천 개에 달한다. Free Trade Zone은 미국 전역에 총 211개가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혜택은 주 지방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주어지며, FTZ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FTZ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세제 면에서 주 별로 상이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오레곤 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Enterprise Zone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공해관리, 에너지 효율 제고와 관련된 연구분야의 경우 기업세를 공제해 준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Enterprise Zone 입주업체들에게 최초 2,000만 달러 상당의 기계류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운영손실에 대해 100%까지 15년에 걸쳐 비용 처리를 인정해준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단지 내 부지매입, 사업허가, Utility비용 등에 대한 할인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 밖에 주정부 차원의 근로자 양성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인력(예: Semiconductor Workforce Consortium)을 지원해 주며, 각종 기금활용 및 저렴한 이자의 각종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제조공장, 연구시설, Warehouse등 형태를 불문하고 미국 내의 투자진출을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현지 정부로부터의 혜택은 물론, 각종 Infrastructure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개발이 완료된 공단에 입주하는 방법이나 부지조성만 완료한 지역을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특히, 오레곤 주는 네바다 주와 함께 미국 내 주 지방 판매세가 없는 단 2개 주 중 하나라는 점에서 투자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정부에서도 신규 유망 시장으로 지정한 바 있다. 1996년 하이닉스가 1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조립공장을 오레곤 주 Eugene시 Willow Creek Industrial Park에 설립, 현재까지 원활히 가동함에 따라 해당 주정부 및 지역 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나. 산업단지 예

- LAS VEGAS TECHNOLOGY CENTER(하위정보 사례로 선택)
- LAS VEGAS ENTERPRISE PARK(상동)
- SANTA ANA ENTERPRIZE ZONE(상동)
- BURLINGTON HILL BUSINESS PARK(상동)
- BAYVIEW BUSINESS & INDUSTRIAL PARK(상동)
- ANACORTES INDUSTRIAL PARK
- GREEN HILL TECHNOLOGY PARK
- FAIRVIEW INDUSTRIAL PARK
- PORT OF DALLES INDUSTRIAL PARK
- PHENIX INDUSTRIAL PARK
- WESTECH INDUSTRIAL PARK
- RIVERGATE INDUSTRIAL DISTRICT
- SAN XAVIER INDUSTRIAL PARK & TUCSON FOREIGN ZONE(#48)
- THE ALAMENDA IMPORT/EXPORT CENTER
- TRI-CITIES SCIENCE & TECHNOLOGY PARK
- NORTH LOOP INDUSTRIAL PARK
- JENNINGS COUNTY INDUSTRIAL PARK
- NORTHRIDGE INDUSTRIAL PARK
- SHERRILL INDUSTRIAL PARK
- SOUTHSIDE INDUSTRIAL PARK
- SUNBELT INDUSTRIAL PARK
- TWIN LAKES BUSINESS PARK
- CENTRE SOUTH RIVERPORT/INDUSTRIAL PARK
- JOSEPH MASON BUSINESS PARK
- TINICUM INDUSRIAL PARK
- CHICHESTER BUSINESS PARK

다. 공단 세부정보(예)

1) LAS VEGAS TECHNOLOGY CENTER

- 소재지: CHEYENNE AVE. & TENAY WAY, LAS VEGAS, NEJADA, U.S.A
- 부지면적: 1,052,168m2(약 260 에이커)
- 조성: LAS VEGAS CITY GOVERNMENT
- 공단성격: 라스베가스 시정부가 계획하고 개발한 기술센터로서 전자, 통신, 의학 등 첨단산업 관련기업들이 주로 입주

ㅇ 입주비용:
- 분양가격: 15 달러/sf,
- 임대가격: 1.50 달러/sf, 총 입주규모에 따라 시정부 측과 협상 가능

ㅇ 교통 등 인프라 현황
- 항만: L.A 항구에서 43km
- 철도: UNION PACIFIC RAILROAD 에서 10km 이내, 각종 화물선공급가능
- 공항: 공단부근에 공항이 3 개 있으며, 국제공항으로부터 20km
- 통신: 시내(SPRINT), 장거리(AT & T, MCI, SPRINT 등 선택가능)
- 도로: US 93, US 95, INTERSTATE 80 등의 고속도로가 주변을 통과
- 전력: NEVADA POWER 에서 공급, ¢8.11/KW
- 용수: LAS VEGAS VALLY WATER DISTRICT 공급, 종류별 매우 다양

ㅇ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일자리를 찾아 네바다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감안 할 때 인력 조달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음.

ㅇ 외국기업 입주업체: 유럽의 일부 국가 및 대만업체 1 개사 입주

ㅇ 한국입주 기업명단: HANOBO NEVADA INC.

ㅇ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규제사항은 없으며, 입주 시 분양, 임대가격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할 경우 시 정부의 심의로 결정됨.

ㅇ 우대 조치: 네바다 주는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 물품세 등의 세금 없음. 입주 업체에 대해 재산세를 평가 자산 100 달러당 3.02 달러로 감세 혜택 부여(여타 지역: 3.64 달러)

ㅇ 공단 연락처
- 업체명: CITY OF LAS VEGAS, OFFICE OF BUSINESS DEVELOPMENT
- 주소: 400 EAST STEWART LAS VEGAS, NEVADA 89101 U.S.A
- 전화: 702)229-6551
- 팩스: 702)385-3128

2) LAS VEGAS ENTERPRISE PARK

ㅇ 소재지: MARTIN LUTHER KING BLVD. & VEGAS, NEVADA, U.S.A

ㅇ 부지면적: 299,463m2(약 74 에이커)

ㅇ 조성: LAS VEGAS CITY GOVERNMENT

ㅇ 공단성격: 라스베이거스 시정부가 계획한 비즈니스 센터로서 주로 사무공간, 물류센터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들이 입주 가능

ㅇ 입주비용: 분양가격: 4 달러/sf(대지가격 기준이고, 여기에 INFRA 관련 비용은 내용에 따라 다르게 추가됨.)

ㅇ 교통 등 인프라 현황
- 항만: L.A 항구에서 435km
- 철도: UNION PACIFIC RAILROAD 에서 5km 이내, 각종 화물선공급가능
- 공항: 공단부근에 공항이 3 개 있으며, 국제공항으로부터 15km
- 도로: US 93, US 95, INTERSTATE 80 등의 고속도로가 주변을 통과
- 전력: NEVADA POWER 에서 공급, ¢8.11/KW
- 용수: LAS VEGAS VALLY WATER DISTRICT 공급, 종류별 매우 다양
- 통신: 시내: SPRINT, 장거리: AT&T, MCI, SPRINT 등 선택가능

ㅇ 인력 조달 및 임금 수준: 일자리를 찾아 네바다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인력 조달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음.

ㅇ 외국 기업 입주 업체: 확정된 업체는 없음.

ㅇ 입주 자격 및 규제 현황: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규제 사항은 없으며, 입주 시 분양, 임대 가격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할 경우 시 정부의 심의에 의해 결정됨.

ㅇ 우대 조치: 네바다 주는 법인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 물품세 등의 세금이 없음. 입주 업체에 대해 재산세를 평가 자산 US$ 100 당 US$ 3.02 로 감세 혜택 부여 (여타 지역: US$ 3.64)

ㅇ 공단연락처
- 업체명: CITY OF LAS VEGAS, OFFICE OF BUSINESS DEVELOPMENT
- 주소: 400 EAST STEWART LAS VEGAS, NEVADA 89101 U.S.A
- 전화: 702) 229-6551
- 팩스: 702) 385-3128

7. 노무관리

가. 직원 채용

○ 직원 채용 규모와 업무 내용 그리고 직위가 결정되면 직원을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광고, 소개,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고 대학마다 있는 직장 알선 사무소(Job Placement Office)에 의뢰하거나 전문적으로 직장알선을 하는 업체 (Employment Agency, Recruiter, Head Hunter)를 통해 물색할 수도 있다.

○ 직업 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을 미리 선별 하여 보내주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보통 연봉의 10% 내지 15% 정도가 되며, 핵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30%까지 하기도 한다.

○ 미국에서 직원 채용 광고 문안 작성시 나이, 성별, 신분 관련 문구 등의 차별적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복지 혜택

○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장세, 실업보험, 재해보험, 의료 보험 등 외에도 어떠한 복지 혜택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

○ 의료보험 혜택은 고용주에 있어 금전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복지 혜택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의료 보험 수가가 많이 인상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의료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적용되는 혜택을 줄이거나 직원의 공동부담액을 늘리는 추세이다.

○ 보험 금액은 직원 외 가족의 포함 여부, 의사와 병원의 선택 폭,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 의사나 병원 방문 시 직원의 부담액(Co-Pay & Deductible), 처방약, 치과, 한방, 안경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 2007 년 현재, 직원 본인만 의료보험을 받을 경우 저렴한 보험은 월 수백 달러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을 포함하는 좋은 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월 천 달러 상회하기도 한다.

2) 은퇴연금 (Pension)

○ 은퇴연금 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선택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직원 연봉의 몇 퍼센트에서 25%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 은퇴연금제도는 회사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원이 은퇴 후 일정연금을 평생받도록 규정하고 매년 그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회사가 매년 직원 은퇴기금에 적립할 의무액을 정해 놓고 적립하는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가 있다.

○ 직원의 은퇴혜택이 고정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최근 고령화 추세와 기금의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제도이다. 매년 회사의 적립액이 정해진 경우, 직원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기금의 투자성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또한 회사의 비용부담이 확정적이고 한정적인 은퇴연금 제도에는 Profit Sharing Plan 이 있는데 회사가 직원 급여의 25%까지 적립해 줄 수 있다. 매년 적립하는 급여 비율은 바꿀 수 있으며 이 제도는 회사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제도이다.

○ 최근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연금인 401 (k)Plan 은 직원이 본인 급여에서 연간 1 만 5,500 달러(2007 년 기준)까지 적립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직원 적립액에 대해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퇴연금제도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비용과 직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감안하여 효과적인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인사관리 요령

□ 직원을 고용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혹은 임시 거주자를 제외한 미국 내 노동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노동이 허용되지 않은 자 또는 INS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고의로 고용한 경우

○ 직원을 고용하면서 Form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에 첨부된 서류 중 노동 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잘못 확인한 경우

○ 직원고용 결정과정에서 신청인의 출생지나 국적에 의거하여 차별을 했을 경우

고용주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법 위반 시에는 고용인 1인당 100~1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 인사관리 규정

○ 개인적 서비스 고용계약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은 임의 고용관계이다. 이것은 고용 주와 피고용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인사관리 규정은 묵시적 고용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더 이상 임의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계약상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 만일 인사관리 규정에 피고용인은 해고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된다고 명시되었다면, 단계적인 징계가 해고에 앞서 내려질 것이며,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이 해고 사유로 명시될 것이다. 이 경우, 피고용인을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고용주의 무제한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상기한 고용주의 해고권한제한은 고용관계가 임의 고용 관계임을 명시한 뚜렷하고 구체적인 면책조항의 삽입으로 무효화 될 수 있다. 인사관리 규정의 다른 규정인 임금 인상, 복지 혜택, 고용기간과 고용조건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이 될 지 모른다. 따라서 그러한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추가 면책 조항과 고용정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고용주의 권리를 천명하는 것은 그 같은 약속을 무효화 하는데 필수적이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묵시적 고용계약이라고 판결하였다.

○ 기업 경영자의 구두 발언
○ 고용주의 문서화되지 않은 인사관리 관행과 절차
○ 기업의 과거 관행이나 절차와 연관되어 일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급된 특정문서

○ 그러나, 인사관리 규정에 고용주의 임의적인 해고권한 보유 등을 포함해 구두약속에 대한 문서화된 면책조항, 피고용인은 기업의 과거 관행과 정책들이 지속되리라고 믿어선 안 된다는 경고 등은 묵시적인 고용계약 관계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만일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과 다른 문서에 면책 조항과 고용주의 권리 보유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조항들을 삽입한 채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새 인사관리 규정이 예전 인사관리 규정보다 우선시 됨을 문서로 피고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지어,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했을 때 반드시 주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공공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피고용인 해고 방법

○ 피고용인 해고결정을 위한 적합한 문서를 구비해야 한다. 다음은 인사기록부의 '기록사항' 과 '기록 금지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기록사항
- 모든 승진 기록, 봉급 인상, 업무평가 기록 한다.
- 피고용인과의 회의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안을(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나온 피고용인에 대한 불평) 메모로 남긴다. 이때 단순한 결론이 아닌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 징계 결과 뒤 업무수행 내용과 업무수행 향상 또는 근무태도 개선 등의 점검 기록을 포 함한 피고용인의 모든 경고와 징계를 문서화한다
- 의사 진단서 등 결근에 대한 피고용인의 해명을 포함해 결근과 결근 날짜, 무단 결근, 반복적인 지각 등을 기록한다.

○ 기록 금지사항
- 회사 변호사의 서신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지 않는다. 만약 같이 보관했을 경우,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보장 특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소송이 걸려올 경우 변호 사 서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 불확실하거나 미완성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 사실만 기입하며, 결론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 1 년 이상 미 기록 공백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 업무능력 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 없이 임금 인상 또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 차별 대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 하에서 피고용인이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된 징계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해고 결정은 반드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해고 결정에 대한 변론, 그리고 단계적인 징계 등 기업의 인사방침과 인사관리 규정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 해고가 결정되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 해고를 통보한다.

3)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선호(Legally Permissible Preference for Korean Nationals and Korean-Americans)

○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나 그들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고용 차별을 금하는 연방 및 주 법의 적용을 받지만, 감원 시 적용되는 2 가지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다.

○ **한미친선, 통상, 항해조약**은 한국회사가 미국 내 영업 활동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간부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 및 주법은 출생국에 기초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약은 미국 내 한국 회사들이 한국인을 선호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이 조약은 외국회사들이 다른 형태의 차별, 즉 감원과 고용에 있어 한국인을 선호하면서 연령과 성 차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인이 한국 내 모회사의 해외 근무방침에 의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비 한국인이 한국인을 그대로 두면서 자신이 감원 대상이 된 것이 불법적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 한국인들의 그 같은 주장에 대비, 한국 회사들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해외 근무제도를 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 만약 한국인이 미국 내 현지법인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국회사들은 자회사에게 한국인 고용 조건 등을 지시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고용문제에 관한 그 같은 통제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미국 내 자회사들이 상기한 조약이 부여하는 차별 주장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이 조약이 부여하는 보호혜택에 대한 다른 제한들 또한 신중히 살펴 보아야 한다. 먼저 보호혜택은 한국회사나 미국 내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직" 에만 적용된다.

○ 따라서 간부를 따라 미국에 온 개인 비서는 감원 시에 조약에 의한 보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또한 회사에 고용된 한국계 미국인들도 똑 같은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간부직이 아닌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계 미국인들은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 조건"이란 면제 하에서 보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고용차별법의 또 다른 예외는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조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란 개념이다. 이는 어느 특정 인종이나 출생국, 성, 종교에 속한 성원이 되는 것이 특정 직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이상의 한 그룹 에 멤버가 되는 것이 해당 직업에 있어 아주 필수적일 때만 이 예외는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예외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좁게 적용되고 있다.

○ 한국 회사와 미국 내 회사들에게 이 예외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다. 이는 많은 미국 내 고용인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문화와 사회적 규범, 영업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미국 내 한국인이나 한국의 모회사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같은 나라 출신이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예외는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내 한국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라. 최저 임금

○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은 시간당 6.55 달러며 주 별로는 워싱턴 주가 8.07 달러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정해 놓았다. 알라버마, 루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법정 최저 임금을 정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국 각 주의 최저 임금은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 수준 보다 높은 편이고 해당 주에 위치한 사업체는 해당주의 최저 임금 수준에 적용 받는다.

미국 주별 최저 임금

(단위: 달러)

주명	최저임금	주명	최저임금	주명	최저임금
미국 연방	6.55	루지애나	없음	오래건	7.95
알라버마	없음	매인	7.0	펜실베니아	7.15
알래스카	7.15	메릴랜드	6.55	로드 아일랜드	7.40
애리조나	6.90	매사츄세츠	8.0	사우스 캐롤라이나	없음
아칸사스	6.25	미시건	7.40	사우스 다코타	6.55
캘리포니아	8.0	미내소타	6.15	테네시	없음
콜로라도	7.02	미시시피	없음	텍사스	6.55
커넷티컷	7.65	미주리	6.65	유타	6.55
델라웨어	7.15	몬타나	6.55	버몬트	7.68
콜롬비아 디스트릭	7.55	네브래스카	6.55	버어지니아	6.55
플로리다	6.79	네바다	6.85	워싱턴	8.07
조오지아	5.15	뉴햄프셔	6.55	웨스트 버어지니아	7.25
하와이	7.25	뉴저지	7.15	위스콘신	6.50
아이다호	6.55	뉴멕시코	6.50	와이오밍	5.15
일리노이	7.75	뉴욕	7.15	아메리칸 사모아	2.68-4.09
인디애나	6.55	노스캐롤라이나	6.55	괌	5.85
아이오와	7.25	노스 다코타	6.55	프에토 리코	4.25
캔사스	2.65	오하이오	7.0	버진 아일랜드	6.15-7.25
켄터키	6.55	오크라호마	6.55		

자료: 미국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 2008. 7월 기준

마. 주요 직종별 중간 및 평균 임금

○ 미국 주요 직종별 평균 임금 수준은 아래와 같으며 직종별 임금 수준은 주 별 또는 대도시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정 지역의 자세한 평균 임금 수준은 http://www.bls.gov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미국 평균 세일즈 매니저의 시간당 임금은 약 47.36 달러이며 최고 경영자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약 67.22 달러로 나타났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2.40 달러 이며 생산직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14.37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직종별 관리자급 직종

(단위: 달러)

주요 업무 및 직위	시간당 평균 임금
Management Occupations	42.52
Chief Executives	67.22
General and Operations Managers	45.90
Advertising and Promotions Managers	39.06
Marketing Managers	49.03
Sales Managers	47.36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	49.21
Financial Managers	46.45
Compensation and Benefits Managers	36.68
Training and Development Managers	38.55
Human Resources Managers, All Other	43.24
Industrial Production Managers	39.41
Purchasing Managers	39.16
Transport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Managers	36.12

컴퓨터 관련 직종

(단위: 달러)

주요 업무 및 직위	시간당 평균 임금
Computer and Mathematical Occupations	32.26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tists, Research	45.21
Computer Programmers	32.40
Computer Software Engineers, Applications	38.24
Computer Software Engineers, Systems Software	40.54
Computer Support Specialists	20.86
Computer Systems Analysts	33.86
Database Administrators	31.54
Network and Computer Systems Administrators	30.39

사무실 관리 관련 직종

(단위: 달러)

주요 업무 및 직위	시간당 평균 임금
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Occupations	14.28
Switchboard Operators, Including Answering Service	11.07
Telephone Operators	14.92
Bill and Account Collectors	14.36
Billing and Posting Clerks and Machine Operators	13.87
Bookkeeping, Accounting, and Auditing Clerks	14.76

생산관련 직종

(단위: 달러)

주요 업무 및 직위	시간당 평균 임금
Production Occupations	14.37
Managers of Production and Operating Workers	23.66
Coil Winders, Tapers, and Finishers	12.65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ssemblers	13.05
Electromechanical Equipment Assemblers	13.71
Engine and Other Machine Assemblers	17.38
Structural Metal Fabricators and Fitters	15.09
Fiberglass Laminators and Fabricators	12.64
Team Assemblers	12.50

주: 동 자료는 200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7년 3월 기준 가장 최근 자료임.
자료: 미국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

8. 조세제도

가. 개요

○ 미국의 50 개 주(워싱턴, D.C., 푸에프토리코 포함)는 모두 연방세제와 다른 세제를 갖고 있으며, 종합 과세제이며, 자기신고제도인 것이 특징이다. 각 주의 세제는 제각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 및 지방세제는 세수입을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에 각각 30% 정도씩 의존하고, 나머지 10%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이와 대조적으로, 연방세제는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소득세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기타 세제인 상속세, 증여세, 물품세, 관세 등은 연방세제 중 소득세에 비교하여 징수규모가 작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연방법인 소득세이며, 그 다음으로는 주법인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인소득 세의 순으로 되어있다.

1) 소득세 과세기초

○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47 개 주는 거의 연방소득세제에 준거하고 있어 주는 세금 기초로 연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 3 개 주는 주의 과표 조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 주소득세제와 연방세제와는 별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과세기준 할당

○ 2 개 주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는 외국과 어느 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 수익의 어느 부분을 어느 주가 과세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각 주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종류의 할당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징세하는 주 내의 해당 사업체의 판매고, 자산, 지불급료 총액의 일정 부분을 결정하여 이들 3 요소의 평균치에 사업체의 전과세대상 소득을 곱해 징수하는 주에 할당되는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는 "공식적 할당"방식을 거의 모든 주가 채택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어느 주 또는 외국에 걸쳐있는 납세자의 미국 원천소득 및 외국원천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분리회계 방식을 사용한다. 분리회계방식은, 각각의 수입 및 지출항목은 국내 또는 외국 어느 것이 천인가 분류하여 연방 세제는 미국국내가 거주자인 회사는 전세계 수입에 대해 과세하지만, 기타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 지불한 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한다(외국원천소득액에 대한 공제에 제한 있음). 연방세제는 일반적으로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통상 내지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반해, 주는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 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나. 세의 종류

1) 연방세

○ 미국의 국세인 연방세는 내국세입법(IRC)에 의거, 과세된다. 내국세입법은 미국세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총 2,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소득관계법만도 1,000 페이지 이상이다. 내국세입법 해석은 재무부가 공포하는 Regulation(시행규칙)에 의해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빈번한 개정으로 세제내용이 아주 복잡하다. 미국의 세금 관련 소송은 아주 많은데, 미 조세재판소(Tax Court), 연방지방재판소(District Court), 미 청구 재판소(Court of Claim)에서 나오는 세무상 판례가 연방세를 실무상 해석하는 데 주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 특히 미국의 연방정부가 모든 시민과 거주인, 회사, 기타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가 연방소득세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없지만 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의 소득은 순소득의 개념이므로 총 소득에서 그와 같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 연방소득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잡는 것에 있다. 즉 미국의 회사, 시민, 거주자 등 납세자들은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건 외국에서 발생했건 상관없이 전세계 수입원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세 종류

<table>
<tr><th>종 류</th><th>내 용</th></tr>
<tr><td>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td><td>내국법인에 대해선 미국 내외의 전체소득이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내의 소득 및 국외의 특정소득이 과세대상

세율 (2008)
(단위: 달러)
<table>
<tr><th>법인소득</th><th>세율</th></tr>
<tr><td>50,000까지</td><td>15%</td></tr>
<tr><td>50,000 초과 75,000 까지</td><td>7,500 + 25%</td></tr>
<tr><td>75,000 초과 100,000 까지</td><td>13,750 + 34%</td></tr>
<tr><td>100,000 초과 335,000 까지</td><td>22,250 + 39%</td></tr>
<tr><td>335,000 초과 10,000,000 까지</td><td>113,900 + 34%</td></tr>
<tr><td>10,000,000 초과 15,000,000 까지</td><td>3,400,000 + 35%</td></tr>
<tr><td>15,000,000 초과 18,333,333 까지</td><td>5,150,000 + 38%</td></tr>
<tr><td>18,333,333 초과</td><td>35%</td></tr>
</table></td></tr>
<tr><td>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td><td>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의 전체소득이,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독신, 배우자 사별자, 세대주, 부부 공동 신고자, 부부 개별 신고자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rs.gov 참조 요망</td></tr>
<tr><td>기타세</td><td>- 상속세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납세자가 생존해있는 동안 이루어진 증여나 유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연방세로서 최하 15%에서 28%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키 위해 매년 인상하고 있다. 동 세는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기업에게도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반드시 원천징수하여 정기적으로 연방국세청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 관세 및 물품세(Custom Duties and Excise Tax): 20 세기 초까지 연방정부의 주요 세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득세의 보조 정도에 그치고 있다.</td></tr>
</table>

2) 주세 및 지방세

○ 미국의 조세구조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 또는 지방자치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조세의 80% 가까이가 연방세를 점하고 있다. 세종류나 과세기준이 주마다 여러 종류이고 다양하다. 텍사스, 네바다, 워싱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주는 법인세가 없으며, 이들 주와 함께 알래스카 주와 플로리다 주를 포함한 7 개 주는 개인소득세가 없다.

○ 또한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오레곤 주는 매상세, 사용세가 없다. 세율은 주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일반 법인세율이 9.3%인데 반해, 미시간 주는 2.35%에 불과하다. 고정자산세, 매상세 등 다른 세율도 마찬가지로 주마다 다르고, 고정 자산세의 경우 군, 시, 학교, 구 등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주세 및 지방소득세 종류

종 류	내 용
법인소득세	- 과세소득은 대체로 연방세법에 의해 산정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소득세 과세액 산정에 있어 합산과세방식 (Unitary Taxation)을 채택하고 있어 당해 주에의 진출기업에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캘리포니아 주는 1993 년에 주세법을 개정하여 Unitary 세제와 관련하여 Water's Edge 선택 시에 부과하던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납세자가 전세계적인 소득에 대한 Unitary 과세를 피하기 위해 Water's Edge 를 선택하는 경우 큰 부담 없이 미국 내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판매/사용세 (Sales and Use Tax)	소매행위의 대부분에 대하여 주 및 지방정부가 소매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시켜 소비자로부터 징수
영업허가세	소득세와는 별도로 자기 주에서 회사형태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 하여 준 것에 대하여 매년 부과
개인소득세	대부분의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는 독자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곳은 알래스카, 클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및 와이오밍 주다. 코네티컷, 뉴햄프셔 및 테네시 주는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이익)에만 과세하고 있다. 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소득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 내 원천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각 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르며 최고 과세 소득의 2.8% (펜실베니아 주) 에서 11% (몬태나 주)까지 다양하다.
재산세 (Property Tax)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규정은 주마다 다름. 지방 행정구 역내에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과세하며, 그 세수로 경찰서, 소방서, 공립 학교, 도서관 등 지방행정관서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마련
기타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외에는 개인소득세, 실업보험세(Unemployment Insurance Tax),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Unitary 과세를 미국 외 국가의 관계 회사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제Unitary과세로 우리나라의 대미진출기업에 문제가 되고 있다.

다. 미국 조세의 특성

1) 고백에 의한 납세

미국 세제의 운용은 철저히 납세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에 의존하고 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과세소득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하여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중장부

세무회계가 재무회계와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규정되고 인식되고 있다. 즉 어떤 거래가 재무회계 원칙에 의해서 소득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회계 원칙으로는 소득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감가상각의 방식이나 연한도 판이하게 다르다.

3) 돈 있어야 세금 낸다

현금이 있을 때 납세하게 한다는 원칙이 있다. 또 어떤 거래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도 현금을 몇 해에 나누어 받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금을 받을 때까지 미루어 준다.

4) 원천징수와 거래 보고

세금의 징수책임을 지급인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즉 고용주는 임금지급인으로서 피고용자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연방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있다.

라.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1) 외국회사에 대한 과세

○ 외국회사(foreign corporation)란 미국 바깥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미국 내의 활동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납세의무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외국회사의 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조세협정의 규정이 없는 한 미국은 외국회사의 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30% 과세는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아무런 사업활동도 벌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경비공제도 인정되지 않으며 30% 과세는 총 수입에 대한 과세이다.

2) 고정사업장과 사업소득

○ 국제조세협정이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 법칙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다. 즉, 협정국의 기업이 협정상대국으로부터 고정사업장 없이 벌어들이는 사업수득에 대해서 협정 상대국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란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 장소의 고정, 그와 같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한 사업활동영위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미조세협정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의 예로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점포, 광업현장, 6 개월을 넘게 소요되는 건설현장 등을 들고 있다.

3) 합작투자

○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지점이나 현지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미국인이나 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그 형태는 현지법인, 파트너십,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등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 미국 연방세법에 의하면 파트너십이 미국에서 영업 행위를 하면 그 파트너십의 모든 파트너들도 미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LLC는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합작투자 형태이다. 법률상의 법인이지만 주주가 유한책임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인데 미국세법에서는 이를 파트너십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이 미국의 LLC 에 투자할 때는 세무문제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요약

○ 외국 기업은 미국의 영업과 실제 관련된 영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받는데, 미국 내 영업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30%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미국과 해당국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약세율에 의한다.

○ 외국기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국 내에서 발생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해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미국 내 독점적인 판매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지법인형태의 지사는 자회사보다 과중한 과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사의 손실은 기업으로의 편입 시(upon incorporation) 이월되지 않는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환율 제도

다른 통화에 대한 미 달러화의 환율은 외환시장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미국의 관계 당국은 질서 교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혹은 달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미국은 외환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나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 지불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로는 쿠바, 북한, 리비아 관련 당국이나 국민들과의 거래, 그리고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란 정부기관, 이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자 및 이란 정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자의 특정 자산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상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외환 관리 제도

직접적인 외환관리법은 없고, 적성국과 금융, 상업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즉, 재무부는 적성국 통상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및 대통령의 긴급 경제 제재 조치 등에 의거, 쿠바, 북한, 베트남, 리비아, 이라크 등 적성국과의 직/간접적인 금융 및 상업 거래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50 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는 "The Trade with the Enemy Act of 1950"에 의거 대 북한 교역이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이 극히 부진하며, 동법에 의거 제정된 "The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은 북한에 대한 판매, 구매, 북한특정기관 또는 개인, 대북한 여행, 구좌 및 자산, 선물발송 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만, 99 년 7 월 중 북미간 베를린 합의 및 2000 년 6 월 일부 경제 해제 조치에 따라 완화되었으나 2001 년 4 월 30 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상당부분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05 년 9 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혐의와 관련해 2006 년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북한의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 전세계 약 24 개의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관계의 업무관계를 중단한 바 있다.

적성국과 교역규제 주요내용

무역 거래	외국자산관리규제, 쿠바자산관리규제에 기초해 쿠바, 북한과의 직/간접거래는 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무역 외 거래	국외 지불, 송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쿠바, 이란, 수단, 그리고 북한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한 지불. 송금 또는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취는 승인. 허가 필요
자본 거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대외자본 지불은 외환관리 대상이 아니며, 또한 대내외 직접투자, 증권투자도 제약 받지 않는다. 단, 은행 소유권에 관계된 투자는 연방은행법규에 따른다.
여행자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는 출입국자는 출입국 시 세관에 신고

다. 자금 조달

○ 미국에서 자금 조달 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며 금융 기관에 따라 다양한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 미국에서는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신용대출과 지분을 양도하여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 현지법인이 사업 개시 초기연도에는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부분 어려우며 한국의 본사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증 대출은 미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현지법인 설립 후 2~3 년간의 은행 거래 및 사업실적을 토대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방법으로는 Venture Capital 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Venture Capital 은 위험도에 따라 대략 30~80%의 ROI (Return On Investment)를 기대한다.

Ⅴ.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 미국은 2008 년 상반기 경상가 기준 GDP 가 14 조 3,125 억 달러, 1 인당 GDP 가 대략 4 만 5000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연간 수입액만 1 조 8,000 만 달러를 넘고 있으며, 한국의 제 2 수출 시장으로 한국 수출의 16.8%를 차지하는 등 무역. 투자 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 일부 수입규제는 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자 경쟁이 치열한 표준화된 시장이다. 미국시장에서의 성패여부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하는 척도이다.

미 소비자 4등급으로 분류 (기준: 소득수준)

그 룹	내 용
BUDGET 그룹	- 연간소득 3 만 5,000 달러 이하인 하류 또는 서민계층은 BUDGET 그룹으로 분류된다. 주로 흑인층으로 판매제품은 베이식한 디자인(BASIC DESIGN)에 대량 저가품(BUDGET 은 싸구려, 또는 떨이 뜻도 포함)이 주이다. - 한국에서 수출되는 저가의류. 전자제품의 주요 타겟 시장으로 브랜드 선호도가 비교적 낮아 자가브랜드 영업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BUDGET 그룹은 미 전체 소비자의 2 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산 주 고객이었으나, 최근 중국,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의 저가제품으로 구매가 전환 추세이다. 이들은 특히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경우 충동구매 성향이 높다.
MODERATE 그룹	- 연간소득이 3 만 5,000-7 만 5,000 달러에 이르는 중산층은 MODERATE 그룹으로 분류된다. 미 전체 소비자의 70%에 이르는 주력소비계층으로 저가격 고품질 (LOW PRICE HIGH QUALITY)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미 소비자 구매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 최근 한국의 대미수출상품 대부분이 이 그룹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 가격대 제품이 주류이다 - MODERATE 그룹은 합리적이고 검소한 구매를 하고 있고, 디자인. 패션 등 품질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까다롭고 개성이 강한 편이어서 다품종 소량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다양하고 높은 편이어서 비교적 치밀한 브랜드 영업을 전개해야 하는 고객 층이다.
BETTER 그룹	- 연간소득이 7 만 5,000-10 만 달러에 이르는 상류층은 BETTER 그룹으로 분류 된다. 비교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상류계층으로 고급제품을 선호하며 이들은 미국의 서민 또는 중산층 등이 성능과 기능을 중시하여 일제차를 타도 무방 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과는 달리 3,000CC 이상의 대형차를 타고 30 인치 이상의 대형 TV 를 구매하고 있다.
BRIDGE 그룹	- 연간소득이 10 만 달러 이상인 상류계층은 BRIDGE 그룹으로 분류된다. 대저택과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전통과 명예를 내세우며, 최고급 상품을 선호한다.

나. 소비자 성향

○ 미국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대중 소비문화에 익숙해 있어 소득의 대부분이 그들이 필요한 물건구입이나 생활비용으로 지출되나, 미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은 매우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며, 실리 위주여서 충동구매나 전시구매를 하지 않는다.

○ 미 소비자들의 구매원칙은 BCD 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기존 상품보다 뭔가 색다르고(DIFFERENT), 보다 나은 품질(BETTER)의 상품을 보다 싸게(CHEAPER) 구입하려는 성향 이 있다.

○ 지역별 소비 성향은 동북부 및 중, 서부지역 소비자들이 남부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구매 패턴이며 특히 중, 서부지역은 남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다양한 인종 및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살기 때문에 대체로 유행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 미 바이어들의 오더패턴은 크게 시즌오더와 비 시즌오더로 대별된다. 시즌오더는 크게 봄/ 여름과 가을/겨울 2 개 시즌으로 나뉘어진다. 대개 봄/여름보다는 가을/겨울시즌이 기간이 길고, 미국 내 구매량이 많은 관계로 오더량이 많은 편이다. 특히, 가을/겨울시즌 오더와 비시즌 오더인 크리스마스 특수오더가 겹치는 경우 구매량이 대폭 증가된다.

○ 패션제품의 경우, 가을시즌 오더가 FALL I, FALL II 로 세분화되어 있다. 시즌오더는 계절에 따른 평상수요를 겨냥한다.

○ 비시즌오더는 대개 휴일과 여름/겨울 휴가, 개학기(BACK TO SCHOOL), 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구매수요를 겨냥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특수가 대표적이다. 크리스마스 특수는 연말휴가와 겹쳐 대개 그 기간 12 월 중순부터 1 월 초순까지 약 20 일간 겹쳐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의류를 대량 구매한다.

○ 크리스마스 외에도 미국의 주요 휴일인 WASHINGTON'S BIRTHDAY (2 월 22 일), MOTHER'S DAY (5 월 둘째일요일), 독립기념일(7 월 4 일), 추수감사절(11 월 넷째 목요일) 등 주요 휴일 기간에 왕성한 구매가 이루어진다.

○ 휴일특수 다음으로 구매력이 왕성한 기간은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일어나는 RESORT 특수가 부각되고 있다. 소형전자제품, 텐트 등 각종 여행용품이 대량 판매되는데, 전후 베이비 부머들이 주력소비층으로 급성장하면서 수요규모 급증 추세이다. 미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8 월 말과 2 월 말의 소위 "백 투 스쿨"시즌에는 신발, 의류, 문구 등의 판매가 활기차다.

○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하는 태풍, 돌풍, 홍수 등의 자연 재해 시 복구에 필요한 건자재, 철못 등의 특수가 발생한다.

○ 이 밖에 선거, 각종 축제, 수퍼볼 등의 빅게임 기간에도 해당지역별로 일시적인 수요 증가 현상 나타난다.

다. 시장특성

1) 민간소비지출이 GDP의 2/3를 상회하는 소비대국으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 미국인들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대중문화에 익숙해 있어 소득의 대부분이 필요한 물건 구입 이나 생활비용으로 지출되나, 미 소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의 소비성향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며, 충동구매나 전시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소득 계층별 소비패턴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차별화된 시장이자, 유통시장 발달로 수요자 주도의 시장구조가 정착되어 품질 고하를 막론하고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2006 년 말 기준, 연간 1 인당 GDP 는 4 만 2,500 달러이나 가계소득이 7 만 5,000 달러를 상회하는 상류층이 28%에 육박한다.

○ 연간 가계소득이 미국가계 중간소득 규모인 3 만 5,000 달러를 하회하는 서민/빈민층이 38%에 달해 방대한 규모의 저가품시장 존재한다. 서민/빈민층은 저가의류, 완구, 신발, 잡제품, 전자제품의 주요 소비층으로 브랜드선호도가 낮아 과거에는 한국산의 주 고객이었으나, 최근 중국. 동남아, 멕시코 등 후발개도국 저가제품으로 구매를 전환중이다.

○ 연간 가계소득 3 만 5,000~7 만 5,000 달러 미만의 중산층은 미 전체 가계의 33%에 달하며 저가격, 고품질을 요하는 전형적인 구매특성 보유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검소한 구매가 특징이지만, 디자인. 패션 등 품질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까다롭고 개성이 강한 편이기에 브랜드 선호도도 매우 다양하고 높다.

2) 단일국가 시장이면서 마치 유럽대륙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된 시장

○ 미국시장은 전세계수출의 1/10 을 받아들이는 세계최대 단일국가시장 이면서 미국의 50 개 주가 이상적으로 연합된 국가로 볼 수 있다. 세계 4 위(러시아, 캐나다, 중국 다음)의 영토라는 방대한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문화배경, 산업구조, 소득수준이 상이하다.

○ 경제력(산업 생산)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독립국가로 볼 때 미, 일, 독, 불 다음의 5 대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반면, 아이다호 주는 캘리포니아 주의 1/30 에 불과함.

○ 산업면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처럼 첨단반도체, 컴퓨터, 항공기에서부터 농산물까지 전 산업분야 가 발달한 주가 있는가 하면, 농업부문이 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이르는 아이다호 같은 주도 있다.

3) 백인이 주류이나 히스패닉, 동양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다인종 시장

○ 2004 년 인구 센서스 기준(전체 인구 29,500 만명) 미국에는 75.1%가 비 히스패닉계 백인(히스 패닉계 백인포함 백인 인구 88%)인구이며, 나머지 31.8%는 흑인이 12.3%, 히스패닉계가 13.5%, 동양계가 3.6%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히스패닉 및 동양계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 미 상무부는 비 히스패닉계 백인 인구구성비가 2004 년 75.1%에서 2050 년에는 5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미 최대인구를 점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 인구통계학적이나 사회구조변화 측면에서 구매력이 왕성한 장년기 베이비붐 세대가 90 년대 이후 최대인구를 점하고 있고, 미국가정 해체 가속화, 맞벌이 부부 증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2 년 대표적인 연령별 구성비전망을 보면 57 세 이상의 2 차 대전, 대공황 세대가 28.1%, 37-56 세의 베이비붐 세대가 35%, 26-35 세의 X 세대가 17.7%, 15-25 세의 Y 세대가 19.2%를 점유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의 10 대는 가정해체 가속화, 맞벌이부부 증가로 생활전선 진출확대로 주요한 구매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10 대들은 새로운 패션과 음악 등으로 사회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 2005 년 미국사회는 맞벌이부부 증가로 연간 가계소득이 10 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이 1990 년보다 2 배나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요패턴 및 쇼핑방식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0 만 달러 이상 가구 수: 90 년 215 만 가구, 2000 년 430 만 가구). 이에 따라, 사회생활 및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다수 여성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컴퓨터, 전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보다 편리한 쇼핑방식이 보편화되고, 고소득 여성인구 증가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가 자동차. 고급 주택, 요트, 밍크코트, 보석 등 고가 일류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맞벌이 부부의 연령별 평균 소득

(단위: 달러)

연령층	2000	2005
25세 미만	19,333	26,198
25세-35세	31,281	46,554
35세-45세	40,862	59,122
45세-55세	46,207	70,149
55세-65세	33,474	60,976
65세 이상	17,751	35,310

자료: 미 통계청,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5) 전시회가 마케팅의 필수요소로 정착

○ 연간 5,000 회에 가까운 전시회가 동부지역에서는 뉴욕, 중부지역에서는 시카고, 서부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애너하임, 남부지역에서는 달라스, 아틀란타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순수 트레이드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도 연간 1,000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같이 수많은 전시회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적인 방대성을 커버하기 위해 유사 전시회가 지역을 달리하여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전시회가 그만큼 생활화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편인 첨단전자제품 전시회는 1 월의 라스베가스 동계 전자쇼(WINTER CONSUMER ELECTRONIC SHOW), 6 월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하계 전자쇼(SUMMER CONSUMER ELECTRONIC SHOW), 11 월 라스베가스 COMDEX SHOW 가 대표적이다.

○ 대형 전시회는 주로 지역별 거점도시에서 개최되고, 인근지역의 유통업체나 산업재 수요자 등이 집중적으로 구매상담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는 업체들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가 될 수 있고, 참가업체와 내방 바이어를 통해 불과 며칠사이에 그것도 한 장소에서 신제품 개발 동향과 수요패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미국 업체들이 전시회를 중요한 마케팅기회로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은 개별 바이 어들을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엄선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보다 작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길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미국의 광고전문사인 CAHNERS ADVERTISING RESEARCH 사 조사에 따르면, 미 국내 기업기준으로 볼 때 유망바이어를 직접 방문하는 비용이 건 당 평균 292 달러가 소요 되는 반면, 전시회를 참가할 경우 유망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건 당비용(전시회제반 참가비용)이 185 달러에 불과하여 거의 절반이상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된다.

6) 유통 업체간의 대대적인 매수 및 합병 (M&A) 소매유통업의 대형화의 가속화

○ 유통혁명의 급속한 진행과 유통업체간의 대대적인 매수 및 합병(M&A) 소매유통업의 대형화 가 가속화되고 있다.

○ 유통 구조면에서도 신제품개발의 가속화, 소매점에서의 스캐닝 시스템 정착, 자가 상표(PB)의 사용 확대, 소매부문에서의 판촉 및 광고확대 등을 배경으로 생산부문에서 소매유통 부문 으로의 시장지배력이 지속 이전되고 있으며, 소매유통점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동일 매장 내에 가능한 한 모든 상품을 취급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슈퍼 스토어, 슈퍼 웨어 하우스, 슈퍼 전문 디스카운트 점, 하이퍼 마켓 등 명칭부터가 대규모 인상이 짙은 보다 확대된 업체들이 기존 유통업체를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 이와 함께, 소매유통시장에서의 기술변화도 빨라지고 있는데, 많은 대형소매업계에서 신속 대응(QR: QUICK RESPONSE)시스템, 홈쇼핑을 가능케 해주는 컴퓨터를 사용한 대화식 쇼핑 기술(INTER-ACTIVE SHOPPING TECHNOLOGY)을 채용하고 있다.

○ 상기 QR 시스템은 재고부담 경감과 시황변화에 신속 대응키 위한 것으로써 WAL-MART, SEARS 등 많은 대형유통점이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매업체들이 판매상황에 따라 공급업체에 수시로 주문을 하고, 공급업체는 이들의 수시적인 다품종 소량발주에 신속히 대응해주는 시스템이다.

7) 유통혁명은 온라인을 이용한 E-COMMERCE혁명

○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 년 온라인 소매매출(Retail E-commerce)은 878 억 달러로 706 억 달러였던 전년에 비해 무려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매 매상 3 조 7,153 억 달러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동기의 1.9% (매상 3 조 7,153 억 달러) 보다 증가한 것이다.

○ 또한, 미국가정의 급속한 하이테크화 진전으로 PC, 케이블 TV, 팩스기기 등이 필수품화 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시대 도래로 대화형 TV, 광케이블, 비디오 온 디멘드(VIDEO ON DEMAND) 관련 서비스 산업의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 미국가정의 85%가 VCR 보유, 64%는 케이블 TV 시청, 컴퓨터를 통해 전자식으로 수표를 결제하고, 온라인 서비스망을 통해 쇼핑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재택근무 내지는 가정의 오피스화가 주요 흐름이며, 정보통신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이에 투입 하고 있고, TV 오락프로 시청은 줄이고 있다.

8) 미국산/수입산에 대한 미 소비자 선호도

○ 미국인들은 수입품보다는 미국 상품을 더 선호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 시에는 상품의 원산지 보다는 품질 보증, 가격, 품질, 제품특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5 가지 대표적 요소인 제품 품질 및 서비스 보증(워런티), 가격, 특색, 원산지(제조국) 중 원산지의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미소비자의 1/3 만이 구매하기 전에 상품의 원산지를 항상 살펴보며, 52%는 가끔씩 살펴보아 되도록 이면 미국상품을 살려고 하지만 워런티 및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며, 상품특색 및 품질이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 따라서, 미국산이라도 워런티, 가격, 특색, 품질에서 수입품에 뒤떨어지면 굳이 미국산을 구입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편, 미 소비자들이 상품구입시 원산지를 꼼꼼히 따지는 정도는 상품 종류마다 차이가 났는데, 승용차, 의류 등이 원산지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들이 상품구매 시 원산지를 따지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승용차 54%, 의류 51%, 전자제품 31%, 가정용 기구 15% 순으로 조사된다.

○ 또한, 미 소비자들의 80% 이상이 미국상품 구입을 수입품보다 좋아하지만, 미국 상품이 수입품보다 10%이상 비쌀 경우 64%만이 여전히 미국상품을 구입하겠다고 답했다.

라. 지역별 특성 (미 주요 메트로폴리탄 지역)

○ 각 지역 개관, 인구구성, 경제환경분석, 근접시장, 수송시스템, 노동력, 교육제도, 주택환경, 주요 국내외 기업 입주현황, 생활의 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의 10 대 메트로 폴리탄 지역 중 떠오르는 상권은 휴스턴, 아틀랜타, 캘리포니아 남부 리버사이드 지역으로 나타났다.

미 국내 주요 메트로폴리탄 지역 기업환경 및 특징

메트로폴리탄 지역	특징
뉴욕 시, 북부 뉴저지, 롱 아일랜드 (뉴욕 시)	- 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기업 옹호 활동 전개 - 정보통신기지(TELEPORT)개발 활발한 추진-STATEN 섬, 브루클 린의 ARMY TERMINAL 및 메트로테크 등 - 뉴욕 시는 교육 시스템의 낮은 질, 젊은층의 높은 실업률, 높은 주거 비용 등이 단점 - 세계 금융, 패션, 언론, 예술, 광고 중심지로 고도 숙련된 고급 인력의 유인력 제공/ 국제화된 고급인력확보 유리
로스엔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로스엔젤레스)	- 주요 산업의 경제적인 구조조정(군수산업, 항공 산업 등) - LA-롱비치 항구는 시애틀-타코마 항구보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2 배 많음 - SAN GABRIEL VALLEY 는 창고 및 유통업 중심지로 부상 - SAN CLARITA, ANTELOPE VALLEYS 는 새로운 소매업 육성사업 지구임 - 기업, 주민들의 탈 캘리포니아 움직임으로 지난 수년간 주택 가격 상당폭 하락 지속
시카고, GARY KENOSHA (시카고)	- 다양한 산업이 발전/ 904 개 외국계 기업, 44 개 외국계 은행이 소재하여 외국 기업의 주요 투자 중심지로 발전되고 있음 - 많은 일자리가 COOK COUNTY 와 같은 교외지역으로 이동 중 - 시카고의 장점은 수송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위치 - 미시간호 또한 해외해상운송통로로 이용되고 있음
워싱턴, 볼티모어(워싱턴)	- 정부를 상대하는 업종이 주요 비즈니스임 - 관광, 교육도 주요산업임/ 통신, 의료, 생명공학, 전자업종 기업들이 메트로폴리탄지역에 강력한 거점 설치 중 - 교외지역 중심으로 서비스업종의 큰 폭 신장세 지속 전망 - 국내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온 젊은 층(IN-MIGRANT OF YOUN- GER),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유입 확대가 이 지역 인구 증가 주요 원인
휴스톤, GALVESTON BRAZORIA (휴스톤)	- 최근 들어 경제의 다양화가 크게 진전 - 보건서비스, 법무, 기타 전문서비스분야 급성장 - SHELL OIL, EXXON 등 대형석유회사 본거지이자 6 개 석유화학 기업이 이 지역으로 이전, 에너지 산업의 중추산업화 재추세 - NAFTA 발효등에 따른 미, 멕 무역확대, 중남미 경제 성장으로 양질의 항구를 갖춘 휴스톤이 국제무역센터화가 진행 중임
필라델피아, WLMNGTON, ATLANTIC CITY(필라델피아)	- 고용 창출이 금융서비스,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소매, 보건서비스까지 확대, 첨단 기술 분야도 신장세 - 주택 가격의 변화가 심함 - 델라웨어 강 연안지역 재개발, 대중교통망과 연계된 새로운 컨벤션 센터 건설 등에 시 지도자들 자부심
보스톤, WORCESTER, LAWRENCE (보스톤)	- 하버드, MIT 등 유명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고급기술 인력에의 의존도가 높은 DIGITAL EQUIPMENT CO., PRIME COMPUTER 등이 소재 - R&D 산업, 첨단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
디트로이트, ANN ARBOR, FLINT (디트로이트)	- 디트로이트 경제는 미 자동차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 - 미시간 주는 캐나다 관련 비즈니스가 많으며, 캐나다와의 교역 확대로 향후 10 년간에 걸쳐 남부 미시간 주 지역은 2 만 5,000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전망 -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부품수출 지속 확대전망
애틀란타	- 약 350 개의 국제적 규모의 기업들이 아틀란타에 밀집 - 은행, 금융,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교육 서비스 풍부 - 풍부한 노동력 및 인근시장 또한 장점 - 2 시간 비행거리 내 미국 인구의 80%가 살고 있으며, 아틀란타 공항은 세계에서 2 번째로 분주함(육상, 항공 교통요지). - 지역상권형성 가속화, 통신서비스, 정보기술과 같은 종합 정보서비스가 이 지역 주요 산업이기에 정보화 시대인 21 세기에 부상 예상

주: 2008.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자료
자료: ERNST & YOUNG, "ALMANAC AND GUIDE TO U.S. BUSINESS CITIES", 2004. 12월

마. 한국 상품, 한국에 대한 인지도

○ 한국 상품 이미지 개선으로 국가 이미지 지속 개선 중이다. 한국에 대해 남북대치 상황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전자, LG 전자 등의 성과와 현대자동차의 품질 이미지가 개선되는 등 제품 이미지 개선으로 국가 이미지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 미국인이 보는 한국 사람은 여러 아시아인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과 화합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 한류 열풍 이나 한국인들의 자긍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미국인은 많지 않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 아 국가들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경제적, 문화적 자긍 심에 대해 미국 식자 층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물가정보

뉴욕 생활여건 조사표(2008. 3 월 기준)

항 목	조사 품목(기준)	가 격(USD)
1. 의복(6 개항목)		
1.1 순모양복	1 벌 / Pierre Cardin 남성용 상하의 순모 100%, 춘추복	1,500
1.2 넥타이	1 개 / Ninaricci 실크 100%	110
1.3 와이셔츠	1 벌 / 현지유명브랜드 면 100%(긴팔, 흰색)	100
1.4 양말	1 켤레 / 현지유명브랜드 면 100%	10
1.5 코트	1 벌 / Burberry 롱코트(추동형)	1,300
1.6 스타킹	1 켤레 / 현지유명브랜드 밴드타입	17
2. 식료품(9 개항목)		
2.1 쇠고기	1KG / 안심	6.37
2.2 닭고기	1KG / 가슴살	7.69
2.3 쌀	1KG / 골드쌀	2.94
2.4 설탕	1KG / 백설탕	7.33
2.5 계란	12 개	2.99
2.6 감자	2KG / Yukon	4.41
2.7 무	1KG / 현지산	1.2
2.8 오렌지쥬스	1 리터	2.09
2.9 미네랄워터	1 리터	1.05
3. 한국식품(11 개항목)		
3.1 고추장	1KG	6.99
3.2 된장	1KG	5.99
3.3 라면	1 개 / 농심 신라면(120g)	0.89
3.4 식용유	1 리터	4.87
3.5 설렁탕류	1 인분 / 설렁탕, 곰탕, 갈비탕 중 1 개	12.99
3.6 불고기	1 인분(200g)	19.95
3.7 김치찌개	1 인분	12.99
4. 기호식품(8 개항목)		
4.1 햄버거	1 개 / 맥도날드 빅맥	3.57
4.2 KFC	1 개 / 치킨버거세트 (구성: 치킨버거 1, 콜라 1, 감자튀김 1)	5.55
4.3 피자	1 판 / Pizza Hut 수퍼수프림 오리지널 1 판 (Large)	21
4.4 코카콜라	250ml 1 캔	2.99
4.5 수입산맥주	355ml 6 캔 1 팩/ 하이네켄	8.95

4.6 수입산 담배	1 갑 / 말보로라이트	71
4.7 위스키	750ml / 잭다니엘	23
4.8 커피	1 병(175g) / 인스턴트 네스카페	6.92
5. 주택(4 개항목)		
5.1 중급아파트임차비용(월)	150 ㎡/월 / 침실 3 개미만 Semi-furnished	6000
5.2 중급단독주택임차비용(월)	150 ㎡/월 / 대지 500 ㎡ 미만 / 침실 4 개 미만 Semi-furnished	4000
5.3 복덕방비용	월 임차료의 %	150
5.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100~200
6. 가전제품(4 개항목)		
6.1 TV	한국산, 29 인치 컬러 TV, 범용형	400
6.2 VTR	한국산, 6 헤드 스탠다드형, 범용형	299
6.3 DVD Player	DV310, Pioneer	69
6.4 전자레인지	20 리터급, Parasonic	129
7. 잡화(7 개항목)		
7.1 구두	1 켤레 / 현지유명브랜드 소가죽 구두	255
7.2 치약	150g 1 개 / 현지유명브랜드	4.49
7.3 칫솔	1 개 / ORAL B Advantage	4.99
7.4 면도기	1 세트 / Gillette Contour Plus(면도기 1, 면도날 2)	8.99
7.5 건전지	1 세트 / 1.5V AA 4 개	3.99
7.6 화장지	1 통(300 매) / Kleenex Facial Tissue	2.59
7.7 세수비누	1 개 / DOVE Cream Bar White	0.99
8. 사무실용품(8 개항목)		
8.1 복사용지	A4 1 권(250 매)	3
8.2 볼펜	1 타(12 개) / BiC round stic USA	3.66
8.3 연필	1 타(12 개) / 현지산 HB 사무용연필	1.97
8.4 공 CD	1 통(12 개입) / SONY CD-R 700MB	19
8.5 핸드폰	1 대 / Nokia 범용형	129.99
8.6 핸드폰사용료	1 개월 기본사용료	39.99
8.7 인터넷가설비	1 회 / 최초 1 회 설치비	30.5
8.8 인터넷사용료	1 개월 기본사용료	49.95
9. 자동차(5 개항목)		
9.1 자동차	2000cc 기본형 현대 소나타 GLS	21000
9.2 엔진오일	1 리터 / MOBIL 가솔린 모빌 10W40	9.2
9.3 휘발유	1 리터 / 휘발유 (옥탄가 95.1%)	2.39
9.4 자동차등록비	2000cc 기준	45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기준(1 년계약) 신형차, 종합 보험, 신규가입차	2,700
10. 대중교통(4 개항목)		
10.1 지하철	1 구간요금	2
10.2 시내버스	1 구간요금	2
10.3 택시(기본)	기본요금	2.5
10.4 택시(추가)	추가요금(1Km 당)	0.40
11. 공공서비스(11 개항목)		
11.1 전화개통비	1 회선 / 가입비, 장치비 포함	55
11.2 전화사용료	월 / 기본사용료(가정용)	8.95
11.3 전화사용료(시내)	3 분(180 초) / 가정용 평상시간(평일 08:00-21:00)	0.35
11.4 공중전화(시내)	3 분(180 초) / 평상시간(월-토, 06:00-24:00)	0.75
11.5 국제전화(정상)	3 분(180 초) / 현지-서울간 / 평상시간(월-토, 06:00-24:00)	1
11.6 국내우편	1 통 / 일반편지(2-3 페이지) 일반우편	0.41
11.7 국제우편(일반)	1 통(10g 이하) / 현지-서울간 일반우편	21
11.8 특급우편	1 개(1KG 이하) / 현지-서울간 DHL 서류	35
11.9 전기요금	1kwh / 가정용	0.1400
11.10 수도요금	1 ㎥ / 가정용	0.1783
11.11 가스요금	1 ㎥ / 가정용	0.5050

12. 교육(6 개항목)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數)	N/A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 American School	2,950
12.3 외국인학교	기부금 / American School	없음
12.4 외국인학교	수업료 (초등 1 년간) / American School	17,200
12.5 외국인학교	수업료 (중등 1 년간) / American School	17,800
12.6 외국인학교	수업료 (고등 1 년간) / American School	18,500
13. 레저.오락(6 개항목)		
13.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 홀 1 라운드 선진국(중급), 후진국(중상급)	70
13.2 골프장 회원권	매매가능 18 홀 선진국(중급), 후진국(중상급)	15,000-20,000
13.3 골프공	1 타(12 개) / Maxfli	25
13.4 골프채	Callaway 드라이버 1 개	399.99
13.5 DVD 타이틀	1 개 / 최신영화	18
13.6 영화관람료	1 회 / 개봉관 성인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11.75
14. 의료.약품(5 개항목)		
14.1 의료보험료	4 인가족 기준(1 년) Full Cover (치과제외)	15,700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00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의료보험 커버시)	15
14.4 치과	스켈링 1 회	98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 정	2.59
15.신문.방송.잡지(4 개항목)		
15.1 현지신문	1 년/ 현지유력지	150
15.2 한국신문	1 개월	15
15.3 케이블 TV	1 개월 / 기본시청료	14.39
15.5 잡지	1 부 / Time 혹은 Newsweek	3.95
16. 호텔(6 개항목)		
16.1 특급호텔(정상)	싱글 1 박	755
	트윈 1 박	850
16.2 특급호텔(할인)	싱글 1 박	600~650
	트윈 1 박	650~700
16.3 중급호텔(정상)	싱글 1 박	365
	트윈 1 박	365
16.4 중급호텔(할인)	싱글 1 박	300 내외
	트윈 1 박	300 내외
16.5 조식(특급호텔)	Hotel Ritz Paris	97
16.6 조식(중급호텔)	Hotel Metro	50
17. 임금(2 개항목)		
17.1 사무실직원	월급여 / 대졸 초임	3,000
17.2 사무실비서	월급여 / 학력불문 초임	2,700~2,800
18. 노동여건(9 개항목)		
18.1 법정 최저임금	월급여	1,300
18.2 상여금	월급여대비 % / 연간 근로자 상여금	Not Specified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급여대비 % / 연간 근로자 사회보장 부담금	7.65%
18.4 법정휴가일수	일(日) / 연간 근로자 법정휴가일수	2 Weeks
18.5 출산휴가일수	일(日) / 여성근로자 출산휴가일수	12 주까지
18.6 연간 국경일	일(日)	10
18.7 토요휴무	실시여부	실시
18.8 노동쟁의시냉각기간일수	일(日)	30~60 일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주(週)	40 시간
19. 사업여건(5 개항목)		
19.1 법정 최저자본금		150,000
19.2 회사설립 변호사비용		2,500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법인세	None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None
19.5 법인 은행대출금리	1 년	7~8%

뉴욕 맨하튼 생필품 물가(2008년 3월 기준)

번호	품목	가격(USD)	참고
1	폴로 면 100% 남방(BLAKE)	US$79.50	맨하탄 소재 백화점 판매가/캐쥬얼, 긴팔
2	리바이스 청바지 501	남자: US$68.00 여자: US$78.00	맨하탄 소재 리바이스 전문점 판매가격, 같은 501 계열의 청바지라 할지라도 색깔, 디자인에 따라 가격차이 있음. 남자 청바지 item # :005010268, 여자 청바지 item #: 125011152
3	남성 아르마니 정장 상하의 1 벌	US$1,845.00	맨하탄 소재 백화점 판매가/순모 100%, 춘추복, 바지 1 벌 basic black color, 3 버튼 투피스
4	여성 프라다 투피스 상하의 1 벌	US$2,400.00	맨하탄 소재 백화점 판매가/순모 100%, 춘추복, 바지 1 벌 basic black color, 3 버튼 투피스
5	돼지고기 목살 1 근	US$11	맨하탄 소재 슈퍼마켓 판매가격
6	스타벅스 카페라떼 톨사이즈	US$2.80	맨하탄 소재 스타벅스 판매점 가격
7	맥도날드 빅맥세트	US$5.99	맨하탄 소재 맥도날드 판매점 가격
8	에비앙 생수(330ml)	US$0.99	맨하탄 소재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가
9	최고급 아파트 가격	US$16,146.39	맨하탄 소재 현지, 최고가 아파트 (주상복합 및 주거전용 중)의 평방미터당 매매가
10	중급 아파트 임대료 범위	US$2,691.07- US$8,611.41	맨하탄 소재 중산층이 임대하는 아파트(주거전용) 하한가 - 상한가(2 BED 룸, Unfurnished 기준)
11	사무중심가 사무실 임대료 범위	US$376.74- US$753.48	맨하탄 소재 사무중심가의 평방미터당 임대료 하하간-상한가(예: 서울 테헤란로)
12	씨밀락 어드밴스 조제분유(729 그램)	US$26.83	맨하탄 소재 일반 슈퍼마켓, 잡화점 판매가격
13	하기스골드 mega(60 개들이)	US$16.99	맨하탄 소재 일반 슈퍼마켓, 잡화점 판매가격
14	맥클라렌테크노 XT 유모차	US$289.98	모델명: 2006 Techno XT stroller-storm, item#: 394014
15	어린이집(데이케어센터) 월 소요비용	US$800.00- US$1,300.00	맨하탄 소재 너서리(Nursery-탁아시간 5 시간 ~ 9 시간 범위, 통학용 교통비를 제외한 전비용/중급 기준
16	사립 초등학교 등록금	US$4,500.00- US$18,000.00	맨하탄에서 차로 1 시간 정도 떨어진 뉴욕주의 사립카톨릭학교 수업료 ($4,500.00), 기숙사없는 일반 사립학교(US$18,000.00)
17	휘발류(리터당)	US$0.59	뉴욕시 인근 뉴욕주 기준
18	대중교통(버스)	US$2.00	뉴욕시 한구간
19	대중교통(지하철)	US$2.00	뉴욕시 한구간
20	대중교통(택시)	US$2.50	1/4 mile 당 40 센트씩 요금이 부과됨. (40cents per quarter-mile)
21	유명 오케스트라 콘서트 티켓	US$55.00	Lincoln Center 에서 공연하는 orchestra 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44-$100 사이이며, $55 가 가장 많음.
22	영화관람요금	US$11.00	맨하탄 소재한 영화관 기준
23	특급 호텔 숙박비	US$417.25- US$536.45	5 성급이상, 시내중심가위치,일반 싱글룸 1 실, 조식/세금/봉사료 포함가격,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계산함
24	골프피	US$70.00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맨하탄에서 차로 30-40 분 거리) 퍼블릭코스 18 홀, 캐디없이 라운딩 시 비회원가(세금 포함)
25	루이비통 스피디 백	US$620.00	맨하탄 소재 백화점 판매가/ '06 년 모델, 사이즈 M
26	양주 발렌타인 17 년	US$165.00	맨하탄 소재 주류 전문 Liquor store 판매 가격
27	BMW 525i	US$43.500.00	4 DOOR, 오토매틱, 기본옵션 / MRSP $43.500.00, Destionation & Handling $695(추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함)

도시명: 디트로이트(Detroit)

번호	기준 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1	김치찌게	9.50	1 인분
2	햄버거	4.00	맥도날드 빅맥 1 개
3	수입담배	5.00	말보로라이트 1 갑, 20 개피
4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2,300.00	150m2/월, Semi-furnished
5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600.00	150m2/월, Semi-furnished
6	사무실 임차료	2,800.00	150m2/월
7	자동차 2000cc	15,000.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8	시내버스 요금	1.50	1 구간
9	택시요금	1.80	기본요금(회사마다 다름)
10	택시요금	1.20	추가요금, Km 당
11	공중전화요금	0.50	시내
12	국제전화(할인)	0.50	현지-서울, 3 분
13	전기요금	0.083	가정용, 1Kwh
14	인터넷 사용료	50.00	1 개월 기본료
15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7,000.00	초등 1 년간
16	외국인 학교 수업료	-	초등 1 년간, American School
17	골프장 그린피	50.00	비회원, 18 홀 1 라운드
18	영화 관람료	8.50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19	병원진료비	250.00	의료보험 제외, 내과진료
20	특급호텔 숙박료	180.00	싱글 1 박
21	중급호텔 숙박료	100.00	싱글 1 박
22	사무실비서 월급여	2,500.00	초임, 학력불문
23	사무실직원 월급여	3,000.00	대졸, 초임

3. 바이어 발굴

가. 데이터베이스 활용

○ 업체 정보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www.hoovers.com(이하 Hoovers), www.selectory.com(이하 Selectory), www.zapdata.com(이하 Zapdata) 등이 있는데, 동 웹사이트들은 모두 유료 회원제로 운영된다. 특히 Zapdata는 기업 한 건당 정보료(50센트 내외)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 Hoovers의 경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정보, 사장 경력, 기업 조직 등의 정보까지 제공하는 반면, Zapdata의 경우 연락 정보, 매출액, 직원 수, 웹사이트 등 기초 정보만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나. 전시회 활용

○ 미국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전시 업체로 참가함으로써 잠재 바이어와 직접 접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잠재 바이어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브로

슈어와 함께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좀 더 심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함을 교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단순 참관자로써 전시회에 참가하여 다른 잠재 바이어 참관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시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www.tsnn.com 등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산업, 전시회 명, 전시회 기간, 장소 등을 검색어로 미국 내 개최 전시회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다. 현지 판매 대리업체(Sales Rep) 활용

○ 미국은 유통 구조상 대부분의 산업에서 판매 대리 업체(sales rep)들이 상당한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www.thomasnet.com 등의 웹사이트에서 “Sales Reps” 또는 “Manufacturers Reps” 목록을 선택한 뒤 관심 산업을 입력하면 현지 판매 대리 업체 목록의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 목록에 등재된 업체의 서비스 질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대리 판매 하여 거둔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커미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세한 수출업체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라. 자동차부품 진출 관련

○ 북미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 바이어 발굴은 자사 취급 품목과 정확히 일치하는 바이어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시회 참석

○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개별 연락처를 입수하는 것이 어려운 한국 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 대표적인 전시회로는 매년 4월에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SAE Show(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1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AAPEX(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Expo), SEMA(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Show 등이 있다.

○ SAE Show는 OEM(완성차 및 Tier1) 업체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참가하며, AAPEX의 경우 주로 애프터마켓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어, 행사 성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SAE Show와 AAPEX는 KOTRA에서 주관하여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방법과 개별 참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SEMA의 경우 개별 참가가 가능하다.

2) 세일즈렙 이용

○ 또 한가지 방법은 현지 세일즈렙을 이용하여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다. 세일즈렙은 거래 성사 시 일정 비율 혹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현지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에이전트를 말한다.

○ 현지 업체들조차 이런 에이전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일즈렙들이 주로 자동차 회사 및 부품 회사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구매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다만, 세일즈렙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국 내 판매 독점 조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계약을 해야 한다. 만약 독점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향후 자체 판매 능력을 확보하여 세일즈렙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세일즈렙에 약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조사 사이트 및 조사 대행 이용

○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는 또 한가지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및 KOTRA의 조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 바이어 발굴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Hoovers, Selectory Online, Reference 등이며, Hoovers에서는 특정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어떤 곳이 있는 지를, Selectory Online과 Reference에서는 기업 내 부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 다만, 바이어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온라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바이어 연락처 등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전화를 통해 2차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방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는 유료로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는 단점이 있다.

○ KOTRA의 조사 대행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장동향, 바이어 연락처 및 반응 등을 조사해주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사이트들은 대부분 정보를 1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회원권 등으로 판매하며, 금액 또한 과다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일반사항

○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반드시 정장을 갖추어야 한다. 복장은 회색이나 푸른색 정장을 유지 하면 되나 울긋불긋한 복장은 피해야 한다. 색깔이 있는 넥타이는 무방하다.

○ 명함에는 가능한 한 영어로 자신의 직함을 밝혀 두도록 하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명함의 크기는 가로 8.9㎝, 세로 5.1㎝이다. 전화번호는 가급적 국가코드와 지역 코 드를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 과시하는 태도는 허용되나 지나치게 주제넘게 구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개별 대화 시에는 상대방의 개인적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도록 한다.

○ 지나친 감정표출은 예의에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에는 꼭 COULD, PLEASE, THANK YOU VERY MUCH, MAY I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다.

○ 상대방과 대화할 때 눈을 아래로 내려 뜨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모습은 동양인의 겸손에 서 온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적인)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와인 등의 선물을 들고 가면 되며, 나중에 초대를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내도록 한다.

○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비록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이다. 특히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면 반드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처음 만나는 경우라도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직함이나 직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시간관념이 철저해야 한다.

○ "LET'S HAVE LUNCH TOGETHER"와 같은 초대의 말은 인사 치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진심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며 선물은 와인 정도가 적당하다.

○ 행사나 잔치에 초대 받을 때 어린이를 동반하는 것은 사전에 초청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 "NEXT TIME"이라는 말은 한국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 지지만, 미국인에게는 약속을 긍정하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신중히 써야 한다.
○ 미국인들은 저녁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는 점심식사에 이루어진다.

○ 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과 달리 비형식적인 면이 강하다.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다.

○ 미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 (상대방 의 취미, 특기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융화하여 형성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바이어가 속한 인종, 문화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비즈니스 성공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유태인 과의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심어줄 때 "I'M SURE"보다는 "I SWEAR BY GOD"와 같은 유태인에게 친근한 표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선물 이외에 돈을 주는 것은 뇌물로 간주되며, 선물도 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위법으로 되어있다. 선물이 50달러가 넘을 경우 공공기관에 기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예의다.

○ 미국인들은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상식과 실용주의에 의해서 일 처리하기를 좋아한다.

○ 미국인들은 그 조상의 출신이 지역별, 민족적으로 다르더라도 모두 미국적인 것을 좋아하 고, 비 미국적인 것을 배척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주의 혹은 양키이즘으로 해 석된다.

○ 상대방의 연령이나 결혼, 수입, 주소, 신상 등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들을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야 한다.

나. 상담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이어에게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로써의 신뢰감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역원의 도움보다는 가급적 직접 대화를 하는것이 좋다

○ 일부 바이어의 지나친 가격인하 및 소량 주문 등의 요구에도 가급적 성의있게 상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품목의 객관적인 우수성 및 주요 기업에 대한 납품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정중하고 신중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 품목이 설령 맞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상세하게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 모든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와 첨가 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첨가 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 협약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주의해서 계약해야 한다.

○ 신문이나 각종 유인물에는 매우 요란한 광고가 게재되곤 하는 데, 모퉁이 등에 작은 글씨로 된 조건들이 숨겨지다시피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TRICK 이라고 표현 하며, 최종 결정시 자세히 읽어야 한다.

○ 기술제품이나 투자재의 경우 성공의 비결은 조작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이다. 제품은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충족시켜야 할 뿐 다른 사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령 지나친 하이테크 기술제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 미국 바이어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 중의 하나는 수차례의 LETTER(FAX) 발송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이다. 비록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한국기업과 관련이 없을 때에도 편지에 감사하다는 답장 LETTE 를 꼭 보내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관계 수립에 매우 유리하다.

○ SELLER 들이 제품의 정확한 SPEC 이나, 효능, 이를 구입하였을 때 얻는 효과등을 비즈니스 당사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면(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 필요) 거래성사율이 훨씬 높다.

○ 꼭 이루어야 할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교환 후 "FACE TO FACE"에 의한 상담이 성과가 높다.

○ 바이어 초기 접촉 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영문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 바이어와의 면담에서 WAREHOUSE 의 유무, 배달방법이나 통관의례, PAYMENT 조건 등에 대해 정확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격 정보 외에도 위의 사항들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답변을 주고 일을 처리해 가는 첫 인상을 주는 것이 거래를 트는 핵심요소이다.

○ 대부분의 초기 주문은 Trial Order 로서 다품종 소량주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 결과를 통해 추가 주문이 늘어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최소 주문량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가격정보를 보내면서 가격 대비 품질이나 AS 또는 기타 가격차이를 보완할 장점들을 함께 보냄으로써 바이어들이 가격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 첫 접촉 시, 미국 내에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므로 회사소개 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한 경력, 전문 제조기술 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규모, 설립 년도, 연간 매출액 등이 명기된 회사 소개서를 사전에 준비해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바이어들을 처음 접촉할 때 요구되는 것은 영문 카달로그, 회사와 제품 소개서, 가격표와 위에 언급했듯이 영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필요에 의해서는 샘플 등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한국업체는 첫 바이어 접촉 시 “팩스나 이메일로 간략한 회사 및 제품소개 등을 보낸 후 관심있을 경우 연락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미국 업체들에게 좀처럼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각종 광고물이나 스팸 메일 등이 수시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 등은 직접 우편으로 주고 받고 있다.

○ 우편 송부 3~6 주 후에 반드시 전화, 팩스 등으로 자료의 접수여부를 확인하면서 검토 결과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시장 세분화 및 Targeting 실패

○ 미국의 주력 시장인 대중 마켓에 대한 가격 경쟁력 상실, 한국산의 타겟 마켓인 중상류층 대상 시장에서의 뚜렷한 브랜드 이미지 확보 실패, 명품 브랜드로 부상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부재로 인한 고급시장 공략 실패 등 시장 Segmentation 및 타겟팅 실패가 일반적인 한국상품의 대미진출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저가를 무기로 기술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품질과 기술, 브랜드 이미지로 접근하고 있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제품간 중간적 입장에서 오는 한계라 할 수 있다.

○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의 경우 최저 가격 위주의 구매정책으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월마트 등의 타겟 소비층인 미국 대중들의 소비 트랜드는 이들 대형 할인점을 통해 1회용 상품 구입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는 대형 할인점 이용 미국 소비자들이 급여에 대한 지출계획이 꽉 짜여 있어 비싼 제품을 구매할 여유가 없고 가급적 싼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고급품을 선호하는 미국 고소득층의 경우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며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으나 한국 제품 중 명품 브랜드로 인식되는 제품군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중고가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아직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제품 하면 떠오르는 뚜렷한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2006년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달러 가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부품 산업 특성 상 이미 몇 년 전에 계약이 완료되고, 납품을 시작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 환율 변화로 인해 수익률에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나. 미국 수입 시장의 트렌드 변화 인식 미흡

○ 미국 기업은 위험분산 차원에서 간접 마케팅을 선호한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대량 거래, 장기간의 유통과정, 시즌에 집중된 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유통, 특히 수입 거래에서 전 과정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거래하는 고위험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Sales Rep. 등 다양한 중간 거래과정을 통해 위험 분산을 선호한다. 즉 인맥과 Reference를 통해 1차적인 위험이 검증되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회이다.

○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중간 거래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런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인의 경우 수입거래보다는 내국산 거래를 선호한다. 딜리버리 과정에서의 위험, 100% 반품 허용 정책 등에 따른 A/S 문제 등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입거래보다는 미국 내 Stock 유지 상품에 대한 거래를 선호한다. 따라서 공급자(수출상) 책임으로 미국 내 물류센터 유지 등의 조건, COD, DDP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나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다. 무역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1) 대금결제

○ 바이어 중에 물건을 받고 나서도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고의적 사기를 제외한 대금결제 거부의 주된 사유는 “품질불량” 또는 “디자인 등 사양 불일치” 등이 대부분이다.

○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을 필히 삽입하여,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법을 통해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대금결제 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의 추심업체(collection company)나 변호사에게 의뢰가 가능한데, 추심업체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문제바이어의 신용기록 등을 조사한 뒤 바이어를 접촉, ‘신용 보고’를 “무기”로 대금결제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변호사는 추심업체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되, “contingency-base”로 의뢰를 받는 경우, 승소 시에만 수수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가 승소가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와 같은 조건부 수탁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최소 주문량 차이

○ 대부분의 한국업체가 최소한 반 컨테이너 물량의 수출을 희망하는 반면, 현지 바이어들은 소량다품종 구매를 희망하기 때문에 계약성사에 난관으로 작용한다.

○ 이 밖에 일부 바이어들은 안정적이고 유연한 공급량 확보를 위해 미국에 창고(wareho use)나 지사를 확보한 수출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초기 진입을 시도하는데 장 애가 될 수 있다.

3) 로컬 프레즌스 요구

○ 바이어 중 향후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위해 로컬 프레즌스가 있는 제품을 선호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지 주재 사무소가 없는 한국 중소기업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회사명: Daekyo America

□ 현지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교재 개발로 교육 선진국인 미국 시장에서 학습지 시장 진출 성공

○ 대교 아메리카는 12년 전 설립되어 그 동안 미국 학습지시장 조사와 제품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 2년 전 미국 교육시스템에 맞는 "E.Nopi"라는 창의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본격적인 판매 활동에 들어갔다.

○ 대교 아메리카의 박 지사장은 E.Nopi의 구성 및 내용이 우수해 27년 전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그 동안 학습지 시장을 독점해 온 일본계 학습지 "쿠몬"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 정하였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시장점유율을 20%로 끌어 올려 성공적인 시장침투에 성공하였다.

○ E.Nopi가 짧은 시간에 미국 학습지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현직 교사들과 공동으로 미국식 수학 교육방식인 '사고력 개발'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되 어 미국 학교에서 정규교육의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지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이며, 기존에 아시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잘 한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점도 성공적인 시장 침투에 도움이 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E.Nopi는 현재 뉴저지 주 6개 학교와 뉴욕 주 2개 학교의 정규 과정의 부교재로 채택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의 '방과후(after-school) 교재'로 승인(합격)되었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미국의 학습지 시장은 규모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No Child Left Behind' 정책으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을 사기업에 위탁 하여 추진하고 있어 미국식 교과과정에 알맞은 E.Nopi의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나. 회사명: 유로 코리아 (Euro Korea Co.)

□ 미국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진출 사례

○ 이 품목은 Cart Helper로 월마트, 타겟 등 대형 마켓에서 사용되는 쇼핑카트에 걸어서 사용하는 장바구니 기능의 제품이다. 동 사는 미국 최대 TV 홈쇼핑 채널 (QVC)의 2004년 8월 11일, 오후 9:00(30분간) 방영을 통해 총 11,760개를 판매, 210천 달러 성약을 달성한 바 있다.

○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홈쇼핑 진출이 유망하다고 판단, 미국 최대의 홈쇼핑 채널인 QVC(미국 800만 가구 시청)에 생활용품 벤더로 활용하고 있는 CSA사를 접촉, 성사된 케이스이다.

다. 회사명: F사

□ 틈새 시장 공략을 미국 시장 개척 성공

○ F 사는 특수 PFA(polymer 종류) 라이닝 볼 밸브를 생산하는, 작지만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 미국 땅이 크다고 해서 시장도 큰 것만은 아니다. Fine chemical 공장이나 미세한 액체 만 다루는 bio industry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FA 라인 밸브는 이제까지 미국, 독일, 일본만이 주요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F 사로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했다.

○ 틈새 시장개척의 중요한 첫 단계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쟁업체들과 그들의 판매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초기 조사 때부터 미국 제조업체에게 OEM납품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낭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지 시장선점 업체들의 특수형 PFA-Line 벨브 비즈니스의 규모가 작더라도 마진율이 높아 쉽게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고 더불어 아웃소싱에 의한 핵심기술이나 노하우의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 이로 인해, 애초에 L사장이 희망하였던 PFA 라인 전문 유통업체에게 집중을 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틈새 시장이다 보니 관련 유통업체의 수가 많지 않아 최초 타겟팅에는 그다지 애로가 없었다. 대부분이 모두 다 미국(X사). 독일(I사). 일본(Y사)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을 관련산업 위주로 3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남부 텍사즈 주, 중서부 및 남동부, 동부 뉴욕 및 펜실베니아 주) 지역적 독점을 줄 수 있는 유통업체는 모두 연락해본 결과, 획기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곳 저곳 샘플을 보낸 후 품질성에 대해서 독일, 일본 제품 못지 않게 우수하다는 칭찬이 빠짐없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가장 전략적인 (Strategic Moment) 시점에서 가격을 제시 하였고 바로 그 가격이 우리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 그때부터는 F사에서 오히려 여기저기 관심 있어하는 유망바이어를 스크리닝을 해야 할 판국이었고, L 사장은 경사 난 마음으로 미국 출장을 와서 각 유통업체를 '인터뷰' 했어야 했다. 진실한 네트워크가 넓은 유통업체를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선정한 2개 업체도 지역별 독점권보다 전 미국 독점권을 주길 희망하여, 1달 동안 F사를 가운데 두고 싸우다가 드디어 A사라는 미국과 캐나다를 커버하는 대표적인 stocking distributor가 3년 안에 500만 달러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다.

○ 일반적으로 전 미국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한국 제조업체로서 큰 위험으로 볼 수 있지만 F사 사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독점권을 준 제품은 볼 밸브뿐이지 더 자주 교환해야 하는 PFA 라인 fitting류 제품은 어디까지나 단독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성사를 통해 더욱 다양한 라인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꼽히는 한국 밸브업체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느긋하면서도 지혜롭게 해쳐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 F 사의 예를 통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핵심부품 및 기술을 개발하여 오히려 해외 바이어들 간의 서로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출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비록 틈새 시장 이지만 한국의 우수한 제품으로 비 선점된 시장을 공략, 단기 적이 아닌 장기적 플랜을 통해 시장을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회사명: H사

□ KOTRA 지사화사업 참여를 통한 성공사례

○ 울산에 소재한 H사는 알루미늄 캐스팅 전문 업체로서 사업 분야 중 자동차 알루미늄 Intake Manifold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Manifold의 소재가 완성차 회사의 주도에 의해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옮겨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신규 비즈니스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 그러던 중 2006년 상반기 GM 대우를 통해 GM Powertrain, GM DMAX의 Gamma 프로젝트 등 중력 주조품 관련 글로벌 프로그램의 견적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 더욱이 실질적인 구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북미 본부의 구매 담당자와 대면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H사의 입장에서는 GM 구매부 내의 SFO팀(Supplier Footprint Optimization) 소속, GM 대우 SFO팀으로부터 KOTRA와 GM이 공동 주관하는 Korea GM Autoparts Plaza 행사에 참석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고, 마침내 2006년 4월 동 행사를 통해 GM Powertrain 및 GM DMAX 구매부 담당자들과 만나 그 동안의 진행 사항에 대한 협의 및 H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또한 H사는 GM Powertrain의 캐스팅 부품을 포함한 부품 총괄 구매 담당자와도 만나 진행 중이던 사업 건들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GM으로부터 주목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동 행사 이후, H사의 GM 관련 비즈니스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H사는 이 기회를 살려 각고의 노력 끝에 GM Powertrain과 DMAX로부터 연간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를 수주받게 되었다.

○ 미국 현지에서의 GM 관련 마케팅 및 물류 업무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H사는 2006년 말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의 물류 지사화 사업에 가입하게 되었고, 동 무역관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북미 진출 사업의 동반자가 되었다.

○ H사는 GM Powertrain으로부터 수주 받은 Water Outlet Assembly 432개를 2007년 초 첫 선적했고, 2월 13일 마침내 GM Powertrain에 첫 물량이 도착함으로써, 북미 완성차 업체 공략의 첫 발을 떼게 되었다.

마. 회사명: 서울스탠다드

□ 미국 국방조달 틈새 시장 개척 성공

○ 군용 노트북 허머북(Hummerbook)을 생산하는 서울스탠다드사는 지난 2월, 2005년 US Army National Guard의 스폰서를 받아 추진된 FCT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고 밝혔다.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프로그램은 미국방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해외 우수방위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테스트에 성공할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국방 조달이 보장된다.

○ 이에 따라. 스폰서 기관인 US Army National Guard는 현재 사용중인 BEAMHIT-Marksman ship Training System 내 설치된 1,300대 노트북 교체 시 허머북을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허머북 10대에 대한 조달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1,290대에 대한 교체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바, 계약이 완료될 경우 총 조달액은 약 662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테스트 성공소식을 접한 미 정부 프라임 벤더들도 허머북 구입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후 서울스탠다드사와 가격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 규모의 오더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스탠다드사가 미 국방 조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3년 KOTRA 주최로 개최된 FCT 프로그램 세미나/상담회를 통해서였다. 서울스탠다드사와의 1:1 상담 시, 섭씨 영하 10도에서 영상 50도에 이르는 혹서혹한은 물론 수중에서까지 작동이 가능한 허머북에 매료된 미국방부 조달관은 동 제품이 FCT 프로그램 펀딩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침내 2005년 US Army National Guard의 스폰서를 받아 FCT 펀딩 프로젝 트에 선정되었고 예정보다 약 1년 빨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허머북은 정부 조달 시장 진출의 물꼬를 텄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거주지

1) 수도 워싱턴과 인근 버지니아, 미시간 주 3개 지역을 예로 제시함

□ 거주형태 결정

○ 하우스와 콘도는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해 부동산중개인(realtor)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보통 매도인이 6%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수료 부담이 없다. 다만, 이런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집값에 포함되게 되므로 결국은 매수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서류 검토 및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때는 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 아파트는 모두 월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의 리징 오피스(Leasing Office, 관리사무소)를 바로 접촉하면 된다.

□ 거주지 이전 신고

○ 거주지를 확정한 후 전화국에 전화번호를 신청하면 곧바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와 가스는 DTE Energy(전기), Consumers Energy(가스)로 연락해 사용자 등록을 변경 혹은 신규 등록하면 바로 제공된다.

○ 전기/가스/전화 서비스(택 1) 대금 청구서와 영문신분증(여권)을 지참하여 관할(각 도시별) Social Security Administraion 에 가서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약 3 주 정도 후에 SSN 번호를 받을 수 있다.

○ SSN 은 미국 내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이며, SSN 이 없으면 미시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 번호를 받아야 한다.

□ 워싱턴 DC

○ 우선, 워싱턴 DC 는 중앙에 위치한 의사당 건물(Capitol Hill)을 중심으로 4 구역으로 나뉘어 진다. 이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북서쪽(NW)이고 가장 꺼려하는 지역은 남동 쪽(SE)이다.

○ 북서쪽은 유럽풍의 건축양식과 다수의 브랜드숍까지 들어선 Georgetown 등이 관광명소가 되었고 여기서 좀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름드리 나무를 배경으로 한 저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DC 에서 아파트 렌트를 원할 경우 북서쪽(NW)지역에서 찾는 것이 좋다.

○ 반면, 남동쪽은 치안 상태가 매우 열악해 일단 해가 진 뒤에는 출입을 삼가 해야 할 정도의 우범지역이다. 이 밖에도 남서쪽(SW)은 포토맥 강변을 끼고 아파트나 콘도 등의 주거시설이 형성되어 있으나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리고 북동쪽(NE)은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흑인들이 밀집해있고 치안 상태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 버지니아

○ 이 밖에 워싱턴 DC 의 남쪽에 위치한 북 버지니아는 워싱턴 통근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애난데일(Annandale) 지역은 한인촌으로 불릴 만큼 한국인들의 주거와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한국음식을 파는 식당도 많고 한인을 상대로 한 변호사, 의사, 기타 다양한 서비스 업체가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한때 한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버지니아 내의 “작은 한국”으로 통하는 이 지역의 학군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애난데일보다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져있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센터빌(Centreville) 이다. 식당, 의료서비스, 그로서리, 보험업, 미장원, 비디오 렌탈 등 애난데일 등지에 있던 많은 한국인 업체들이 센터빌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서민용 타운하우스의 가격은 40 만 달러 수준부터 형성되어 있다. 학군은 애난데일보다는 좋지만 페어팩스카운티 내에서는 평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밖에 직선거리 상으로는 센터빌보다 워싱턴에서 가깝지만 주로 주거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는 버크(Burke)를 들 수 있다.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근린 시설 등이 부족해서 집값이 싼 편이지만, 최근 일었던 부동산 붐 덕택으로 이 지역의 집값도 상승해 현재 가장 저렴한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대략 40 만 달러 가량에서 형성되어 있다.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인 하이웨이인 395 와 495 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지만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 이외에 북 버지니아 외곽의 레스턴(Reston), 라우든(Loudon) 지역은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 대에는 워싱턴에서 40 분 가량 걸리는 신흥도시들이다. 최근 대규모 타운하우스 건설 붐이 일면서 워싱턴 인근의 부동산 붐을 선도해나간 지역들로서 타운하우스 가격은 50 만 달러 대부터 형성되어 있다. IT 기업의 집중과 새집을 선호하는 페어펙스 카운티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큰 각광을 받은 지역이다.

○ 학군은 전통이 짧은 대신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으며 페어펙스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어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인 McLean 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곳은 집값도 비싸서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100 만 달러에 달한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Langley High School 은 한국인들이 매우 선호하며 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 워싱턴에 근접한 카운티로는 알링턴 국립묘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알링턴 카운티를 들 수 있다. 건물의 고도가 제한된 워싱턴을 피해 고층빌딩이 밀집해 있는 로슬린(Rosslyn) 에는 방위산업체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차 있고, 여기서 약간 떨어진 클라렌던 (Clarendon), 코트하우스(Courthouse), 볼스턴(Ballston) 등에는 아파트와 콘도 등이 밀집해 있다. 워싱턴을 통근하는 미혼자 등이 많이 거주하며, 렌트비는 DC 보다는 싸지만 침실 하나인 아파트의 경우 평균 800~1,000 달러 가량으로 꽤 높은 편 이다.

○ 이밖에 펜타곤 주변의 Crystal City 에도 콘도 건물이 모여 있다. 주로 변호사, 군인 등 중산층 이상의 가족들이 이곳에 삶의 둥지를 트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 주거지역이 아닌 만큼 학군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알링턴과 인접한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는 소위 “올드 타운”이라고 불리는 차분한 분위기의 술집 등이 밀집한 상업지역과 강을 낀 고풍스러운 주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흑인 및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가난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운전으로 15 분이면 DC 에 도착한다는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학군조건 때문에 거주지역으로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다.

○ 알렉산드리아가 워싱턴을 기준으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워싱턴의 정남 방향으로 폴스 처치(Falls Church)가 놓여있다. 이 중에서 폴스처치 시티(Falls Church City)가 인구 이동률이 매우 낮고 전문직종 종사들이 모여 살고 있다.

○ City 지역과 타이슨스 코너(Tysons Corner)를 제외한 다른 곳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전까지는 집값도 상대적으로 싸고 소수인종이 밀집해 있으며 학군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 미시간 주

○ 미시간 주는 약 1,000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인구 밀집 도시 및 인구 수는 다음과 같다.

도시 명	인구 수(명)
디트로이트(Detroit)	951,270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197,800
워런(Warren)	138,247
플린트(Flint)	124,943
스털링 하이츠(Sterling Heights)	124,471
랜싱(Lansing)	119,128
앤아버(Ann Arbor)	114,024
리보니아(Livonia)	100,545

자료: 미시간 주 정부

○ 한인들은 주로 디트로이트 메트로 지역(디트로이트 인근의 9 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가족 단위의 이주자들은 학군과 치안이 상위권에 속하는 오클랜드 카운티 인근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은 주립대학 소재지인 앤아버 인근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 거주형태는 하우스(독립 주택), 콘도, 아파트(저층 아파트)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으며, 하우스/콘도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 가능 여부이다. 즉, 하우스와 콘도는 개인 구매가 가능한 반면, 아파트는 관리 회사 소유라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관리 책임 역시, 하우스는 집안의 내/외부(마당, 도로 등)를 주인이 관리하며, 콘도는 보통 외부 관리는 콘도 관리소에서, 내부관리는 주인이 하게 된다. 아파트는 내부와 외부관리 모두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교 육

○ 자녀 전입학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의 종류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백신 증명서(한국 접종 시 번역/공증 필요), 거주증빙서류(전기/가스/전화 등) 2 종(추후 제출 가능), 여권사본, 재직 증명서(있을 경우), 최근 1 년간 성적증명서, 출생증명서(호적초본 영문 번역본으로 대체, 혹은 시카고 대사관에 요청)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학교 배정은 주소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해당 학교의 구역 (school district)에 주소지가 소재해 있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사립학교는 주소지에 구애 받지 않으며, 주소지가 다를 경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 대부분의 학교에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처음 이주해온 학생들은 보통 학교 수업과 병행해 ESL 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 워싱턴 DC

○ DC 내에서 남동쪽을 비롯한 빈곤지역은 교육, 삶의 질 등이 매우 열악하고 공립학교의 수준도 매우 낮은 반면, 북서지역은 집값이 매우 비싸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사립학교에 다닌다. 단, DC 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미국 내 어떤 주립 대학 교에 입학하더라도 해당 주의 거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타 주 출신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등록금만 내면 된다는 장점도 있다.

□ 버지니아

○ 버지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3 위에 뽑힐 정도로 거주 환경이나 교육 환 경이 뛰어나다. 한국의 특수 목적고와 비견되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는 다수의 영재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IVY 리그나 미국 유수 대학교 입학자를 배출하고 있는 공립 고 등학교가 많이 있다.

○ George Mason High School 은 미국 내 공립학교 전체 순위에서 늘 5 위 이내의 성적을 기록 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Virginia 의 경우 IVY 리그에는 속하지 않으나, instate(주 거주자에 대한 등록금 혜택)가 적용되어 학비가 저렴하므로 버지니아 주에서 유수한 인재들이 대거 재학하고 있는 학교이다.

□ 미시간 주

○ 디트로이트 메트로 지역에서는 오클랜드 카운티(Oakland County)의 Troy, Rochester, Rochester Hills, Sterling Heights 등이 학군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인들이 동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것도 학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전화신청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선 전화회사는 Verizon 으로 폭넓은 가입자수를 자랑하고 있다. 동 사에 전화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연결을 시도한다. 상담원과 연결될 경우(보통 연결되는 데 최소 10 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신규 가입을 원한다고 밝히면 동 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패키지 유형별로 전화요금 차이, 패키지에 포함되는 서비스로는 콜러 ID, 무료 로컬 전화 등이 있음)를 소개 시켜 준다. 특이한 점은 중장거리 통화 시 어떤 전화회사를 이용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데, AT&T, MCI, Sprint 등 장거리 전화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각 장거리 전화 회사에 따라 다양한 혜택 및 요금 할인이 있으므로 사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추후 변경 가능)

○ 한편 전화 가설 시에는 deposit 을 하게 되는데 약 50 달러 가량이며, 신용카드 지불이 가능하다. 동 금액은 첫 달 전화요금에서 차감 혹은 추후 서비스 중단 시 반환 받는다.

4) 정부 등록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Social Security Number(SSN)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등 각종 서류신청뿐 만 아니라 은행계좌개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주요 금전거래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발급받는 것이 좋다.

○ 1996 년 3 월부터 Social Security Number 는 주 생활자에게만 발행해 주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운전면허는 배우자가 SSN 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득이 가능하다.

○ 신청 절차는 본인이 직접 여권과 I-20 혹은 I-94 등을 지참하여 인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을 방문, 신청 시 3~4 주 내에 SSN 을 집으로 우송해 준다.

5) 자동차 구입

○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 할 수 있다. 신차 구입시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나, 고장이 잦지 않아 차량 수리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중고차를 구입 할 경우에는 잦은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arfax(해당 차와 관련된 과거 기록)등을 딜러샵에 요구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최근 미국 BIG3 의 자동차 경기 불황으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할인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저렴하게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

6) 은행 구좌 개설

○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급적 은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것이 크레딧(신용)을 쌓는데 유리하다.

○ 처음 은행을 선택할 때는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 좋은데, FDIC 회원 은행의 경우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0 만 달러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미국은 은행구좌 내 금액보다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소득이 유지되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목돈을 구좌에 입금해 두는 것보다는 금융거래(자동이체 등)를 반복하는 것이 크레딧을 쌓는데 좋다.

○ 크레딧이 없는 초창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와 협약을 맺고 있거나 주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인맥을 이용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발급 전에는 데빗카드(Debit Card: 직불카드)가 발급되며, 보통 6 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크레딧이 쌓이게 된다.

○ 미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크레딧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차량할부 이자, 의료보험료 할인율 등도 크레딧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크레딧을 최대한 빨리 쌓고, 크레딧이 훼손될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결재수단으로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 한데, 구좌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수표가 은행으로 돌아가는 경우 '바운스(발급한 수표를 현금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크레딧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은행 구좌 개설은 비교적 간단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SSN 과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 하여 인근 은행 지점을 방문, 소정의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할 경우, 몇 일 이내에 간단하게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 계좌 개설 시,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은행계좌가 개설되고, 직불카드를 신청했을 경우, 영업일 기준 7 일 이내에 직불 카드와 개인용 체크가 배달된다. 미국은 공과금이나 다른 비용 지불 시 개인용 체크를 자주 활용한다는 점을 염두 해두도록 하자.

○ 또한 은행 내 잔고가 0 일 때는 직불카드 거래가 금지되도록 하는 OVERDRAFT 조항을 선택하여 나중에, 잔고가 "-"가 되었을 경우, 은행이 대납함으로써 "대납금액 + 고율의 벌칙성 수수료"를 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7) 신용카드 발급

○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섣불리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현재 은행 잔고는 일시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신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계좌 개설 시 발급받았던 직불카드와 개인 수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향후 일정 기간 동안 (6 개월이나 1 년) 크레딧을 쌓아야 발급이 가능하다.

○ 과거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잔고가 부족하여 개인용 수표가 부도 처리될 경우 개인 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개인 잔고를 수시로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8) 병원

○ 미국은 국가보험이 아닌 개인보험이며, 의료비가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의료보험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지원받을 경우,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100% 개인부담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 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의료비에 많은 차이가 난다.

○ 미국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자본주의가 상당히 진척된 나라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와 같은 일괄적인 의료보험 체제와는 달리 사기업이 다양한 커버리지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은 자신의 경제 및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커버리지를 선택,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료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므로(1~2 일 입원 시 1 만 5,000 달러 이상 소요) 보험 가입은 미국 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기 등 간단한 증상 진단/처방을 해주는 가정의(Family Doctor)에 먼저 들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각할 경우 가정의의 처방을 받아 종합/일반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일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상해나 질환 발생 시 가입한 보험 약정서상 지정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9) 운전면허 발급

○ 미국은 주마다 운전면허 발급절차가 차이가 난다. 워싱턴 DC 의 경우, SSN, 여권, 거주지 증명서(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전화 혹은 전기/가스/수도세 등의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워싱턴 DC DMV(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기관)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가져갈 경우, 필기시험만으로 DC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 그러나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주의 경우 필기시험 통과 후, 약 1 달 후에 날짜를 지정 실기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 미 본토는 북위 40도선을 중심으로 한온대에 위치하여 전반적으로 온화하지만, 남북의 위도 차이가 24도나 되어 기후 차가 심하다.

○ 북부지역은 대륙성기후로 봄, 여름에 걸쳐 온난하고 강우량도 많지만 겨울에는 한랭하며 강설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남부는 온대 또는 아열대에 속하지만 텍사스 주는 강우량이 적고 스텝 지대에 속하며, 플로리다 주는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다.

○ 태평양 북부 해안지역은 해양성 다우지대로 기후는 온화하고, 강우량과 서리도 많은 편 이다. 태평양 남부 해안지역은 아열대성 건조지대에 속하며, 여름에는 강우량이 거의 없는 건조 지역이다. 텍사스 주 서부에서 록키 산맥에 이르는 지역은 구릉지대에 속하며 기후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기후, 중부는 대륙성 기후이며 멕시코만은 아열 대성 기후이다.

○ 캘리포니아 주 남동부, 네바다, 아리조나, 유타 주 등은 사막지대로 연간 강우량이 극히 적다. 대서양연안은 해양성 기후, 중부는 대륙성 기후이며, 멕시코만은 아열대 기후이다.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로 1년 내내 따뜻하며, 4~10월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 단, 샌프란시스코는 예외로 여름에도 안개가 끼면 스웨터가 필요할 정도로 추울 때가 있다. 대평원과 5대호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겨울은 몹시 춥다. 밤낮의 기온차 가 크고, 여름에는 천둥번개와 회오리 바람이 자주 발생한다.

□ 서해안 지방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애틀(Seattle) 등이 위치한 서해안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서, 1년을 통틀어 기온의 큰 변화가 없다. 4월에서 10월 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도 비는 약간씩 내리지만 따뜻한 편이다. 단, 샌프란시스코는 예외적으로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 스웨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

□ 내륙지방

라스베가스(Las Vegas)등의 내륙 사막지대는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매우 심하다. 계절에 상관없이 30°C 이상의 일교차가 나고, 겨울에는 -10°C 이하가 된다.

□ 로키 산맥(the Rockies) 지대:

산악지대이므로 봄이나 여름에는 기온이나 습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산을 넘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겨울은 눈에 항상 뒤덮여 있어서 아주 추운 편이다.

□ 5대호(Big 5 Lakes) 지방

시카고, 디트로이트(Detroit) 등이 있는 5대호 지방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띤다.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다. 밤낮의 기온차도 큰 편이다. 여름에 천둥과 회오리바람을 동반하기도 한다.

□ 남부지방

올랜도(Orlando), 마이애미(Miami) 등이 있는 플로리다(Florida)는 1년 내내 비가 많고 습기가 있다. 특히 여름에는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동해안 지방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이 짧다. 여름에는 40°C를 넘을 때도 있는 반면, 겨울은 영하 10°C 이하가 되는 날이 많다. 오대호 주변에 저기압이 발생하면, 이 일대에 짧으면 3~4일, 길면 일주일 이상 비나 눈이 오는 경우도 있다.

□ 일기예보

○ T V
- 여행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밤 10시 또는 11시의 로컬 뉴스 일기 예보이며, 케이블 TV 수신이 가능한 경우 전국적인 일기예보를 하는 Weather Channel이 별도로 있다.

○ 신 문
- 미 유일의 전국지인 USA TODAY 뒷면의 전페이지는 컬러로 된 일기예보로 메워져 있으며, 여타 일반 신문들도 간단한 일기예보를 싣고 있다.

○ 인터넷
- Yahoo.com이나 weather.com 등 인터넷으로 모든 미국 지역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다.

□ 온도계산: 미국 기온표시

○ 섭씨(C: Centigrade)온도 = (화씨: Fahrenheit- 32)/1.8
- 섭씨 37도 = 화씨 98.6도, 섭씨 30도 = 화씨 86도, 섭씨 25도 = 화씨 77 도, 섭씨 15도 = 화씨 59도, 섭씨 10도 = 화씨 50 도, 섭씨 0도 = 화씨 32도

미국 주요도시의 월별 평균 기온표(°섭씨)

지 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부	뉴욕	1	2	5	10	16	21	24	23	20	14	8	2
	워싱턴	13	3	8	13	19	24	26	25	21	15	9	3
	마이에미	21	21	22	24	25	27	28	28	27	26	22	21
중부	시카고	-4	-3	3	9	15	21	24	23	19	12	4	-2
	덴버	-1	2	4	10	14	20	24	22	18	12	5	1
	휴스턴	12	14	17	21	25	28	29	29	27	23	17	13
서부	시애틀	5	7	8	11	14	17	19	19	16	12	8	6
	L.A.	13	13	15	17	19	20	23	23	22	20	17	14

□ 출장 시 추천 복장

○ 출장지역에 따라 기온차이가 심한 점을 감안한 복장준비가 요구된다. 2~3개 이상 지역을 출장 갈 경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개의 복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시차/근무시간

1)시 차

○ 미국 본토는 태평양 연안에서 동쪽으로 향해 태평양 표준시간(PACIFIC STANDARDTIME: PST), 산악지대 표준시간(MOUNTAIN STANDARD TIME: MST), 중부 표준시간(CENTRAL STANDARD TIME: CST), 동부 표준시간(EASTERN STANDARD TIME:EST) 등 4개의 표준시간이 있다.

○ 각 표준 시간대별 한국과의 시간 차이
- 서부(L.A., PST): -17 (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에는 -16)
- 산악부(덴버, MST): -16 (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에는 -15)
- 중부(시카고, CST): -15 (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에는 -14)
- 동부(뉴욕, EST): -14 (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에는 -13)

○ 즉, 한국의 자정은 미국에서는 전일 오전 7시(L.A., 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 오전 8시), 오전 8시(덴버, 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 9시), 오전 9시(시카고, 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 10시), 오전 10시(뉴욕, 일광 절약 시간 적용 시 11시)이다.

○ 미국의 하절기에는 일광 절약시간(Day Light Saving Time) 채택으로 4월 첫째 일요일(4월 2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반년 동안 표준시간보다 1시간 빨라진다. 금년도 일광 절약시간은 4월2일 일요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서울과 뉴욕 시차가 13시간, L.A.와는 16시간이 된다(단, 애 리조나, 하와이 및 일부 주의 County 등에서는 일광절약시간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내년인 2007년부터는 한 달이 늘어난 3월 두번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 사이가 일광 절약시간 적용일이 될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므로 참고 바란 다.

향후 미국 일광절약 시간 스케쥴

2008	March 9	November 2
2009	March 8	November 1
2010	March 14	November 7
2011	March 13	November 6
2012	March 11	November 4

자료: Pearson Education

2) 근무시간

○ 일반 직장의 근무 시간은 기업별, 업종별로 근무 시간대가 다르나 은행은 월~금요일(사무실 09:00~17:00, 창구 09:00~15:00)에 근무하며, 일부 대도시의 경우 토요일에도 근무한다. 관공서는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며, 일부 관공서는 08:00-16:00까지 근무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는 09:00~17:00까지며, 보통 일반 직장의 사무직과 동일한 근무 시간대가 많다.

○ 직군별 근무 시간 대
- 생산직: 07:00 또는 08:00 ~ 15:30 또는 16:30
- 사무직: 08:00 또는 09:00 ~ 17:00 또는 17:30

3) 회계연도(Fiscal Year)

○ 정부 회계년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익년도 9월 30일까지이다.

다. 주요 단위 (도량형)

1) 개 요

○ 미국의 도량형은 야드-파운드 법을 채택하고 있다. 길이에 yd(야드), 질량에 lb(파운드), 시간에 s(초), 그리고 온도에는 화씨(°F)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보조 단위로는 길이 에 ft(피트)·in(인치)· mile(마일), 부피에는 gal(갤런), 질량에는 oz(온스) 등이 있다.

○ 야드-파운드 법은 고대 이집트·바빌로니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 때 단위계로서 확립, 1855년 도량형 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1893년 미터 원기를 기준으 로 1 야드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한 이래 영·미간에 단위 값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1959년 7월 1일 이들을 통일하여 1 국제 야드=0.9144m, 1 국제 파운드=0.453592437kg 으로 협정하였다. 미터법과는 달리 야드-파운드 법은 십진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색 이며, 종래 이 단위계를 사용하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법적으로 미터법을 이행하고 있어, 몇몇 국가를 포함한 미국만이 야드-파운드 법을 준수하고 있다.

○ 길이는 인치(inch), 피트(feet), 야드(yard), 마일(mile)로 표시한다.
- 1 in(inch) = 2.54 cm
- 1 ft(feet) = 12 in = 30.48 cm
- 1 yd(yard) = 3 ft = 91.44 cm
- 1 mi(mile) = 1760 yd = 1.6 km

○ 넓이는 스퀘어피트(squre feet), 스퀘어 야드(square yard), 에이커(acre)로 나타낸다.
- 1 sq ft(square feet) = 929 sq cm = 약 1/36 평
- 1 sq yd(square yard) = 9 sq ft = 약 1/4 평
- 1 acre = 4047 sq m = 약 1227 평

○ 무게는 온스(ounce), 파운드(pound), 톤(ton)으로 나타낸다.
- 1 oz(ounce) = 28.35 g
- 1 lb(pound) = 16 oz = 453.6 g
- 1 ton = 2000 lb = 907.185 kg
- 1 oz(ounce) = 31.1035g = 약 8.3 돈
- 1 lb(pound) = 12 oz = 373.24g = 약 100 돈

○ 부피로는 갤론(gallon)을 사용한다.
- 1 gal (gallon) = 3.8 liter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온도를 화씨로 표시한다.
- 섭씨 = (화씨-32)*5/9
- 화씨 = 섭씨*9/5+32

2) 도량형 환산표

길 이

단위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센티미터(cm)
1 cm	...	0.0109	0.0328	0.3937	0.01	1
1 m	0.0006	1.0936	3.2808	39.37	1	100
1 인치	...	0.0278	0.0833	1	0.0254	2.54
1 피트	0.00019	0.3333	1	12	0.3048	30.48
1 야드	0.0006	1	3	36	0.9144	91.438
1 마일	1	1760	5280	63360	1609.3	160930

무 게

단위	파운드(lb)	온스(oz)	톤(ton)	킬로그램(kg)	그램(g)
1 g	0.0022	0.03527	0.000001	0.001	1
1 kg	2.20459	35.273	0.001	1	1000
1 톤	2204559	35273	1	1000	1000000
1 그레인	0.00014	0.00228	...	0.00006	0.06479
1 온스	0.0625	1	0.000028	0.02835	28.3495
1 파운드	1	16	0.00045	0.45359	453.592
1 돈	0.00827	0.1223	0.000004	0.00375	3.75
1 근	1.32279	21.1647	0.0006	0.6	600
1 관	8.2672	132.28	0.00375	3.75	3750

부 피

단위	갤런 (gal)	세제곱 야드(yd3)	세제곱 피트(ft3)	세제곱 인치(in3)	리터(l)	세제곱 미터(m3)	세제곱 센티미터(cm3)
1 cm3	0.00026	0.00001	0.00003	0.06102	0.001	0.0001	1
1 m3	264.186	1.3082	35.3165	61027	1000	1	1000000
1 리터	0.26418	0.0013	0.03531	61.027	1	0.001	1000
1 in3	0.00432	0.00002	0.00057	1	0.01638	0.00001	16.386
1 ft3	7.48051	0.03703	1	1728	28.3169	0.02931	28316.8
1 yd3	201.974	1	27	46656	764.511	0.76451	764511
1 갤런	1	0.00495	0.16368	231	3.78543	0.00378	3785.43
1 말	4.76567	0.2359	0.63707	1100.41	18.039	0.01803	18039
1 되	0.47656	0.00234	0.0637	110.041	1803.9	0.0018	1.8039
1 홉	0.04765	0.00023	0.0066	11.0041	0.18039	0.00018	180.39

넓 이

단위	평	평방자	에이커(acre)	제곱야드(yd2)	제곱피트(ft2)	아르(a)	제곱미터(m2)
1 제곱미터	0.3025	10.89	0.00024	1.1958	10.764	0.01	1
1 아르	30.25	1089	0.02471	119.58	1076.4	1	100
1 제곱피트	0.0281	1.0117	0.000022	0.1111	1	0.000929	0.092903
1 제곱야드	0.25293	9.1055	0.000207	1	9	0.00836	0.83613
1 에이커	1224.2	44071.2	1	4840	43560	40.468	4046.8
1 평방자	0.02778	1	…	0.10982	0.98841	0.00091	0.09182
1 평	1	36	0.00081	3.9537	35.583	0.03305	3.3058

라. 출입국/비자

1) 비자의 종류

□ 비자 유형

○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시 필요한 비자 종류와 그 신청절차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출장 등 비지니스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방문은 관광 및 상용 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해당 비자에는 B1, B2 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단, 이러한 비자는 관광, 견학, 요양, 친지 방문, 세미나 참가 등이 목적이며 이를 가지고 미국에서 장기 체류 및 취업은 불가하다.

미국 방문 비자 종류

B1	단기 상용 방문. 여권 및 비 이민사증 신청서, 출장증명서 및 법인인감 1통, 본인 사업체와 미국 회사들 간의 사업관계 근거서류 (예: 서신, 텔렉스전문, 신용장 등)
B2	단기 관광 방문. 여권 및 비 이민사증 신청서, 질의서(양식 SEO-134), 호적등본 및 고용/재산/예금/수입 등의 근거서류

○ 비자 발급 구비 서류
- 비 이민 비자신청서(DS-156): 빠짐없이 기입 후 서명하고, 신청자 사진 첨부
- 추가 비 이민 비자신청서(DS-157)
- 신한 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00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 호적등본 1 통
- 최소한 6 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소득금액 증명서

・봉급생활자: 재직증명서, 고용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본인의 사업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줄 수 있는 세금 증명,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 통장
・그 외, 당사자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로 갑근세 증명,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재산세 납부증명, 또는 은행잔고증명)

- 은행 통장 원본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출장으로 갈 경우에는 출장증명서
-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 유의사항(http: //usembassy.state.gov/seoul/wwwh1801k.html)

・사진은 최근 6 개월 이내에 찍은 것(50mm X 50mm)으로 별도의 규정사항이 있음.
・전자 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한 세금증명서는 미국 비자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상기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
・이미 미국여행 비자를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동일목적 여행의 경우 인터뷰 없이 서류제출만으로 비자발급이 가능함. 다만, 학생일 경우 성적 증명서가 필요함.
・2004 년 9 월부터 비자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져 준비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함.

2) 비자 발급 방법

○ 미국은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비자발급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상호 비자면제 협정은 우리나라의 IMF 위기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 증가,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보안조치 등에 따라 상당기간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한미정상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은 5 년이나 10 년까지 발급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 비자나 비즈니스용 방문 비자는 공항도착 후 미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1~6 개월의 체류기간을 인정해주며, 9.11 테러 이후 최근에는 체류기간을 1 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향도 있다.

○ 관광 비자 취득 후,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등으로의 신분(status) 변경이 가능하지만 전문 브로커 등을 이용하는 비용이 최대 5,000 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단, 미국을 경유하여 제 3 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미국 도착 후 8 시간 이내에 제 3 국행 비행기에 탑승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업무 현황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 번지
- 홈페이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 전화: 02-397-4114
- 휴무일: 미 국경일 및 한국 국경일, 토요일, 일요일
- 비자신청: 10:00～12:00, 14:00～17:00
- 비자발급: 10:00～12:00, 14:00～16:00
- 소요시간: 비 이민 비자신청의 경우, 서류 제출 후 5~8 일 정도
- 비자신청 수수료: US$131 (2008 년 1 월 1 일 이후 적용)

3) 비자 갱신

□ 방문 비자를 전에 받은 경우

○ 유효한 미국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를 만기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이 만기되어도 비자는 유효하다. 생체정보 인식 비자 발급 전에 발급된 비자도 유효하다. 미국을 여행할 때에는 미국 이민

국에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구 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구 여권에 있는 비자와 비자가 있는 페이지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현재 소지하고 있는 미국 비자를 갱신(기간연장)하려면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처음 신청자와 동일하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일시를 예약해야 하며, 인터뷰 일시는 반드시 비자정보 인터넷서비스 사이트(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해야 한다.

□ 상용 / 방문 비자 갱신대상

○ 주한 미대사관에서 1 년 이상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았고, 현재 그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곧 만기될 예정이거나, 만기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인 경우
○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증빙서류 첨부) / 여권이 훼손된 경우

□ 구비 서류

○ 유효한 여권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00 달러)
○ 비자신청서 (사진첨부)
○ 미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유효기간 1 년 이상의 비자가 있는 여권을 반드시 함께 제출

4) 출입국 절차

○ 직항 편 탑승 시에는 당해 공항 최초의 도착 시에서 입국 수속을 하고 있다. 입국심사(Immigration and Customs)는 여권과 기내에서 기입한 ED 카드 제시하여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스탬프를 찍고, ED 카드의 반 권을 붙이면 입국수속이 완료된다.

○ 9.11 테러사태 이후 공항의 보안검색이 강화되어 출입국 검색 시 벨트와 신발까지 벗어야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아울러, 입국 시에는 반드시 체제주소를 기입해야 하므로 출발 전 반드시 투숙 호텔이나 방문인사 주소를 휴대해야 한다.

□ 입국 절차

입국심사 → 수하물 찾기 → 세관검사 & 동식물 검역 → 도착 로비

○ 입국 심사대는 외국인 전용 심사대와 미국시민 전용 심사대로 나뉘어져 있다. 여행객의 경우, 외국인 전용 심사대에서 이민국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기내에서 작성), 세관신고서를 제출한다.

○ 미 대사관의 비자를 받았으나, 최종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은 이민국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체재 일수, 장소와 입국 목적 등을 묻는 심사관의 질문이 끝나면, 사진 촬영과 함께 왼손,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지문 채취가 이루어지고, 입국 스탬프를 찍은 여권, 출입국 신고서 반쪽, 날인한 세관신고서를 돌려준다.

○ 신고서의 남은 반쪽은 미국 출국 시 필요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입국 심사대를 빠져 나오면 수하물을 찾는 장소(BAGGAGE CLAIM AREA)로 가서 짐을 찾아 통관 수속을 밟는다.

□ 출국 절차

탑승수속 & 출국수속 → 보안검사 → 탑승

○ 미국의 대도시에는 국제공항이 2 개 이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공항을 사용하게 될지 미리 확인해둔다.

○ 한편, 9.11 테러 이후 공항 및 기내 보안이 강화된 관계로 탑승수속을 밟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편이다. 적어도 비행기 출발 3 시간 전에 나와 수속을 밟는 것이 좋다. 출국수속은 먼저 각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미 입국 시 작성했던 출입국신고서의 나머지부분을 제시한다. 카운터의 직원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입국신고서를 회수한 후 탑승권을 주는 것으로 출국수속은 완료된다.

○ 부칠 짐이 있을 때는 이곳에 맡기고 수하물표를 받는다. 탑승수속이 끝나면 탑승권에 적혀 있는 탑승 시간과 게이트를 확인한다. 별도의 출국심사 없이 탑승구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보디 체크와 보안 검사를 받는다. 면세 쇼핑은 비행기 출발 40 분 전에 구입이 마감된다. 탑승은 비행기출발 20~30 분 전에 시작되므로, 그 시간 전에 게이트 앞에 도착한다.

5) 세관(CUSTOMS) 신고

○ BAGGAGE CLAIM AREA 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 세관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여권과 세관 신고서를 제시하고 수하물의 검사를 받게 되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용 녹색 램프 검사대로 가면 된다. 신고할 것이 있거나 큰 화물을 가지고 있으면 빨간 줄 쪽으로 가서 화물검사를 받는다.

○ 만약 과세대상 물품이 있으면,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이를 보고 세관 직원이 신고서에 세액을 계산하여 적고 스탬프를 찍어서 돌려 주면, 세관 뒤쪽에 있는 납세 카운터에 가서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대상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견되면 압류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 면세 반입 가능 한도
- 신변품 이외에, 담배 1 보루, 술 1 병, 그 외 선물로 총액 100 달러 이내 물품
- 거주자는 400 달러, 비거주자는 100 달러 이상 관세 10%, 소지한 금액이 1 만 달러 이상인 경우 세관 신고 대상.

○ 반입금지품목
- 무기류, 마약, 허가 없이 반입되는 모든 고기류, 동물, 과일, 야채, 나무 등의 식물류의 지참을 금하고 있으며, 짚 같은 것도 식물로 간주되므로 포장에 주의해야 함. 단, 어포류, 멸치, 오징어 등과 김, 미역, 인삼(말린 것), 고추장, 된장, 김치, 젓갈류는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함.

6) 공항-시내교통편

○ 공항 밖으로 나가, 때와 장소에 알맞은 교통수단을 선택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면 된다. 시내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모를 때도 공항 내에는 대부분 'Grand Transportation'이라고 하여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가 쓰여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면 된다.

주요 도시 공항-시내교통편 안내

샌프란시스코	○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택시, 호텔 및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Bart(Bay Area Rapid Transit) 등이 있음.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공항간의 거리는 비교적 단거리로 택시 이용시 요금은 약 25~30 달러팁 별도), Bart(Bay Area Rapid Transit)를 이용하는 경우 다운타운 엠바카데로(Embarcadero)역까지 요금은 5.15 달러 수준 ○ 공항과 샌프란시스를 연결하는 셔틀 버스는 다운타운 시내, 산호세, 오클랜드 등 인근의 주요 도시까지 운행 - America Airport Shuttle(www.americanairport.com): 요금은 11~69달러 (인근지 포함) . Lorrie`s Airport Service (www. sfovan.com) - SFO Airport Inc.(www.sfoairporter.com): 요금은 4달러 - SuperShuttle Transportation System(www.supershuttle.com)
뉴욕	○ 공항에서 맨하튼 시내로 이동하는 보편적 방법 -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맨하튼 도착 후 도보나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 공항에서 처음부터 택시를 타는 방법 ▪ JFK공항의 경우, 맨하튼까지 택시비는 약 45달러팁·통행료 별도)이 며 Express Bus는 13달러 택시는 일반 택시(Yellow Cab)와 한국계 콜택시로 요금은 비슷하나 콜택시는 공항에서 전화한 후 약간 기다려야 함. ▪ 뉴욕 에어포트: 각 항공사의 공항 터미널 승차장에서 맨하탄으로 운행되는 대형버스. 편도 13달러 (718-875-8200, www.nyairportservice.om) ▪ 그레이라인 공항셔틀: 공항에서 맨하튼 주요 호텔까지 운행. 1인당 14달러 www.graylinenewyork.com) ▪ 슈퍼셔틀: 공항에서 맨하탄의 호텔, 집, 사무실 등으로 운행되는 소형 밴. 편도 15달러도. (1-800-258-3826, www.supershuttle.com)
보스톤	○ 택시: 썸머터널을 통과하여 시내 도착. 25달러전후(터널통행료 3달러 공항 이용료 1.5달러별도) ○ 공항셔틀버스: 시내의 주요 호텔들까지 운행. 편도 14달러 케임 브릿지의 호텔까지는 12.5달러(81-894-3100) ○ 워터셔틀: 공항에서 워터셔틀버스를 타고 승선장으로 가서 워터셔틀을 타면 보스턴 만을 가로질러 다운타운 로즈워프까지 7분이면 도착. 일반 10달러 (617-330-8680) ○ 지하철: 공항에서 무료 셔틀을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T라고 부르는 보스톤 지하철 이용. 블루라인이 다운타운을 경유함.
디트로이트	○ 공항-시내 이동 시 대중 교통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며, 택시 및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주요 기업들은 디트로이트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장 시 네비게이터가 장착된 렌터카를 임차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임.

마. 환율/환전

1) 화폐 단위

○ 화폐단위는 달러(US$)로서 국제 기축통화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주화에는 1, 5, 10, 25 Cent 가 통용되며, 1 달러 주화도 있으나 별로 유통되지 않는다. 지폐는 1, 2, 5, 10, 20, 50, 100 달러가 시중에 유통되며, 은행간 500, 1000 달러가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2) 환 전

○ 일반 시중에서는 대부분 달러화로 유통되며, 외국환을 가진 소지자는 "Exchange"라고 쓰인 은행이나 환전소, 공항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은행의 영업시간은 대체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전 9 시 30 분에서 오후 3 시까지이고, 금요일에는 6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토요일에는 대체로 휴무이지만, 일부 대도시 은행의 경우 토요일에도 영업을 한다. (은행별 근무시간 등은 상이할 수 있음)

3)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는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어느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이 있으며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매장에 따라서는 특정 카드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한 결제시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 뒷면의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매장에서 직접 결제시에도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는 바,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항공교통

○ 뉴욕, LA 등은 각각 우리나라 사이에서 1일 1회 이상의 항공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카고나 워싱턴 등에도 직항로가 있다. 우리나라의 양대 항공사 외에 미국 국적의 항공사 들도 다수 취항하고 있어 한미간 항공라인은 어느 지역보다 편리한 편이다. 항공 요금은 시즌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Economic class 요금이 1,000 달러 정도이다. 미국 내 도시 간 교통은 잘 발달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는 편이다.

2) 미국 내 교통

□ 맨하탄 지역 중심

○ 택시

- 미국 내 택시는 Yellow Cab으로 불리며, 공항과 시내에서는 어디에서든 승차할 수 있다. 뉴욕 시에서는 뉴욕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신변 안전 등을 위해 Yellow Cab 이용을 추천하고 있다. 공항-맨하탄 사이의 택시요금은 보통 45달러에 약 10%의 Tip과 다리·차량 통행료 등을 납부한다.
- 맨하탄 내에서 택시 이용시 요금은 기본 요금(2.5달러)에 0.25 마일에 40센트씩 추가된다.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정지 또는 저속 운행시에는 1분마다 20센트씩,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요금 50센트가 추가된다. 맨하탄, LA 등 일부 한인 밀집 지역의 경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들이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이 저렴하나 사고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한다.
- Tip은 10달러 미만일 때는 거스름돈으로 주며, 10달러 초과 시 1달러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편이다. Yellow Cab외에 고급 승용 차로 운행하는 콜택시가 있으며, 가격은 택시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초행자에게는 종종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대중 교통
- 여타 도시 지역과 달리 뉴욕은 버스와 전철이 잘 발달되어 있어 관광객들도 손쉽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철과 버스노선은 각 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무료로 배포된다. 1회 탑승 비용은 2달러로 저렴한 편이며, 3시간 이내에서는 버스-전철을 연계한 이용이 가능하다.
- 그러나 LA 등 일부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취약해 이동이 많을 시에는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 로스앤젤레스

○ 한국과의 교통
- 인천~로스앤젤레스 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싱가폴 항공, UA, Northwest 등이 운항 하고 있으며, 비행 시간은 약 11시간 반이 소요된다. 대한 항공은 일일 3회, 아시아 항공은 일일 1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다.
-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경우, L.A.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국제선 공항청사를 일단 빠져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해당 항공사에 소재하는 터미널로 셔틀 버스 혹은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경유 시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도착 시간과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간은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선 청사가 7개 터미널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착오로 엉뚱한 국내선 청사에 내릴 경우 무거운 여행가방과 함께 수백 미터의 거리를 이동 해야 하는 곤란을 겪게 되는 때문이다.
- 1984년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다시 태어난 서해안 최대의 공항으로 79개 항공사가 정기 여객편을 운항하고 있다. Terminal1~8까지, 그리고 Tom Bradley International Terminal로 나뉘어져 항공사에 따라 사용하는 터미널이 다르다.
- 외국 항공사는 Tom Bradley Terminal을 사용하고 그 외에 노스웨스트(Terminal2), 델타(Terminal 5), 유나이티드 (Terminal 7)의 국제선은 각각의 항공 터미널에 도착한다. 모든 터미널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층이 '출국'이며 아래층이 '입국'으로 되어 있다. 터미널 간의 이동은 셔틀 버스 A를 이용한다. 하얀색 바탕에 청색과 녹색 선이 들어가 있는 버스이다. 'LAX Shuttle'이라고 쓰여진 팻말 아래에서 기다린다.
- Tom Bardley Terminal의 입구 층에는 안내소가 있어서 공항 안내 외에 로스앤젤레스의 관광지와 호텔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AX)
  - 주소: World Way, Los Angeles, CA 9009
  - ☎(310)646-5252

○ 공항에서 주요 목적지까지
- 로스앤젤레스 출장자들은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시 초행일 경우에는 렌트카 보다는 택시 혹은 셔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공항 → 로스앤젤레스 시



○ 슈퍼 셔틀: Super Shuttle

- 파란 차체에 황색 글자가 있으며 LAX와 호텔을 연결한다.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 탁송화물 찾는 곳)에서 도로로 나와 'Van Stop'f이라고 쓰여진 파란 팻말 아래에서 기다리면 된다. 벤은 행선지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선지를 확인하고 탄다.
- 주소: 7001 W.ImperialHwy, Los Angeles, CA 90045,
- 전화: (310)782-6600

○ MTA 버스

- 배기지 클레임에서 나와 'LAX Shuttle'이라는 팻말 아래에서 하얀색 바탕에 청색과 녹색 선이 들어간 버스를 기다린다. 'Lot Cat 96th Street'라는 표시가 있는 버스(무료)를 타고 Lot C 로 간다. 바로 부근이 MAT 버스(시내버스)공항 터미널이다.
- 로스앤젤레스 시내로 들어가면 승차장 No.13에서 #42, 또는 승차장 Mo. 11 에서 #439를 이용한다.
- 헐리우드로는 승차장 No, 11 에서 #439 시내행을 탄다. (바로 옆에 있는 승차장에서 같은 #439가 반대 방향 행도 출발하고 있으므로 주의) 이 버스는 La Cienega Blvd.를 북상하여 샌타모니카 프리웨이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전에 정차하는 트랜짓 샌터

Transit Center에서 내린다. 초행이라서 찾기 어려우면 운전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곳에서 #217로 갈아타면 Fairfax Ave. 를 북상하여 마침내 Hollywood Blvd. 로 나온다.
- 샌타모니카로는 승차장 No.3에서 Santa Monica Blue Line Bus 3을 이용한다.

○ 택시
- 공항에서 시내까지 30달러, 할리우드까지 25달러 샌타모니카까지 20달러 정도이다. 팁은 별도로 주어야 한다.

○ 렌터카 이용 (공항에서 무역관으로)
- 405번 프리웨이(북)으로 진입하여 약 10분간 북진 후 10번 프리웨이(동)로 변경 후 약 20분 서쪽으로 진행, Crenshaw로 나가는 출구로 프리웨이에서 벗어나 Crenshaw 북쪽으로 진행하여 Crenshaw가 끝나는 지점에서 Wilshire Blvd를 만나게 되며 동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약 3~5분간 서쪽으로 향하면 우측에 Korea Trade Center 건물을 만나게 됨.

□ 시내교통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이동 시에는 택시, 시내버스, 다운타운 셔틀 버스, 지하철 등이 있으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 택시
- 미국 내 택시는 Yellow Cab으로 불리며, 공항과 시내 어디에서든 승차할 수 있다. 공항-로스앤젤레스 사이의 택시요금은 보통 30달러에 약 10%의 Tip 이 붙는다. 로스앤젤레스 내에서 택시 이용 시 요금은 기본 요금(2달러)과 0.2마일에 20센트씩 추가된다. 교통 체증으로 차량이 정지 또는 저속 운행시에는 32초마다 20센트씩 추가된다. 로스앤젤 레스 시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들이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이 저렴하나 사고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망한다.
- Tip은 10달러 이하 시 거스름돈으로 주며, 10달러 초과 시 1달러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일반 관행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택시를 사전에 예약을 해야하며 투숙 호텔에 문의하면 된다.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콜택시도 있으며, 가격은 택시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초행자에게는 종종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한다.
- 로스앤젤레스 택시회사: Los Angeles Yellow Cab 877-7333305
- 한국택시회사: 벨택시 213-382-0303

○ 메트로버스(시내 버스)
-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자가용을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연간 버스 이용객 총수가 국내 최고이다. 직접 타보면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차 안이 안전하지 않다', '정류장을 찾기 어렵다' 등의 불평이 많은 메트로 버스이지만 시민의 발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또 교통체증으로 고민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통근 수단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흰색 차체에 오렌지색 선이 들어가 있고 창 쪽은 검정색이 있다. 200개 정도나 되는 노선이 있지만 노선 번호에 따라 그 버스가 지나가는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 1~99: 시내를 기점으로 하는 보통 노선
- 100~299: 시내를 통과하지 않는 노선
- 300~399: 쾌속 노선

・400~599: 하이웨이를 다리는 급행노선
・600~699: 임시편

○ DASH: 다운타운 셔틀버스
- DASH는 다운타운을 도는데 편리한 수단이다. 흰색차체에 청색과 자주색 선이 들어가 있다. 차안은 매우 깨끗하고 쾌적하다. 버스 정류정에도 청색과 자주색 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기 쉽다.
- 다운타운에는 평일에 6개의 Dash선, 주말에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우범지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DASH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문의 ☎(213)2273)

○ 메트로 블루라인: Metro Blue Line (지하철)
- 시내 교통수단으로서 철도가 전혀 없었던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스로 등장한 블루 라인은 90년 여름에 개통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 설계된 지하철 노선망(일부 공사 중)의 일환이다. 다운타운의 7th St.와 Flower St.의 모퉁이(지하)에서 롱 비치까지 22개의 역을 약 1시간 만에 달리고 있다. 실내는 매우 깨끗해서 마음까지 쾌적해진다.

□ 참고 사항

○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편 이용도 출장자가 상담을 위해 이동하는 데에는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이동수단은 자동차로 대중교통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행의 경우 목적지에 정확히 내리지 못할 경우 약속시간을 놓치기 십상이며, 정착 지역마다 안내방송도 초행자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마치고 시간여유가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것도 호주를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 로스앤젤레스 출장자들에게는 대부분 택시이용이 권장된다. 택시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로스앤젤레스에는 한 도로 명이 도시 안에도 여러 개가 존재하여 자칫하면 엉뚱한 주소로 찾아갈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거나 렌트카를 이할 경우에도 도로명 뒤에 표기된 구역번호 (Zip Code)을 함께 알아두어야 실수가 없다.

○ 미국의 주소는 번호 도로명, 사무실 번호, 도시, 주, 구역 번호(Zip Code) 순이다. 도로명 앞에 북(North, N.), 남(South, S.) 동(East, E.), 서(West, W.)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워싱턴 DC

□ 공항 ↔ 시내

○ 슈퍼 셔틀: Super Shuttle
- 파란 차체에 황색 글자가 들어가 있으며 Dulles Int'l Airport 배기지 클레임(Baggage claim: 탁송화물 찾는 곳)에서 Ground Transportation to the Super shuttle boarding area라고 적힌 곳으로 가면 매표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행선지를 말한 후 표를 구입(첫 표는 25달러, 추가인원은 8달러, 부가세 별도) 하면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탑승할 버스로 안내한다. 버스가 출발 한 후, 본인의 행선지 주소를 운전사가 부르면 다음 정차 장소에서 하차하면 된다.

- www.supershuttle.com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표 예매가 가능하며, 전화 202-296-6662를 통해서도 표 구매가 가능
- 공항으로 돌아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유선상으로 표를 구입하면 되는데, 표 구입시 알려준 픽업장소와 시간에 맞춰 나가면 버스가 도착해 있다. 버스가 예정시간 보다 미리 도착해 있거나 늦게 도착할 경우 운전기사는 탑승 예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한다.

○ Washington Flyer Coach Service
- 메트로를 통해 행선지로 가고자 할 경우, Washington Flyer Coach Service 탑승 후, 공항서 가장 가까운 역인 West Falls Church에서 내리면 된다. DC 다운타운으로 가고자 할 경우 여기서 "New Carrollton"행 메트로에 탑승하면 된다. 표는 Arrivals Door #4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버스는 매 30분마다 출발한다.
- 메트로를 이용해 공항에 가고자 할 때는 오렌지 라인 역에서 "Vienna/Fairfax/ GMU"행 메트로를 타고 West Falls Church에서 하차한 후, Washington Flyer 를 가리 키는 표지판을 따라가면 탑승장소가 나온다. 표는 버스 운전기사에게서 살 수 있다.

○ 택 시
- "Taxi Passengers"라는 팻말이 있는 장소에서 공항내 운행하는 공식 택시 업체인 Washington Flyer Taxi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마스터, 비자, 디스커버)로 택시요금 지불이 가능하다. 공항에서 워싱턴 DC 다운타운까지 요금은 대량 U$ 51~58 사이로 (미터 요금제) 알려져있다.
-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703-661-6655(Washington Flyer Taxi)에 전화를 걸어 픽업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 된다. 요금은 U$51~58로 비슷하다.

□ 시내 교통

○ 한국에서 워싱턴 DC를 방문한 출장자가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렌탈 피 및 주차료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담이 따른다. (숙박호텔 내 주차도 1박 당 20달러 주차료부과) 렌탈피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한다면, 주말요금과 주중 요금이 다른지, 렌탈 장소와 반환 장소가 다를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지와 공항에서 렌트하는 것이 시내에서 보다 저렴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인터넷으로 렌트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Travelocity (www.travelocity.com), Budget (www.budget.com), Orbitz(www.orbitz.com) 등의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만 25세 이상, 신용카드 소지자의 경우 한국 면허만으로 렌탈이 가능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 국제면허증도 가져오는 것이 좋다.)

○ Metrorail, Metrobuses 등의 대중 교통편은 신속하고 편리하며, 가격이 적절하다는 면에서는 권장할 만하나, 연결 구간이 많지 않아,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택시로의 환승이 불가피하다

○ 거의 대부분의 관광 명소에 Metrorail Station이 소재하고 있으며, 운행 시간도 긴 편이다. 월요일~금요일에는 오전 5시, 주말에는 오전 7시에 운행이 시작되며, 일요일~목요일에는 자정, 금/토요일에는 오전 3시에 운행이 끝난다. 요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목적지와의 거리에 따라 1회당 1.35~2.35달러 정도 부과된다. 그러나, 주중 러시아워, 금/토요일 새벽 2시 이후엔 요금 범위가 1.35~3.90달러로 변경된다. 1일 무제한

패스는 6.5달러(오전 9:30 이후 사용 가능), 1주일 무제한 패스는 22달러 (장거리일 경우에는 추가요금 부과)에 구매가 가능하다.

○ Metrobus는 목적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1.25달러가 부과된다.(고속버스에 잘못 탑승했을 경우 3달러 부과됨에 유의!) 이른 시간이나 주말에는 버스 운행 간격이 길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워싱턴 DC 내 택시 요금은 뉴욕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싼 편이지만 요금 체제가 특이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미터로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DC내 요금 체제는 Zone(구간)별 요금제를 택하고 있다. 택시 뒷자석에 구간대를 표시해둔 지도가 부착되어 있는데, 같은 구간으로의 이동일 경우 5.50달러, 1구간 추가시 2.10달러, 2구간 추가시 1.90달러가 추가된다. 또한 동승자가 늘어날 때마다 1.50달러가 가산되며(6세 미만일 경우 무료), 트렁크에 짐을 실을 경우 짐 하나당 0.5달러(오전 7:00~9:00, 오후 4:00~6:30사이에는 1달러)를 더내야 한다. 한편, 콜택시일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2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 되며, 눈사태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선포시 구간별 요금은 2배로 부과된다. DC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택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마일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 단, 2008년 4월 1일부터 워싱턴 DC도 미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워싱턴 Adrin Fendy 시장이 최근 발표한 택시미터제 내용에 따르면, 1/6마일까지 기본 요금 4달러가 적용되고 이후 매 1/6마일당 25센트가 추가될 예정이다.

□ **참고 사항**

○ 워싱턴 DC는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으로 구획이 구분되어 있어 길 찾기가 상당히 쉬운 편이다. 주소는 거리명과 번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거리명은 국회의사당(Capitol Dome)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방향으로 뻗은 길은 남/북 방향 각각 아라비아 숫자가, 동서 방향으로 뻗은 길은 동/서 방향 각각 영문 알파벳이 매겨졌다(단, J, X, Y, Z 거리가 없음에 유의) 또한, 동서남북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거리명 뒤에 NW, NE, SW, SE 등이 붙여져 있어 길 찾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4) 디트로이트

○ 주요 기업들은 디트로이트 도심이 아닌 외곽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나, 지역이 넓어 택시비 부담이 크고, 공항이나 특급 호텔이 아니면 택시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 콜택시를 이용해야만 한다. 유류비가 한국의 약 1/3 정도로 저렴하고, 길 찾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동수단이다. 단, 디트로이트 다운타운 내 이동은 공사 구간이 많아 택시 이용이 유용하며, 택시비는 기본요금 3달러에 추가 1km 당 1달러가 추가된다.

○ 공항 각 터미널의 1층으로 가면 렌트카 센터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사전 예약하지 않은 경우는 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차량 임차 가능여부 및 가격 문의 가능하다. 렌트카 센터로 이동하는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으며 셔틀 버스를 타고 5분정도 가면 공항입구 근처의 렌트카 센터가 나온다. 임차시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가능하며, 요금은 50~100달러/1일(보험료 포함, 차종에 따라 상이) 수준이다.

○ 디트로이트 인근 도시들은 번지와 도로명으로 되어 있으며, 다운타운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동서 도로는 1 Mile Road, 2 Mile Road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 도로들은 각기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다. 지도 상이나 표지판의 도로명 앞에 E, S, N, W 등을 붙여 방위를 나타내고 있어 지도만 있으면 길 찾기가 쉽다. 단, 도로 공사구간이 많은 편이라 Detour(우회) 표지판에 유의해야 한다.

5) 달라스

□ 공항 ↔ 시내

○ 달라스에는 Dallas-Fortworth Airport(DFW)와 Love Field Airport등 2개의 공항이 있으나 국제선의 경우 대부분 DFW 공항에 착륙한다.

DFW Airport	Dallas시와 Forthworth시의 중간이며 달라스시내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America Airline의 주공항이며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공항임)
Love Field	Dallas 시내에 위치한 주로 국내선 공항(Southwest Airline의 주공항)

○ 대중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차량이 필수적이며, 공항에서 차량을 렌트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이 없으며, 버스도 구간이 한정되어 있고 배차간격이 크다.

○ 차량 임차시 각 터미널 지하 1층으로 가면 “Rental Car 센터”로 향하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탑승 후 5분 정도 지나면, 공항입구 근처의 Rental Car 센터에 도착한다. 임차 시 여권 및 국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고 Full 보험 가입을 권장된다.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금은 보험료를 포함해 하루당 50~1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LoveField 공항을 이용할 경우 각 터미널 (A, B, C, D, E)의 밖으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이나 콜택시를 부르는 장소가 있다. 요금은 30~40달러(거리/시간 병산제) 정도로, 야간에는 20%정도 할증료가 붙는다. 요금의 10%는 별도 Tip으로 운전사에게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 DFW 공항내 자동차 임차회사 연락처
- Alamo : 1-800-327-9633 / www.alamo.com
- Avis : 972-574-4130 / www.avis.com
- Budget : 1-800-527-0700 / www.budget.com
- Dollar : 1-866-434-2226 / www.dollar.com
- Enterprise : 972-586-1100 / www.enterprise.com
- Hertz : 972-453-4600 / www.hertz.com

○ 시내 교통
- 달라스는 대중교통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등이 드물뿐만 아니라, 다운타운을 제외하고는 건물간의 거리도 꽤 넓어서, 5분거리 이상의 곳을 도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터제로 요금이 산정되는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6) 시카고

□ 한국과의 항공편

○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는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직항 편을 운항하고 있음. 약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 공항에서 주요 목적지까지

택시나 공항셔틀, 전철 이용이 가능하다.

○ 택 시
- 짐을 찾고 바깥으로 나오면 쉽게 택시 정류장을 찾을 수 있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면, 안전하게 행선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공항에서 시내까지 요금은 대략 35~40달러선이다. 요금 외에 15%의 별도 팁을 주는 것이 현지 관행이다.

○ 공항 Shuttle 이용(Continental Airport Express 기준)
- 공항 셔틀은 우리 나라의 밴정도의 크기로 매일 아침 6:00에서 저녁 11:30까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시내 주요호텔과 연결되어 특히 호텔에서 공항,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이동에 편리하다. 요금은 요금은 1인당 평균 23달러정도로 Ticket 판매/Pickup 장소는 Terminal 1,2,3의 경우 짐 찾는곳(Baggage Claims) 맞은편 에 위치하며 Terminal 5의 경우 세관신고서(US Customs)를 나와 밖에 위치하고 있다.

○ 전 철
- Blue Line 전철을 타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약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24시간 운영되며 요금은 1.75달러이다.

□ 시내 교통

○ 대중 교통
- 시카고의 대중 교통 수단은 CTA Bus, Metra, CTA Train 등 3가지로 대별된다. CTA BUS (Chicago Transit Authority)는 시카고 시내를 거미줄처럼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노선이 많으나 초행자가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Metra은 운행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비즈니스 출장자가 이용하기에는 모두 무리가 있으므로 보통 택시나 렌트카를 이용한다

○ 택 시
- 기본요금은 1.90달러로 마일 당 1.60달러, 6분에 운행 시간에 약 2달러 추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금의 15~20%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현지 관례다.

○ 렌트카
- 공항이나 시내에서 렌트 가능하며 렌트비는 렌트카 회사, 차종 및 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하루당 보통 60달러가 일반적이다.

○ 주요 렌트카 업체
- Alamo : 800-327-9633, 708-671-7662,312-332-2908
- Avis : 800-331-1212, 312-694-5608
- Budget : 800-527-0700, 312-686-6800
- Hertz : 800-654-3131, 312-686-7272, 312-644-5540, 312-735-7272

7) 국내/국제통신 및 인터넷 사용

□ 국내 통신

○ 일반 가정용 전화는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공중전화를 이용한 비용은 매우 비싼 편이다. 동전을 이용하여 공중전화를 할 경우, 뉴욕에서의 시내전화가 분당 25센트, 시외전화 (지역 번호가 틀리거나, 주가 틀릴 경우) 35센트 이상을 필요로 한다. 다만, 선지급 전화카드 이용 시 대체로 분당 5센트 내외를 Charge하고 있다.

□ 국제 통신

○ 한국으로의 전화는 "011-82-한국 내 지역번호" 형태로 하면 되며, 호텔 내에서도 직접 국제 통화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카드 이용 전화기가 없어 다소 불편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을 수 있다. 공중전화기는 일부 공항에 설치된 신용카드 전화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전을 이용한 전화기만 설치되어 있다. 한국과의 통화 시에 동전을 이용할 경우 2~3분 통화에 10달러 가까이 소비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중전화는 일반 가정용 전화보다 전화요금 단가가 높음)

○ 이러한 높은 비용과 사용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미국에는 최근 선지불 전화카드(Pre-Paid Phone Card)사업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수퍼마켓이나 버스 역, 도로변에 위치한 잡지/신문 판매대와 같은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들 전화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공중) 전화기의 수화기를 든 상태에서 카드의 고유번호를 입력한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카드 회사에 따라 전화요금 단가와 Charge 방법이 상이하며, 전화의 품질도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당 10 센트 내외 Charge하거나, 연결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당 5센트 Charge하는 경우가 많음) 동전이나 전화 카드가 없을 경우, 공중전화기 등에 부착된 Collect Call 이용방법에 따라 국제전화를 할 수 있다.

○ 한국에서는 손쉽게 휴대폰을 대여할 수 있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휴대폰 대여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편의점, 대형 슈퍼 등에서 판매하는 선불 핸드폰과 선불 전화카드를 동시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 휴대폰은 3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로 기종에 따라 차이가 나며, 선불 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10, 20, 50달러 등 요금별로 판매되고 있고, 분당 0.25달러가 소요된다.

○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LG 텔레콤, KTF, SK텔레콤 등에서 미국 로밍 서비스를 받거나,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임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는 미국으로 출장 오는 상당수의 한국업체들이 미국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 인터넷 사용

○ 대부분의 호텔은 객실과 비즈니스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별로 인터넷 사용료가 다르므로, 체크인 할 때 호텔직원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체크 아웃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곳곳에 소재하고 있는 사이버 까페에서도 점심이나 음료를 즐기면서 적절한 가격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사이버 까페에 관한 정보는 www.cybercaptive.com과 www. cybercafe.com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공항이나 쇼핑몰,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에도 인터넷 키오스크(Internet Kiosk)가 위치, 분 단위로 요금을 청구하는데, 사이버 까페보다 요금이 비싼 것이 흠이다.

8) 국내 및 국제 편지 소포

□ 미국 내 우편

○ 현재 국내우편요금은 1온스까지 39센트이고, 다음 1온스당 23센트가 추가되며, 한국에 보내는 항공우편요금은 1온스에 80센트다. (1온스는 편지지 5장 정도의 무게)

○ 중요한 문서의 경우, Certificate of Mail을 권장하며, 일반편지 배송 시와는 다르게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배송해야 하며, 수수료는 편지 한 통당 90센트다. Certificate of Mail은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배달이 안되었거나 늦게 배달되었을 때 제날 짜에 보내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시스템으로 제날자에 보내야 하는 문서 발송 시 사용된다.

○ 중요한 메일들은 수수료가 들더라도 등기, 배달증명, 속달우편(Express Mail)과 빠른 우편(Priority Mail) 그리고 보험을 들면 문제가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소포를 보낼 때에는 소포 안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받는 사람의 주소를 넣어 두면 배달과정에서 포장이 벗겨져 겉에 붙인 주소가 없어졌을 때 우체국직원이 내용물 속에서 주소를 찾아 재포장하여 배달을 해주게 된다.

○ 모든 소포의 포장은 던져도 찢어지지 않도록 두꺼운 포장지로 해야 하며, 혹시 깨지거나 부숴지는 물건들은 스치로플 또는 스폰지 등을 이용하여 포장을 해야 한다. 모든 우편 물들은 정확한 주소와 정확한 우편번호를 적어야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되며, 주소는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분류할 때 도움이 되고 혹시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발신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 국내 우편 종류

○ 엽서(Post Card)
- 직사각형의 카드로서 길이가 5인치 이상이라야 되고 높이는 4-1/4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내용물을 넣거나 접지 않아야 되며, 우편요금은 23센트다.

○ 편지(Letter)
- 작은 직사각형의 봉투로서 길이가 5인치 이상이라야 되고 높이는 6-1/8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하고, 두께가 1/4 인치를 넘지 않아야 된다. 우편요금은 처음 1온스(편지지 5장 정도)에 37센트이며 2온스부터는 23센트씩 가산된다.

○ 대봉투(Large Envelope)
- 평면의 대봉투로서 길이가 5인치 이상이다. 높이 6-1/8 인치, 두께가 3/4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요금은 1온스에 49센트이며 2온스부터는 23센트씩 가산된다.

○ 소포(Package/Parcel)
- 박스, 두꺼운 봉투, 튜브 등의 물건으로 길이와 둘레를 합하여 130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하고, 무게가 70 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게에 따라 계산된다.

□ 우편물 서비스의 종류

○ 1 종 우편 (First-Class Mail)
- 무게가 13 온스까지이며 요금은 37센트부터 무게별 계산된다(엽서는 23센트). 지역에 따라 1 - 3일정도 소요된다.

○ 우편요금표
- 1온스 0.37달러, 2온스 0.60달러, 3온스 0.83달러, 4온스 1.06달러, 5온스 1.29달러, 6온스 1.52달러, 7온스 1.75달러, 8온스 1.98달러, 9온스 2.21달러, 10온스 2.44달러, 11온스 2.67달러, 12온스 2.90달러, 13온스 3.13달러
- 무게가 1온스라도 크기가 크면 12센트를 가산해야 한다(1온스에 49센트가 됨)

○ 빠른 우편(Priority Mail)
- 무게 14온스부터 70파운드까지이며, 1~3일 정도 소요된다. 우편 요금은 기본 3.85달러부터 시작하여 1파운드 이상은 무게와 지역에 따라 계산된다.
- 일반 서류나 선물, 상품, 판촉물 등을 보낼 때 많이 이용하며 봉투, 라벨, 박스나 테이프는 각 우체국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 속달 우편(Express Mail)
- 70파운드까지 허용되고, 전국 어디든지 다음날 배달을 원칙으로 하며 배달이 지연되었을 때는 우편 요금을 보상받는다. 13.65달러부터 무게에 따라 계산된다.

○ 소포(Parcel Post)
- 70파운드까지 허용되며 지역에 따라 2~9일 정도 소요된다. 작은 소포부터 큰 소포에 이르기까지 상품이나 판촉물, 선물 등을 보낼 때 이용하며, 우편 요금은 무게와 지역에 따라 계산된다.

○ 미디어우편물(Media Mail)
- 70파운드까지 허용되며 지역에 따라 2-9일 정도 소요되고 책이나 필름,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CD, DVD등을 보낼 때 이용한다. 소포보다는 우편 요금이 저렴한데, 무게에 따라 계산된다.

□ 국제 우편

○ 미국에서 한국으로 편지/소포를 보내는 방법은 크게 미국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과 일반 택배 회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 우체국이 일반 택배회사보다 가격은 저렴하나 배당 소요 시간이 좀 길다는 단점이 있다.

□ 미국 우체국을 이용해 한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방법

○ Global Express Guaranteed (GXG)
- 미국 우체국의 해외 우편 서비스 중 가장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로 온라인상 및 그리고 24시간 서비스 센터를 통해 현재 소포의 배달 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보험을 들지 않

아도 자동적으로 100달러까지는 보험이 되고 따로 보험을 구입시 최고 2,499달러까지 보험을 들 수 있다. 우체국의 잘못으로 인해 늦게 도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우편료를 전액 환불해준다. (최대 무게 70파운드)

○ Global Express Mail (GEM)

- 신속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GXG보다는 저렴한 서비스가 바로GEM 서비스다. GXG와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약속된 날짜에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서비스는 우편료를 변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GXG 와 같이 100달러까지 추가 비용 없이 자동 보험에 들게 되고 추가 비용으로 최대 5천 달러까지 보험을 들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없이 받는 사람이 우편물을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Return Receipt (리턴 리시트) 서비스를 해준다.

○ Global Priority Mail (GPM)

- 4파운드 미만의 소형 소포를 보낼 때 가장 저렴하면서 빠른 방법. 위 서비스들에 비해 '보장성', 즉 위의 두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험 및 return receipt 등의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신속한'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Flat Rate (단일 요금)를 적용받는 봉투를 사용할 경우 한국까지 작은 것이 5달러, 큰 봉투가 약 9달러 이다. 또한 최대 보낼 수 있는 무게 4파운드를 보낼 경우 한국까지 비용이 약 31달러다.

○ Global Air Mail

- 편지에서부터 일반 소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신속한 배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다. 보통 편지/서류의 경우 약 4파운드(약 30달러)까지 보낼 수 있고 소포의 경우 44파운드(약 185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 배달 시간은 약 4~10일 정도 소요되며(주말 및 연휴 제외) 추가 비용으로 보험 및 receipt return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Global Economy Services

- 무게가 많이 나가서 시간 보다는 비용이 더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서비스는 위에서 말한 air mail 서비스와 보험 및 보낼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제약 등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배로 배달이 되는 서비스다. 공식적으로 약 4~6주(주말 및 연휴 제외) 걸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한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방법**

-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편지/소포는 주로 Fedex, DHL, UPS, 한진 익스프레스 등 일반 택배 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보내는 방법은 각 회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업체명	웹사이트
Fedex	http://www.fedex.com/us/
DHL	http://www.dhl-usa.com/home/home.asp
UPS	http://www.ups.com/content/us/en/index.jsx
한진 익스프레스	http://www.hanjin.co.kr/

사. 호텔/식당

1) 호 텔

□ 미국의 호텔

미국은 여행자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전국에 걸쳐 수 만개의 숙박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관광지역과 공항주변, 전국 고속도로변에는 특히 많이 몰려 있다. 숙박시설을 구할 때는 예약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의 호텔과 모텔은 대개 가격,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SUPER DELUXE/ DELUXE/ EXPENSIVE/ MODERATE/ INEXPENSIVE의 5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 가격대

고급 호텔의 경우 대체로 200~300달러를 초과하며(단, 위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 HOLIDAY INN, DAYS INN과 같은 일반 비즈니스 호텔의 경우 100~150달러 내외, 여타 모텔의 경우 뉴욕과 같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00달러 내외 수준이다.

동일 체인 호텔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매우 다양하고, 성수기와 비수기, 예약방법 등에 따라 서도 가격 차이가 매우 심하며, DISCOUNT PROGRAM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맨하탄 소재 힐튼 호텔의 평균 가격이 200달러이나, 워싱톤 소재 호텔은 100달러에 그칠 수 있으 며, 또한 디스카운트 방법에 따라 이들 가격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개인이 직접 호텔을 예약하기보다는, 호텔 예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경우 가격 할인율이 높다.

인터넷의 호텔 예약 관련 웹사이트는 Hotels.com YAHOO 등 인터넷 서비스의 TRAVEL 카테고리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고, 미 국내에는 수십개의 관련 웹사이트가 있다.

미국에서는 호텔 이외에도 간편하고 요금이 싼 모텔, 젊은이 대상의 YMCA 및 유스호스텔, 가족적인 서비스의 B&B (BED & BREAKFAST: 미국식 민박), 대학기숙사 등 여러 숙박시설이 있다.

□ 호텔 / 모텔 무료예약 전화번호

원하는 호텔 이름의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현재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을 알려준다.

장소 이름을 모르더라도 공항 이름을 알려주어도 되며, 대부분의 공항 근처 호텔들은 공항-호텔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 AMERICANA HOTELS : 800-228-3278 (CONT'L USA)
- AMERICANA TRAVEL INNS : 800-453-1627 (CONT'L USA EXCEPT UT)
- AMERICA-WEST MOTOR HOTELS : 800-277-4700 (CONT'L USA)
- AMFAC : 800-277-4700 (CONT'L USA EXCEPT CA), 800-268-1734 (CA)
- BEST WESTERN : 800-780-7234 (CONT'L USA & CANADA)

- ㅇ COMFORT INNS : 800-228-5150 (CONT'L USA)
- ㅇ ECONO LODGES OF AMERICA : 800-446-6900 (CONT'L USA & CANADA)
- ㅇ EMBASSY SUITES : 800-362-2779 (CONT'L USA)
- ㅇ HAMPTON INN : 800-HAMPTON (CONT'L USA)
- ㅇ HILTON HOTEL : 800-HILTONS (CONT'L USA)
- ㅇ HOLIDAY INN : 800-HOLIDAY, 800-542-5800 (CONT'L USA & CANADA)
- ㅇ HYATT : 800-228-9000, 800-268-7530 (CONT'L USA & CANADA)

호텔 / 모텔 예약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사이트	내 용
www.lodgingresearch.com	미 국내 모텔 관련 웹사이트. 지역별 및 도시 별로 구분되어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가격대는 주로 100달러 미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www.cottagecountry.com	독립 모텔, 여관 등의 웹사이트
www.hotels.com	지역별, 가격 별 호텔 검색 가능
www.expedia.com	호텔, 항공, 렌터카 등 여행 관련 예약 사이트
www.orbitz.com	호텔, 항공, 렌터카 등 여행 관련 예약 사이트
www.travelocity.com	호텔, 항공, 렌터카 등 여행 관련 예약 사이트
www.180096hotels.com	전국 주요 도시의 호텔 예약 관련 웹사이트.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미국 내에서는 무료전화 이용 가능: 1-800-964-6835) 인터넷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된 모든 호텔 시설들과 정확한 위치, 연락처, 사진 등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 ㅇ 힐튼, 워커힐 등 주요 호텔의 경우 자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www.호텔 이름.com"과 같은 웹사이트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

- ㅇ 각 예약 사이트들은 여행 날짜와 장소에 따라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한 곳이 다르므로 필요한 때마다 각각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기간, 같은 장소의 호텔도 각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2~3군데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ㅇ 비수기 시즌에는 www.roomsaver.com 등에서 walk-in 쿠폰을 다운받은 뒤 직접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이 쿠폰은 예약 시 사용할 수 없고, 전화로 방이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 봉사료

- ㅇ 팁 문화는 일정치 않고 주에 따라 다르긴 하나, 팁이라는 것이 원래 봉사에 대한 답례이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여 봉사가 불성실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팁을 조금 주어도 상관이 없다.

- ㅇ 미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팁의 액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식당에서는 음식 요금의 15~20%를 지급한다.

○ 적정 TIPPING 예
- 레스토랑 웨이터: 청구서의 15%-20%
- 벨 보이: 가방 1개당 1달러
- 주차장 요원: 차량을 주차시켜 줄 경우(Valet Parking) 1달러
- 바텐더: 술값의 15%
- 룸 서비스: 10%-15%(대부분의 경우 호텔청구서에 포함)
- 호텔(또는 모텔): 1박 1인당 1-2달러

□ 지역별 주요 호텔

뉴욕(맨해튼)

호텔명	연락처	가격대 (성/비수기에 따라 상이)
Hotel Stanford	- 전화: (800) 365-1114 / (212) 563-1500 - www.hotelstanford.com	- Queen :U$ 206 - King Deluxe :U$ 240 - Suite : U$ 274
Park Central Hotel	- 전화: (800) 346-1359 / (212) 247-8000 - www.parkcentralny.com	- U$ 109~309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New York Hilton&Towers	- 전화: (212) 586-7000 - hiltonfamilynewyork.com	- U$ 239~409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Sheraton Park Avenue Hotel	- 전화: (212) 685-7676 -http://www.dooyoo.co.uk/hotels-internatio nal/sheraton-park-avenue-hotel/	- U$ 229~239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워싱턴 DC

호텔명	연락처	가격대 (성/비수기에 따라 상이)
Hotel Monaco	-전화: 1-877-202-5411 -웹사이트: www.monaco-dc.com	Standard room 기준, 싱글/트윈 요금이 동일하며 -주중: U$240~350 -주말: U$150~350
One Washington Circle Hotel	-전화: 1-800-424-9671 -웹사이트: www.thecirclehotel.com	Small suite 기준, 싱글/트윈의 요금이 동일하며 -주중: U$150~210 -주말: U$130~190
Red Roof Inn	-전화: 1-202-289-5959 -웹사이트:www.redroof-washington-dc-down town.com	Standard room 기준, 싱글 /트윈 요금이 동일하며, 가격대는 대략 U$95~120
Hotel Harrington	-전화: 1-202-628-8140 -웹사이트: www.hotel-harrington.com	Standard room 기준, 싱글 /트윈 요금이 동일하며, 가격대는 대략 U$105~125
Georgetown Suites	-전화: 1-800-348-7203 -웹사이트: www.georgetownsuites.com	Studio room 기준, 주중/주말 동일한 U$155
Fairmont Washington DC	-전화: 1-202-429-2400 -웹사이트: www.fairmont.com/washington	Standard room 기준 -주중: U$269 -주말: U$199

시카고

호텔명	연락처	가격대 (성/비수기에 따라 상이)
Four Seasons Hotel Chicago	- 전화: 1-312-280-8800 - http://www.fourseasons.com/chicagofs/	U$ 395 ~ 975
The Ritz-Carlton Hotel, Chicago	- 전화: 1-312-266-1000 - http://www.fourseasons.com/chicagorc/	U$ 395 ~ 700
Hyatt Regency Chicago	- 전화: 1-312-565-1234 - http://chicagoregency.hyatt.com/hyatt/hotels/	U$ 250 ~ 350
Holiday Inn Select/ Rosemont-o'Hare	- 전화: 1-847-954-8600 - http://www.ichotelsgroup.com/h/d/hi/1/en/hd/chirt	U$ 85~ 144
Chicago's Essex Inn, Chicago	- 전화: 1-312-939-2800 - http://www.essexinn.com/contact.htm	U$ 75 ~ 149

로스앤젤레스

호텔명	연락처	가격대 (달러) (성/비수기에 따라 상이)
Holiday Inn Hollywood	-전화: (213) 462-7181 -웹사이트:www.asiarooms.com/united-states/los_angeles/hollywood_celebrity.html	203~272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Crowne Plaza Hotel	-전화: (213) 748-4141 -웹사이트: www.crowneplaza.com	159~179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Holiday Inn LA City Center	-전화: (213) 748-1291 -웹사이트: http://www.hicitycenter.com/	189 (싱글, 트윈 요금이 동일)
Omni Los Angeles& Center	-전화: (213) 612-3987 -웹사이트: www.OmniHotels.com	Standard : 229 Deluxe : 239
Radisson Wilshire Plaza	-전화: (213) 381-7411 -웹사이트: http://www.radwilshire.com/	Standard : 150
Sheraton Grande Hotel	-전화: (213) 617-1133 -웹사이트: Http://www.starwoodhotels.Com/sheraton/index.html	204~312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LA Airport Hilton & Tower Hotel	-전화: (310) 410-4000 -웹사이트: www.hilton.com	129~229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샌프란시스코

호텔명	웹사이트	전화	가격(달러)
Hilton Hotel	www.sanfrancisco.hilton.com	415-771-1400	139~400
Hotel Nikko	www.hotelnikkosf.com	415-394-1111	199~300
Pickwick Hotel	www.thepickwickhotel.com	415-421-7500	109~169
Radisson Hotel	www.radisson.com	415-467-4400	100~150
Radisson Miyako	www.radisson.com	415-922-3200	100~150
Embassy Suite	www.santaclara.embsuites.com	408-496-6400	100~150
The Plaza Suites	www.theplazasuites.com	408-748-9800	100~150

마이애미

호텔명	연락처	가격대 (달러) (성/비수기에 따라 상이)
Miami Intercontinental	-전화: (305) 577-1000 -www.miamihotels.intercontinental.com	389~689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Intercontinental West Miami	-전화: (305) 468-1400 -www.miamihotels.intercontinental.com	121~243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Courtyard Miami Downtown	-전화: (305) 374-3000 -www.orbitz.com/hotel-info/FL/CY-MIADT.html	269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Hyatt Regency Miami	-전화: (305) 358-1234 -웹사이트: miamiregency.hyatt.com	259~569 (객실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양)

달라스

호텔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Omni Hotel Parkwest	1590 LBJ Freeway Dallas, TX 75234	972-869-4300	www.omnihotel.com
New Radisson Dallas Lovefield	1241 West Mockingbird Lane Dallas, TX 75247	214-630-7000	www.radisson.com
Marriott Hotels and Resorts	8440 Freeport Parkway Irving, TX 75063	972-929-8800	www.marriott.com
Holiday Inn Select	2645 LBJ FREEWAY Dallas, TX 75234	972-243-3363	www.hiselect.com
Quality Inn & Suites	2421 Walnut Hill Ln, Dallas, TX 75229	214-514-6669	*한국어 상담 가능 (조식 제공)
Double Tree Club Hotel	8250 N. Central Expressway Dallas, TX 75206	214-691-8700	www.doubletree.com
Renaissance Dallas Richardson Hotel	900 E. Lookout Dr. Richardson, TX 75082	972-367-2000	http://marriott.com/renaissance-hotel/travel.mi
Wyndham Dallas North	4801 LBJ Freeway Dallas, TX 75244	972-661-3600	www.wyndham.com
Hyatt Regency Dallas Reunion	300 Reunion Blvd Dallas, TX 75207	214-651-1234	www.hyatt.com
Westin Park Central	12720 Merit Drive Dallas, TX 75251	972-385-3000	www.westin.com

디트로이트

호텔명	웹사이트	가격대 (달러)
Amerisuites	www.amerisuites.com	100
Fairfield Inn by Marriott	Marriott.com	100
Towneplace Suites by Marriott	Marriott.com	100
Spring Hills Suites	Marriott.com	100
Hampton Inn	Hamptoninn.hilton.com	100
Hawthorn Suites	www.hawthorn.com	100
Drury Inn & Suites	www.druryhotel.com	100

2) 식 당

○ 미국은 여러 민족으로 형성된 나라이고 역사 또한 짧기 때문에 '미국 요리'라고 하면 각각의 민족이나 지역의 요리를 칭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스테이크, 햄버거, 핫도그 등이 American Food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패스트 푸드 외식 산업도 American Food로 지칭되고 있다.

뉴 욕

한국식당	- 감미옥 32nd St. NY(5th-6th) (212)695-4113 - 강서회관 Broadway 32nd St. NY (212)564-6845(5th-6th) - 우촌옛집 36th St. NY (5th-6th) (212)629-4466 - Empire Korea 32th St. NY(Mad.-5th)(212)725-1333 - Korea Palace 54th St. (Park-Lex) (212)832-2350 - 대동면옥 46-07 Queens Blvd. NY (718)482-7100 - 예전면옥 1616 Palisade Ave. NJ (201)944-0505 - 다도횟집 1355 16th St. Fort, NJ (201)224-7477 - 명동칼국수 43W. 33St. NY (3rd-Lex) (212)629-5599 - 신궁전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201)346-0201 - 우정 254 Broad Ave. Palisade Park, NJ (201)592-7006 - 88가든 2053 Lemoine Ave. Fort Lee, NJ (201)944-1848 - 대원 700 Palisadium Dr. Cliffside Park, NJ (201)224-2211
중국식당	- J.Sung Dynasty 511 Lex. Ave. 48St., (212)355-1200 - Shanghai Manor 141E. 55th St.(Lex.-3rd Ave), (212)753-3900 - Tsyang 34E. 51st. St. (Park-Madison), (212)688-5447 - Tung Pavilion 65W. 55th St. (5th-6th Ave.), (212)956-6888 - Shun Lee Palace 155E. 55th St. (3rd-Lex. Ave.), (212)371-8844)
일본식당	- Inagiku 111E. 50th St.(Park-Lex Ave.), (212)355-0440 - Hyotan 119.E. 59th St.(Park-Lex Ave.), (212)751-7690 - Awoky 305E. 46th St. (1st-2nd Ave.), (212)759-8897 - Benihana 56th St. (Park-Lex Ave.), (212)593-1627 - Shinbashi 141E. 48St. (Lex-3rd Ave.), (212)661-3915

로스앤젤레스

한국식당	- 서울정(윌셔그랜드 호텔 내): 213-688-7880 - 남강: 213-380-6606 - 우래옥: 213-384-2244(LA, 임시 휴업) - 310-652-4187(BEVERLY HILLS) - 조선갈비: 323-734-3330 - 비원: 213-380-9292 - 한국회관: 213-388-3042 - 강남회관: 323-937-1070 - 서라벌: 213-388-1975
중국식당	- 만리장성: 213-384-1119 - 신북경: 213-381-3003 - 용궁: 213-387-8833 - 진흥각: 213-386-8976
일본식당	- SAKAE (Radisson Wilshire 호텔내): 213-368-3088 - Yamaghiro(산성): 323-466-5125 - New Otani: 213-629-1200 - 미조리: 213-382-2103

워싱턴

한국 식당	- 우래옥 703-521-3706 (1500 Joyce St., Arlington,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 한성옥 703-642-0808 (6341 Columbia Pike, Falls Church) - 후지 703-524-3666 (2830 Wilson Blvd., Arlington) - 희빈 703-941-3737 (6231 Little River Tnpk. Alex.) - 강서면옥 703-821-1110 (8413-A Old Courthouse Rd. Vienna) - 설악가든 703-916-7600 (4308 Backlick Rd Annandale, VA 22003)
중국 식당	- Mr. K 202-331-8868 (2121 K St., Washington DC) - China Regency 202-944-4266 (Washington Harbor, 30th & K) - Sichuan Pavilion 202-466-7790 (1800 K St., Washington DC) - Peking Gourmet Inn 703-671-8088 (6029 Leesburg Pike Falls Church) - Tony Cheng Seafood Restaurant 202-371-8669 (619 H St, N.W.Washingt on DC 20001) - Meiwah 202-833-2888 (1200 New Hampshire Ave. NW, Washington, DC)
일본 식당	- Hisako 202-944-4181 (30th & K St., -Washington Harbor) - Japan Inn 202-337-3400 (1715 Wiscosin Ave., Washington DC) - Sushi-Ko 202-333-4187 (2309 Wiscosin Ave., Washington DC) - Tachibana 703-847-1771(6715 Lowell Ave. McLean, VA 22101) - Kaz Sushi Bistro 202-530-5500 (1915 I St NW)
양식당	- Jockey Club 202-293-2100 (Mass. Ave, Washington DC, Ritz Carton Htl) - Maison Blanche 202-842-0070 (1725 F St., Washington DC) - Ho Gate 202-484-6300 (800 Water St. S.W. Washington DC) - Da Domenico 703-790-9000 - Taberita 202-429-2200 (1776 Eye Street N.W.)(Entrance on 18th) - NODAGI 703-318-9494 (12022 N. Shore, Reston) - Risterante Bonanoti 703-281-7550 (428 East Maple Ave., Vienna) - Sea Catchy 202-337-8855 (1054 31st St. NW Washington DC 20007) - Otello 202-429-0209 (1329 Connecticut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 Sequoia 202-944-4200 (3000 K St NW Washington, DC 20007) - BLT Steak 202-689-8999 (1625 I St. NW Washington, DC 20006) - Bistro Bis 202-661-2700 (15 E St. NW Washington, DC 20001)

샌프란시스코

한국식당	- 서울가든 415-563-7664 (22 E Peace Plaza, SF) - 동백 415-776-1898 (631 O`Farrell St, SF) - 장수갈비 415-831-8282 (6314 Geary Blvd, SF) - 고려정 415-563-1388 (1640 Post St, SF) - 가야갈비 650-595-9292 (39 El Camino Real, San Carlos)
일본식당	Chaya Brasserie 415-777-8688 (132 Embarcadero, SF) *양식도 가능
양식당	- Neptune`s Palace 415-434-2260 (Pier 39, San Francisco) - Cityscape 415-923-5002 (Hilton Hotel 46층) - Cliff House 415-386-3330 (1090 Point Lobos Ave, SF)

마이애미

한국식당	- 경주: 400 NE Street N.Miami, FL 33162 (전화: 305-947-3838) - 신라: 7917 NW 2nd Street Miami, FL 33126 (전화: 305-267-0011)

디트로이트

한국식당	- 뉴서울가든 1-248-827-1600 (27566 Northwestern Hwy, Southfield, MI 48034) - 신라 1-248-655-0120 (1019 W Maple Rd, Clawson, MI 48017) - 미락 1-248-356-2155 (23043 Beech Rd, Southfield, MI 48034) - 비빔밥 1-248-348-6800 (43155 Main Street, Ste 300, Novi, MI 48375)
일본식당	- 오이시이(Oishi) 1-248-380-1600 (43155 Grand River Ave. Novi, MI 48375) - 아지신(Ajishin) 1- 248-380-9850 (42270 Grand River Ave. Novi, MI 48375)

사. 관공서 관행

1) 미국의 관공서

○ 미국에서는 많은 민원 업무가 주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성격, 업무 문화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 대표적인 대민 관공서인 이민국(USCIO,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ffice)이나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Service) 등의 경우 연방정부 기관이지만, 미국 생활에서 필수적인 운전면허증 발급 등은 모두 주정부 산하 DMV(Department of Motor and Vehicle) 에서 관장하며, 때에 따라서는 군(COUNTY)정부를 직접 방문해야 할 일도 있다. 미국 정부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 역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 특히 DMV 등 경우 주정부 마다 규정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해당 DMV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 경험자들에게 먼저 관행을 물어 보는 등의 준비를 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전자민원 도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전면허증을 받은 다음부터는 보다 쉽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습득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관공서 근무시간과 휴일

○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시까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역 등에 따라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대민 부서인 DMV의 경우, 일반 서민들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토요일도 정오까지 근무를 하는 지역(버지니아 주)도 있다. 대민 부서가 아닌 경우 7:00-15:00 등 유연근무시간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 일반 기업들의 경우 일반 연방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공서는 휴무를 엄격하게 준수한다. 일부 연방공휴일의 경우 특정 주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Martin Luther King Jr. Day는 남부 일부 주에서는 공휴일이 아님) 유의해야 한다.

3) 대민 서비스의 질

○ 일반 민원 부서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 연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긴 경우가 많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가 상당 규모의 인원 감축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 보다는 웹사이트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의사항은 ARS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 또한 어떤 정부기관 부서에 전화를 걸어 특정 사항을 문의할 경우 음성 사서함(VOICE MAIL) 에 저장토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문화적인 관행이기는 하지만, 메시지를 남길 경우 대체로 담당자가 답신을 해준다.

○ 한편 대표적인 대민 관공서인 DMV 등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평이 많다. 특히 9/11 사태 이후에는 업무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 외국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커졌다. 때문에 방문코자 하는 DMV의 업무 규정이나 문화, 분위기를 미리 파악 해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토록 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 미국 관공서의 업무처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융통성이 거의 없으며,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업무의 완급보다는 철저히 규정에 따라 하는 습관이 강해 한국인의 경우 종종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나 업무 시스템 자체는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규정과 시스템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오히려 미국식처리 방식이 편리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 미국 정부는 특히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일반적인 미국시민들은 정부의 기록과 문서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규다. 이 같은 법과 절차를 잘 활용할 경우, 미국 관공서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행동 양식과 근거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4)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없으나, 한국과 비교해 일반 행정처리 소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정 대민 부서를 활용하기 이전에 소요기간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선물 또는 금품을 주는 행동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나 문화 자체가 공무원들에게는 생경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조달 부서들의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점심 접대도 금지되어 있다.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자기가 먹은 몫을 자기가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조달 담당 공무원과 식사를 같이 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식사 후(자기에 해당되는 식사대를 지불하기 위해)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한국적 예의에 따라 "이번 식사는 내가 낸다"고 고집하는 것은 미 연방 규정을 저촉하는 것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식사를 같이 한 공무원에게 영수증을 보여주고 식사대를 분담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당연하면서도 정착된 관행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아. 공휴일

1) 휴일 지정방식

○ 미국은 10일간의 연방공휴일이 있으며, 공무원 및 관공서의 경우 연방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새해, 독립기념일 등)이 토요일 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자동적으로 쉬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전통이나, 현지에 살고 있는 유태인, 히스패닉의 전통 일을 휴일로 하고, 연방공휴일에는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경향은 회사별로 더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MARTIN LUTHER KING'S DAY의 경우 뉴욕시내 대다수 회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2008년 연방 공휴일 일정표

월	일	공휴일	비고
1월	1일	New Year's Day	
	21일	Martin Luther King's Day	
2월	18일	President's Birthday	2월 셋째 월요일
5월	26일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
7월	4일	Independence Day	
9월	1일	Labor Day	9월 첫째 월요일
10월	13일	Columbus Day	10월 둘째 월요일
11월	11일	Veterans Day	
	27일	Thanksgiving	11월 넷째 목요일
12월	25일	Christmas	

2) 출장 지양 기간

○ 특별히 출장을 기피하여야 할 기간은 없다. 다만, 여름휴가철(매년 7-8월)과 연말 및 연시 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약속이 꼭 필요하다. 특히 상당수 회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새해까지 공휴일로 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약속은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 현지관습이며, 공휴일 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특별히 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아야 한다.

자. 여행 시 유의사항

1) 기후 및 여행 시 복장준비

○ 미국은 지역에 따라 열대로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행자는 출발 전 반드시 출장지역에 맞는 복장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3개 이상 지역을 출장 갈 경우, 각 지역 기후특성에 맞는 복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뉴욕은 서울과 비슷한 위도에 있어 기후가 상호 유사한 편이다. (기후 관련 도시. 지역별 세부내용은 13항 "기후"편 참고)

2) 전기규격

○ 우리나라와 달리 60HZ, 110V로 통일되어 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변압기와 220V를 110V로 변환시키는 소켓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노트북 컴퓨터(Lap Top)은 겸용인 관계로 변압기가 필요 없다.

3) 의료 및 비상대책

○ 출장기간 중 도난을 당하거나 병이 나는 등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다이얼을 돌려 교환원에게 연락하고, 사정에 따라 경찰, 병원 등에 연결하여 준다. 참고로, 출장자가 직접 경찰이나 병원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위급 시 다이얼 911을 활용하면 된다. 구급차를 부를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지방 경찰서나 소방서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부 1페이지에는 Emergency에 필요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출장 기간 중 몸이 불편하여 병원을 방문하여야 할 경우에는, 호텔의 교환원에게 의사를 소개 받을 수 있으며, 1회 진찰비용은 최소 100달러 내외이다.

4) 치안 및 강도를 만났을 경우 대응방법

○ 미국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미국 내에 약 4,000만 정의 총기가 유통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몇몇 대도시 지역을 빼고는 치안이 매우 안정된 편이다.

○ 미국 대도시, 특히 슬럼가 등지는 치안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낮에도 혼자서 방문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혼자 다닐 때에는 가급적 번화한 곳을 택하고, 큰돈이나 보석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밤길을 삼가고 여행자 모습을 보이지 말고, 길가에서 서성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 뉴욕 지역에서 위험한 곳으로 지목되는 곳은 시 경찰국이 발표한 살인사건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맨하탄 서쪽 110가에서 140가에 이르는 지역, 맨하탄 북부 워싱톤 하이츠 워즈워드 에브뉴 지역, 브롱스 라이언 에브뉴 일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일대, 브루클린 유티카 에브뉴지역 등이다.

○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맨하탄 미드타운 일대는 매우 안전한 지역으로서 늦은 밤에도 유동 인구가 많고 안전한 편이지만, 가급적 혼자 다니는 것은 삼

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노상강도를 만났을 경우, 대항하는 방법보다는 강도의 요청에 따라 돈을 주는 것이 신변안전에 유리하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현금을 한꺼번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여러 주머니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5) 여행객 교통

□ 택시

○ 미국의 택시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택시 절대 보유 대수가 많지 않아 여행객이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며, 가격도 상이하다.

○ Yellow Cap 외에 고급 승용차로 운행하는 콜택시가 있으며, 가격은 택시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초행자에게는 종종 바가지 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대중교통

○ 여타 도시지역과 달리 뉴욕은 버스와 전철이 잘 발달되어 있어 관광객들도 손쉽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철과 버스노선은 각 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무료로 배포된다. 1회 탑승 비용은 1.5달러로 저렴한 편이며 3시간 이내에서는 버스-전철을 연계한 이용이 가능하다.

○ LA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제한적이고 이용 시간대도 많지 않으며 전철은 4개 노선에 불과하므로 택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공항에서의 택시 이용은 Yellow Cab을 이용하면 되나 시내에서는 택시를 불러야 한다. 대부분의 호텔이나 음식점의 경우 출발시간 10~15분 전에 택시를 불러 달라 요청하면 된다.

□ 차량 렌트

○ 우리나라와 달리 차량 렌트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익숙한 여행자의 경우,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공항에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편이다. 비용은 차량 종류와 렌트 위치에 따라 상이하지만, 소형차인 경우 대체로 1일 50~6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방문하는 지역이 처음 가는 지역일 경우 미국의 교통법규와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차량 렌트는 삼가야 한다.

○ 요금은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다양한데 저렴하게 빌리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 경우 뉴욕시티에서 최소 1일 46달러+13.25%의 세금, 1주일 205달러+ 13. 25%의 세금 정도이다. 물론 렌터카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의 주차 비용이나 붐비는 시간 (Rush Hour)를 고려해야 하므로 뉴욕에서 외곽 쪽으로 빠져나갈 경우 빌리는 게 좋다.

6) 팁 관행

○ 티핑 관습은 일정치 않고 주에 따라 다르긴 하나 팁이라는 것이 원래 봉사에 대한 답례이기 때문에 봉사가 불성실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팁을 적게 주어도 상관이 없다.

○ 미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팁의 액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이 팁을 주어야 하는 상황과 팁 액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적정 Tipping 예: 레스토랑 웨이터: 청구서의 15~20%
- 호텔 벨 보이: 가방 1개당 1달러
- 주차장 요원: 차량을 주차시켜 줄 경우 1달러
- 바텐더: 술값의 15%
- 룸 서비스: 10~15%(대부분의 경우 호텔청구서에 포함)
- 호텔(또는 모텔): 1박 1인당 1달러

7) 쇼핑

○ 미국의 대형 쇼핑매장은 도심지역보다는 주로 교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객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다. 교외 쇼핑 센터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룻동안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팁 포함 약 150~2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 대도시 다운타운에는 소형상점이 많이 있으나, 교외의 매장들보다 대체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교외지역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도심 지역에서 비타민이나, 간단한 전자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 (Store)보다는 Rite Aid, Savon, Durean Reader와 같은 drug store 또는 Wiz(전자제품 전문점)와 같은 대형 Chain Store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8) 기타 유의사항

□ 식수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곧바로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 거주자들은 생수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은 대부분 정수한 수돗물로서, 위생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발소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한인 이발소도 있으며 이발료는 팁 포함 15~20달러 내외이다.

□ 구두닦이

대도시 중심부의 경우 곳곳에 "Shine"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1회에 5~10달러 정도이 다.

□ 의류세탁

대부분의 호텔에는 Cleaning 서비스가 있으며 와이셔츠 1벌 당 세탁비는 10달러 이내이다.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세탁소를 이용할 경우 세탁비를 50%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 카드 또는 여행자수표 이용

미국은 신용에 의한 예약 및 대금지급이 정착된 사회로서 각종 공과금 지급 및 호텔 예약, 렌터카 시 카드가 없으면 예약 및 대금지불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과다한 현금 소지보다는 여행자수표를 지참하는 것이 유용하며 VISA나 MASTER 카드를 소지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비즈니스 미팅 시 유의사항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타이차림의 정장을 해야 하며 외국인과의 미팅 전에는 김치 등 음식 냄새가 심한 한국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주야간의 일교차가 커 야간에는 한국의 가을 날씨와 유사하므로 티셔츠, 바지 등 캐주얼한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유용한 연락처

1) 비상연락처

도난을 당하거나 병이 나는 등 돌발사고가 나면 바로 0번을 눌러 교환원에게 연락하면 상황에 따라 경찰, 병원 등에 연결된다(전화번호부 1페이지 EMERGENCY 항에 게재)

- ○ 경찰: 911
- ○ 화재: 911
- ○ 구급차: 911
- ○ 전화고장: 611
- ○ 전화안내(시내): 555-1212
- ○ 전화안내(시외): 지역번호-555-1212
- ○ 전화안내(뉴욕, L.A.): 411
- ○ 지역번호(AREA CODE)문의: 0
- ○ 구급차를 부를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지방경찰서나 소방서에 전화하는 것

2) 비상 의료대책

□ 병원 시스템

- ○ 미국 병원은 크게 공립(GOVERNMENTAL HOSPITALS)과 사립 병원(NONGOVERNMENTAL HOSPITALS)으로 나뉘고, 공립병원은 다시 국립(FEDERAL)과 지방정부립(STATE CITY)으로 나뉜다. 외국인들에게는 국립 병원은 그다지 관계없고, 사립 병원이 관계가 있으며, 종합 병원이 전체 사립병원의 85~90% 점유하고 있다. 진료 내용은 주로 내과계(INTERNAL MEDICINE)와 외과 (SUGERY MEDICINE)로 나누어진다.

- ○ 한국 병원과 큰 차이점은 의사가 종합 병원에 상근하지 않고, 외부에 개업하고 있으며, 종합 병원과는 계약을 맺어 병원의 의료설비 및 기구를 입원/수술/검사에 사용한다.

- ○ 종합병원에 상근하는 의사는 방사선 전문의, 병리학 전문의, 마취 전문의 등이 있다.

□ 병이 났을 때

○ 호텔의 교환원이나 벨캡틴에게 부탁하여 의사를 소개받아야 함. 비용은 초진료, 왕진료 등 최소 100불은 필요하다.

○ 보험청구를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놓도록 하며, 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한국어가 통하는 병원 목록이 준비되어 있다.

○ 병원은 완전 예약제. 미국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간단한 외용약, 복통, 감기약 등이고, 항생물질 등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다.

○ 지병이 있는 사람은 한국 출발 전에 의사에게 부탁하여 영문으로 처방전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보통 미국에서는 의사가 약을 직접 지어주는 일은 없으므로 의사가 써준 처방전(PRESCRIP- TION) 을 갖고 약방(DRUGSTORE OR PHARMACY)에 가면 처방전을 보고 약을 주며, 한인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간단한 약 구입도 가능하다.

□ 입원 및 수술

○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을 경우 다른 의사의 진찰을 소견(SECOND OPINIO N, THIRD OPINION)을 받아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 입원 시 먼저 병원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접수처직원은 보험 ID카드 사본과 보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 하며 가운과 신발도 필요하다.

3) 현지관공서

기관명	연락처
DEPARTMENT OF COMMERCE	- 주소: 14 ST. BETWEEN CONSTITUTION &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20230 - TEL: 202-482-2000 / www.doc.gov
DEPARTMENT OF AGRICULTURE	- 주소: 14 ST. &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 - TEL: 202-720-2791 / www.usda.gov
DEPARTMENT OF EDUCATION	- 주소: 6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02 - TEL: 800-USA-LEARN / www.ed.gov
DEPARTMENT OF ENERGY	- 주소: 10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585 - TEL: 202-586-5000 / www.doe.gov
DEPARTMENT OF LABOR	- 주소: 200 CONSI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10 - TEL: 1-866-4-USA-DOL-872-365 / www.dol.gov
DEPARTMENT OF TREASURY	- 주소: 15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220 - TEL: 202-622-2000 / www.treas.gov

4) 지역별 주요 기관 연락처

□ 뉴욕 지역

주요 한국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미대사관	- 주소: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 Tel: 202-939-5600 / Fax: 202-797-0595 - 긴급전화(휴일): 202-939-5600 - 업무시간: 9:00 am-12:00 pm, 1:30 pm-5:30 pm (월-금)
뉴욕 총영사관	- 본청: 335 E. 45th St.(4th Fl.), New York, NY 10017 - Tel: 1-646-674-6000, 1-212-692-9120 - Fax: 1-646-674-6023 - E-mail: info@koreanconsulate.org - 업무시간: 월~금 오전 9:00 am-오후 5:00 pm
(민원실)	- 460 Park Ave. 57th St.(6th Fl.) New York, NY 10022 - Tel: 1-646-674-6000, 1-212-692-9120 - Fax: 1-212-421-3028 - 민원 업무시간: 월-금 오전 9:30-12:00, 오후 1:30-4:00(12:00-13:30분은 점심시간이나 민원실 방문자에 한해 민원서류 접수)
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 주소: 335 East 45th St, New York NY 10017 - Tel: 212-439-4000 - Fax: 212-986-1083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KITA NEW YORK)	- 주소: 460 Park Ave. Suite #2200 New York, NY 10022 - Tel: 212-421-8804
주미 한국상의 (KOCHAM)	- 주소: 460 Park Ave. #410, New York, NY 10022 - Tel: 212-644-0140

한인단체

기관명	연락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THE FEDERATION K. A. USA)	○ 주소: 1135 W. Cehltenham Ave. #200 Melrose Park, PA 19027 ○ Tel: 215-635-5410
뉴욕 한인회 (THE KOR-AME ASSO. OF NY)	○ 주소: 149 W. 24 St. 6Fl. New York, NY 10011 ○ Tel: 212-255-6969
플러싱 한인회 (KOR-AME ASSO. OF FLUSHING)	○ 주소: 35-42 Union St. Flushing, NY 11354 ○ Tel: 718-961-2389
뉴저지 한인 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A.A. OF NJ)	○ 주소: 345 Commercial Ave. #2Fl. Palisades Park, NJ 07650 ○ Tel: 201-461-6075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NY KOREAN C. O. C.)	○ 주소: 15 W. 47th St. New York, NY 10036 ○ Tel: 212-575-1590
뉴욕 한인 YMCA (YMCA KOREAN PROGRAM)	○ 주소: 138-4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Tel: 718-961-1177

주요 항공사

항공사명	연락처
대한항공	○ 예약: 718-632-5500, 800-438-5000, 안내: 718-632-8730 ○ JFK 공항 사무소: 718-632-8731
아시아나	○ 예약: 800-227-4262, 212-318-9200, 안내: 212-318-9201 ○ JFK 공항 사무소: 718-244-7077
United Airlines	○ Tel: 800-241-6522
Northwest	○ Tel : (800)447-4747
Delta	○ Tel : 800-241-4141
American Airlines	○ Tel : 800-433-7300

콜택시

항공사명	연락처
88콜택시	Tel: 212-883-8828, 718-461-0688
오렌지콜택시	Tel: 718-888-0404
하나유니온 콜택시	Tel: 718-777-6666

- http://yp.joins.com/ny에서 콜택시로 검색하면 뉴욕지역의 63개 콜택시 업체리스트가 나온다. 현재 위치한 곳에서 편리한 업체에 연락하면 된다.

주요 철도역

항공사명	연락처
Pennsylvania Station	주소: 33rd St. 7th Ave., NY
Grand Central Station	주소: 33rd St. 7th Ave., NY

- 역 안내전화: (212) 736-4545

□ 워싱턴 DC

한국 관공서/경제 단체

기관명	연락처
주미한국대사관	○ 주소: 2450 Mas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전화: 202-939-5600 / www.koreaembasssy.org
주미한국대사관 문화원	○ 주소: 2370 Mas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전화: 202-797-6343 / www.koreaembasssy.org
주미한국대사관영사관	○ 주소: 2370 Mas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전화: 202-939-5654 / www.koreaembassy.org
워싱턴 한국무엽협회	○ 주소: Suite 216, 1660 L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 전화: 202-828-9284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 주소: 1952 Gallows Road Suite 110 Vienna, VA 22182 ○ 전화: 571-633-9600
한국과학재단	○ 주소: 7700 Leesburg Pike Suite 411 Falls Church, VA 22043 ○ 전화: 703-790-8100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	○ 주소: 1952 Gallows Rd. Suite 320 Vienna, VA 22182 ○ 전화: 703-893-9772
워싱턴한인상공회의소	○ 주소: 8900 Brookville Rd. Silver Spring MD 20910 ○ 전화: 301-589-6901
한국은행	○ 주소: 1667 K St. NW Suite 450 Washington DC 20006 ○ 전화: 202-463-7152
한국수출입은행	○ 주소: 1300 L St N.W Suite 825 Washington DC 20005 ○ 전화: 202-408-8838/9

한인 단체

기관명	연락처
리치몬드 한인회	○ 주소: 326 E.Broad St. Richmond VA 23219 ○ 전화: 804-225-1399
메릴랜드 한인회	○ 주소: 27 E. North Ave. Baltimore MD 21202 ○ 전화: 410-625-2442
미주한인회총연합회	○ 주소: 11864 Sunrise Valley Dr., #200 Reston VA 20191 ○ 전화: 703-391-7185
북버지니아한인회	○ 주소: 6131 Wilston Dr. Falls Church VA 22044 ○ 전화: 703-534-4856
워싱톤지구한인엽합회	○ 주소: 7004-L Little River Tnpk. Annandale VA 22003 ○ 전화: 703-354-3900

콜택시

택시회사명	전화번호
Yellow Cab	703-549-2500
Diamond Cab	202-387-4011
King Cab	703-549-3530

□ 로스앤젤레스지역 주요 연락처

주요 한국 기관

기관명	연락처
LA 총 영사관	Add: 3243 Wilshire Blvd., LA. CA90010 Tel : 213-385-9300, Fax : 213-385-1849
한국 관광공사	Tel : 323-634-0280
수출보험 공사	Tel : 213-622-4314
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Tel : 323-936-7141
농업 무역관	Tel : 714-901-7717

주요 항공사

항공사명	연락처
대한항공	○ 대표전화: 800-438-5000 ○ 공항지점: 310-646-4866, 여객지점: 213-484-5700, 여객예약: 213-484-1900
아시아나	○ 대표전화: 800-438-5000 ○ 공항지점: 310-646-7100, 여객지점: 213-365-4500, 여객예약: 213-365-2000
United Airlines	- Tel: 800-241-6522
Northwest	- Tel : 800-692-1165
Delta	- Tel : 800-221-1212
American Airlines	- Tel : 800-433-7300
U.S. AIR	- Tel : 800-428-4322

주: 항공기 도착 및 출발 시간안내: 310-416-9068

◘ 시카고 주요 연락처

주요 한국기관

기관명	연락처
시카고 총 영사관	○ 주소: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 전화: 1-312-822-9485 / 팩스: 1-312-822-9849
중소기업 진흥공단	○ 주소: 2360 E. Devon Ave #2010 Des Plaines, IL 60018 ○ 전화: 847-699-1080 / 팩스: 847-699-6886

□ 기타 한인 단체 연락처

○ 시카고 한인회: 1-773-878-1900
- 5941 N. Lincoln Ave. Chicago. IL 60659

여행사 및 주요항공사

항공사명	연락처
대한항공	대표전화: 1-800-438-5000
아시아나	대표전화: 1-800-227-4262
Delta Airlines	대표전화: 1-800-221-1212
United Airlines(UA)	대표전화: 1-800-241-6522
Chicago Mordern Tours	○ 대표전화: 1-773-583-8687 ○ 담당: 조희현 사장(1-847-302-3470) ○ 현지가이드: 김웅섭 부장(1-847-840-1162)

택 시

택시회사명	전화번호
썬 택시	773-736-3883, 773-736-3399
현대콜택시	773-463-3737
하나관광택시	773-509-0101
로렌스 택시	847-259-9000
Yellow cab	312-829-4222
American United Cab	312-248-7600

◘ 디트로이트 지역 주요 연락처

한인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주소	연락처
디트로이트 무역관	2000 Town Center Ste 2850 Southfield, MI 48075	1-248-355-4911
디트로이트 한인회	24666 N. Western Hwy Southfield, MI 48075	1-248-945-9044
미시간한인상공인협회	17197 N. Laurel Park Dr., #307 Livonia, MI 48152	1-248-444-4841

□ 언론사

○ 주간 미시간(1-248-444-8844)

여행사

여행사 명	주소	연락처
동서여행사	200 Galleria Officentre # 124 Southfield, MI 48034	1-312-822-9485
차승순여행사	2433 Oak Valley Dr. Ste 600ª Ann Arbor, MI 48103	1-734-827-1030
동양여행사	7071 Orchard Lake Rd. Suite 205 W. Bloomfield, MI 48322	1-248-388-8881

주요 콜택시 전화번호

회사명	연락처
Yellow 24 Hr Oakland 24 hr Cab	1-800-320-1683
Abbey Taxi Cab & Airport Service	1-248-851-3399
A-1 Oakland Cab Co	1-248-544-1600
Metro Cars Inc Detroit Metro Airport	1-734-946-5700

□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연락처

기관명	웹사이트	전화	팩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www.koreanconsulatesf.org	1-415-921-2251	1-415-921-5946
샌프란시스코 무역관	www.kotra.or.kr	1-650-571-8483	1-650-571-8065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www.kaccsf.org	1-415-252-1346	1-415-252-1346
샌프란시스코 한인 상공회의소	-	1-415-221-7301	1-415-221-8301
실리콘밸리 한미상공회의소	-	1-408-777-8718	1-408-777-8772
대한항공	www.kr.koreanair.com	1-800-438-5000	1-650-375-1240
아시아나항공	www.flyasiana.com	1-415-267-4230	1-415-543-3996

□ 달라스

○ 휴스턴 총영사관 (총영사: 김정근) www.koreahouston.org
- 주소: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 Tel : 713-961-0186
- Fax : 713-961-3340

주요 항공사

항공사명	연락처
대한항공	○ 대표전화: 1-800-438-5000 ○ 달라스 공항 지점: 1-972-973-7051
아시아나	○ 대표전화: 1-800-227-4262

카. 기타 유용한 정보

1) 뉴욕 지역

뉴욕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며, 제조업보다는 금융, 패션, 문화의 도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뉴욕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이라고 할 것은 없다.

다만 맨하탄 시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자 유의 여신상 등의 건축물을 본따 크리스털로 제작한 모형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유 명 박물관, 미술관 내에 있는 기념품점에서는 소장한 명화를 프린트한 스카프와 티셔 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기념하는 티셔츠 등이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편이다.

□ 주요 쇼핑 센터

세계 명품이 모두 모여있는 뉴욕의 5번가는 세계에서 쇼핑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1년 내내 북적거린다. 이외에 맨하탄 주위 1시간 거리안에 각종 쇼핑몰이 있어 쇼핑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 ○ Bloomingdale's (Lex. Ave. 59th St) (백화점)
- ○ Macy's (34th St. Broadway) (백화점)
- ○ Bergdorf Goodman (5th Ave. 58th St. (백화점)
- ○ Lord & Taylor (5th Ave. 38th St.) (백화점)
- ○ 맨하탄 5th Ave. 42nd - 59th St. 일대 (유명상품 전문상가)
- ○ 코스모스백화점(NJ)166 Main St. (201)592-9211 (선물용품 및 잡화)
- ○ 썬전자 (212)564-3397, 22W. 32St. NY (선물용품 및 잡화)
- ○ 씨씨백화점 29W.32St.(5th-B'way)(212)947-3077 (선물용품 및 잡화)
- ○ Woodbury Factory Outlet, (Palisads Pkwy. GWB서 1시간) (Factory Outlet)
- ○ Garden State Mall (뉴저지 소재 쇼핑몰, 맨하탄에서 약 1시간)
- ○ Short hill Mall (뉴저지 소재 쇼핑몰, 맨하탄에서 약 1시간)
- ○ Palisades Center (맨하탄에서 약 1시간)

2) 워싱턴 DC

□ 주요 쇼핑센터

- ○ 워싱턴 DC는 알려진 바와 같이 행정의 도시로서, 지역 고유의 특산물이나 기념품을 귀국 선물로 구매하려 한다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 그러나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토산물 대신 의류나 가전제품 혹은 골동품을 선물로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 ○ 워싱턴 DC 인근에 소재한 주요 쇼핑 지역은 다음과 같다.

- ○ Tysons Corner: 북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신흥도시로 워싱턴에서 George Washington Parkway를 따라 30분 가량 운전하면 된다. 두 단지에 각각 여러 백화점과 쇼핑코너가 집중되어 있고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하다.

- Adams-Morgan: Metrorail을 이용하여 “Woodley Park-Zoo-Adams-Morgan" 역에서 내린 후, Connecticut Ave.를 따라 남쪽방향으로 1블록, Calvert St.을 따라 왼쪽으로 5블록,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반 블록 정도 가면 된다. 주로 특이한 중고 의류나 골동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 Connecticut Avenue/Dupont Circle: K St.에 소재한 Farragut North 역에서 Dupont Circle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변호사나 로비스트들이 즐비한 K St.과 M St. 사이를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는 변호사 등이 즐겨 입는 의류를 Brooks Brothers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Dupont Circle에서는 중고품 전문점이나 특이품 판매점등이 곳곳에서 눈에 띄어, 눈요기 거리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 Georgetown: 조지타운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워싱턴 DC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장신구 전문점인 The Phoenix(1514 Wisconsin Ave.)나, 청바지 전문점인 Deja Blue, 신발 전문점인 Shake your Booty 등 둘러볼 만한 장소가 많다.

- Potomac Mills: 버지니아 주 Prince William 카운티에 소재, 워싱턴 DC 다운타운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의 위치에 있다. 미국 내 10대 아울렛의 하나로, Ralph Lauren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류브랜드 할인점과 Sears 등의 가전제품 할인점도 입주해 있다.

3)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에서만 생산되는 독특한 특산품은 없으나 기념품 가게에서는 흔히 헐리 우드 영화산업을 상징하는 헐리우드(Hollywood)사인 모형, 헐리우드 스타 미니어쳐를 볼 수 있으며, 월트 디즈니사의 캐릭터를 소재로 한 입상 등의 수집품이 있다. 또한 남 가주 일원 및 뉴멕시코 등지의 인디언 보호구역 등 명승지의 기념품 상점에서는 미국 인디언 원주민의 독특한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각국의 명품 패션 소품 점이 모여있는 Beverly Hills의 로데오(Rodeo) 거리는 쇼핑을 위해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로 붐빈다. 이외에 LA시 서쪽 3가 일원에 오픈한 Grove 쇼 핑몰은 극장, 서점, 백화점, 레스토랑 등이 한데 모여 있고 조경, 분수 등 각종 시설 물이 잘 꾸며져 있는 복합 쇼핑몰로서 LA의 새로운 쇼핑 명소로 떠 오르고 있다.

- The Grove (189 The Grove Drive): 옥외 복합 쇼핑몰
- Beverly Center (8500 Beverly Boulevard): 실내 복합 쇼핑몰
- Rodeo Drive: Beverly Hills의 Wilshire Blvd.와 Santa Monica Blvd.사이의 명품 쇼핑거리
- Westside Pavillion (10800 West Pico Boulevard): 복합 쇼핑몰
- Target (7100 Santa Monica Blvd): 할인 백화점
- Best Buy(1015 N LA Brea Ave, W. Hollywood): 전자제품 전문 백화점
-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250 W. Olympic Bl.): 코리아타운소재 복합 쇼핑몰
- 플라자마켓 (928 S. Western Ave.): 코리아타운소재 복합 쇼핑몰
- 김스전기 (2940 W. Olympic Bl.): 전자제품 및 잡화전문 백화점

4) 시카고

시카고는 도시 재개발로 바둑판 같은 질서 정연한 도로망과 깨끗한 도시, 푸르고 바 다 같이 넓은 미시간호로 유명한 국제 도시로 독특한 건축물이 수없이 많아 현대 건 축의 집합 도시라 불리고 있다.

시카고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발달된 철도와 트럭을 이용한 육상운송수단과 시카고 오 헤어 국제 공항의 항공 수송과 연결하는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는 보잉사를 비롯한 많은 수의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 업의 본 사가 위치해 있고 대형 유통회사 그리고 기계 및 공구회사 등의 본거지이기도 하며 The Chicago Board Trade와 Th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및 상품 거래소 중 하나이다.

□ 주요 쇼핑센터

세계 명품이 모두 모여있는 시카고 중심의 미시건 애비뉴는 1년 내내 쇼핑하기 위해 모여 든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주요 백화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일명 Magnificent Mile 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미국 고급 유명 백화점과 유명 브랜드 매장이 밀집되어 있다. 이외에 시내 외곽의 대형 쇼핑몰인 Woodfield Mall은 넓은 주차장과 수많은 매장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추천 쇼핑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 ○ Bloomingdale's (900 N Michigan Ave) (백화점)
- ○ Saks Fifth Avenue(700 N Michigan Ave) (백화점)
- ○ Marshall Fields (111 N. State St. (백화점)
- ○ Lord & Taylor (835 N Michigan Ave, Chicago.) (백화점)
- ○ Neiman Marcus(737 N Michigan Ave)(유명백화점)
- ○ Talbots(700 N Michigan Ave) (유명의류)
- ○ Nordstrom(24 N State St,)(유명 백화점)
- ○ Chicago Premium Outlet(시카고 시내에서 약 1시간)(유명브랜드 아웃랫)
- ○ Barneys New York(25 E Oak St)(유명백화점)

5) 텍사스

달라스는 상업, 공업, 무역업이 발달하였다. 오늘날 달라스는 미국 남서부 최대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임과 동 시에 패션의 중심지로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달라스에서 생산되는 독특한 특산품이 별로 없고, 세계적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다운타운에 고층 빌딩이 늘어선 항공, 금융, 석유, 하이테크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 주요 쇼핑센터

- ○ 달라스
  - The Galleria (백화점)
  - NeimanMarcus (1618 Main St.,) (백화점) - NorthPark Center (백화점)
  - The Grapevine Mills Mall (FM 2499, Grapevine Hills Parkway) (아울렛몰)
  - TheQuadrangle(2800 RouthSt.) (전문상점)-The Crescent (200 Crescent Court) (화랑)
  - Dallas Farmers Market (시장)
  - The Snider Plaza Antique Shops (6929 Snider Plaza) (골동품시장)
  - Casa Mexicana (2616 Elm St.) (공예품)

○ 휴스턴
- The Galleria (5075 Westheimer) (백화점)
- A.B. Graham Formal Clothiers (5085 Westheimer) (유명 남성정장)
- Prime Outlets at Conroe (1-45 N exit 91) (아울렛센터)

○ 오스틴
- The Arboretum (10000 Research Blvd.) (의류 및 잡화)
- Highland Mall (6001 Airport Blvd.) (백화점)
- Antique Mall (8822 McCann Dr.) (앤틱 전문 상점)

6) 디트로이트

□ 주요 쇼핑센터

○ Somerset Collection(Troy시에 위치, 백화점)
○ Great Lakes Crossing(Auburn Hills에 위치, 아울렛)
○ Birch Run(공항에서 1시간 40분 거리, 미시간 최대 아울렛)
○ Twelve Oaks Mall(Novi에 위치, 쇼핑몰)
○ Oakland Mall(Troy에 위치, 쇼핑몰)
○ Orchard Mall(West Bloomfield에 위치, 쇼핑몰)

7) 샌프란시스코

□ 특산물

샌프란시스코는 인근의 나파(Napa)와 소노마(Sonoma)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특산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자연지형과 기후가 양질의 와인을 생산하는데 최적지로 품질에서 프랑스 와인과 견주는 세계적인 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와인 구입은 관광을 겸해서 나파와 소모나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와인 전문 매장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전문 매장

매장명	웹사이트	전화	비고
Cannery Wine Cellars	www.cannerywine.com	1-415-673-0400	Fisherman`s Wharf
Napa Valley Winery Exchange	www.napavalleywineryex.com	1-415-771-2887	Union Square

□ 주요 쇼핑센터

샌프란시스코 쇼핑 중심지는 유니온 스퀘어(Union Square)로 미국 내에서 3번째로 큰 쇼핑 지역이다.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 집중되어 있어 현지인 및 관광객들로 붐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스탠포드 쇼핑센터(Stanford Shopping Center)도 유명하다.

주요 쇼핑센터

쇼핑센터 명	웹사이트	전화	비 고
Union Square	www.unionsuarelive.com	1-415-781-7880	323 Geary St, SF
Pier 39	www.pier39.com	1-415-705-5500	Embarcadero St, SF
Westfield San Francisco Centre	www.westfield.com	1-415-512-6776	865 Market St, SF
Stonestown Shopping Center	www.shopstonestown.com	1-415-564-8848	3251 20th Ave, SF
Gilroy Premium Outlets	www.premiumoutlets.com	1-408-842-3729	Gilroy
Stanford Shopping Center	www.stanfordshop.com	1-650-617-8200	Palo Alto

타. 관광명소

1) 뉴욕 지역

□ 개요

○ 미대륙 동부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뉴욕은 맨해튼, 브룩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테이튼 아일 랜드의 5개 독립구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뉴욕관광의 중심지인 맨해튼은 동쪽으로 이스트 강, 서쪽으로 허드슨강, 남쪽으로 어퍼 뉴욕만에 둘러싸인 길다란 섬으로 맨하튼이 뉴욕으 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유명한 쇼핑가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불리는 월 스트리트, 예술, 문화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 등 뉴욕을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 하늘 높이 치솟은 빌딩들, 일류 박물관과 예술단, 금융, 패션, 미술, 출판, 방송, 연극, 광고의 중심지로서의 명성과 함께 뉴요커들도 당당한 태도, 이국적 다양성, 세련된 멋쟁이, 액센트 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자유의 여신상에서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르는 관광명소들 이상으로 뉴욕은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도시이다.

□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Central Park West at 79th Street New York, NY 10024)

○ 1875년 문을 연 미국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은 세계 제일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수십억년의 자연 예술품들이 가득찬 지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뉴욕에서 가장 크고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다음으로 방문객이 많은 필수 인기 관광 코스 중 하나다.

○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는 공룡 화석을 비롯해 동물, 지리, 인류, 생물 관련 전시물 3,400만 여 점 이상을 전시하고 있다. 42곳이나 되는 전시관에는 길이 12m, 높이 6m의 공룡 뼈대, 94피트 높이의 푸른 고래 모사품, 563캐럿 사파이어 '인도의 별', 세계 최대 31톤 무게의 운석 등이 전시되고 있다. 이밖에 대형 스크린의 네이처 아이맥스 영화관, 헤이든 플라네타 리움 등에서 자연과 관련된 영상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 미술관

○ 현대미술관 (11 West 53 Street, New York 10019)
-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MoMA)은 100,000점 이상의 그림, 조각, 사진, 스케치, 건축물 모델과 스케치, 디자인 작품과 14,000편이 넘는 영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술관에 있는 도서관에는 140,000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추가비용(25명 기준 시간당 150달러)을 지불하면 가이드 그룹투어(25명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에 참가할 수 있다.
- 투어예약에 대한 사항은 212/708-9685로 문의하면 된다.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000 Fifth Avenue at 82nd Street New York)
- 총 면적 13만㎡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센트럴파크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2백만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 이곳의 상설 전시관에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 유럽, 동양, 아프리카, 이슬람, 20세기 이전 미술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 구겐하임 미술관 (1071 5th Ave New York, NY 10128-0112)
- 솔로먼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건물은 프랭크 를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설계했고, 1992년 건물 확장과 개보수를 마쳤다. 미술관의 주 전시물은 신인 예술가들의 작품과 현대 걸작품들이다.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진 6층 규모의 원형건물로 현대 건축예술의 표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뉴욕 이외에 베를린과 베니스, Bilbao에도 있다.

○ 브룩클린 미술관 (200 Eastern Parkway at Prospect Park)
- 브룩클린 박물관(Brooklyn Museum Of Art)은 특히 고대 이집트 미술 및 미국 미술과 조각 작품 컬렉션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 밖에 미국 회화와 조각, 아시안과 아프리칸 미술, 장식 미술, 의상과 직물, 사진 등도 전시하고 있다. 브룩클린 미술관의 무려 150 만여 점에 이르는 작품들은 전세계 모든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 휘트니 미술관 (945 Madison Avenue at 75th Street New York, NY 10021)
- 1931년 설립된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은 유화, 조각, 스케치 등 전시품을 비롯해 20세기 미국 예술 작품, 약 1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작가와 내용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 건축물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350 Fifth Avenue Public Relations Office New York)
- 1930년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은 뉴욕을 상징하는 고층 빌딩으로 수많은 영화에 등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다. 높이 약 443m로 이제는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 해 평균 3백 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9.11 테러사건으로 인해 세계무역센터 건물(일명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이후로 맨해튼의 랜드마크(landmark) 구실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인기가 더 높아진 건물이기도 하다.

○ 유엔 본부 (United Nations) (Midtown East First Ave. and 45th St. New York)
-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단이 들어서 있는 UN복합단지로 컨퍼런스 빌딩(Conference Building), 유엔총회빌딩(General Assembly Building), 사무국빌딩(Secretariat Building), UN공원 (U.N. Garde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드타운의 동쪽 이스트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유엔 건물은 전세계에서 온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 디자인하여 1953년에 완공되었다.

○ 크라이슬러 빌딩 (42번 스트리트(42nd St.)와 렉싱턴 애버뉴(Lexington Ave))
- 지상 77층, 지하 1층 319미터에 달하는 높이의 크라이슬러 빌딩은 완공된 다음 얼마 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군림했었고, 현재는 세계에서 18번째로 높은 건물로 기록되고 있다. 건축가 윌리엄 반 알렌의 디자인으로 1928년 9월 착공해 1930년 5월에 완공된 크라이 슬러 빌딩은 전형적인 아르 데코 스타일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독특한 건축물이다. 크라이슬러 빌딩을 가장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잡한 디자인의 눈부시게 빛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타워이다. 그리고 우아한 아프리칸 대리석 장식의 로비도 유명하다.

○ 브룩클린 브리지
- 브룩클린 브리지(Brooklyn Bridge)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교각으로 사우스 스트리트 씨포트(South Street Seaport) 바로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1870년 착공하여1883년 완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이자 뉴욕시티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이었다. 총 길이는 5,989피트, 가장 높은 곳은 1,595피트 에 달하고, 총 1,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완공하였다. 브룩클린 브리지(Brooklyn Bridge)를 가로질러 걸으면서 감상하는 풍경이야말로 뉴욕 관광의 하이라이트가 될 만하다.



○ 록펠러 센터(47th to 52nd Streets bet. 5th and 6th Ave)

- 실외 아이스링크는 록팰러센터의 트래이드 마크이며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노천 카페 장소로 이용된다. 로워프라자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건물은 록펠러 센터의 가장 높은 타워인 70층 높이의 GE(General Electric) 건물이다. 12월에는 이곳에 들어서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최고의 볼거리가 된다. 6번 애비뉴와 50번가 서쪽에 위치한 라디오 시티 뮤직 홀(Radio City Music Hall)은 6천여 좌석을 갖춘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외 극장이다

□ 공 원: 센트럴 파크

○ 1856년 조경건축가인 페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칼버트 복스(Calvert Vaux)가 뉴욕시 소유의 843에이커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뉴욕의 중심지인 맨해튼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세계 최대 도시공원이다. 조깅, 산책, 승마, 자전거 등을 위한 길, 놀이구장, 동물원,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회전목마, 야외극장, 수많은 분수와 조각품 등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다.

○ 뉴욕 시민의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이다.

□ 기 타

○ 로어 맨하탄에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 (Wall Street) '와 연방 준비 은행, 증권 거래소, 체이스 맨해튼 은행, 상공회의소 등 뉴욕경제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건물들이 뉴욕의 마천루를 매우고 있다.

○ 또한 뉴욕 최고의 번화가 타임 스퀘어와 또한 12블럭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브로드웨이는 미국 극장가의 대명사로 밤이 되면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는, 타임 스퀘어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다.

○ 뉴욕의 상징물인 '자유의 여신상'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2) 로스앤젤레스

□ 개요

○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영화 산업의 대명사, 헐리우드와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 등으로 명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현재 50 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총 면적이 4천 83평방 마일에 달하며, 95개의 주변 도시에 인구 1,2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 도시 이다. 미 서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로서 가난한 이민자들의 꿈과 번영이 약속되는 희망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 테마파크

○ 유니버설 스튜디오 (UNIVERSAL STUDIOS) (100 Universal City Pl.)

- 다운타운에서 30분 이내의 로스앤젤레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니버설과 파라마운트 등의 메이저 영화사들의 촬영장면과 영화 팬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에게는 영화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의 세트나 소도구 및 영화제작 과정 등을 상세히 볼 수 있다. 쥬라기 공원 등 주기적으로 무대 및 공연 내용 교체하며, 인근의 주요 관광 명소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곳이다.



○ 디즈니 랜드 (Disneyland)

-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40㎞ 지점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1955년에 개장한 이후 약 2억 6,0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어린이 중심의 볼거리를 제공하나 성인 들에게도 훌륭한 관광명소의 하나이다. 약 32㎡의 부지에 2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꿈의 나라를 실현시킨 디즈니랜드 공원은 크게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샌디에이고 Sea World
- L.A.에서 자동차로 남쪽방향 2시간 거리에 소재한 샌디에고의 관광명소로 사우스 캘리포니아 최대의 해양 박물관이다.

□ 박물관

○ NATURAL HISTORY MUSEUM OF L.A. COUNTY
- 1913년에 개관한 역사박물관으로 고전적이고 거대한 3층 건물 안에는 콜럼버스 이전부터 1914년까지의 미국의 역사, 1540~1940년까지의 캘리포니아 주의 역사, 아프리카와 미국의 포유류, 태고의 화석, 곤충관, 바다 생물, 조류 코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 헐리우드 왁스 박물관(6767 Hollywood Blvd.)
- 영국 런던에 있는 Madame Tussaud's 박물관과 더불어 왁스 박물관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헐리우드 왁스 박물관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밀랍인형을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 운명을 달리한 과거의 스타들로부터 현재 생존해 있는 스타들까지 많은 스타 들의 밀랍인형들이 보관되어 있다.

□ 기 타

○ MUSIC CENTER
- L.A. 다운타운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의 음악과 연극의 중심지로 3개의 대형극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무대에서 매일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는데 동 센터는 미 서부의 대표적인 음악과 연극의 전당의 하나이며 복장은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

○ DOROTHY CHANDLER PAVILLION
- L.A.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클래식, 오페라, 발레 등이 주로 공연되며 로스앤젤레스 교향악단의 본거지로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LA필의 연주회가 개최되는데, 음향효과가 뛰어나 발코니에서도 생생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무대와 객석이 넓고 내부 장식이 매우 호화롭다.

○ HOLLYWOOD BOWL
- 할리우드 언덕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으로, 6-9월이 공연시즌이며, L.A.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와 각종 콘서트 등이 개최된다.

○ NATURAL HISTORY MUSEUM OF L.A. COUNTY
- 1913년에 개관한 역사박물관으로 고전적이고 거대한 3층 건물 안에는 콜럼버스 이전부터 1914년까지의 미국의 역사, 1540~1940년까지의 캘리포니아 주의 역사, 아프리카와 미국의 포유류, 태고의 화석, 곤충관, 바다 생물, 조류 코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 CHINESE MANN THEATRE
- 할리우드라고 하면 바로 이곳을 지칭한다. 1927년 극장 왕 SID GRAUMAN이 세운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관이다. 중국 사원식의 호화로운 건물도 훌륭하지만 이곳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미국 유명 영화배우들의 손과 발자국을 찍어놓은 흔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 후 실망하는 장소의 하나이다.

○ GRIFFITH PARK
- 할리우드 북쪽에 위치한 LA 최대의 자연 공원이다. 16.2㎢의 넓이에 펼쳐진 구릉지를 그대로 살려 조성한 공원으로서 L.A. 시민의 휴식처로서 광대한 부지 안에는 천문대, 동물원, 극장, 골프장, 승마코스 등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 WALT DISNEY CONCERT HALL
- LA 다운타운에 설립된 콘서트 홀로, 세계적인 건축가 Frank Gehry 씨가 디자인을 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중에 가장 뜨고 있는 명소 중 하나이다.

4) 시카고

□ 개요

○ 시카고는 미국의 중부 북쪽 오대호 미시간호 남서부 호변에 접해 있는 미국 제3의 도시이다. 1833년 인디언과의 평화조약이 성립되면서 도시가 형성(인구 350 명)되었으며, 1837 년에 시로 승격(인구 4 천 명)되었다. 인구분포는 백인이 36.5%, 흑인이 41.1%, 히스패닉이 17.9% 그리고 아시안이 4.5%가량 된다. 시카고는 거대한 미시간 호수 덕분에 여간한 가뭄에도 끄떡 없고 물맛도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시카고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해는 1803년으로 당시 흑인 탐험가인 진 뱁티스트 폰드 듀사브리이 시카고 강의 남쪽을 무역의 요지로 소개하면서부터이다. 시카고란 이름은 원래 인디언들의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뜻은 냄새가 지독한 '야생 양파' 혹은 '늪지대 풀'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대륙횡단 철도의 대부분이 경유하고 있으며,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의 모든 노선이 집중되어 있어 23개 철도의 기점이 되는 세계 제일의 철도 집중지이기도 하다.

□ 박물관

○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57th St. at Lake Sheor)
- 14 에이커 규모의 75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탄광, U-505 잠수함, 아폴로 8호우주선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모형이 특징이며, 12월초에는 전세계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전시된다.

○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Roosevelt at Lake shore)
- 1893년 설립된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이며, 특히 지구관은 10 에이커 이상의 규모이며, 고대 이집트의 무덤 등 생활 전시, 유인원, 미국 인디안, 중국, 티벳 문명 소개 등의 전시가 유명하다.
- 개장 시간: 09:00 - 17:00 / 5. 26일부터 9. 3일까지 08:00 - 17:00
- 입장요금: 어른 8달러, 어린이(3-11세), 노인: 4달러

□ 미술관

○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ichigan Ave., at Adams)
- 3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적 수준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 인상파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 입장 요금: 성인 10달러, 어린이, 학생, 노인 6달러, 5세 이하 무료
- 개장 시간: 10:00 - 17:00

○ Terra Museum of American Art (644 N. Michigan)
- 176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대표적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 주요 건축물

○ Sears Tower (233 S. Wacker Dr.)
- 세계에서 1번째로 높은 110층 건물(443미터)로서 전망대는 103층에 있다.

○ AON Building (220 E. Randolf Dr.)
-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물(346 미터)로서 시카고에서 2번째 고층건물이다.

○ Water Tower
- 1867년에 건축된 급수탑으로 1871년 시카고 대 화재 시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시카고의 상징 건물이다.

○ Chicago Tribune Tower (435 N. Michigan Ave.)
- 1925년 완공된 36층의 고딕양식의 건물이며, 미국 및 세계 각 지역의 암석을 수집하여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 기 타

○ Shedd Aquarium (1200 S. Lake)
-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8,000여종의 어족류) 및 90,000갤론의 산호초류가 전시되어 있고, 주말에는 잠수부가 어족류에게 먹이를 주는 광경이 공개된다.

○ The Adler Planetarium (130 S. Lake Shore)
- 우주에 관한 각종 필름을 소개(Sky Show)하고 여름에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 태양열 및 흑점 등을 관찰할 수 있다.

5) 텍사스

□ 어스틴 (Austin)

○ Texas State Capital (1100 Congress Ave, Austin, TX 78701)
- 미국의 의사당 중 크기 면에서 최대를 자랑한다. 시내 중심에 위치하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건물은 1888년에 완성되었다. 워싱턴의 국회의사당보다도 높으며, 매일 8:30am~4:30pm 사이에 무료 안내 투어가 있다.

○ Mount Bonnell (3800 Mount Bonnell Road, Austin, TX 78702)
- 어스틴 도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유명한 산이다. 멋진 어스틴 호수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고,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도 멋지게 감상할 수 있다. 정상에 오르려면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 99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커플이 한번 계단을 올라가면 사랑에 빠지고, 두번째는 약혼을, 세번째 계단을 오르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3E. 6th Street (E 6th St, Austin, TX 78701)
- 주의사당에서 남동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간 곳에 있는 지역에 위치한다. 19세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 이곳은 오스틴 제일의 번화가로 음식점, 화랑, 클럽 등이 70여 채가 자리하고 있다. 6가 (6th St.)에 동서로 길게 늘어선 곳인데, 밤이 되면 라이브 음악 연주를 볼 수 있다.

□ 달라스 (Dallas)

○ Dallas Museum of Art (1717 North Harwood, Dallas, TX 75201)
- Dallas Museum of Art는 18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국 국적 예술가들의 작품과 유럽 인상파, 표현주의 등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공예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 Sixth Floor Museum at Dealy Plaza (존 F 케네디 기념관 / 411 Elm St, Dallas, TX 75202)
- 1963년 11월 22일 대통령 선거유세도중 저격당한 케네디 대통령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달라스 시민의 성금으로 지었다. 그의 업적을 나타내는 박물관, 암살의 경위 등을 기록한 기념비등이 있으며 범인이 대통령을 저격한 적갈색 빌딩도 보존돼 있다.

○ Reunion Tower (300 Reunion Blvd, Dallas, TX 75207)
- 초고층 오피스빌딩으로 꼭대기에는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다. 올드시티팍-달라스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1876년에 지정되었다. 1840~1910년의 생활양식이나 풍속 공예품을 재현 하였다. 포장된 길이 넓고 37동의 당시 가옥과 은행 병원 철도역 학교 교회 등이 있다.

□ 휴스턴 (Houston)

○ Space Center Houston (1601 Nasa Road One, Houston, TX 77058)
- 우주개발기지 NASA-월석 아폴로 17호 등 현대 우주개발의 하드웨어 부문과 우주개척의 여명기부터 오늘까지의 중요내용에 대한 영화를 상영한다. 또한 1982년에 발사한 스페이스 셔틀의 실물크기 모형이 있다.

○ Galleria (Westheimer Rd & Post Oak Blvd, Houston, TX 77056)
- 미국 굴지의 쇼핑센터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주위에 티파니 보석상등 일류 상품과 상점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쇼핑센터 안에는 375개 이상의 다양한 의류, 보석상, 상점, 식당, 백화점들이 있다.

□ 샌안토니오(San Antonio)

○ River walk (454 Losoya, (runs through downtown), San Antonio, TX 78205)
- 샌안토니오의 중심을 흐르는 샌안토니오 강의 지류. 강변을 따라 나 있는 좁은 산책길에는 스페인풍의 건물들, 현대적인 시설의 호텔들, 분위기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 기념품점 등이 늘어서 있다. 특히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매우 흥겨운 분위기가 되며, 강을 따라 작은 보트나 유람선 등도 운행되고 있다.

○ Alamo (300 Alamo Plaza, San Antonio, TX 78205)
- 1718년 스페인이 세운 가톨릭 교회로, 현재는 텍사스 독립의 역사 자료를 전시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곳은 텍사스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1836년 텍사스 군 189명이 건물 안에 갇힌 채 멕시코 군과 싸우다 전원 전사하여 텍사스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명소 중의 하나이다.

5) 워싱턴

□ 개요

○ 미국의 수도로 국제 정치, 외교의 중심지이다. 이 도시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이다. 워싱턴은 백악관의 건물과 녹음이 어우러진 기품 있는 도시로 공원과도 같은 도시의 아름다움은 정치적 도시라는 이미지를 잊게 해준다.

○ 총 면적은 162㎢로 인구는 약 570,600명이다. 표면적인 관광에만 그치면 워싱턴이라는 도시의 진면목을 간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시내 도처에 남아 있는 미국의 역사와 여러 건물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현대의 정치적인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건축물

○ 국회의사당 (The Capitol)
- 국회의사당은 Dr. William Thornton에 의해 설계되어 1793.9.18에 George Washington이 직접 주춧돌을 세우고 상원회의실이 완성된 1800.11.21에 Philadelphia 로부터 국회가 워싱턴 D.C. 로 이주해 왔다.

- 국회의사당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는 3에이커 반이고 길이가 750 feet, 높이는 93m 61㎝의 웅대한 건물이다.

○ 백악관(White House)
- 펜실베니아 에비뉴 1600 번지에 위치, Ireland 출신의 James Hoban이 설계한 건물로 Virginia에서 출토되는 sandstone(사암)으로 건축되었다. public building로는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1773.10.13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재임시 착공, 1777년 완공되었다.

○ 대법원(The Supreme Court)
- 국회의사당 맞은 편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대법원은 1932년 건축 설계사 캐스 길버트씨가 고대 그리스 신전 양식으로 설계, 1935년 완공되었다. 장엄하리만치 조용하고 한가해 보이는 기나긴 복도와 기둥, 벽과 천장의 조각, 여기에 육중한 구리대문 등이 연방 대법원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 워싱턴 기념탑 (Washington Monument)
-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립 mall안의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이 대리석 탑은 1832년 Robert Mills가 설계하여 1848.7.4 착공에 들어가 남북전쟁 등 긴 공정기간을 거쳐 높이 약 555feet, 밑둥의 넓이 55 feet, 윗부분의 넓이 34 feet, 무게 81,120 tons으로 1884년에 완공, 1885.2.21에 완공되었다.
- 기념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동서남북 방향으로 창이 있어 워싱턴시내 전역을 관람할 수 있는데, 동쪽으로 국회의사당, 서쪽으로 Lincoln 기념관, 북쪽으로 백악관, 그리고 남쪽으로 Jefferson 기념관을 볼 수 있으며, 1959년 설치된 현재의 Elevator는 올라가는데 70초, 내려 오는데 60초가 소요된다.

○ 링컨 기념관 (Lincoln Memorial)
-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으로 유명했던 Lincoln 대통령의 기념관은 국립 mall중에서 가장 끝인 West Potomac Park에 위치하고 있으며, Henry Racon 의 설계로 1914.2.12. 에 착공, 1922. 5.30. 에 완공하였다. 그리스의 건축양식을 복합한 형식으로 한 대리석 건물이다.

○ 제퍼슨 기념관 (Jefferson Memorial)
-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은 1938.12.15. 착공, 1943. 4.13. 제퍼슨 대통령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완공되었다. 동으로 만들어진 제퍼슨 동상은 1.8m의 검은색 Minnesota 화강암 위에 높이 5.8m로 멀리 백악 관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상 주위 벽면 4면에 걸쳐 그의 명언들이 적혀 있는데 독립선언문의 한 구절, 정신의 자유, 육체의 자유와 인간의 교육에 대한 평등 등 명언들이 새겨져 있다.

□ 박물관

○ 스미소니언 박물관 (Smithsonian Institution)
- 거대한 박물관 단지라 하는 것이 좋을 정도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연간 관광객이 2,000만 명 이상 되며, 소장품도 수억 점이 넘는데 이중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전시해 놓은 것은 전체 소장품 중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James Renwick에 의해 설계되었고,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역사 박물관, 자연의 발달과 지구촌의 운명을 전시해 놓은 자연사 박물관,

항공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주과학박물관 등 여러 개의 박물관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구성하고 있다.

○ 케네디 센터 (Kennedy Center)
- John F Kennedy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예술의 전당으로 5개의 극장을 갖추고 있 으며, 내부에는 40여개국으로부터 선물받은 각종 실내 장식품, 귀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 국립 미술관
-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인상파, 추상파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유명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특히 피카소의 젊은 시절 작품을 볼 수 있는 특색이 있다.

6) 샌프란시스코

□ 개요

○ 샌프란시스코는 비교적 작은 도시로 샌프란시스코 만(bay) 태평양 사이의 46.6 평방 마일의 경사진 땅 위에 75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채로웠던 도시의 과거를 소중히 하고 있으며 수많은 유서 깊은 건물들을 가능한 파괴하지 않고 현대적인 모습의 사무실, 상점들과 이상적으로 어우러지도록 개조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는 건축학적,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적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 관광명소

○ 금문교 (Golden Gate Bridge)
-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머린 카운티(Marin County)를 연결하는 총 2,789m길이의 현수교이다. 조셉 퍼먼 스트라우스에 의해 설계, 1933년 1월에 착공되어 1937년 5월에 개통되었다.
- 해류가 빠르고 강풍과 안개가 많은 해협에 현수교를 건설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을 깨고, 지주 사이의 거리가1,280m에 이르는 당시 최장의 현수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오렌지 색깔의 다리는 안개가 많은 샌프란시스코와 무척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리 양쪽에 관람지역이 있어 이곳에서 전경을 관람하거나, 도보로 다리를 건널 수 있다.

○ 골든게이트 공원 (Golden Gate Park)
- 샌프란시스코 시 북서부에 위치한 골든게이트 파크는 길이5km, 폭800m의 세계 최대의 인조 공원이다. 본래 바람이 세고 강수량이 적어 황무지였으나, 존 맥라렌이 유럽에서 수천 종의 나무를 옮겨 심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은 녹음이 짙은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공원 내에는 온실, 식물원 (Strybing Arboreturm Botanical Garden), 미술관 (M.H. De Young Memorial Museum) 등이 자리잡고 있다.

○ 유니언 스퀘어 (Union Square)
- 유니언 스퀘어는 샌프란시스코 중심부로 고급호텔, 유명브랜드 숍, 식당 등이 밀집해 있고, 지역 명물인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각종 버스노선, BART(Bay Area Rapid Transit) 등의 기점이 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이다. 유니언 스퀘어라는 이름은 남북전쟁시대에 북부 연합군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남부 주 연방 탈퇴론자들을 반대해서 데모를 일으켰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광장의 중앙에는 높이 29m의

마닐라전쟁기념탑이 서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지는 곳이기도 하다.

○ 알카트라즈 섬 (Alcatratz)
- 스페인어로 '펠리칸'이란 뜻의 알카트라즈는 1950년대에는 방위 요새로서, 스페인과 미국 전쟁 시에는 전쟁 포로들의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1934년 알카포네 등 마피아, 흉악범 들을 감금함으로써 유명세를 타게되었다.
- 원래 무인도였던 알카트라즈 섬은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1마일(1.6k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물살이 세고 수온이 낮아 지금까지 탈출에 성공한 죄수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섬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감옥의 중앙블록과 식당, 등대 등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
- 샌프란시스코 북쪽 해안에 위치, 이태리계 어부들의 선착장으로 번창한 피셔맨스 워프는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는 많은 쇼핑센터와 왁스뮤지엄, 박물관, 기라델리 스퀘어 등이 있다. 또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노점들이 많아, 새우, 굴, 게, 연어, 바닷가재 등 해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거리의 악사들과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피어39에 무리지어 있는 야생 바다사자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차이나타운 (China Town)
- 다운타운의 북동쪽으로 브로드웨이(Broadway), 커니(Kearny), 부시(Bush), 스탁튼(Stockton) 등 4개의 거리에 둘러싸인 차이나 타운은 약 8만 명의 중국계가 생활하는 곳이다. 부시 스트리 트에 소재한 전통적인 중국풍 문을 지나면, 중국식 건물이 들어서 있고, 중국 식당과 울긋 불긋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자리잡고 있다. 상아나 옥으로 만든 중국 세공품들이 눈요기 거리를 제공하며, 음력 새해에는 전통 퍼레이드도 개최하고 있다.

○ 트윈픽스(Tween Peaks)
- 트윈픽스는 해발 약 270m의 2개의 비슷한 언덕이다. 이곳은 40여 개가 넘는 샌프란시스코의 언덕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시내를 360°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북쪽으로는 금문교와 베이브리지(Bay Bridge), 동쪽으로는 다운타운과 멀리 버클리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석양 무렵부터의 야경은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카스트로 거리 (Castro Street)
- 샌프란시스코는 호주 시드니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게이 (Gay)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유명한데, 바로 카스트로 스트리트가 게이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이다. 6월의 게이 퍼레이 드와 할로윈 밤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시기이다.

○ 롬바드 스트리트 (Lombard Street)
- 롬바드 스트리트는 러시안 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로, 구비구비 급 경사진 길이다. 5m 간격으로 구부러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꼬불꼬불한 길 (The Crookedest street in the world)"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 이 거리는 급경사를 커버하기 위해 1920년에 설계된 자동차 길로, 거리 끝에서 보면 화단의 꽃과 하늘의 조화가 인상파의 회화같이 매우 아름답다.

7) 아틀란타

□ 개요

○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의 무대로 잘 알려진 도시. 조지아 주 북서부에 있는 주도로 남부 유수의 상공업, 교통의 중심지이다. 도시에는 조지아 주풍의 저택들이 많아 오랜 남부의 향취를 맛볼 수 있고, 유리와 스틸제의 마천루가 새로운 남부를 상징하고 있다.

○ 현재 미국 내에서 시애틀과 함께 가장 장래성을 가진 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며, 1996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더욱 힘찬 도약을 하고 있는 곳이다. 상공업과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한 이곳에 코카콜라, 델타항공, CNN 본부가 있다.

□ 관광 명소

○ 스톤마운틴 공원 (Stone Mountain Park)



-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약 30Km떨어진 평원 위에는 둥근 바가지를 엎어 놓은 것 같은 거대한 화강암 산이 있는데, 이 주위의 지역이 일년에 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애틀랜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꼽히는 스톤 마운튼 파크(Stone Mountain Park)이다.
- 스톤 마운틴은 바위높이 200m, 둘레가 약 8Km인 단일 화강암으로는 세계 최대의 크기이다. 바위 정면에는 제퍼슨 데이빗슨 남부연맹 대통령, 로버트 리 남부군 총사령관, 잭슨 장군의 초대형 인물상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리 장군의 귀 길이만도 2m에 달하고 전체 부조의 넓이는 축구장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23년에 거트존 볼그럼(Gutzon Borglum) 에 의해 시작되었고 월터 컬트랜드 핸콕(Walter Kirtland Hancock) 과 로이폴큰(Roy Fau lkne)이 1970년에 완성되었다.
- 이곳에서는 스톤 마운튼 파크를 일주하는 열차(Scenic Railroad)와 스카이리프트(Skylift), 보트투어를 즐길 수 있고 골동품 자동차, 골동품 악기를 전시하는 박물관, 스톤 마운튼 박물관, 남북전쟁 전의 농원, 야생동물 농장, 레이져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 언더그라운드 애틀란타 (Underground Atlanta)



- Peachtree Street와 Central Avenue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세기 이후의 애틀란타 중심지로 레스토랑, 카페, 나이트클럽, 각종 샵 등이 있는 오락가이다.

○ 코카콜라 박물관



- 언더그라운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년 전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코카콜라 역사와 세계속의 코카콜라에 관한 연구자료 전시 및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

○ CNN 센터
- CNN 뉴스 스튜디오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투어로 45분 소요된다.

○ 마틴 루터 킹 목사 생가
- 어번가(Auburn Ave.)에 있는 기념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킹 목사의 생가가 있는데 킹 목사는 이 집에서 태어나 12살까지 살았었다. 집 내부에는 킹 목사와 가족들의 사진, 사용하던 피아노, 성경 등이 전시되어 있다. 집 안을 둘러보는 무료 투어 티켓은 기념관 에서 받을 수 있다. 다운타운 파이브 포인트(Downtown Five Point)역에서 3번 마르타 (Marta) 버스를 타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다.

○ 사이클로라마 (Atlanta Cyclorama)

- 높이 15m, 원둘레 120m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원통형 디오라마로 그랜트 공원 내에 자리잡고 있다. 디오라마란 사실적 배경화 앞에 인형과 모형을 배치하고 조명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의 관람석이 해설에 맞춰 회전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그림들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음향과 3D 효과를 더해 더욱 생생한 느낌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8) 마이애미

□ 개요

○ 마이애미는 플로리다 주 남동부 비스케인(Biscayne) 만을 향해 있는 "세계적 휴양지"이다. 마이애미시의 이름은 인디언 부족인 마이애미족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쾌적한 아열대성 기후와 아름다운 해안으로 일년 내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수가 대략 2,660만 명에 이른다. 마이애미를 상징하는 것들은 온난한 기후와 짙푸른 바다, 끝없이 펼쳐진 흰 모래사장, 해변에 들어선 대형 호텔들이다.

○ 마이애미 비치를 중심으로 리조트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그레이터 마이애미의 중심지인 마이애미시 다운타운에 자리잡고 있는 국제은행과 세계 탑 500사에 포함된 회사들의 본사 수는 뉴욕 시 다음이 정도로 전형적인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과학 박물관 및 스페이스 트랜지트 천문관(3280 South Miami Ave. Miami, FL 33129)

○ 로봇공룡에서 살아있는 동물, 가상현실 체험공간 등을 갖춘 과학센터(Miami Museum of Science)이다. 야생생물센터는 상처 입은 동물들의 치료와 요양처 제공, 생태 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75마리 이상의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가들의 설명과 지도하에 학생들에게 야생동물을 직접 보고 만지게 하며 플로리다의 자연환경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플라네타륨 천문관(Space Transit Planetarium)에서는 공룡과 별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 내에는 기념품 상점 및 푸드코트가 있다.

□ 에버글레이즈 공원(Everglades National Park)

○ 플로리다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Everglades National Park)은 그레이터 마이애미의 총면적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크게 Royal Palm, Flamingo, Gulf Coast, Shark Valley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원 내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 입장료는 자동차 1대당 3달러, 자전거나 도보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5달러. 입장권은 7일간 유효하다. 보트투어나 트램투어, 그리고 삼림경비원과 함께 공원 내를 탐험하는 Ranger-Led Activities에 참가해 볼 수도 있다. 그레이터 마이애미권에 해당되지만 이곳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으므로 투어버스나 렌터카를 이용해야 한다. 여름에는 모기, 벌 등이 많으 므로 방충약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비스케인 국립공원

○ 비스케인 국립공원(Biscayne National Park)은 1968년에 조성되어 198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레이터 마이애미 남단 700km에 걸쳐 조성된 해양공원으로 그 면적이 180,000에 이르고 그 중 95%가 산호초 바다이다. 200여종이 넘는 해양생물과 수중 동식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관광포인트는 바다를 즐기는 것. 바닥이 유리로 된 보트를 타고 산호초바다를 도는 투어에 참가하여 아름다운 바닷속을 구경할 수 있다

□ 프루트 스파이스 공원 (Fruit & Spice Park)

○ 프루트 스파이스 공원(Fruit & Spice Park)은 1944년에 조성된 열대 공원이다. 레드랜드 디스트릭트(Redland District)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이애미 다운타운에서는 20여 마일 떨어져 있다. 32에이커 청청한 공원 내에는 전세계에서 들여온 500여 종 이상의 이국적 과일, 견과류, 허브나무, 관목 등이 가득하다. 매일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트닉 장소도 제공하고 있다. 공원 내의 상점에서는 특이한 젤리, 종자, 통조림 쨈 등을 판매하고 있다.